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8호 2010. 6

차 례

특집 동아시아 해역의 민간교류사 - 한·중·일 해난구조제도의 형성과 전개

김강일 ▮ 전 근대 한국의 海難救助와 漂流民 구조 시스템 7

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 ▮ 15~16세기 일본의 僞使와 조선인의 송환 59

신동규 ▮ 일본 江戸時代의 海難救助 정책과 '4개의 창구'에 대한 고찰 91

류쉬핑(劉序楓) ▮ 清代 中國의 外國人 漂流民의 救助와 送還에 대하여

- 朝鮮人和 日本人의 사례를 중심으로 131

정성일 ▮ 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제도와 국제관계 169

논문

이영 ▮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의 허구와 문제점 - 식민사관과 관련하여 213

취안허슈(權赫秀) ▮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

-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 253

장인성 ▮ 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의 '질서'와 '정의'

- 근대 일본 지식인의 동아시아 국제사회관 291

김혜진 ▮ 러시아 로스토프州 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 337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67

Contents

Special Issue **The History of Interaction in East Asia Sea: The Development of a Maritime Rescue and Repatriation System among Korea, China, and Japan**

- Kim, Kangil ▮ The Systems for Assistance for Accidents and Rescue of Drifters in Pre-modern Korea 7
- Kenneth R. Robinson ▮ Japanese Impostor Identities an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59
- Shin, Dongkyu ▮ A Study on Salvage Policies and “4 diplomatic windows” in Japan’s Edo Era 91
- Liu, Xufeng ▮ The Rescue and Repatriation of Foreign Drifters by Qing China: Focusing on Cases Involving Koreans and Japanese 131
- Chung, Sungil ▮ Korea-Japan Maritime Rescue Syste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Modern Ages 169

Articles

- Yi, Young ▮ The fiction and questions of the theory of “waegu=multi-nations and complex pirates” 213
- Quan, Hexiu ▮ Modern trade relations under the Tributary system: A Study on the marine and land trade regu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1882 253
- Jang, Inseon ▮ *Order and Justice* in Modern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Empirical Japanese Intellectuals’ Idea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291
- Kim, Hyejin ▮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Russian community in Rostov of Russia 337

특집

동아시아 해역의 민간교류사
- 한·중·일 해난구조제도의 형성과 전개





본지 제22호(2008년 12월)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1장 상당부분과 3장은 『일본학연구』 제22집(2007년 9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을 중복 게재한 것이므로 이에 사과드립니다. - 이원덕

전 근대 한국의 海難救助와 漂流民 구조 시스템

김강일 ■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 동아시아 지역의 표류민과 표류민 구조제도의 형성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해양을 오가면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각 왕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해상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며,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韓中日 삼국 모두 일찍부터 海難救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중국은 근세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는 明清帝國과 주변 각국 사이에 冊封體制를 전제로 하는 표류민 송환체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과 중국 간 그리고 조선과 일본 간의 표류민 송환 역시 이와 같은 책봉체제와 무관할 수 없었다.¹⁾

※ 투고일: 2010년 4월 6일, 심사일: 2010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1) 春名徹, 1994, 「近世東アジアにおける漂流民送還体制の形成」, 『調布文化』 4, 2~4쪽에서는 표류민 송환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책봉관계(외교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의 표류사건을 예로 들

동아시아의 표류민 구조 시스템은 중국의 책봉체제를 바탕으로 청대 乾隆 연간에 확립되지만, 그 이전부터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는 상호 간에 표류민을 송환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표류민 구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표류민 송환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즉 19세기 중엽 서양 열강의 진출 이전에 이미 해난구조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표류민 구조시스템(해난구조 시스템)은 시기마다 지역(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중반 이후만 보더라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구조시스템과 중국-일본 간의 구조 시스템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 간의 해난구조 시스템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그러한 구조 시스템 속에서 조선 정부의 표류민 구조 정책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조일 간 표류민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국가 차원의 외교체제를 강조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²⁾. 표류민 연구의 단초를 연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는 표류민 구조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권력의 존재’와 ‘통치권에 의한 대외관계의 장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³⁾ 이 두 가지 개념은 이후 표류민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아라노는 근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론과 표류민 송환체제를 서술하면서, 동아시아 제국에는 각기의 ‘海禁’과 ‘華夷秩序’에 의하여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고 있다. ① 成化 23년(1487) 推刷 敬差官이 되어 제주도로 향하던 조선의 관리 崔溥가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가던 도중 악천후를 만나 표류하였고, 14일에 이르는 표류 끝에 중국 浙江省 台州에 표착했는데, 중국[명]과 책봉관계에 있는 조선의 官人임을 알고 정중한 대접을 받았으며, 北京을 거쳐서 육로로 송환되었다. ② 萬曆 40년(1612) 8월, 여성을 포함한 일본인 12명이 동일한 台州에 표착했지만 송환되지 못하고 모두 죽음을 당했다.

2) 李薰,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13~20쪽 참조.

3) 荒野泰典, 1983,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體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 400;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荒野泰典, 2000, 「近世東アジアの國家關係論と漂流民送還體制」, 『史苑』 60-2號.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의 원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표류민 송환체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근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여 표류민 송환체제와 국제관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였다. 표류민을 소재로 하면서도 조일 간의 외교체제를 ‘지역성’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로는, 조선과 일본의 교류(표류민 구조 및 송환)가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닌 ‘국가’와 ‘지역’ 간의 교류였음을 밝힌 연구⁴⁾와, 일본에 표류했던 조선 표류민의 송환에 관하여 막부의 통일된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표착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었음을 밝힌 연구⁵⁾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막부 주도의 송환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송환체제에 있어서 지역 간에 격차가 존재했음을 밝힌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조일 양국 표류민의 송환을 둘러싼 조선과 쓰시마 간의 관계를 정치·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변경에 위치한 쓰시마의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⁶⁾ 일본에서의 조선 표류민 취급 및 교섭경로의 왜곡을 검토하여 조일 간접통교체제의 실태 내지는 국가주도 송환체제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가 체제론적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 밖에 표류·표착을 조선 연안 포구의 상품 유통이나 出漁 등 생산활동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본 연구⁸⁾ 등이 있으며, 표류·표착을 조선의 대일정보 수

4) 關周一, 1991, 「15世紀における朝鮮人漂流人送還體制の形成」, 『歴史學研究』 617.

5)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6) 李薰, 1991, 「조선후기 對馬島の 漂流民送還과 對日關係」, 『國史館論叢』 26.

7) 李薰, 1995, 「조선후기 日本人의 朝鮮漂着과 送還」, 『韓日關係史研究』 3. 李薰은 그 밖에도 표류민의 출신 및 표류경위를 지역적 특성과 관련지어 검토한 연구(『朝鮮後期 沿海住民의 日本 漂着과 朝鮮의 對應』, 2000), 표류민을 송환하는 주체로서 대마변과 조선의 교섭 실태를 다룬 연구(「18세기 중엽 日本 漂船에 대한 雜物支給과 朝日 交渉」, 「1682년 漂流民의 順付送還과 對馬藩」, 「朝鮮後期 日本에서의 朝鮮人 漂流 取扱과 善隣友好的의 實態」) 등을 묶어서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표류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8) 정성일, 2001, 「표류·표착의 지역적 특성과 그 현재적 의의」,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國學資料院; 정성일, 2002, 「漂流記錄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漂人領來謄錄」과 「漂民被仰上帳」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9집.

집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연구가 있다.⁹⁾

근세 동아시아 지역의 표류사레 연구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조선과 일본 간의 표류민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들이 어떻게 구호를 받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송환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과 중국 간의 표류민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중국인 표류민을 다룬 연구 역시 일본과 청 간의 표류민 송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¹⁰⁾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한반도에 표착했던 명나라 표류민들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표류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송환, 문화접촉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표류했던 사람들의 표류기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¹¹⁾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시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가능하다. 표류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하층민으로 볼 수 있는 어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민중사 연구가 되고, 표류한 상인집단의 출신지와 출항지, 항로 및 선적물 등을 연구한다면 국제무역사가 될 것이다. 또 표류민의 이국 체험과 이국 문화의 접촉 등 문화적인 측면을 연구한다면 국제교류사가 될 것이고, 표류민에 대한 송환과정과 송환체제를

9) 閔德基, 2001, 「漂流民을 통한 情報의 交流」,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國學資料院.

10) 劉序楓, 1993, 「十七・八世紀の中國と東アジア-清朝の海外貿易政策を中心に」, 『アジアから考える地域システム』, 東京大學出版會; 劉序楓, 2005, 「近世中國と日本間における漂流, 漂着事件について」, 『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交流の諸相-海賊・漂流・密貿易』,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중국과 조선 간의 표류문제를 다룬 논문은 劉序楓, 2009, 「近世東亞海域的偽裝漂流事件-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의漂流中國事例爲中心」, 『韓國學論集』第45輯, 한양대학교; 박원호, 2005, 「명대 조선 표류민의 송환절차와 정보전달-崔溥『漂海錄』을 중심으로」, 최소자교수정년기념 특집호, 『明清史研究』 제24집; 원종민, 2008,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제44집 등이 있다.

11) 정민, 2009a,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韓國漢文學研究』 제43집; 정민, 2009b, 「다산의 海防考에 나타난 중국 漂船 처리문제」, 『韓國學論集』 제45집; 박정자, 2004, 「朝鮮物語에서 표류 일본인들에게 비취진 조선사정」, 『日語日文學研究』 제59집 등이 있다.

연구한다면 외교정책사가 된다. 표류민의 발생 지역과 표착 지역 등을 연구하면 지방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세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기까지(고종대)로 한정하여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조선에 표착한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구조 및 송환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인의 표착과 구조

1_ 중국인의 표착 원인

14세기에 明朝의 수립과 더불어 나타난 대외적 폐쇄성은 국가가 해양을 통제하는 海禁政策의 강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바다를 통한 민간의 국제교역은 해금을 뚫고 밀무역의 형태로 확대되어 갔으며, 활발한 해상활동에 따라 자연히 해난사고도 증가해 갔다.

실록에 보이는 중국인 최초의 표착은 태종 6년(1406) 6월 13일 충청도 庇仁縣 남쪽 徒菴堂에 표착한 기록이다. 필담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중국 浙江路 조운선의 百戶 屈得 일행 20여 명이 풍파로 인하여 비인현에 표류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바닷가에 있는 州·縣에 명하여 만일 중국의 배로서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이르는 것이 있거든 후하게 위로하여 보내도록 하였다.¹²⁾ 이후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실록에 보이는 표착 기록은 모두 103건에 이르고 있으며, 표착 인원도 4000명이 넘을 만큼 표착사건이 잦았다.¹³⁾

12) 『태종실록』 6년(1406, 명 永樂 4) 6월 13일 기사.

이하에서는 典據를 밝힐 때 실록 기사의 연월일과 중국의 연호를 병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시기의 표류민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이 글 말미에 실은 부록 참조. 실록 외에 『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邊圉典故」의

중국 선박이 표류하는 원인으로는 강풍·악풍·폭풍·풍랑 등 바람으로 인한 항로이탈이 대부분이다. 돛을 달고 항해하던 전 근대의 무동력선의 경우 항해 도중에 강풍을 만나면 속절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 초기의 해외 표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원인으로는 해금정책을 들 수 있다. 명은 개국 후 곧 왜구에 대한 海防 차원에서 해금정책을 실시했지만(1371, 고려 공양왕 20), 늘어나는 무역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금정책을 해제하게 되었다(1567, 명종 22, 명 穆宗 1). 따라서 해금이 실시된 200여 년간의 해외무역은 공식적으로는 조공무역만이 인정되었지만, 이 기간에도 명나라 선박의 해외 표착사건은 계속 발생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표착선들은 밀무역선으로 볼 수 있으며, 기록에서 적재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복건·절강 등지와 나가사키·베트남·필리핀 등지를 오가며 후추·蘇木 등을 거래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금 초기에 한반도에 표착했던 중국 선박의 특징으로는 대개 관선 내지 관용물(군용물) 운반선,¹⁴⁾ 왜구 추쇄선,¹⁵⁾ 군수품 운반선¹⁶⁾ 등 운항이 허가된 선박이거나 길을 잃고 표류한 선박¹⁷⁾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금 후기가 될수록 법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항해하다가 표류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으며,¹⁸⁾

『荒唐船條』에도 중국인 표류 기사가 있으며, 실록과 중복된 표착 기사, 불의의 표착으로 볼 수 없는 기사를 제외하면 27건의 표착 기사를 추출할 수 있다. 물론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에도 중국인의 조선 표착 기사는 있지만, 이들 사료는 기록된 시기가 제한적인 까닭에 조선시대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편이상 실록과 『燃藜室記述』의 기사만 분석하였다. 이렇게 해도 중국인의 조선 표착에 관한 대략적인 추세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邊圉典故」를 『燃藜室記述』 「荒唐船條」로 줄여서 적는다. 다만 『燃藜室記述』 「荒唐船條」에는 구체적인 월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연도만 적었다.

14) 『태종실록』 6년(1406, 명 永樂 4) 7, 8, 9월에 충청도·황해도에 표착한 선박은 양곡을 싣고 운항하다 표착하였다.

15) 『태종실록』 9년(1409, 명 永樂 7) 3월 10일, 『중종실록』 18년(1523, 명 嘉靖 2) 8월 3일, 『명종실록』 즉위년(1545, 명 嘉靖 24) 8월 4일, 8월 10일 기사.

16) 『세종실록』 5년(1423, 명 永樂 21) 1월 4일 기사.

17) 『태종실록』 9년(1409, 명 永樂 7) 3월 10일 전라도 玉溝 표착선.

18) 『중종실록』 39년(1544, 명 嘉靖 23) 6월 25일, 9월 8일 기사, 인종 즉위년 기사(이 기사는 『燃藜室記述』에 보이는데, 위의 주 14에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월일 기

이들은 표착지 관아에 상륙을 요구하거나 무역을 강요하는 등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범법자로 보고 통상의 표류민처럼 대우할 수 없다는 諫院의 건의에 따라 상륙을 허가하지 않았으며,¹⁹⁾ 약간의 식량만을 주어 돌려보내고 있다. 즉, 荒唐船에 대한 조선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책은 兵威를 보여서 즉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표류로 인하여 곤궁한 처지에 놓인 중국인에게 식량은 물론 급수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명을 구제하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식수 공급만은 허락하는 것이었다.²⁰⁾

청이 중원을 지배한 이후(1644)의 중국 표류민 중에는 清朝의 지배를 거부하고 무역에 나서거나, 明朝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군자금 확보를 위하여 대일 무역에 나섰다가 표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목된다. 실록에 보이는 이들 표착선의 특징으로는 3건 모두 복건성을 출발하여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나 표류한 선박이다. 인조 25년(1647) 5월에 徐勝 등 상인 51명이 反淸 군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官銀으로 일본과 무역에 나섰다가 거제현에 표류한 경우²¹⁾는 표착인들 모두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았다고 하며, 자신들 스스로 청조의 지배를 거부하고 장사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청의 중원 지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만주족의 풍습인 삭발을 하지 않고 한족 고유의 상투와 비녀를 꽂고 생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명나라 유민들 중에는 청인이 南京을 차지한 뒤에 바다 밖 香山島로 도망 나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무리가 수십만²²⁾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볼 때 청의 중국 지배 이후 복건·절강·광둥 지역 주민들 중에는 만주족의 핏

록이 없다).

19) 『명종실록』 즉위년(1545, 명 嘉靖 24) 8월 10일 기사, “이번에 표류한 唐人들은 일본에 내왕하며 물화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바로 상국의 죄인들로서 보통 사람들이 표류해 온 것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20) 『명종실록』 즉위년(1545, 명 嘉靖 24) 7월 17일 기사, 9월 24일 기사.

21) 『인조실록』 25년(1647, 명 嘉靖 24) 7월 18일, 『현종실록』 8년(1667, 청 康熙 6) 6월 21일 기사.

22) 『현종실록』 11년(1670, 청 康熙 9) 7월 11일 기사.

박을 피해서 먼 도서 지역으로 이주하여 무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리들이 무역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면 한반도 연안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의 중원 지배(1644)와 三藩의 亂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기에도 결과적으로 명나라 유민으로 구성된 대량의 표류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2_ 중국인 표착자의 신분

명 초기(해금시대 초기)의 표착자는 대체로 군인·관리·관선(양곡 운반선) 등 합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신분인 경우가 많았으며, 해금시대 후기로 내려올수록 일반 무역선과 어로에 나섰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명대의 중국인 표착자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는 왜구와 함께 표류하다가 구출된 경우 및 왜구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표류 중 한반도 연안에 표착한 경우이다. 전자는 강남에 거주하는 丘三 등이 寧波府를 습격했던 왜구와 함께 달아나다 海島에 표류했으나 구조된 경우이며,²³⁾ 후자는 절강성 寧波府의 官人들이 賊倭를 수색하던 중 뱃길을 구하러 바다 가운데의 섬에 이르렀다가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고, 왜구가 이들을 섬에 방치하고 달아났으나 조선 측에 의하여 구조된 경우이다.²⁴⁾ 『燃藜室記述』 「荒唐船條」에도 4건

23) 『중종실록』 18년(1523, 명 嘉靖 2) 7월 25일 기사. 조선 조정에서는 “왜선에 섞여 달아났다가 돌아온 자를 중국 사람과 균등한 禮로 대우함에 있어서는 가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지은 司譯院이 누추하지 않으니 이곳에 館舍를 정하여 묵게 하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단 丘三 등은 강남 지방에서 생장하였으니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풍성하고 두텁게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추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강북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것이므로, 例賜하는 의복 및 供饋하는 물품을 마땅히 평상시의 은전과는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왜구와 유사한 표류민에게도 인도적인 구호조치를 내리고 있다.

24) 『중종실록』 18년(1523, 명 嘉靖 2) 8월 3일 기사. “王濊이 공초하기를 ‘5월에 賊倭가 변방을 침범하였는데, 寧波府의 태수가 군사를 거느려 맞싸우고 千戶가 지휘하여 많이 살해하였고, 태수가 왜선을 쳐서 빼앗으니 왜적이 달아나 풀숲에 숨었다

의 기록이 보이는데, 모두 포획한 왜선에서 중국인 포로를 구출했거나,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던 중 조선 해안에 표착하여 구조된 경우이다.²⁵⁾

왜구는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말부터 조선과 명나라 해안을 넘나들면서 약탈과 납치를 일삼던 해적집단인데, 조선에서는 세종대의 왜구 토벌과 受職·受圖書 등의 회유책으로 세종대 이후부터 왜구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사료들을 통해서 볼 때 선조 즉위 무렵의 동아시아 해역에는 여전히 왜구가 횡행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아울러서 해금 해제 이후 복건상인을 비롯한 남부 중국의 무역선들이 제주 해역을 거쳐 일본과 베트남 등지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는 등, 동아시아 해역은 합법적인 항해와 불법적인 항해가 혼재된 매우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선에서 구출된 중국인 포로는 노예무역을 목적으로 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일된 중앙권력이 출현하지 못했던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 시기의 일본의 국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숙종 10년(1684) 이후에는 황당선이 황해도 연안에 자주 출몰하여 조선 정부를 괴롭혔지만,²⁶⁾ 사무역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상륙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가 소금배 1척을 훔쳐 밤에 달아났다는 것을 들어 안 뒤 4일 만에 소금과 땔나무를 베는 일 때문에 王一·黨二·黨一·潘祿·孫七·孫郎·巖浪哥·蔣二·蔣七 등과 약속하고 10인이 한 배에 같이 타고 바다 가운데에 있는 桃花山 밑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사납게 불어 닳줄이 끊어졌으므로 표류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왜선을 만났다. 손칠·장이는 물에 뛰어들려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우리는 여러 날 굶주리다가 왜적에게 놓아 달라고 애걸하니 입은 옷을 죄다 빼앗고 섬에 방치하였는데, 마침 귀국(조선) 사람을 만나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선조실록』 33년(1600) 7월 9일 기사에도 제주 旌義 앞바다에 표류 중인 왜선을 격파하고 중국인 포로 6명을 구출했다는 내용이 있다.

25) 『燃藜室記述』 「荒唐船條」에는 『명종실록』 11년(1556), 14년(1559), 『선조실록』 37년(1604), 38년(1605)에 포획한 왜선에서 중국인을 구출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월일은 기록하지 않았다. 해당 연도에 왜선에서 중국인을 구출했다는 기록은 실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명종실록』 12년 4월 19일 기록에 “……근년 이래 중국에 가서 노략질하다가 태풍에 표류되어 오는 자를 변장들이 보는 대로 섬멸하였다. 그래서 포로를 보내기도 하고 사로잡힌 중국 사람을 쇠환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며, 언제 어떤 인물을 구조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26) 『숙종실록』 42년(1716, 청 康熙 55) 12월 14일 기사, “이때 海西의 바다에 황당선이

의미의 표류선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양국의 금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조선 국경을 넘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었으며, 조선 정부는 청국 禮部에 황당선의 출몰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²⁷⁾

1700년대 이후 한반도 연안에 표착했던 청국 선박은 대체로 가족단위의 어로활동이나 소규모 무역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착 인원도 5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는 10~20명 안팎의 소규모 선박이 기상이변으로 표착하는 경우이다.

3_ 표착 중국인의 출항지

표착 중국인의 출항지로는 지리적인 특성상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복건·절강·광둥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복건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둥성과 절강성이다. 복건성은 송·원대 이래 남부 중국의 무역 중

출몰하는 일이 없는 날이 거의 없고 혹 이삼십 척까지 되었는데, 守臣이 혹 한두 번 잡은 일이 있었으나 사정을 신문할 수 없고 혹 저 나라에 압송할 때에 폐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기꺼이 힘을 내어 잡으려 하지 않아서 거리낌 없이 앞바다에 출몰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많이 근심하였다.”

- 27) 『숙종실록』 29년(1703, 청 康熙 42년) 9월 21일 기사. “본국의 西邊 일대에 5, 6년 전부터 上國인이 漁採를 빙자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도처에 정박하고 마을을 침범하여 해가 사람과 가축에게 미치므로, 일찍이 咨稟하였더니 특별히 貴部에서 진념해 주심을 입어, ‘회초에 낚날이 조사하여 범인은 장형으로 벌하고, 지방관은 罰俸(減俸)하라는 等因을 당직자에게 알렸으니, 德意를 받들어 잘 알아서 시행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1년간은 조용하게 다시 왕래가 없어 해변 주민들이 편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禁限을 두지 않았는지,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와서 서로 번갈아 가며 출몰하는 것이 빈 달이 거의 없습니다. …… 생각컨대 조정 명령이 엄중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아닐 테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서 여전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릇을 조장하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다만 小邦의 연해의 백성들만 침해의 걱정을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야기될 염려는 실로 지난 해에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전말을 양찰하시고, 다시 엄중히 신칙하여 다시는 前習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면 지극히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였으며, 특히 漳州와 泉州는 당대 제일의 해외무역항이었다. 복건성의 漳州·泉州·安海 등을 출항한 무역선은 한반도의 제주 인근을 거쳐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는 선박이 많았는데, 잦은 해외출항은 잦은 표류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어서 이들 지역을 출항했다가 기상 상태의 악화로 표류를 당하면 한반도의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표착하는 일이 많았다.²⁸⁾

출항지와 표착지를 대비해 보면, 복건·절강·광둥 등 중국 남부에서 출항한 경우는 한반도 남단의 제주나 전라도 해안에 표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靈

〈표 1〉 출항지별 표류

출항지	표류 건수
복건성	28
산둥성	12
절강성	11
요동성	5
강소성	7
요령성	3
광둥성	3
안휘성	1
불명	67
합계	140

*이 글 말미에 수록한 부록에서 『실록』과 『燃藜室記述』 「荒唐船條」의 출항지별 표류건수만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출항지가 복수일 경우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합계가 140이 된다.

28) 『명종실록』 7년(1552, 명 嘉靖 31) 7월 3일 기사. “전에 복건성 상선이 일본을 왕래한 것은 꼭 여름과 가을 사이였는데, 표류해서 우리 경내에 정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종개수실록』 13년(1672, 청 康熙 11) 12월 5일 기사. “신이 들으니 제주도는 남쪽 바다 가운데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무릇 행상하는 중국 선박으로 해외 제국을 왕래하는 자들이 대부분 제주를 지나다가 해풍을 만나 해안에 정박한 채 며칠씩 발이 묶이는 경우가 흔한데, 그곳을 지키는 신하가 그 난처함을 염려하여 그때마다 돌아가도록 내보낸다고 합니다.”

〈표 2〉 표착지별 표착 건수 및 표착 인원

표착지	표착 건수	표착 인원
전라	31	2292 (110)
황해	30	801
제주	17	713 (185)
충청	18	626 (5)
경상	10	218
경기	5	37
평안	2	32
강원	1	?
미상	13	183
합계	130	4918 (300)

* 『실록』과 『燃藜室記述』의 「荒唐船條」만을 이용해서 작성한 도표이다.

* () 안은 의사 또는 왜구로 오인되어 피살된 자이다.

* 표착지가 전라도 제주로 기록된 경우는 제주로 집계하였다.

* 실록에 30~40여 명으로 기록된 경우는 평균하여 35명으로 집계하였다.

光·羅州·珍島·旌義·大靜 등지가 표착 다발지였다.

산동성에서 출항한 경우는 황해도·평안도 등 서해안 지역에 표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황해도 長淵·康翎·翁津·白翎鎭·大靑島 등지가 표착 다발 지역이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청조에 의한 중국 지배가 안정된 이후, 즉 乾隆·康熙 이후부터 산동성에서 출항한 선박이 한반도 서해안에 표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이른바 荒唐船), 순조 연간에는 지금까지 표류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던 경기도 연안까지 중국 선박이 자주 표착하고 있다.²⁹⁾

29) 『순조실록』 즉위년(1800, 청 嘉慶 5) 12월 4일 기사에는 산동성 登州府에서 출항한 선박이 강화 德積鎭에 표착하였고, 순조 1년(1801) 11월 7일 기사에는 遼寧省 銀州府를 출항한 선박이 강화 長峯鎭에 표착하였다.

4_ 중국 표류민의 구조 및 송환

조선에 표착한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표류민으로 판명되는 한, 조선 정부는 그들을 구호하여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송환과 관련하여 상대국(명·청 및 일본)과 체결한 약조나 조선 내부에서 정한 성문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³⁰⁾ 표착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전례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종 15년(1689, 강희 28) 2월 13일에 ‘우리 나라(조선)로 하여금 표류해 온 자를 만나거든, 배가 있으면 바다를 경유하여 놓아 보내고, 배가 없으면 鳳凰城에 領付하는 것으로 恒式을 삼게 하엿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순조 8년(1808)에 時任 戶曹判書 徐榮輔와 副提學 沈象奎가 함께 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撰進한 『萬機要覽』 「軍政編」 1에는 이국인이 표착했을 때의 구조 및 처리절차를 기록하고 있다.³¹⁾ 「군정편」은 군정에 관하여 편찬 당시의 상황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연혁까지도 서술했다는 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표류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송환 경로는, 표착 당시 선박이 파손된 경우에는 육로로 송환하는데, 표착지에서 한양으로 압송한 뒤에 평양을 거쳐서 遼東으로 보냈고, 요동에 도착한

30) 『광해군일기중초본』 2년(1610, 명 萬曆 38) 10월 29일 기사. 대개 평상시에 표류된 사람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奏文을 올려 該部로 압송하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

31) 한국고전번역원(www.db.itkc.or.kr) 국역 『萬機要覽』 「軍政編」 1, 「備邊司 漂到人條」. “이국인이 표착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뱃길이나 또는 육로를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로 송환시키는 방침으로 아뢰어 하되, 피복 및 뱃길을 통과하는 동안의 식량과 잡인을 금하고 호송하는 제반 절차를 엄중 시달할 것이며, 표착인이 만일 京畿를 통과하여 갈 경우에는 홍제원에 들어온 뒤에 낭청을 파견하여 다시 사정을 查問하고, 피복과 잡종 물품을 따로 내어 주도록 한다. 전라도에서는 표착인이 뱃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회송되는 공문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떠나보내고, 뒤에 경과를 보고하도록 정종 계해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표착한 중국인이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내지인이면 따로 咨官을 정하여 호송하고, 만일 외지인이면 의주부[灣府]의 통역관이 호송하고, 鳳城까지 가서 넘겨주고, 중국에 보내는 문서는 금군을 정하여 의주부로 내려 보낸다.”

후 遼東都司에게 인계하였다.³²⁾ 조선 사신은 표착자를 인솔해 갈 때 표착경위를 자세히 적은 咨文을 지참하고 가서 중국의 禮部에 제출하였다.³³⁾ 표류자를 인수한 중국측에서는 조선 사신이 귀국할 때 자국의 표류민 구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호자를 표창하는 칙서 및 銀과 綵緞, 紵絲 등의 예물을 보냈다.³⁴⁾ 선박이 파손되지 않았거나,³⁵⁾ 수리 후 자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선박을 수리해 주고 귀국시키기도 하였다.³⁶⁾

표착 중국인은 한양으로 압송된 뒤에 간단한 심문을 거쳤고, 千秋使나 冬至使·賀至使 등 그때 그때의 사정에 맞추어 중국으로 가는 사절 편에 딸려서 보냈다. 구조현장에서는 표착지의 주민들이나 관리가 의복·식량 등 기본적인 구호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양 압송 후에도 비교적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

중국인이 조선에 표착했을 때 조선 쪽 관민과 처음 대면하는 현장에서는 대체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상호 간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말이 잘 통

32) 『증중실록』 39년(1544, 명 嘉靖 23) 6월 25일 기사. “대저 중국 사람은 으레 요동에 移咨하여 들여보내지만, 南京 사람이라면 奏問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전례인데, 이 사람이 福建 사람이라면 복건은 남경 소관이니, 어쩔 수 없이 전례에 따라 주문해야 할 것이다.”

33) 「咨文」은 「此咨」 또는 「移文」이라고도 하며, 2품 이상의 衛門이 대등한 아문에 보내는 公文을 말한다. 遼東都司나 중국의 六部 등은 諸侯國과 대등한 관청이었다. 공문서 형식이 대개 첫머리에 ‘爲咨呈事’ 또는 ‘爲咨復事’로 시작되어 ‘此咨’라는 문자로 끝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중국의 北京·瀋陽의 6部に 조회·통보·교섭 등을 목적으로 왕래하던 외교문서를 咨文이라고 했으며, 용지는 造紙署에서 만들었다. 조선 국왕 명의를 咨文을 明(淸)의 禮部에 제출하는 것은 표류민 송환에 따른 행정문서를 교환한다는 의미도 있다.

34) 『선조수정실록』 17년(1584, 명 萬曆 12년) 12월 1일 기사. “福建 사람 阮喬柱 등이 표류하여 경상도 울산군 海港에 이르렀다. 冬至使 尹仁涵 편에 부쳐 奏聞하여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쇄환해 보낸 인원의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題請하여 상을 주도록 하였다.”

35) 『인조실록』 3년(1625, 명 天啓 5) 12월 17일 기사. “중국인 高孟 등 32명이 제주도에 표류해 오자 목사 成安義가 계문하였는데, 禮曹가 배를 수선하여 보내는 동시에 연해읍으로 하여금 특별히 호송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36) 『숙종실록』 37년(1711, 청 康熙 50) 11월 1일 기사. “청나라 상인 40여 명이 황해도 백령도에 표착했는데, 배를 수리해 주고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도록 명했다.”

하지 않아 도둑인지 중국 표류민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워 漢學通事 파견을 요청한 경우도 있고,³⁷⁾ 중국 사람이 글로 답했지만 중앙에서조차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³⁸⁾ 더러는 우리말을 조금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³⁹⁾ 대개는 한자를 아는 지방관리가 筆談으로 의사를 소통하였다.⁴⁰⁾ 중국 표류민과 의사소통에 특히 곤란을 겪었던 지역은 황해도와 충청도 등 표착 다발 지역에 표착한 경우이며, 唐通事(한학 역관)와 倭通事(왜학 역관)가 파견되어 있던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은 그나마 通事들이 해당국의 언어와 필담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에 파견되었던 鄉通事들은 어학 실력이 빈약하여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 표착 중국인이 한양으로 압송된 후 京通事들과 문답을 거친 뒤에야 출항지 및 표류 경위 등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다.

중국 표착인들이 모두 이와 같은 구조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과 일본의 정치 정세에 따라 표류 현장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으며, 대륙의 정세가 급변하던 명청 교체기의 표류민은 본국[淸]으로 송환된 뒤에 전부 살해당하는 일도 더러 있었다.

조선에서는 중종 5년(1510)에 釜山浦·乃而浦·鹽浦 등 三浦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조선 조정의 통제에 불만을 품고 쓰시마의 지원을 받아 난을 일으켰다(三浦倭亂). 이 난을 계기로 三浦를 폐지하였으나, 왜인의 간청으로

37) 『중종실록』 35년(1540, 명 嘉靖 19) 1월 19일 기사.

38) 『중종실록』 39년(1544, 명 嘉靖 23) 7월 26일 기사. “泰安에 표류하여 온 중국 사람과 문답한 문서를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중국 사람과 문답한 문서는 禮曹에 말하여 버리지 말고 뒤에 상고하는 데에 자료로 쓰고, 또 자세히 보도록 하라. 이제 이 글을 보면, 頭人의 이름을 나열하여 쓰고 또 客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리키는 뜻을 참으로 알기 어렵다.’ …… 예조가 回啓하기를, ‘중국 사람이 답한 사연 중에서 하문하신 곳은 신들도 알아보지 못하나, 들어온 중국 사람 가운데에 글을 잘 하는 자가 있으면 물어서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9) 『중종실록』 39년(1544, 명 嘉靖 23) 9월 11일 기사.

40) 『세조실록』 5년(1459, 명 天順 3) 1월 4일 기사. “충청도 결성현에 표착했던 登州衛右所 군인 張勝 등이 구조 후 연명으로 작성한 장계에 따르면, (표착 후) 어느 곳인지 지명을 알지 못하였는데, 뒤에 小船 1척이 와서 그곳에 이르러 문기에 글로써 이야기하여 지금 이곳이 조선 지방인줄 알았다고 하였다.”

1512년에 壬申條約을 체결하고 왜인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였다. 그러나 왜인의 행패가 여전히 계속되던 중, 1544년 왜선 20여 척이 경남 통영 遠梁面 鎮里의 蛇梁津에 침입하여 사람과 말을 약탈해 갔다(蛇梁鎮倭變). 조정에서는 거듭되는 왜인의 조약위반으로 고민하다가 사랑진왜변을 계기로 임신조약마저 폐기하고 왜인의 조선 왕래를 엄금하였다. 명종 즉위년(1545) 7월 19일, 전라도 興陽縣 부근에 정박 중이던 황당선 3척을 왜인으로 오인하고 홍양현감이 인근의 鎭軍을 동원하여 108명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파선한 중국인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함부로 살육한 죄를 물어 홍양현감 등을 처벌하고, 7월 28일에 임금의 직접 피살당한 중국인을 제사지냈다.⁴¹⁾ 명종 즉위년 8월에는 전라도 鹿島 인근에 정박 중이던 중국 배를 왜인으로 오인하여 만호 張明遇와 전 현감 柳忠貞이 합세해서 148명을 참하고 282명을 포로로 잡은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중국인이 400여 명에 이르는 대형사고였다. 삼포왜란과 사랑진왜변 이후 조선 정부는 남쪽 국경에서 왜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중국 표류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당했던 것이다.

현종 8년(1667, 康熙 6) 6월에는 제주에 표착한 당선 1척에 명나라 상인 95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명나라 유민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 이었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일본으로 보내지는 주장도 있었다. 거듭된 논의 끝에 조선 조정은 결국 청의 후환이 두려워 이들을 북경으로 압송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귀국 후 전부 죽음을 당한 것은 물론이다. 명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었지만, 표류해 온 명나라 유민을 동정하는 분위기는 숙종 즉위 초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청은 삼번의 난을 진압한 후(1681, 숙종 7, 康熙 20년) 해상무역에 진출하

41) 『명종실록』 즉위년(1545, 명 嘉靖 24) 7월 28일 기사.

42) 『숙종실록』 3년(1677, 청 康熙 16) 3월 22일 기사. 영의정 許積, 병조판서 金錫胄가 표류해 온 중국 사람 文可尙·鄭善甲 등이 중국말을 잘하는 것을 들어 軍職을 부여하여 급료를 주고 집을 사주고 보살피며 역관들로 하여금 나아가 배우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김석주가 또 두 사람에게 의복감을 주기를 청하며 아뢰기를, ‘중국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明朝 사람임을 귀중하게 여겨서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는 각 성의 중국 인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해외의 각 조공국에 중국인 표류자를 보호하고 송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上諭를 내렸다(1684, 康熙 23년). 이후부터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안정된 표류민 송환체제가 작동하였다.⁴³⁾

III. 일본인의 표착과 구조

1_ 일본 표류민의 표착

일본은 14세기 이후부터 조선과 통교 기회를 새로이 마련하거나 기존의 통교 관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들을 송환해 왔다.⁴⁴⁾ 실록에 보이는 표류민 송환의 첫 사례는 세종 18년 쓰시마인 大郎左衛門이 일본 본토로 장사차 나섰다가 울산에 표착한 경우이다.⁴⁵⁾ 이후 1559년(명종 14)까지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에 관한 기록은 모두 9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송환된 사례는 4회이다.⁴⁶⁾ 선초의 일본 표착인은 대체로 어로에 나섰다가 표류한 경우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무역선이 풍랑으로 전라도 인근에 표착한 경우이다. 이들 표류인은 표착지의 지방관이 사정을 조사한 뒤에 왜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모두 쓰시마를 경유하여 송환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관련이 있는 표착자는 후한 접대와 함께 지체없이 송환하고 있다.⁴⁷⁾ 이 시기에 일

43) 春名徹, 1994, 앞의 글.

44)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國學資料院, 27~52쪽 (「조선 전기 조·일간 표류민 송환과 교린」) 참조.

45) 『세종실록』 18년(1436, 명 正統 1) 윤 6월 15일 기사.

46)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앞의 책, 244쪽 참조.

47) 『태종실록』 6년(1406, 명 永樂 4) 6월 13일 기사. 중국 배가 충청도에 표류해 온 사건과 관련, 잘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본인 표착인의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는 왜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1419년의 己亥東征 이후 왜구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에는 표류인이 文引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당시 조선에서 최일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제도 안쪽으로 넘어온 경우에도 왜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표류인으로 취급하였다.⁴⁸⁾ 이후 일본 표류민에 대한 조선의 태도는 조선 근해에서 난파당하거나 익사한 일본인을 장사지내 주고, 생존자는 구제하여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⁴⁹⁾ 따라서 이 시기는 왜적과 표류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표류민을 송환하기 시작한 때이며, 표류민 송환을 포함하는 대일 통교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일본인들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 표류하는 경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통교·무역 등 공적인 업무를 띠고 왜관⁵⁰⁾으로 들어오다가 기상악화로 표류하여 개항장 이외의 포구에 불시착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상선이나 어선 등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본 각지에서 출항했다가 역시 일기불순·선박 고장 등으로 한반도의 여러 포구에 불시착하는 것이다. 표류 끝에 조선에 표착한

48) 『세종실록』 18년(1436, 명 正統 1) 5월 24일 기사에서 왜인 太郎左衛門 등 15인이 蔚山 波連巖에 표착한 사건에서 文引도 없고, 또한 병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보고를 듣고 세종은 “별로 변방을 침범하려는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 즉시 돌려보내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2년(1440, 명 正統 5) 12월 23일 기사에서는 쓰시마 왜인 表溫古老 등 6인이 풍랑을 만나 전라도 長興 지방에 표착했는데, “文引도 가지지 않고 함부로 경계를 넘어 境內의 바다로 들어왔으니, 이치로는 죄를 다스림이 마땅하겠지만 이제 불문에 부치고 양식을 주어 다시 돌려보내게 하였으니 그리 알라”라고 하였다.

49) 『세종실록』 25년(1443, 명 正統 8) 2월 11일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한 바, 파선되어 빠져 죽은 장사꾼 왜인 두 사람은 각 포구의 萬戶로 하여금 거두어 장사지내고 제사지내 주게 하며, 생존한 다섯 사람은 의복과 양식을 주어 따듯이 구제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50) 왜관을 처음 설치한 것은 태종 7년(1407)에 釜山浦와 薺浦에 둔 浦所倭館이다. 이어서 세종 8년(1426)에는 3포(釜山浦·鹽浦·薺浦)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중종 5년(1510)의 삼포왜란 이후에는 제포만 남기고 나머지 두 곳의 왜관을 폐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손승철, 2006,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동아아시아, 제3장 「경상도의 저팬타운 三浦」 참고.

일본 표류민을 조선에서는 「漂倭」라고 불렀으며, 표왜가 쓰시마인이면 「馬島漂倭」, 쓰시마 이외 지역의 일본인은 「他道漂倭」라고 불렀다.⁵¹⁾

漂倭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조선 전기든 후기든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파손·고장 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조선 정부는 漂倭에게 일단 구호조치를 취한 후 본국으로 송환했는데,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우 및 송환절차에 있어서 정식 사절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다. 또한 조선과의 외교에서 쓰시마번이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馬島漂倭와 他道漂倭에 대한 취급이 약간은 달랐다.

己酉條約 이후 1868년까지 조선 연해의 각 포구에 표착했다가 송환된 일본인 표착자는 104건 정도이며, 전체 인원은 1,049명이 넘는다고 한다.⁵²⁾ 지역별로는 馬島漂倭가 39건(311명), 他道漂倭가 75건(738명)인데, 전체적으로는 他道漂倭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지역으로 보자면 쓰시마인의 표착이 가장 많았다.⁵³⁾ 馬島漂倭의 표착지는 대개 경상도 지역이었고, 표착 다발 지역은 부산포 인근의 多大浦, 加德, 통영 부근의 知世浦와 玉浦(거제도)였다. 그래서 통영에는 왜선의 間情 때문에 인조 26년(1648) 이후 倭通事가 파견되었다. 왜관 이외의 다른 포구에 불시착하는 경우를 쓰시마번에서는 ‘脇乘(わきのり)’이라고 불렀는데, 경상좌도에 표착하는 것을 ‘上乘(かみのり)’, 경상우도에 표착하는 것을 ‘下乘(しものり)’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들을 모두 ‘漂流, 漂迫, 漂到’라고 하여 漂倭로 취급하였다.

51) 김건서 지음, 하우봉·홍성덕 옮김, 1998, 국역『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제2권 91쪽.

52) 李蕙, 2000, 앞의 책, 90쪽 이하에서 재인용.

53) 한반도에 표착한 일본인 표류민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한 연구가 나와 있으며, 시기별·지역별 표착자와 관련된 각종 도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연구성과를 참고하고 구체적인 도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다. 표류민에 관한 각종 도표로는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244쪽 「일본인의 조선표착과 송환」과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제4장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표착과 송환」, 196~201쪽의 도표를 주로 참고하였다.

2. 일본 표류민의 구조

일반적으로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은 倭館⁵⁴⁾으로 인도된 후 쓰시마번으로 보냈으며, 막부의 지시를 기다려서 나가사키로 보냈다.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표류민의 본거주지가 藩領이면 그 번의 役人에게, 幕領이면 代官 밑의 役人(代官手代)에게 인도하여 거주지로 돌려보냈다.⁵⁵⁾ 그리고 표류민이 쓰시마 주민인 경우에는 사자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사자를 파견하였다. 쓰시마번에서는 이들 사자를 ‘表差使’라고 했고, 조선에서는 ‘漂人領來差倭’라고 하여 正官·都船主·封進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사자가 조선에 도착하면 書契 전달이 주목적인 茶禮를 행하고, 이후 조선 국왕에 대한 肅拜를 목적으로 하는 封進宴을 열었다.

조선 정부의 표류민 구조와 송환은 전례에 입각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절차는 아니었으며, 국내의 정치문제와 국방문제를 고려한 고도의 외교 행위였다. 때로는 표류민을 통하여 상대국의 정세를 탐지하기도 하였고,⁵⁶⁾ 육로에 따른 송환과정에서 국내의 정세를 표류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⁵⁷⁾ 그러나 표류사건을 처리할 때 조선 정부가 외교상의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표류민을 송환했던 것은 아니다. 조난당한 이국의 표류민에게도 대체로

54) 李薰, 2000, 앞의 책, 102쪽 이하. 조선 후기 일본 표류선의 경우 쓰시마 표류선은 왜관으로, 그 밖의 표류선은 牛巖浦로 예인된 후 송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 책임은 동래부사에게 있었다고 한다.

55) 荒野泰典, 1983, 앞의 글; 荒野泰典, 1988, 앞의 책.

56) 『인조실록』 25년(1647, 청 順治 4) 7월 18일 기사에서는 통제사 金應海가 표류해 온 福建의 상인 徐勝으로부터 청에 관한 소식을 탐문하고 있으며, 南京과 北京이 청에 함락되면서부터 중원의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이때 徐勝 등을 통하여 비로소 듣게 되었다.

『효종실록』 3년(1652, 청 順治 9) 3월 30일 기사에서는 제주 旌義縣에 표류한 중국 상인 苗珍寶로부터 大明의 준부와 중국의 형세를 탐문하고 있다.

57) 『단종실록』 2년(1454, 명 景泰 5) 9월 3일 기사에서 “왜선이 境內에 이르면 그 진위를 살펴서 접대하고, 그들을 내지에 끌어들어서 우리의 허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후한 접대를 베풀었으며,⁵⁸⁾ 표류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재화에 대하여는 먼 곳의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로 戶曹에서 표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物貨의 값을 쳐 주어 商利를 잃지 않게 하기도 하였다.⁵⁹⁾ 따라서 표류민 구조에 있어서도 仁政을 베푸다는 조선 정부의 유교적인 통치철학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510년의 三浦倭亂은 일본 표착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변화를 가져왔고, 일시적으로 대일관계가 봉쇄된 탓에 조선 근해에 표착한 일본인은 조난자가 아니라 왜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포왜란 후 1522년의 왜인 표착사건에서는 조선 정부가 표착자 中林 및 望古多羅가 중국배 및 관원 2명을 탈취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명에 신병을 인계하였다.⁶⁰⁾ 삼포왜란 이후에도 蛇梁進倭變(명종 9, 1544)과 乙卯倭變(명종 10, 1555) 등 연이은 왜란으로 말미암아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의 송환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을묘왜변 이후의 대일정책은 국왕[明宗] 및 비변사의 강경노선과 이에 대한 사헌부·사간원의 견제로 정국이 운영되던 시기였다. 사랑진왜변 이후 왜인의 표착사건에 대하여 비변사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의 견제로 비변사가 표류민 송환을 포함한 대일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처리하던 단계는 아니었다. 즉, 事大와 交隣이라는 건국 이래의 이념이 지

58) 『선조실록』 37년(1604, 명 萬曆 32) 7월 14일 기사. “표류해 온 중국인에 대해 전부 터 闕庭에서 음식을 먹이고 服飾을 만들어 지급한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으니, 해 조는 즉시 규례에 비추어 여쭙어 시행해야 할 것인데 방치한 채 태만히 살피지 않고 있으니, 매우 불편하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39년(1606, 명 萬曆 34) 11월 14일 기사. “一路로 올려 보낼 때 추위와 굶주림에 상하게 된다면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니, 각 고을로 하여금 각별히 호송하게 하소서”

59) 『숙종실록』 30년(1704, 청 康熙 43) 10월 16일 기사.

60) 『중종실록』 18년(1523, 명 嘉靖 2) 8월 29일 기사.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앞의 책, 37쪽에서 李薰은 삼포왜란 이후 변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었던 비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켜지는 선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일본 표류민을 중국인과 분리하여 송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⁶¹⁾

명종 10년 이후의 일본 표류민 송환은 사간원의 견제 속에서 송환과 참획이 반복되는 불안한 상태를 거듭하고 있었으나, 비변사가 점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결국은 강경노선으로 기울게 되었다. 명종 12년(1557)에 비변사는 “① 왜선이 접대하는 곳이 아닌 데에 와서 정박한 경우에도 일체 賊倭로 논한 것은 선왕조 때부터 공고한 일이며, ② 최근 5~6년 전부터 중국에서 노략질을 일삼는 일본 여러 섬의 적왜는 商倭가 아니며, ③ 을묘년에 우리나라를 침구하여 장수도 죽이고 성을 함락시킨 적도 있다, ④ 이들이 비록 표류했다 해도 해변의 외딴 촌락을 殺掠할 우려가 있다면서 商倭인지 賊倭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표류 왜인에 대한 접대(송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좌의정은 화물을 적재한 왜선이 표류하면 변방의 장수들이 이익을 탐하여 모두 섬멸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변사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명종은 “표류한 왜인에 대한 일은 비변사의 의논이 마땅하다”고 전교를 내리고 말았다.⁶²⁾ 이후 명종 14년(1559) 6월에 전라·경상·황해도에 승선인원이 200여 명에 이르는 왜선이 나타났는데, 조선 조정은 비변사의 건의로 모두 참획할 것을 지시하였다.⁶³⁾ 요컨대 을묘왜변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 정부는 사헌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표류 왜선이 언제 賊倭로 변할지 모른다는 비변사의 강경노선에 따라 대일 강경노선으로 기울게 되었으며, 표류민 송환을 통한 교린의 의미는 퇴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방대한 조선 被虜人을 발생시켰다. 전쟁이 종결된 후부터 1630년대까지의 한일관계는 이와 같은 조선 被虜人의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표류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被虜人 송환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⁶⁴⁾

61) 李薰, 2000, 앞의 책, 42쪽 참조.

62) 『명종실록』 12년(1557, 명 嘉靖 36) 4월 21일 기사.

63) 『명종실록』 14년(1559, 명 嘉靖 38) 6월 6일 기사.

64) 荒野泰典, 1988, 앞의 책, 127쪽.

국교 재개 이후 통교체제를 규정한 1609년의 己酉約條에서는 표류민 송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13항목 중 표민 송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쓰시마주의) 文引을 소지하지 않은 일본인은 ‘賊(왜구)’으로 간주한다(無文引者 以賊論斷事)는 조항뿐이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표류민은 중세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기유약조에 표류민 송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 표류민을 賊倭로 간주하지 않고 송환하고 있었다.

조일 간에 안정적인 표류민 송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관하여, 조선 측 사료에 근거한 아리노 야스노리의 연구에 따르면 기유조약의 방침이 변경된 인조 5년(1627)부터이며,⁶⁵⁾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청나라가 표류한 일본인을 칙사 편에 보냈을 때도 이들을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후하게 접대한 후 송환하였다고 한다.⁶⁶⁾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1627년 무렵의 조일관계는 쓰시마번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막부는 ‘통치권에 의한 대외관계’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⁶⁷⁾ 쓰시마

65) 荒野泰典, 1988, 앞의 책, 128쪽 이하에서는 이 해에 後金の 조선 침략이라는 대외 정세의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 정부가 南邊(일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일 관계의 정상화·안정화를 서두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이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였다.

66) 『인조실록』 24년(1646, 청 順治 3) 1월 1일 기사.

“청나라가 표류해 온 왜인을 내보냈다. 비국이 倭譯 李亨男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문도록 하였는데, 왜인이 답하기를, ‘저희들은 다 越前州 사람으로, 표류하다가 어떤 곳에 당도하였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자들이 火箭으로 우리 선박을 쏘아 불태우고는 우리를 모두 붙잡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 모두가 산짐승 고기였고 곡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北京에 도착하자 의복과 양식을 주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하니 거기서 보다 더욱 더 후대해 주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67) 표류민 송환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권력의 존재’와 ‘통치권에 의한 대외관계의 장악’이 필요하다는 아리노 야스노리[荒野泰典]의 견해에 의할 때, 1627년 무렵의 쓰시마번의 대조선 외교는 막부의 통치권이 지배하는 영역을 넘어 서고 있었으므로, 조선과 쓰시마번 내지 막부는 정상적인 외교관계(표류민 송환체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은 막부의 家役으로서 대조선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 무렵의 쓰시마 변은 막부의 가역이 아닌 자기 변의 이익을 위하여 國書改作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막부가 대마변의 대조선 외교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국서개작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以酤庵 輪番制가 도입된 1636년 이후의 일이며, 이때부터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을 안정적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이며, 막부가 조선 표류민을 안정적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조일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표류민 송환)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선 정부는 조선 나름대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627년에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조선에 표착했을 때 조선 정부는 그들을 왜관측에 인도하려 했으나 쓰시마변에서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 ‘국제관계(외교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했던 이유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표류민 송환체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도 ‘표류민 송환체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⁶⁸⁾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 표류민 송환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1643년 이후부터이다.⁶⁹⁾

1653년 7월 24일에는 같은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 36명이 제주도에 표착한 사건이 있었다. 하멜 일행 중 8명은 1666년 8월에 조선을 탈출하여 나가사키에 도착했으며, 그때까지 조선 정부는 막부 쪽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하멜 일행이 조선에 체류하고 있던 13년 동안 조선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멜 관련 정보를 통제했던 것인지, 무관심 속에 있었던 것인지 사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하멜이 표착하기 이전인 인조 22년(1644)에 도쿠가와 막부는 그리스도교로 의심되는 선박이 조선 연해에 표류해 오면 왜관에 알리고 일

68) 신동규, 2002,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國際關係史』, 경인문화사, 129~131쪽.

69) 신동규,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松谷元永煥교수정년기념논총 『江原史學』 17·18 합집, 312~313쪽 및 363쪽 참조.

본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⁷⁰⁾ 조선 정부는 이와 같은 耶蘇敎禁制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실제로 1644년 珍島에 표착한 廣東船을 일본 측에 인도하여 5명의 크리스트교인을 적발하는 데 공조하기도 하였다.⁷¹⁾ 일본을 교린국으로 상대해 온 점을 감안하면 하멜 일행을 일본으로 송환하는 것이 교린에 합당한 외교였다. 그러나 막부의 耶蘇宗門 금제요청은 조선 정부를 구속하는 조약도 아니었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조선 정부의 입장은 다른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외교관행에서 볼 때 하멜 일행은 명나라 예부로 송환하는 것이 관례였다.⁷²⁾ 하지만 당시에 조선이 事大의 대상으로 여겨 왔던 명은 인조 22년(1644)에 李自成의 반란으로 이미 멸망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침입으로 조선에 국가적인 치욕을 안겨 주었던 淸을 事大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은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들던 시기였다. 일본 역시 以酤庵 輪番制에 의하여 막부가 쓰시마번의 대조선 외교를 직접 감독하기 시작한 형편이었으므로 앞으로의 쓰시마번의 외교 역량 역시 미지수였다. 요컨대 조선 정부는 하멜 일행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결국 조선 정부는 쓰시마번이든 도쿠가와 막부든 아직은 교린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벨테브레처럼 군사지식을 활용하겠다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하멜 일행을 한양으로 불러들인 상태에서, 새롭게 증원을 지배하기 시작한 청의 정세를 관망하던 때에 하멜 일행이 일본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조선이 표착 이국인을 다시 북경으로 송환하기 시작한 것은 南明 정권이 청에 완전히 복속되는 숙종 9년(1683) 이후의 일이다. 臺灣에 근거를 두고 저

70) 耶蘇宗門 금제요청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신동규, 2007, 앞의 책, 221~243쪽 참조.

71) 『인조실록』 23년(1645, 청 順治 2) 5월 21일 기사 참조.

72) 『선조수정실록』 15년(1582, 명 萬曆 10) 1월 1일 기사에는 서양 사람 馬里伊 등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는데, 進賀使 鄭琢 편에 順付하고 중국 조정에 주문했다고 한다.

항하던 鄭成功 일파가 청에 항복한 이후에 불안하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비로소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각국은 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책봉 질서 아래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갔다. 그러므로 조일 간의 표류민 송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 및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시점도 1683년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변의 난 이후 조선의 대중국 외교가 안정되는 것은 표류민 송환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명청 교체기를 전후한 시기의 명나라 표류민에 대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명에 대한 명분론에 입각하여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신흥 강대국 청의 질책이 두려워 송환하는 것이 국체보존에 이롭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었다.⁷³⁾ 결국 약소국의 외교적인 행동에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서 명나라 유민을 청으로 송환하게 되었다.⁷⁴⁾

1876년 조선의 개항 이전까지 표류민의 구조·송환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 선박 수리비용까지 표착지 주민이나 조선 정부가 표류민들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⁷⁵⁾

IV. 맺음말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 시스템은 청대 乾隆 연간에 확립되지만, 그 이전부터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중국의 冊封體制를 근간으로 상호 간에 표류민을

73) 『효종실록』 3년(1652, 청 順治 9) 3월 30일 기사, 『현종실록』 8년(1667, 청 康熙 6) 6월 21일 기사 등에서는 청의 질책이 두려워 명나라 유민을 송환하고 있다.

74) 『숙종실록』 7년(1681, 청 康熙 20) 8월 7일 기사 이후부터는 ‘淸人’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심정적으로도 청을 인정하는 듯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75) 정성일, 2003, 「전라도 주민의 일본열도 표류기록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제72호.

송환하는 관행이 있었다.

조선과 중국은 冊封體制에 입각한 전통적인 외교관계에 바탕을 두고 표류민을 송환하였다. 明代의 海禁政策, 명청 교체기 등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할 때마다 다수의 중국인들이 조선 연해로 표착해 왔으며, 아울러서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는 중국 표류민의 송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은 조선 정부의 각별한 구호를 받으면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송환 경로는 표착지-한양-의주-요동이었으며, 특별히 선발된 사신이 표류민을 인솔하고 요동으로 가서 책임자[都司]에게 인계하였다. 인계할 때는 표착정위를 적은 咨文을 함께 제출하였고, 표류민을 인수받은 중국 측에서는 조선 사신을 통해서 구호자를 표창하는 황제의 칙서와 답례품을 보내고 표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즉, 조선과 중국의 표류민 송환절차는 咨文과 勅書로 이어지는 책봉외교의 전형이었다.

朝日 간의 표류민 송환체제는 조선 건국 이후 임진왜란까지는 왜구문제, 삼포 거주 왜인들의 항거 등으로 불안정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중앙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차츰 안정적인 표류민 송환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말 중국 대륙의 정치정세가 안정되면서부터 비로소 조일 간의 표류민 송환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은 조선측의 부담으로 표류지에서 부산의 왜관으로 인계하였으며, 왜관에서 쓰시마를 거쳐 나가사키로 호송된 후 조사를 받고 귀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대일 외교보다 대중국 외교에 비중을 두었던 조선의 전통적인 사대·교린 외교로 볼 때 대일 외교는 대중국 외교에 비하여 종속적 내지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조선 정부는 막부정권이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하는지 여부보다는 명청 교체기 이후의 대륙 정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륙과의 정세가 안정된 17세기 후반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대일 외교도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삼번의 난이 진압된 이후 불안하던 동아시아 해역은 비로소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각국은 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책봉질서체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조일 간의 표류민 송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 및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시점도 1683년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록〉 중국인의 조선 표착 기록

(實錄); 『朝鮮王朝實錄』

(謄錄); 『備邊司謄錄』

(燃); 『燃藜室記述』 별집 17권 「邊圉典故」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1	태종 6년 1406. 6. 13		충청도 浙江路 漕 庇仁縣 運船 百戶 남쪽 屈得 등 20 徒菴堂 여 명		풍파에 표류했다고 글로 써서 알림	비인현 監務가 군 마를 배치하자 의 심하고 돌아감		(實錄)
2	태종 6년 1406. 7. 6	江蘇 蘇州府	충청도 蘇州衛 右 尊城 所百戶施 得, 摠旗 林 七郎 등 84 명		北京으로 양곡운반 도중 악풍으로 표 류	의복·갓·신 등 하사 西廂에서 음식 제 공	사역원부사 崔 雲이 요동으로 호송	(實錄)
3	태종 6년 1406. 8. 17	浙江府	전라도 紹興衛 三 兆陽縣 江千戶所 摠旗 吳進 등 25명		北京으로 양곡운반 도중 왜구를 만나 관군 35명이 죽고 오진 등 25명이 떼 목을 타고 표류	鎭官이 의복과 양 식 지급	사역원직장 金 有珍이 요동으 로 압송	(實錄)
4	태종 9년 1409. 3. 10			唐船 4척		사람을 보내 위로 함		(實錄)
5			전라도 鎭南衛後所 玉溝 百戶 柳貴 외 3명, 旗 軍117명		길을 잃어서 상륙 함			
6			충청도 指揮 孫貴· 尊城鎭 千戶·張義 등 3명, 배 2척		황제의 명으로 差 根摠兵官 平江伯 등이 山東·遼東· 劉島 등지에서 순 행하며 왜적 추쇄 중 綠水洋에서 폭 풍을 만나 돛과 키 를 잃고 표류	배를 수리할 물건 을 후하게 줌	3척 스스로 귀 국	
7		浙江	항해도 寧波衛後所 豐州 百戶徐鎭, (海州) 旗軍 55명		北京으로 양곡운반 도중 綠水大洋에서 폭풍을 만남	도관찰사가 양식 과 鋪馬·脚力을 줌	사역원부사 崔 雲이 평양경유, 요동으로 호송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8	세종 31년 1449. 5. 6		전라도 靈光郡 古道島	중국배 1척		이조참의 金佺之를 보내 그 체제를 보고, 그 양식에 의하여 배를 짓게 함		(實錄)
9	세조 5년 1459. 1. 4	山東	평안도 鐵山島	登州衛 總旗 鎮慶 등 24명	황제의 명으로 遼東관군에게 賞賜하는 衣糧·布貨, 花絨, 鈔를 싣고 요동으로 가다 강풍으로 표류	적재화물을 건인·운반해서 건네주기로 함(14의정부 논의), 옷·耳掩·靴帽兒·雲鞋를 각각 하나씩 하사(1, 10)	通事 副知司譯院事 金許義가 鎮慶 등 45명을 管押하여 遼東에 가서 풀어줌(1, 16)	(實錄)
10	중종 18년 1523. 7. 25	浙江 寧波府 定海縣	황해도	丘三 등	寧波府를 습격한 倭奴와 함께 도주 중 표류	推問 후 사역원에 묵게 함		(實錄)
11	중종 18년 1523. 8. 3	浙江 寧波府	전라도	王一·黨二·黨一·潘祿·孫七·孫郎·巖浪哥·蔣二·蔣七·王樣 등 10명(손칠·장이는 피살)	賊倭 수색 중 소금 용 뿔감을 구하러 바다 가운데 桃花山에 이르렀다가 왜인에게 포로가 되어 섬에 방치된 후 구조됨	충청도 표류민에게 관찰사가 옷·갓·신 지급. 전라도 표류민에게는 관찰사가 배 옷 하나만 주고, 通事가 짚신을 구해 줌	형조참판 成世昌이 京師로 갈 때 왕양 등 8명과 왜인포로 2명, 노획품 등을 함께 보냄(8, 29)	(實錄)
12	중종 27년 1532. 2. 30	遼東	충청도 唐津浦	姜福 등 5명(白江, 張萬, 城各, 劉文學, 李天材 등 5명 익사)	정월 15일 10명이 廣鹿島에서 배에 솟을 싣고 老鶴鶯라는 곳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 표류. 충청도 수사가 장계	구조현장에서 벌목공들이 더운 물과 삶은 콩 반 되를 줌. 벌목공들을 따라 육지로 나온 후 당진포 萬戶 4인이 인솔해 감	禮部에 移咨하는 일을 提調에게 의논토록 함	(實錄)
13	중종 30년 1532. 6. 8	遼東	황해도	賢月	海浪島에 표류	通事와 이극부 郎官에게 推問 후 요동과 예부에 咨文 보내는 일을 논의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14	증중 35년 1540, 1, 19		황해도 豐川府 沈方浦	중국인 4명	荒唐船 1척이 강풍으로 침방포 강가에 표류	의복과 식료를 지급하라고 전교함	謝恩使 편에 송환하도록 지시	(實錄)
15	증중 39년 1544, 6, 25	福建 泉州郡 (7, 22)	충청도 藍浦 獨山島	李王乞 등 150여 명 (7, 19)	무단 犯越	이왕걸을 제외한 38명을 千秋使 편에 팔려 보냄	都司에게 咨文을 보내고 湯站堡로 압송, 禮部에 통지함	(實錄)
16	증중 39년 1544, 7, 12		평안도 宣川 大和島 於應浦	唐船 2척	어응포 伏兵에게 체포		동지사 편에 송환도록 지시	(實錄)
17	증중 39년 1544, 7, 26		충청도 泰安	頭人 10명 客工 60명 (이름생략), 水夫 10명		태안군수가 글로 문답함		(實錄)
18	증중 39년 1544, 9, 11	遼東 웃고리 도(吾叱 古里島)	황해도 은륜 席島	최을고(崔 吾乙古) 등 15명	鹿島에 거주하는 船主 池月 등과 조업차 9월 초이튿날 출항, 초사흘날 북풍으로 선박 파손, 다수 익사, 15명이 널조각·돛자리를 묶어 타고 표류		冬至使(鄭士龍·宋麟壽)에게 팔려 보내기로 함	(實錄)
19	증중 39년 1544, 9, 18		황해도 은륜	狄成			義州까지 호송 후 解送咨文을 가져가는 通事에게 인도함	(實錄)
20	인종 1년 1545	福建	전라도	顔容 등 군 사 613명	무단범일		都司에게 咨文 발송, 湯站堡로 압송	(然)
21	명종 즉위년 1545, 7, 26		전라도 興陽	荒唐船 3척	7월 19일 홍양현 부근에 태풍으로 漂流 중인 荒唐船 3척을 왜인으로 오인, 현감이 인근 鎭軍을 동원하여 108명 살해	형액을 당한 중국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함(7, 28)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22	명종 즉위년 1545. 8. 2		전라도 鹿島	唐船, 총 400여 명	녹도 바깥에 정박 중인 唐船을 왜인 으로 오인, 만호 張 明遇, 전현감 柳忠 貞, 權官 등이 148 명 살해, 282명 생 포	장명우와 유충정 을 推考하도록 지 시함 杖1백, 徒3년에 처 함(8, 26)		(實錄)
23	명종 즉위년 1545. 8. 4		제주 大靜縣	荒唐船 1척, 326명	무역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 강풍으로 7월 18일 파선	인원이 많아 海送 이 어려우니 제주 에 명하여 스스로 귀환하도록 유도 하라고 禮曹가 건 의함		(實錄)
24	명종 즉위년 1545. 8. 10		전라도 馬島	唐船 1척	무역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 강풍으로 표착, 상륙허가와 무역을 요구함	禁法을 어기고 일 본과 사사로이 무 역하는 자들로서 上國의 죄인이며, 통상의 표류민처 럼 대우할 수 없 다는 諫院의 건의로 상륙을 불허함		(實錄)
25	명종 즉위년 1545. 9. 24		황해도 長連縣	荒唐船		계속적인 접대로 인한 뒷페단을 염 려하여 식량 약간 을 주고 송환함		(實錄)
26	명종 즉위년 1545. 11. 3		제주			표착 중국인에게 瀝靑과 銃筒 제작 법을 通事에게 전 습시키도록 함	중국인을 세 편 으로 나누어 송 환, 傳習을 위 해 늦게 송환시 킴	(實錄)
27	명종 1년 1546. 7. 17		경상도 酒島		중국배인지 일본배 인지 분간할 수 없 는 배가 酒島에 와 서 정박하여 통사 를 보내 확인 후 중 국배로 판명함	중국 商船의 정박 을 허용하고 요구 를 계속 들어주면 뒷페단을 감당하 기 어려우므로 단 호히 거절하기로 함	식량과 식수를 주고 돌아가도 록 함.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28	명종 1년 1546. 7. 21		전라도 加里浦, 莞島, 大茅島	중국인 150명	선박 파손으로 표 착	역관 파견		(實錄)
29	명종 1년 1546. 11. 21		강원도 울진	荒唐船	착륙했다가 도로 바다로 들어감	唐通事, 倭通事 각 1명씩 파견		(實錄)
30	명종 1546	福建	전라도	馮淑 등 군 사 341명	무단범월		都司에게 咨文 을 보내고 湯站 으로 압송	(燃)
31	명종 8년 1553. 6. 17		경기도 龍妹鎭	荒唐船 1척	開城留守 韓의 치계에 장검으로 군관을 찔러죽였다 고 함	당상·당하관 중 무예가 있는 자를 골라 황해·경기 에 파견		(實錄)
32	명종 9년 1554. 6. 8		제주 飛陽島	倭人 23명 唐人 2명	5월 25일 荒唐人이 난파선의 판자를 타고 해안에 표착	생포 후 구류. 표류가 분명하므 로 돌려보내기로 함		(實錄)
33	명종 11년 1556		전라도	漢人華重慶 등 38명	중국을 습격했던 왜적선이 표류	漢人 구출	冬至使 沈通源 편에 송환	(燃)
34	명종 14년 1559		황해도	漢人 蘇才 등 322명	왜적의 포로가 된 후 탈출, 표류	漢人 구출	冬至使 尹毅中 편에 송환하고 咨文	(燃)
35	명종 19년 1564. 9. 29	遼東 復州衛	황해도 甕津縣	水夫 龔成 의 식구 14 명	大虜鎗子(몽골)의 약탈을 피해 9월 6 일 식구가 배를 타 고 海洋島로 가다 가 북풍을 만나 표 류	의복을 주고 관례 대로 송환하도록 함		(實錄)
36	선조 15년 1582, 여름	遼東 金州衛	황해도	趙元綠			聖節使 편에 송 환	(燃)
37	선수 15년 1582. 1. 1	福建	제주	복건인 陳元敬 東洋人 莫生哥 서양인 馬里伊			陳賀使 鄭琢 편 에 順付하고 奏 文함	(燃)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38	선수 17년 1584, 12, 1	福建	경상도 울산군	阮喬柱		勅旨에 송환자가 10명을 넘으면 題 請하여 포상하도 록함	冬至使 尹仁涵 편에 송환하고 咨文함	(燃) (實錄)
39	선수 20년 1587, 9, 1		전라도 海南	孟世隆 등 14명			通事 韓潤輔 편 에 요동도사에 게 송환	(實錄)
40	선조 29년 1596	福建	제주 大靜縣	哨倭官 林 日煌 등 46 명		의복·식량·여비 지급	通事 朴仁儉 이 요동으로 압송	(燃)
41	선조 33년 1600, 7, 9		제주 旌義	왜선 1척, 중국인 포 로 6명	倭奴가 증원의 변 지에 침입하여 사 람과 재물을 약탈 하고 일본으로 돌 아가다가 6월13일 풍파에 표류함. 왜 선격파 후중국인 포로 6명 구출			(實錄)
42	선조 36년 1603		충청도	중국인 徐 上龍 등 29 명		의복·식량·여비 지급	通事 張士元 편 에 요동으로 압 송, 咨文함	(燃)
43	선조 37년 1604, 7, 14				諫院이 표류해 온 중국인을 방치한 堂上을 추고하도록 아뢰	규례대로 闕庭에 서 음식을 먹이고 服飾을 만들어 지 급하도록 함		(實錄)
44	선조 37년 1604	福建	경상도	복건인 溫 進 등 16명, 남만인 2명, 포로 왜인 남녀 32명	복건 무역선이 왜 인에게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폭풍으로 표류	구조 후 모두에게 의복과 식량 지급	賀至使 尹敬立 편에 송환	(燃)
45	선조 38년 1605			중국인 2명	포획한 왜선 안에 중국인 2명 승선		賀至使 李尙信 편에 압송	(燃)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46	선조 39년 1606. 11. 14	遼寧 旅順	황해도 海州牧	胡惟忠 등 군병 19명	旅順 입구 지방 將 官의 부하들이 표 류	추위와 굶주림에 상하지 않도록 각 고을에서 각별히 호송에 유의하도 록 함. 대포 등 운 반이 곤란한 물건 은 숫자를 세어 선 척과 함께 본주에 보관토록 함. 기타 물건과 사람 은 육로로 호송	千秋使 李慶函 편에 압송	(實錄)
47	선조 40년 1607. 4. 10				표류한 중국인들이 작폐를 벌임	궐내 수직을 엄히 하고 궐문을 잠시 닫도록 함		(實錄)
48	광해 즉위년 1608	浙江	경상도 蛇梁浦	薛萬春 등 41명			사은사 申湜 편 에 압송	(燃)
49	광해 1년 1609. 3. 22	浙江 · 福建	경상도 原任把總 戴朝用 등 47명	풍랑으로 난파	경상관찰사 李相 信의哨兵이 구조 환	冬至使 申湜편 에 北京으로 송 환		(實錄)
50	광해 1년 1609	山東 萊州	평안도 薛和尚 등 21명				通事 李諭를 보 내 鎭江으로 압 송	(燃)
51	광해 2년 1610	福建	경상도 울산	陳成 등 29 명	의복 · 식량 지급		謝恩使 李時彦 편에 보냄	(燃)
52	광해 2년 1610. 10. 29		충청도 瑞山		임인년 12월 표착		관원 1명과 직 질이 높은 역관 을 차견하여 遼 東에 인계	(實錄)
53	광해 3년 1611. 11. 17	福建 興化縣	전라도 상인 林潤 臺 등 32명		바람을 만나 파선		형조참판 李順 慶 등을 치송하 여 압송	(實錄)
54		福建 福州	황해도 延安	張亨興 등 11명			通事 李彦華이 압송	(燃)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55	광해 4년 1612	浙江 杭州	충청도	王秀 등 84명		의복 · 식량 지급	賀至使 趙存性 편에 압송	(燃)
56	광해 6년 1614	安徽 徽州		胡敬 등 42명			賀節使 許筠 편 에 보냄	(燃)
57		浙江		韓江 등 95명			尹鐵을 보내 압 송, 北京에 이 르려 29명 뿐이 고 모두 도주함	(燃)
58	광해 12년 1620			陳明 등 14명			동지사 任碩齡 편에 보냄	(燃)
59	광해 13년 1621		황해도	顧龍起 등 22명, 周應奎 등 14명			사은사 편에 압 송	(燃)
60	광해 14년 1622, 11, 13		강화 井浦	3명	9월에 표류한 중국 인을 井浦萬戶 趙 光弼이 사살, 3명 생포 후 감금	사헌부가 조광필 의 처벌을 청했으 나 천천히 결정하 겠다고 답함		(實錄)
61	광해 15년 1623, 2, 27		제주	32명				(實錄)
62	인조 즉위년 1623		전라도	張德功			사신편에 압송	(燃)
63	인조 2년 1625		제주	朱鎭國 등 11명	식량운반 중 표류		규례에 따라 압 송	(燃)
64	인조 3년 1626, 12, 17		제주	高孟 등 32명		배를 고쳐서 보내 는 동시에 沿海邑 으로 하여금 특별 히 호송하도록 禮 曹에서 청함		(實錄)
65	인조 7년 1629, 8, 9		제주 旌義	黃汝誠 등 10명	쌀 · 포목 등을 싣 고 假島로 가던 중 黃河를 거쳐 小海 洋에 이르렀을 때 밤에 광풍을 만나 표류, 상륙할 즈음 다시 광풍이 일어 本船이 떠나려 감	上이 禮賓寺에 명 하여 饋餉을 충분 히 지급토록 함	사람을 差送하 여 중국으로 송 환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66	인조 7년 1629		전라도 珍島	表經略標下 劉守成 등 59명	화물 운반 중 표류		椶島로 압송	(燃)
67	인조 8년 1630		황해도	覺華島將官 30여 명			椶島로 압송	(燃)
68	인조 8년 1630, 10, 22			漢人 李成 龍	모문룡 진영의 票 下 이성룡이 도주 하다가 표류 후 公 清水使 宋英望에게 의탁함		본인의 희망에 따라 쇄환을 미 룸	(實錄)
69	인조 10년 1632, 1, 27			중국 관원	표류 후 太平館에 寓居함	본인이 10일분의 귀국양식을 원하 자 비변사에서 쌀 5석을 주자고 건의 함.		(實錄)
70	인조 11년 1633, 8, 20		전라도	張國泰	羅州 사람을 찢려 죽이고 도주했다가 체포됨. 자살 미수	울에 따라 처단하 기로 함		(實錄)
71	인조 11년 1633		경상도	魏有仁 등 32명			椶島로 압송	(燃)
	인조 11년 1633, 8, 13		충청도 泰安	魏有仁 등 13명	都司 尙加喜의 차 인 魏有仁 · 池有鼎 등	양식을 주고 귀환 할 수 있도록 해 줌		(實錄)
72	인조 12년 1634, 2, 24		제주	李如果 등 10명			椶島로 보냄	(實錄)
73			충청도 泰安	鄭報國 등 32명			椶島로 보냄	(燃)
74	인조 12년 1634, 10, 15		충청도 泰安郡 西海浦	唐船 1척, 한인 5명 (都司 鄭報 國 외 4명)	都司 鄭報國이 皮 島 출항 후 강풍으 로 표류, 돛이 부서 져 항해할 수 없으 니 工匠을 빌려 수 선하고 싶다는 뜻 을 편지로 알림		그들의 간청에 부응함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호 및 조치	송환	전거
75	인조 13년 1635		公浦道 (충청도)	朱國勝			椴島로 압송	(燃)
76	인조 17년 1639, 9. 16		평안도 龍岡縣	漢船 1척	陳都督의 使人이 鹿島로 物貨를 실 어 보내는 도중 바 람에 표류	通官 파견		(實錄)
77	인조 19년 1641, 11. 23		전라도 靈光 臨湍島	漢船 1척 水手 6명	筆談으로 송환 희 망의사를 밝힘	본도로 하여금 의 복을 마련해 주도 록 함	差員을 정해 瀋 陽으로 압송하 도록 함	(實錄)
78	인조 22년 1644, 8. 8	廣東 廣州府 南海縣	전라도 珍島郡 南桃浦	漢船1척, 蔡 萬官 · 李國 琛 · 林理 思 · 陳璟	장사차 長崎로 가 던 도중 바람을 만 나 표류		대마도를 거쳐 長崎로 갈 수 있도록 해 줌	(實錄)
79	인조 25년 1647, 7. 18	安海城	경상좌 수영 龍 堂	林東榮	무역차 福京(福州) 에서 일본으로 가 다가 7월 9일 태풍 으로 배가 전복, 임 동영만 3일간 표류			(實錄)
80		福建 泉州府 晉江縣	경상도 거제현	徐勝 등 상 인 51인	反淸 군자금 확보 차 官銀으로 일본 과 무역함, 5월에 東浦 출항, 일본 으로 가는 도중 7 월 7일 표류. 대포 에 맞아 모든 재보 소실, 승선인 60명 중 사망자 10인, 부상자 다수 발생	통제사 金應海가 역관을 파견하여 중원의 사정을 문 고 서승 일행을 거 제도로 옮긴 후 장 계함	조정에서 송환 허락.	
81	인조 25년 1647, 10. 16						淸人이 표류 漢 人을 데리고 떠 남	(實錄)
82	효종 3년 1652, 3. 30	江蘇 南京	제주 旌義縣	苗珍寶 등 28명(185명 의사)	蘇州府 吳縣의 漢 人 무역선이 표류 하고 침몰된 재화 가 많음	일본으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淸의 힐문을 염려하여 전례대로 북경으 로 보냄	북경 송환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83	효종 3년 1652, 6, 14	南京	담라	漢船	漢船이 南京으로부터 표류해 옴	淸의 의심을 살까 염려하여 海西로 유인한 후 청나라 사신 편에 묶어 보냄		(實錄)
84	효종 6년 1652, 5, 28		충청도 堀業島	唐船 3척	所斤僉使 金友仁의 防牌船을 습격, 탈취 후 도주	김우인이 급히 쫓아가 唐船과 싸워 승리함	전원 참살 또는 익사	(實錄)
85	현종 8년 1667, 6, 21	福建	제주 大靜縣	林寅觀·曾勝·陳得 등 명나라 官商人 95명	淸에 복속을 거부하고 왜국과 무역하는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바람을 만나 표착	역관과 필담	청의 질책이 두려워 청나라 압송으로 결정(6월 23일)	(實錄)
86	현종 9년 1668, 7, 16	福建 漳州府	경상도 曲浦		명나라 사람이 곡포 앞바다에 표류, 땔나무와 물을 신고 감	감사가 계문함		(實錄)
87	현종 9년 1668, 7, 21		전라도 安島 앞 포구	唐船 1척, 30~40명 (7월 7일 표류)	모두 장발에 수염을 길렀고 검은 옷 착용. 땔나무와 물을 신고 바로 출항함	전라좌수사가 계문함		(實錄)
88	현종 11년 1670, 7, 11	廣東· 福建· 浙江	제주 旌義縣	漢人 沈三·郭十·蔡龍·楊仁 등 65명	反淸 漢人 무역선이 長崎로 향하다가 태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표류함 (삭발한 자 22명, 삭발하지않은 자 43명)	제주목사 盧錠이 본인들의 희망대로 배를 차비시켜 長崎로 돌려보내고 비밀히 치계함		(實錄)
89	숙종 3년 1677, 3, 22			文可尙·鄭善甲		중국어가 능통하므로 軍職, 급료, 집을 주고 보살피며 역관들에게 배우기를 청함. 明朝人임을 들어 의복감을 주고 우대할 것을 청함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90	숙종 7년 1681. 8. 7			淸人 高子英 등 26명		弘濟院에서 酒食을 접대하고 역관을 파견하여 위로함. 호송하던 역관 李慶和 등이 청의 사정을 탐문하여 비국에 보고함	각인의 성명·연세·거주지·행장 물건과 의사한 王大王章 등 6인의 성명을 적어 禮部로 移咨함	(實錄)
91	숙종 12년 1686. 7. 26	福建 臺灣	珍島 남쪽桃浦	游魏 등 80여 명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 풍랑으로 파손, 표착	본도에 명하여 선박을 수리하고 식량을 주어 돌려보냄		(實錄)
92	숙종 26년 1700	山東 福山 寧海	충청도 安興	曲選 등 60명, 劉增 등 13명, 배 2척		서해 표착민들의 작폐를 禮部에 알림	돌려보냄	(燃)
93	숙종 27년 1701. 5. 15		황해도	荒唐船 사 람 9인 체포		배를 주어 돌려보냄	船票·人數·성명·籍貫만을 조사, 보고함	(實錄)
94	숙종 29년 1703. 6. 27	山東 福州 登州	황해도 長湍·白翎島·小靑島	荒唐船 被逮者 50여 명	所派江僉使 李暻이荒唐船을 생포함	譯學을 보내 사정을 묻고 票文을 빼앗아 啓聞함. 양식과 반찬을 주고 석방	齎咨官을 보내 사실을 보고하고 조선 연안 향해 금지틀거듬 요청	(實錄)
95	숙종 30년 1704. 8. 5	福建 漳州	珍島 南桃浦	116명 선박 1척	일본으로 가던 중 표류			(謄錄)
96		福建 同安縣	甌島	선박 1척				(謄錄)
97	숙종 30년 1704. 10. 16	福建 江蘇 浙江	珍島의 桃浦	청나라 상인 黃使·李時芳·蔡陳·李仕·林森·陳鸞·王攀·鄒臣 등 113명	청나라 무역선이 7월 25일 桃浦 남쪽에서 갑자기 파선되어 표착	먼 곳의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로 戶曹에서 物化의 값을 주어 利를 잃지 않게 함. 都城에서 옷·갓·신 등의 물건 지급, 路資를 넉넉하게 주어 縣道에서 차례로 먹여 보냄	北京으로 압송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98	숙종 37년 1711. 11. 1		황해도 白翎島	청나라 상 인 40여 명		배를 수리해 주고 양식을 주어 돌려 보내도록 명함		(實錄)
99	숙종 38년 1712. 8. 16		황해도 白翎島	海西에서 항당선 나 포, 白翎에서 12명 나포, 劉元 등 23 명 생포		유원 일행 23명 중 2명만 압송하고 나 머지는 생업을 고 려하여 그냥 돌려 보냄	劉元의 예에 따 르도록 함	(實錄)
100	숙종 43년 1717. 2. 3		황해도 瓮津縣	항당선 1척 12명 나포		잡은 항당선 출현 으로 인한 피해 대 책을 논의함	譚院에서 責咨 官을 差定하여 鳳城으로 압송	(實錄)
101	숙종 43년 1717. 5. 5		황해도 長湍府	청국 魚採 人 17명	장언부에서 敗船	관에서 衣資 지급	差官이 압송, 咨文을 보냄	(實錄)
102	경종 1년 1721. 5. 19		제주 大靜縣	淸人 18명		관례에 따라 서울 로 압송 후 역관이 사정을 문정함. 공궤 및 의복 지급	義州·鳳城을 거처 북경으로 호송. 호송 중 에는 예에 따라 關西에서 여비 지급.	(實錄)
103	경종 1년 1721. 윤6. 12	山東 登州	충청도 安興鎮		충청도 水使가 荒 唐船 선원을 구류 하고 狀聞함	荒唐船 방지대책 을 논의함	차후 犯境하지 말 것을 타이르 고 방면함	(實錄)
104	영조 16년 1740. 10. 27	福建 漳州府	충청도 安興鎮	20명	상선이 安興 앞바 다에 표착		공홍수사 李命 祥에게 전례에 따라 裝送하도 록 명함	(實錄)
105	영조 32년 1756. 1. 28	福建	전라도 靈光	청상인 24 명			咨文을 보내고 돌려보냄	(實錄)
106	영조 35년 1759. 12. 12	福建 興化縣	전라도 興山도	28명	상인			(臆錄) 問情 別單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107	영조 36년 1760. 11. 18	福建 泉州府	전라도 慈恩島	24명	상인			(謄錄) 問情 別單
108	영조 39년 1763. 11. 1		황해도 唐船 표착	唐船 표착	황해도 감사가 唐 船 계문		使行에게 맡겨 송환토록 명함	(實錄)
109	영조 44년 1768. 11. 15	山東 登州	황해도 康翎			양식·반찬·襦衣 지금, 그중 70살 가까운 여인에게 는 本縣으로 하여 금 솜·고기·유의 를 주어서 늙은이 를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분부함		(實錄)
110		榮城縣			바다에 표류	資糧과 襦衣를 주 어 보내게 함		
111	정조 1년 1777. 10. 19	福建 漳州府 龍溪縣	황해도 長淵 吾叉浦	상인 28명	표류 후 水路로 귀 국하길 희망함	옷과 식량을 넉넉 히 주도록 명함		(實錄)
112	정조 1년 1777. 11. 12	福建 漳州府 龍溪縣	전라도 飛禽島	26명	상선		水路	(謄錄)
113	정조 1년 1777. 11. 26	福建 漳州府 龍溪縣	전라도 羅州牧 靈山島	31명	상선			(謄錄)
114	정조 1년 1777. 12. 4	遼寧 廣東 福建	황해도 白翎鎮 大靑島	錦州人 9명, 廣東省 潮 州府 澄海 縣人 14명, 福建人 1명		육로로 돌아가길 희망하여 들어섬	靈光과 珍島의 표류인 2명을 데리고 가는 참 官에게 팔려보 냄	(實錄)
115	정조 8년 1784. 12. 13	江南 蘇州府 南通州	苔士島	1명	장사			(謄錄)
116	정조 22년 1798. 1. 15	福建 漳州府 海澄縣	제주 明月浦	船主 陳嘉瑞 외 30명	무역선 표착	承文院으로 하여 금 北京에 咨文을 보내고 禮部에 보 고하도록 함	표착 26일째 되 던 날 수로를 따라 귀환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117	순조즉위년 1800. 12. 4	山東 登州府	경기도 강화 德稱鎮	6명			육로로 호송하 도록 명함	(實錄)
118	순조 1년 1801. 2. 7	江南 蘇州府 崇明縣	牛墨島	7명	상선			(謄錄) 問情 別單
119	순조 1년 1801. 2. 18	江南 蘇州府 南通州	전라도 在遠島	6명	상인			(謄錄) 問情 別單
120	순조 1년 1801. 10. 30	山東 登州府	황해도 吾叉鎮	7명			육로로 北京 호 송	(實錄)
121	순조 1년 1801. 11. 7	遼寧 銀州府	강화 長峯鎮	25명			제주도 표류인 을 호송하는 역 관 편에 北京으 로 호송하도록 함	(實錄)
122	순조 2년 1802. 12. 6	山東 康翎縣	황해도 康翎縣	8명			육로로 호송을 명함	(實錄)
123	순조 6년 1806. 3. 4	江蘇 蘇州府	제주 大國人 22명				육로로 호송을 명함	實錄
124	순조 10년 1810. 11. 21	福建 泉州府	전라도 靈光郡 荏子島	29명			육로 호송을 명 함	(實錄) (謄錄)
125	순조 13년 1813. 11. 23	福建 同安縣	호남 扶安縣	청상인 22명			육로 호송을 명 함	(實錄)
126	순조 13년 1813. 11. 29	福建 同安縣	靈光郡 荏子島	청상인 47명			육로 호송을 명 함	(實錄) (謄錄) 問情 別單
127	순조 13년 1813. 12. 5	福建 漳州府	在遠島	73명	해경·동안·용 계·진강·남안현 표착	행상		(謄錄) 問情 別單
128	순조 18년 1818. 6. 24	江蘇 通州	충청도 藍浦縣	12명			曆咨 편에 順付 하여 압송하도 록 명함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호 및 조치	송환	전거
129	순조 19년 1819. 3. 26	江南 蘇州府	전라도 牛耳島	14명	상선			(謫錄)
130	순조 19년 1819. 10. 21	福建 泉州府	전라도 羅州牧	27명	행상		육로로 호송하 도록 명함	(實錄) (謫錄) 問情 別單
131	순조 20년 1821. 1. 4	江南 蘇州府	전라도 小牛耳島		都草島로 대피			(謫錄)
132	순조 20년 1820. 2. 15	江蘇 蘇州府	전라도 靈光郡	16명			육로로 호송하 도록 명함	(實錄) (謫錄)
133	순조 22년 1822. 2. 14	江南 蘇州府	전라도 下苔島	선박 1척	행상			(謫錄) 問情 別單
			전라도 荷衣島	선박 1척	행상			(謫錄) 問情 別單
134	순조 24년 1824. 11. 24	福建 漳州府	전라도 羅州牧 荷衣島	37명	해징현 표착		육로로 호송하 도록 명함	(實錄) (謫錄)
135	순조 24년 1824. 12. 23	江南 晉江縣	충청도 紅衣島	행상 14명	단양현 표착			(謫錄) 問情 別單
136	순조 26년 1826. 12. 3	浙江 寧波府	전라도 羅州牧 牛耳島	16명	장사	右水使 장계	육로로 호송하 도록 명함	(實錄) (謫錄)
137	순조 27년 1827. 7. 11		평안도 龍川府 돌곶섬 (乜申島)	27명			曆書 賣資官 편 에 팔려서 육로 로 호송하라고 명함	(實錄)
138	순조 29년 1829. 11. 4		황해도 豐川府	중국인 4명			육로로 호송할 것을 명함	(實錄)
139	순조 29년 1829. 11. 9	關東 山東	황해도 豐川府 長湍縣	풍천부 4명, 長湍縣 10명			육로로 호송할 것을 명함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140	순조 29년 1829. 12. 7		전라도 珍島郡	大國人 2명			육로로 호송할 것을 명함	(實錄)
141	순조 30년 1830. 12. 8	福建	전라도 靈光郡 荏子島	大國人 35 명			육로로 호송할 것을 명함	(實錄)
142	헌종 2년 1836. 12. 29	福建 漳州府	전라도 흑산도	행상 41명				(謄錄) 問情 別單
143	헌종 3년 1837. 1. 13	鳳凰 수양부	전라도 牛耳島	3명	수양현 성 밖에 표착			(謄錄) 問情 別單
144	헌종 5년 1839. 12. 27	山東 登州府	전라도 慈恩島	상인 11명	황현현 표착			(謄錄) 問情 別單
145	헌종 7년 1841. 2. 27	浙江 寧波府	전라도 牛耳島	상인 6명	진해현 표착			(謄錄)
146	헌종 7년 1841. 4. 13	浙江 寧波府	전라도 대흑산도	상인 18				(謄錄)
		江南 松江府	제주 遲月鎮	상인 13				(謄錄)
		江南 蘇州府	제주 旌義縣	상인 21				(謄錄)
147	헌종 13년 1847. 2. 3	江南 蘇州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15				(謄錄)
148	철종 1년 1850. 3. 23	江南 通州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9				(謄錄)
		江南 蘇州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17	태창주 보산현		水路	(謄錄)
149	철종 3년 1852. 2. 25	江南 松江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1	상해현			(謄錄)
		山東 登州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10	복산현			(謄錄)
150	철종 7년 1856. 1. 26	江南 蘇州府	전라도 大也島	상인 14	직현	荷衣島의 부속 도서에 표착		(謄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조 및 조치	송환	전거
151	철종 8년 1858. 1. 11	江南 蘇州府	전라도 壬子島	상인 11		물건 교환		(謄錄)
		江南 蘇州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13	선박 1척			(謄錄)
		江南 泰昌州	전라도 흑산도	상인 11	선박 1척			(謄錄)
		江南 泰昌州	전라도 흑산도	상인 10	선박 1척			(謄錄)
152	고종 9년 1872. 11. 17	江南 通州	황해도 長湍府 陸島浦	13명	무역선 표착	백길로 돌아가길 원하므로 배를 수 선해 주고 전례에 따라 옷과 음식을 지급하여 우리 조 정에서 먼 나라 사 람들을 돌보아 주 는 뜻을 보임		(實錄)
153	고종 12년 1875. 5. 8	鳳凰 登州府	전라도 흑산도	행상 5				(謄錄) 問情 別單
154	고종 14년 1877. 3. 3	山東 登州府 文東縣	강화 德積鎮	3명, 사망 자 다수	풍랑으로 표류	전례대로 沿路의 譯學官 및 差使員 으로 하여금 차례 로 인계하고, 체제 기간의 치료와 음 식공급 절차 및 刷 馬는 모두 各 該道 에서 전례에 비추 어 거행하게 함	육로 호송 희망	(實錄)
155	고종 16년 1879. 3. 16		전라도 古群山 앞바다		중국인 표류	빈 배 3척을 원하 여 운허함		(實錄)
156	고종 19년 1882. 1. 29		충청도 庇仁縣 馬梁鎮	중국인 15 명 화란인(紅 毛國人) 1명	제주도부터 표류하 여 충청도에 표착	든든한 배를 주고 별도로 差員을 정 해서 바람을 기다 렸다가 출발시킴. 식량을 넉넉히 지 급할 것을 운허함	육로 송환 희망	(實錄)

	연도	출신지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 과정	구호 및 조치	송환	전거
157	고종 20년 1883. 2. 19	山東 登州府	전라도 흑산도	상인 8				(膽錄)

※ 이 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웹서비스에서 “漂流, 漂着, 漂到, 唐船, 唐人, 荒唐船, 淸人, 大清, 漢人” 등 중국인의 조선 표착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검색어로 이용하여 추출한 기록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www.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燃藜室記述』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국역 『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邊圉典故」에서 중국인의 조선 표착 기록만을 추출한 것이다(www.db.itkc.or.kr/).

※ 『備邊司謄錄』은 김경옥,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流民들의 추이」, 32·33쪽의 도표에서 추출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 원문의 내용상 출발지 및 표착지가 하급 군현으로만 표기된 곳은 내용을 조사하여 省(중국) 및 道(조선)를 보충하였다(예; 登州 → ‘山東省’ 登州, 비인현 → ‘충청도’ 庇仁縣).

※ 풍랑·강풍·선박 파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선에 漂着한 사례만을 추출했으며, 임의로 조선에 정박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손승철, 2006,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
 이훈,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일본 京都.
 이훈,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池內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京都, 臨川書店.
 『通航一覽』, 1912, 國書刊行會, 朝鮮國部百十二 漂着 卷之百三十六
 『通航一覽』, 1912, 國書刊行會, 朝鮮國部百十一 漂流 卷之百三十五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國學資料院.

〈논문〉

- 關周一, 1991, 「15世紀における朝鮮人漂流人送還體制の形成」, 『歴史學研究』 617.
 김경옥, 2008,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流民들의 추이」, 『朝鮮時代史學報』 44.
 劉序楓, 1993, 「十七・八世紀の中國と東アジア-清朝の海外貿易政策を中心に」,
 『アジアから考える地域システム』, 東京大學出版會.
 劉序楓, 2005, 「近世中國と日本間における漂流, 漂着事件について」, 『東アジア海域
 における交流の諸相-海賊・漂流・密貿易』,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劉序楓, 2009, 「近世東亞海域的偽裝漂流事件-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的漂流中國事
 例爲中心」, 漢陽大學校, 『韓國學論集』 第45輯.
 박원호, 2005, 「명대 조선 표류민의 송환절차와 정보전달-崔溥 『漂海錄』을 중심으로」,
 최소자교수정년기념 특집호 『明清史研究』 제24집.
 박정자, 2004, 「朝鮮物語에서 표류 일본인들에게 비춰진 조선사정」, 『日語日文學研
 究』 제59집.
 신동규,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
 유형을 중심으로」, 松谷元永煥교수정년기념논문총 『江原史學』 17・18합집.
 원종민, 2008,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제44집.
 이훈, 1993, 「朝鮮後期 日本에서의 朝鮮人 漂流 취급과 善隣友好的 실태-조선인漂
 民의 騷擾 행태와 수습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47호.
 이훈, 2006, 「바다에서 본 한국사: 표류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송환절차를 중심
 으로」, 『한국사연구』 123.

- 정민, 2009, 「다산의 海防考에 나타난 중국 漂船 처리문제」, 『韓國學論集』 제45집.
- 정민, 2009,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韓國漢文學研究』 제43집.
- 정성일, 2002, 「漂流記錄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漂人領來 膽錄』과 「漂民被仰上帳」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9집.
- 정성일, 2003, 「전라도 주민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제72호.
- 春名徹, 1994, 「近世東アジアにおける漂流民送還體制の形成」, 『調布文化』 4.
- 荒野泰典, 1983,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體裁と東アジア」, 『歴史評論』 400.
- 荒野泰典, 2000, 「近世東アジアの國家關係論と漂流民送還體制」, 『史苑』 60-2호.

[ABSTRACT]

The Systems for Assistance for Accidents and
Rescue of Drifters in Pre-modern Korea

Kim, Kangil

Separated by seas,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engaged actively in interaction too in the pre-modern period. As maritime accidents occurred simply because interaction was frequent, the three countries implemented assistance systems. Such systems in the East Asian region for the rescue of drifters did more than provide assistance to people involved in maritime accidents through humanitarian-like perspectives, they also were high-level diplomatic activities that were linked to the overlapping issues of domestic politics and state defense in each country.

Joseon and China repatriated drifters through the traditional foreign relations established through the tribute system. When political conditions changed, such as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ng China to Qing China, there were times when repatriation of Chinese drifters was not easy, but, overall, Chinese who landed in Joseon were repatriated receiving careful attention from the Joseon government. There were no regulations relating to repatriation, but Joseon bore the costs associated with repatriation. The route b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returned the Chinese drifters proceeded from the site of landing to Hanyang, to Ŭiju, and then to Liaodong. An envoy specially appointed to lead the Chinese to Liaodong accompanied them, and he delivered the Chinese

people to the Liao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er. The Joseon government also presented a written document that explained the circumstances. The Chinese government entrusted the Korean envoy with return gifts that expressed thanks for the repatriation of the drifters.

In the case of Joseon and Japan, until the Imjin Waeran of 1592~1598, repatriation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not constant, bu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following the Edo bakufu's grasp of central power, a stable system for repatriating drifters gradually developed. Because the political conditions in the Chinese mainland had stabilized by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system for repatriating drifters between Joseon and Japan too came to be managed in a stable manner. Japanese who landed in Joseon were forwarded from the landing site to the Japan House in Pusan, and the Joseon government bore the associated costs. After the Japanese were sent from the Japan House to Nagasaki via Tsushima, the Japanese were questioned and then sent to their home community.

In this way,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the Qing government Korea, Japan,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managed repatriation systems within the traditional diplomatic order centered on China. Later, after the opening of ports, these countries introduced modern Western laws for assistance in maritime accidents and came to manage new systems for maritime assistance.

keywords

Joseon, Japan, Qing China, repatriation, drifters, maritime accidents, tribute system, Liaodong, Japan House, Pusan, Nagasaki, Tsushima

15~16세기 일본의 僞使와 조선인의 송환

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 | 일본 기독교대학 역사학부 상급준교수

I. 머리말

朝鮮王朝는 조선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였다. 다만 조선의 연안을 이동하거나 육지에서 제주도를 왕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교역과 어업, 새로 형성된 행정구역으로 이전, 여행, 稅穀船의 운항과 같은 행위는 朝鮮前期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해상활동이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 물길을 따라 항해하는 동안, 조선인들이 악천후를 만나 일본이나 류큐[琉球]에 닿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15~16세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주는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에서 그러한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에도[江戸] 幕府가 확립되어 일본의 외부로 출항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 1603

년 이후의 일이다.¹⁾ 그보다 전 시기인 무로마치[室町] 막부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정권 아래에서는 일본의 서부 지역 사람들이 조선으로 도항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조차도 그러한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선인의 송환이 일본의 지방 유력자들이나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 송환을 통해서 공적을 쌓고자 했던 까닭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조선 정부와 무역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이 도항을 인정해 준 통교자의 이름과 실제로 조선인을 송환해 오거나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는 일본인의 이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 조정은 이러한 송환을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송환과 통교특권은 일본의 유력자들에게는 조선과 무역할 수 있게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과의 접촉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셈이다.

일본의 위사파견과 조선인 송환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 국왕이 정식 통교권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래 전부터 조선 조정은 통교특권을 두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 조정은 국왕이 僞使에게 실제로 특권을 부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조선 조정은 일본 사신에 의한 표류민 송환을 두 가지 측면에서 통교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통해 일본의 조선인 송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극했다. 이래에서는 연대순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600년 이후 표류민 송환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이훈, 2000,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II. 일본에서 송환된 조선인 표류민

1_ 1390~1440년대

항해 중에 항로를 이탈하여 표류를 하다가 일본이나 류큐[琉球]에 표착한 조선인들을 송환하는 것은 15~16세기에 자주 볼 수 있는 접촉 형태였다. 1408년부터 1500년 사이에 일본인이 송환한 조선인은 최소한 25건 170명에 이르렀다. 1397년부터 1479년 사이에 류큐에서 조선으로 송환된 것은 10건에 달했다.²⁾

그런데 1390년대와 15세기 첫 10년 동안에 수많은 일본의 무역사절들이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렇지만 일본인의 조선 도항에 대한 관리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조선 측이 일본인의 해적행위를 중지시키지는 못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하카타[博多]에 근거를 둔 규슈단다이[九州探題]가 규슈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을 관리하도록 일임하였다. 쇼군[將軍]에 의해 임명되어 규슈 지역 감독임무를 맡았던 이와 같은 일본의 지방 관료가 한반도로 출항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1420년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북부 규슈 지역에서 대리 행정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하게 되자, 조선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포기하고 말았다.³⁾

시간이 흐른 뒤 쓰시마 슈고[守護]였던 소 사다모리[宗貞盛]는 경상도에 개방된 세 곳의 포구, 곧 제포·부산포·염포로 일본인들이 건너오는 것을 감독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1426년 5월에는 사다모리가 쓰시마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출항하는 모든 使船과 貿易船에 대하여 文引이라고 하는 통행증을 소지하도록 하자고 조선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 도항증은 쓰시마 슈고가 발급하고, 조선 조정은 이 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을 거절할 수 있

2) 손승철, 2001, 「조선전기 피로인·표류민 송환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17~18·20~21쪽.

3) 川添昭二, 1977, 「九州探題と日鮮交渉」, 『西南地域史研究』 第1號, 26~29쪽.

게 하자는 것이었다. 도항증제도는 1433년 6월 무렵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다모리는 1435년 9월에 이 증서가 없는 쓰시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이 접대하지 말고 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443년에는 조선 조정이 문인이 면제되는 일본인 통교자를 확정하였다. 면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일본인들은 그들에게 개방된 세 곳의 포구 중 어느 한 곳에 도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쓰시마 슈고가 발행한 문인이나 그 밖의 다른 형식의 증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472년 무렵이 되면 조선 조정이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개방된 포구 중 한 곳에서 접대를 받거나 무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본인 통교자들에게 문인 제시를 요구하였다.

어떤 일본인들은 조선 국왕이 직접 그들에게 하사한 증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1420년대와 1430년대, 1440년대에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私印인 圖書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일본인 통교자 이름으로 작성된 소개장인 書契 위에 그 도서를 찍게 하고, 그 문서를 모든 통교자의 대리인들이 그들이 도착한 개항 포구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조선 조정이 일본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측에서는 그 증서의 소지자가 그의 군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로서 도서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조정의 이러한 정책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⁴⁾ 더구나 전보다 더 많은 일본 통교자들이 해마다 무역 기회가 보장되는 통교특권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런 까닭에 1450년대 중반부터는 이 특권이 조선 조정의 접대를 받거나, 조선으로 건너와 해마다 무역을 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460년대부터는 도서가 찍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사신이 조선 국왕의 통교자인지, 아니면 국왕이 인정하지 않은 위장통

4)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을 참조. 『世宗實錄』 세종 11년(1429) 9월 17일(경진); 『世宗實錄』 세종 15년(1433) 6월 16일(정유);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107·117쪽 각주 36 참조.

교자인지, 三浦의 관료와 조정의 관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告身은 (비록 명목적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武官職을 받은 受職을 나타내는 것인데, 삼포의 한 곳에 도착한 다음 受職人 자신이 그것을 조선 측에 제시하게 되어 있었다. 삼포의 관료들은 그 증서가 특정한 통교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부와 대조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착지의 책임자인 경상도 관찰사에게 알렸다. 그러면 경상도 관찰사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非조선인과 한반도 밖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일상적인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예조에 그것을 보고하였다.

조선 조정은 일본이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오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정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표류민 송환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왜냐하면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표류민 송환이 해마다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권의 부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조정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장통교자에 의한 상호 접촉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일본이 표류민 송환과 위장통교자를 결부시킨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표류민 송환과 위장교역이 초기에 수여된 도서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447년 5월 세종은 일본 서부 연안에 위치한 이와미[石見]에 근거를 둔 스후 가즈카네[周布和兼]에게 도서를 발급해 주면서, 해마다 한 척씩 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⁵⁾ 이처럼 세견선의 수량이 정해지고 나면 그 뒤에 도서 발급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즈카네에게 이때 도서가 발급된 것은 그보다 22년 전인 1425년에 이와미 나가하마[長濱]의 이와미 태수로 밝혀진

5) 『世宗實錄』 세종 29년(1447) 5월 28일(무오); 申叔舟 撰, 1933, 『海東諸國紀』, 朝鮮總督府, 67쪽. 실록에 기재된 것은 圖書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나중에는 조선 국왕이 도서 발급과 세견선 정액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세종이 스후 가즈카네[周布和兼]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 주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즈카네에 관한 『해동제국기』의 기록을 보면 이 도서가 가즈카네의 아버지인 가네사다[兼貞]에게 발급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어떤 사람이 조선인을 송환해 준 공적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다. 이 사건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1425년 10월 강원도 平海郡의 張乙夫가 이끄는 조선 배가 강원도 해안에서 울릉도로 가던 중 태풍을 만났다. 그 배는 武陵 按撫使 金麟雨가 지휘하는 두 척의 배 중 하나였다. 46명이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36명은 익사하고 말았다. 나머지 10명은 작은 배로 대피하였다. 그들은 결국 일본의 이와미 나가하마 해안가에 닿았다. 그들은 먹지 못해서 좀처럼 걸을 수도 없었다. 표착지에서 5리쯤 더 걸어간 뒤에 작은 우물을 발견하고서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 강가에 이르러서 일본인 어부 한 사람이 그들을 발견하고 어떤 절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그 절의 승려들이 차와 식사를 내주었다. 준타로[順都老]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일본 사람이 그들의 옷차림을 보더니 바로 그들이 조선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음식과 옷을 제공받았으며, 하루에 세끼 식사를 먹으면서 3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와미의 관료들은 20명을 배정하여 조선인 표류민을 쓰시마로 호송하도록 했다.

나가하마의 유력자는 조선의 예조 앞으로 서계를 보냈다. 그 서계 안에는 그동안의 사정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으며, 그가 10명의 조선인을 쓰시마의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大郎]에게 보낸다고 작성되어 있었다. 이와미에서 조선인 표류민을 쓰시마로 보내면, 쓰시마에서 그들을 조선으로 송환해 줄 것으로 이와미 측에서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環刀 두 자루와 丹木 100근, 주홍색 네모난 盤 20, 후추[胡椒] 10근을 禮物로 보냈다. 흥미로운 것은 官位로 보아 이나바[因幡] 태수로 확인된 나가하마의 그 사람이 쓰시마의 관료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인데, 그는 조선 왕조의 군관직인 都萬戶를 통해서 조선인 표류민을 쓰시마로 보내고 있었다.⁷⁾ 조선의 남쪽 지역에

6) 『世宗實錄』 세종 7년(1425) 12월 28일(계사);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4월 18일(을미); 『世宗實錄』 세종 29년(1447) 5월 28일(무오); 申叔舟 撰, 1933, 위의 책, 『海東諸國紀』, 67쪽;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457~458쪽.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가즈카네[和兼] 사절이 조선에 닿은 것은 1446년이었다[『世宗實錄』 세종 28년(1446) 8월 2일(정유)].

서는 이 직책이 정부의 수군 선박이 배치된 작은 포구의 최고위급 수군에 해당하였다. 이때의 송환과 관련하여 예조에서는 이나바 태수에게 예물을 보냈다.⁸⁾

조선 정부는 1426년부터 1438년까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여섯 차례에 걸쳐 이와미의 스후 간신[周布觀心]으로 불리는 한 통교자와 무역을 하였다. 이 통교자는 이나바 지역의 지배자라는 호칭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나바의 시시[刺史]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⁹⁾ 그는 나중에 스후 가네사다[周布兼貞]로 밝혀졌다.¹⁰⁾ 그의 아들은 1438년에 세 차례 그리고 1439년의 처음 6개월 동안에 세 차례 조선과 무역을 하였다.¹¹⁾ 이처럼 조선이 스후 가문과 갑작스럽게 무역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조정의 관료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439년 4월에 李藝가 국왕에게 아뢰기를, 이와미의 통교자와 또 다른 통교자가 조선에 보낸 소개장이 위조된 것 같다고 하였다.¹²⁾

조선 조정이 1447년에 가즈카네[和兼]에게 도서를 발급한 것은 22년 전인 1425년에 있었던 조선인 송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공적 인정 때문이 아니었

7) 『世宗實錄』 세종 7년(1425) 12월 28일(계사), 金麟雨가 1416년 9월 2일 울릉도 安撫使로 임명되었다. 그는 三陟都護府 출신인데 울릉도로 파견되었으며, 그 전에 수군 萬戶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太宗實錄』 태종 16년(1416) 9월 2일(경인)]. 1425년 10월 10일 46명을 태운 군선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였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김인우는 복명하였다[『世宗實錄』 세종 7년(1425) 10월 20일(을유)].

8) 『世宗實錄』 세종 8년(1426) 2월 12일(병자).

9) 『世宗實錄』 세종 8년(1426) 11월 28일(정사); 『世宗實錄』 세종 10년(1428) 8월 26일(을사); 『世宗實錄』 세종 12년(1430) 9월 24일(임술); 『世宗實錄』 세종 14년(1432) 12월 11일(병신); 『世宗實錄』 세종 19년(1437) 2월 1일(신유); 『世宗實錄』 세종 20년(1438) 1월 26일(신해).

10)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4월 10일(정해).

11) 『世宗實錄』 세종 20년(1438) 6월 29일(무인); 『世宗實錄』 세종 20년(1438) 7월 15일(무술); 『世宗實錄』 세종 20년(1438) 9월 8일(기축);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1월 1일(경인);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4월 10일(정해);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5월 1일(무신); 藤川誠, 1991, 「石見國周布氏の朝鮮通交と僞使問題」, 『史學研究』 226, 8~9·17~18쪽 각주 33.

12)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4월 18일(을미); 『世宗實錄』 세종 21년(1439) 9월 10일(을묘).

다. 세종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선이 그 이전부터 간신[觀心]과 접촉해 왔던 것과, 조선인을 송환해 준 적이 있는 가네사다[兼貞]와 무역을 해 온 전력 때문에, 특권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가네사다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1447년 5월 가즈카네에게 도서가 발급된 것이다. 즉 조선 조정은 간신과 가네사다의 僞使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통교를 중지시키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가즈카네를 인정함으로써 과거의 위사 라인을 단절하고 새로운 통교관계를 허용한 셈이다. 가즈카네에게 발급된 도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은 적어도 1502년 8월까지 55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¹³⁾

만일 간신이 僞使였다면, 조선인 송환은 이와미에 기반을 두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조선과 무역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당시 생존해 있던 일본인에게 내린 포상에 근거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또한 쓰시마 사람들은 都萬戸라는 조선의 武任職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쓰시마 사람들이 간신을 속여서 예조로 보낼 간신의 서계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신의 아들인 가네사다 역시 쓰시마에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간신이 정말로 이와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면, 가네사다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간신이 죽은 뒤에 창안되었을 것이다. 즉 조선인을 송환했던 지난날의 역사와, 그의 '아버지'가 조선과 펼쳤던 무역관계를 활용하여, 가네사다라는 가공의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간신의 역사성과는 상관없이, 조선 정부와 위장무역을 하려는 일본의 지방세력에게는 조선인 송환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 하여튼 조선 조정은 1447년에 가즈카네에게 도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때까지 유지해 오던 가네사다의 무역 사절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13) 『燕山君日記』 연산군 8년(1502) 8월 15일(갑인).

2_ 1450~1460년대

15세기 후반이 되자 조선과 무역을 시작하려고 하던 일본인들에게 표류민 송환이 다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1455년경부터 일본의 규슈와 서부 연안의 섬 지역에 기반을 둔 일본의 새로운 무역 상인들이 해마다 몇몇 사절을 조선으로 보내오기 시작했다. 조선 조정은 도서를 새로운 통교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제 도서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국왕의 승인이지 못했다.

1450년대 후반부터는 도서가 네 번째 수준의 접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 있었다. 즉 조선 조정은 일본과 류큐의 통교를 네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의 접대를 받고 연간 무역을 허용받고자 하는 통교자들에게 도서가 필요하였다. 해마다 보통 한두 척의 배를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歲遣船의 수가 정해지면, 그와 함께 도서가 수여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초기의 受職人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조정은 소개장에 도서를 찍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1470년대 후반 무렵이 되자, 네 번째 등급의 접대를 받게 되어 있는 통교자들이 조선에 무역 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때는 모든 통교자들에게 도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쓰시마 태수는 예외로 인정되었다.

해마다 조선으로 무역 사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도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의 유력자들은 조선인을 송환했던 것이며, 이때 신원 확인증이 요구되는 일이 많았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히젠[肥前] 고토렛토[五島列島]의 우쿠시마[宇久島]에 살고 있던 우쿠 쇼[宇久勝]가 1455년에 조선 조정으로부터 도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해마다 한두 척의 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1459년에는 조선 조정이 그에게 세전선의 숫자를 하나 더 늘려 줌으로써,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준 것에 대하여 보상을 했다. 그는 연간 두세 척의 배를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었다.¹⁴⁾ 이것을 보면 조선 조정이 현재의 통교특권과 표류민 송환과 공적을 서로 연결

14) 申叔舟 撰, 1933, 앞의 책, 83쪽.

시키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일본의 통교자에게 무역 선을 한 척 늘려 주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그 통교자가 살고 있던 곳의 위치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하시 마사시게[大橋正重]는 히고[肥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에도시대에 간행된 히고 지역의 지리지 편찬자는 오하시 가게에서 그를 찾지 못하였다.¹⁵⁾ 기록에 따르면 마사시게는 두 차례 조선인을 구조해서 돌려보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그 날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1467년에 조선으로 보냈던 무역 사절보다 조선인 송환이 더 빨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사시게는 이때 자신의 신원을 밝혔을 터인데, 아마도 그는 다른 일본인에 의해서 다이쇼군[大將軍]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1467년의 사절은 그전에 보여준 공적을 근거로 하여 조선 측에 도서 발급을 요청하였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¹⁶⁾

분고[豊後]의 히다군[日田郡] 다이슈[太守] 구니미쓰[國光]는 1460년에 조선인들이 일본에 표류했다고 조선 조정에 알려 왔다. 그는 1467년에는 또 다른 무역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 뒤 1470년에는 그가 세 번째 사절을 조선으로 보내왔는데, 그 뒤로는 분명히 확인된 바가 없었다.¹⁷⁾ 그런데 구니미쓰가 실존 인물인지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무로마치시대의 규슈 지역 역사에 정통한 도야마 미키오[外山幹夫]는 누군가가 히다[日田]라는 姓을 잘못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당시 히다군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⁸⁾ 더욱이 조선 국왕이 이 통교자에게 무역상의 특권을 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

오하시 마사시게와 구니미쓰의 사절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두 통교자 모두 규슈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둘째, 두 통교자가 표류민 송환을 통해서 조선 조정에 도움을 주었다. 마사시게는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하

15) 『新撰事蹟通考』(『肥後文獻叢書』 제3권, 隆文館, 1910), 385~386쪽.

16) 申叔舟 撰, 1933, 앞의 책, 87쪽.

17) 申叔舟 撰, 1933, 앞의 책, 78~79쪽; 『成宗實錄』 성종 원년(1470) 8월 7일(임자).

18) 外山幹夫, 1988, 『大名領國形成過程の研究-豊後大友氏の場合』, 雄山閣, 393쪽.

였고, 구니미쓰는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해난사고를 조정에 알려 주었다. 셋째, 그들이 보낸 사절들은 같은 해인 1467년에 접대를 받았다. 넷째, 두 통교자는 조선 정부에 제시된 소개장에서 자기 신분을 과장하였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조선인 송환 사실을 조선 조정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 측이 일본인의 과거 공적을 바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세조(재위 1455. 윤6~1468. 9)로부터 1467년에 통교특권을 받아내고자 했던 유일한 통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사시게와 구니미쓰가 보낸 사절들이 원칙에 맞는 사절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467년에 파견된 사절은 조선인 표류민과 관련한 공적을 통해 통교특권을 획득하려는 데 목표가 있었다.

1466년 초에 세조가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사찰 그리고 조선의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조는 몇 가지 상서로운 장면을 목격하였다. 국왕이 3월에 한성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인 승려 주린(守蘭)이 東平館에서 국왕을 알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¹⁹⁾ 주린은 히젠의 가미 마쓰라[上松浦] 나고야[那久野]의 후지와라 요리나가[藤原頼永]가 보낸 사신 자격으로 도착해 있었다.

이 첫 번째 통교에서 요리나가[頼永]는 양지[楊吉]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 먹은 중국인을 송환해 왔다. 양지는 浙江의 杭州 寧波府 출신이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으며, 그의 두 형은 평민이 되었다. 그가 마흔두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天仙山島라는 섬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倭賊에게 붙잡혀 쓰시마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돈자에몬[頓沙文]의 가문을 위해서 십 년 가까이 일을 했다.²⁰⁾ 고된 노동에 지친 나머지, 그는 쓰시마에서

19) 『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3월 15일(병진); 『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윤 3월 27일(무술).

20) 돈자에몬[頓沙文]이라는 쓰시마 사람이 1445년에 소 사다모리[宗貞盛]를 대신하여 조선으로 건너와서, 그의 지배자의 요청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 지배

도망을 쳐서, 요리나가[賴永]의 본거지인 히젠 가미 마쓰라에 닿았다. 시간이 흐르자 양지는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요리나가에게 자신을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 와서는 조선 국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나이를 먹은 데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친척들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선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관료들의 제안도 있고 해서, 세조는 그를 중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1466년 4월 4일 그는 사역원 主簿로 있던 중국어 역관 閔牆의 도움을 받아 遼東을 향해 떠났다.²¹⁾

일본인 통교자가 왜 나이 먹은 중국 사람을 조선을 경유해서 송환하려고 했던 것일까. 요리나가의 僞使를 고안해 냈던 책략기들이 쓰시마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이처럼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또 요리나가의 ‘할아버지[予之祖父]’가 그전에 조선의 사신을 도와주었던 것을 언급한다면, 조선 조정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 같다.²²⁾ 위사의 조상들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자가 조선 정부를 대신하여 도항허가를 발급해 준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세종이 1443년에 50척의 세견선을 허락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조선 조정이 20척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다모리는 대장경도 함께 요청하였다. 의정부에서는 만일 사다모리의 요청을 별 생각 없이 들어주게 된다면, 그가 해마다 세견선의 추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그런데도 세종은 대장경의 구청을 받아들였다[『世宗實錄』 세종 27년(1445) 5월 14일(정해)]. 돈자에몬이 사다모리의 사절을 칭한 기록이 3건 보인다[『世宗實錄』 세종 23년(1441) 11월 6일(을해); 『世宗實錄』 세종 24년(1442) 6월 6일(을미); 『世宗實錄』 세종 25년(1443) 2월 13일(기해)]. 그는 그의 지배자를 대신하여 조선 조정을 상대로 두 차례의 협상, 즉 1443년의 釣魚협상과 1445년의 세견선협상을 전개하였다. 만일 이 두 사람이 모두 양지[楊吉]를 소유하고 있었던 돈자에몬이었다고 한다면, 이 중국인이 사다모리의 신임을 받고 있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 셈이 된다. 조어협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世宗實錄』 세종 25년(1443) 2월 14일(경자).

21) 『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3월 15일(병진); 『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3월 28일(기사); 『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4월 4일(갑진).

22) 『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윤 3월 27일(무술); 高橋公明, 「中世西日本海地域と對外交流」, 1991, 森浩一 外 編, 『海と列島文化 2－日本海と出雲世界』, 小學館, 355~356쪽.

조선의 국왕을 돕는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공적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리나가의 사절이 1460년대의 위장 통교자와 맞아떨어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조선 조정은 1466년과 1467년의 송환을 통교특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둘째, 申叔舟는 『海東諸國紀』에 요리나가를 올렸는데, 그의 순서가 히젠에서 도서를 발급받고 세견선을 할당받은 사람 뒤에 있었다.²³⁾ 이러한 배치는 위장 통교자의 경우와 그리고 『해동제국기』에서 통교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다른 통교자들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런데 규슈의 다른 통교자들이 조선 국왕이 발급하는 증서를 얻지 못한 반면에, 요리나가는 1473년에 무역을 허락 받았다. 더욱이 이 위사는 1477년 9월 도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마다 배 한 척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²⁴⁾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보건대, 요리나가의 도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은 1504년 7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1460년대에는 일본의 위사에 의해서 또는 조선 조정에서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국왕에게 접근하는 생존한 일본인들이 통교특권을 획득해 가면서, 송환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_ 1470~1500년대

조선 조정은 1460년대 후반부터 1592년의 일본 침략 때까지 일본에서 건너오는 통교자들이 통교특권을 부여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의 유력자들은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주면서 특권을 획득하고자 자주 시도하였다. 아래에 소개하는 사례는 1470년대부터 활동하였으며 당시 생존하고 있던 통교자들에 관한 것이다. 그 가운데 네 사람은 16세기에 가서는 僞使

23) 申叔舟 撰, 1933, 앞의 책, 80~84쪽.

24) 『成宗實錄』 성종 8년(1477) 9월 4일(무진).

25) 『燕山君日記』 연산군 10년(1504) 7월 29일(정사).

가 되었다.

쓰시마의 지배자인 소 사다쿠니[宗貞國]는 1474년 1월 조선의 예조에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39명의 조선인을 싣고 가던 배 한 척이 고토렛토[五島列島]에 닿았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승려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선박은 우쿠 쇼[宇久勝]가 지배하는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그 섬의 영주는 우쿠[宇久] 가문 소속의 미나모토 모[源繁]이었다. 사다쿠니가 보낸 서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조선인들은 쇼[勝]와 모[繁]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하카타의 관리 다와라 사다나리[田原貞成]가 배 한 척을 그 섬으로 보냈는데, 모가 보살피고 있던 10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목적으로 신병을 인도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신병 인도는 조선 조정의 통교규칙으로 보면 필요한 것이었다. 모는 과거에 조선으로 무역사절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통교특권을 얻지 못했다고 사다쿠니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조선인들을 빨리 되돌려줄 수 없었다.²⁶⁾

1474년 12월 조정의 대신들은 조선인 송환을 알리는 사다쿠니의 서계를 보고하였다. 모는 그의 書狀을 통해 19명의 조선인이 그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병으로 죽었다고 조선 측에 설명을 하였다. 나머지 18명 중에서 13명은 하카타[博多] 상인에게 보내졌고, 남은 5명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들을 지금 송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²⁷⁾

사다쿠니, 쇼, 모의 사신들은 1475년 1월 18일에 한성을 떠났으며, 각자 조선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아갔다. 그리고 모는 도서를 발급받았다.²⁸⁾ 사다쿠니의 지원 덕택에 그가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모의 무역사절에 관해서는 1476년 10월부터 1499년 11월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²⁹⁾

26) 『成宗實錄』 성종 5년(1474) 1월 20일(병오); 『成宗實錄』 성종 5년(1474) 12월 1일(임오); 申叔舟 撰, 1933, 앞의 책, 72쪽. 이때의 승려는 전라도 臨陂縣 守心寺의 性竺이었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修心寺로 적혀 있다. 이 절은 五聖山에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34권, 명문당, 1959, 8쪽, 임피조].

27) 『成宗實錄』 성종 5년(1474) 12월 1일(임오).

28) 『成宗實錄』 성종 6년(1475) 1월 18일(무진).

29) 『成宗實錄』 성종 7년(1476) 10월 16일(병술); 『燕山君日記』 연산군 5년(1499) 11월

일본인들은 1484년에 다시 고토렛토에서 조선인을 송환해 왔다. 미나모토 한[源幡]은 오지카노카미[大智賀守], 곧 오지카[大智賀]의 태수였다. 그런데 이 섬은 규슈의 북서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서 결코 州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지카 태수’라는 칭호는 무로마치 막부의 직함이나 직위의 관점에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물적 증거로 보건대, 한[幡]은 우쿠 쇼의 아들이었다.³⁰⁾

한이 1484년에 조선과 맨 처음 통교를 하였을 때, 그는 10명의 조선인을 송환해 주었다. 그가 데리고 온 표류민들은 제주에서 한성을 향해 떠났다가, 바다에서 표류를 당해 일본의 오지카에 닿은 사람들이었다. 그의 소개장에서 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해(1483년) 10월 15일에 항해를 하던 조선의 배 한 척이 작은 마을 근처에 표착하였다고 했다. 그 배 안에는 조선인 10명과 말 5필이 있었다. 조선인 가운데 승려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곧 제주의 尊者寺³¹⁾ 住持 斯湍이었다. 사식은 그들이 타고 간 배가 제주에 근거를 둔 商船이라고 일본의 지방관료에게 설명을 하였다. 그들은 이른 아침 한성을 향해 떠났는데, 만나절도 못 가서 강한 바람을 만나 동쪽으로 밀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5일 뒤에 그들이 오지카라는 섬에 닿았던 것이다. 예조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답서를 한에게 보냈다.³²⁾

2년 뒤인 1486년 4월 1일 성종(재위 1469. 11~1494. 12)은 잇키[一岐]의 미나모토 이치[源一], 우쿠 쇼, 미나모토 한, 후지와라 요리나가, 그 밖의 사신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접대하였다.³³⁾ 이치[一]는 조선인을 송환하였지만, 더 이상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와 한은 도서와 세견선을 요청하였다. 예조가 그들에게 통교특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조

28일(갑신). 두 번째 일행에 대한 간지 날짜가 실제 기록에서는 부정확하다. 즉, 그것은 갑신일의 연속인데, 세 일행에 앞선다.

30)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舊藏『圖書』と木印』, 『朝鮮學報』 156, 67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尊者寺’가 ‘尊者庵’으로 적혀 있다. 그 절은 한라산 위에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38권, 15쪽, 濟州牧).

32) 『成宗實錄』 성종 15년(1484) 4월 14일(경오).

33) 『成宗實錄』 성종 17년(1486) 4월 1일(병자).

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섬의 위치를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육지에서 제주를 오가는 조선인들이 표류를 당하여 그들 지역에 표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통교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조선 조정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표착한 조선인을 송환해 오기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³⁴⁾ 이와 같은 설명은 1474년에 사다쿠니가 모에 관해서 언급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인다.

한은 계속해서 조선과 무역을 해 나갔다. 1504년 1월 16일에는 9명의 사절이 조선에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⁵⁾ 기록에 나타나는 이치의 첫 번째 사신은 1486년 4월 1일 국왕을 배알하였다. 성종이 마지막으로 그의 사신을 접견한 것은 1493년 7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³⁶⁾ 그들이 모의 사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통교자들은 조선 정부와 무역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송환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하였다.

일본인들은 다시 1499년에 새로운 특권을 얻기 위하여 송환을 단행했다. 1501년 1월 그의 아버지인 쓰마시마의 태수 야마다 노부하루[山田順治]를 대신하여, 시로타로[而羅多羅]는 쓰마시마라는 섬에 표착한 11명의 제주 사람들을 조선으로 송환하였다. 예조가 張迴伊를 問情해 보았더니, 그는 內膳寺에 팔린 노비로 제주에 살고 있었다. 장희이의 진술에 따르면, 1499년 1월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표류하다가 결국 일본의 한 섬에 닿았다. 작은 배 한 척이 그들 곁으로 다가오더니, 나중에는 30척이 넘는 배가 무리를 지어 도착했다. 시로타로는 조선인 표류민의 배 끝을 여러 척의 일본 배에 묶은

34) 『成宗實錄』 성종 17년(1486) 4월 21일(병신).

35) 『成宗實錄』 성종 19년(1488) 5월 26일(기축); 『成宗實錄』 성종 22년(1491) 5월 18일(계사); 『成宗實錄』 성종 23년(1492) 4월 11일(신해); 『成宗實錄』 성종 24년(1493) 4월 21일(을묘); 『成宗實錄』 성종 25년(1494) 5월 1일(무자); 『燕山君日記』 연산군 원년(1495) 12월 6일(을묘); 『燕山君日記』 연산군 5년(1499) 11월 13일(기사); 『燕山君日記』 연산군 8년(1502) 9월 18일(정해); 『燕山君日記』 연산군 10년(1504) 1월 16일(무인).

36) 『成宗實錄』 성종 23년(1492) 6월 23일(임술); 『成宗實錄』 성종 24년(1493) 7월 1일(계사).

다음, 야지마[彌島]를 향해 동쪽으로 끌고 갔다. 이 섬에는 30채의 일본인 집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다. 그 뒤 시로타로의 마을이 있는 산기슭을 향해 동진하였다. 그날 밤 그들은 그 섬의 영주인 노부하루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밤새 지낼 수 있게 해 주었다.

장희이가 나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노부하루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일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고자 한다면, 결혼도 시켜 주고 집도 지어 줄 것이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고향으로 보내 주겠다.”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장희이가 대답하자, 노부하루는 소개장을 써서 그의 아들인 시로타로에게 주었다. 그는 길 떠날 때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었으며, 1499년 1월 12일 장희이 일행은 그곳을 출발하였다.

노부하루의 집에서 동쪽으로 하루 정도 간 뒤 우키지마[弓奇島]라는 섬에 닿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사흘을 머물렀다. 그 섬에는 20가구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다. 10척 가량의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고깃배였다.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서 결국 가카오시마[化可太島]라는 섬에 닿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17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 뒤 그들은 하루 동안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는데, 잇키에 도착하여 나흘 동안 체류하였다. 그들은 다시 하루 동안 배를 타고 쓰시마에 닿았다. 쓰시마 태수가 그들을 조선으로 보내 줄 채비를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섯 달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렀다. 1499년 7월에 그들은 도항 명령을 받고 7월 30일 제포에 도착하였다.³⁷⁾

조선인 표류민을 호위하여 송환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연산군(재위 1494. 12~1506. 9)은 시로타로에게 정7품의 무임직에 해당하는 시公正이라는 관직을 내려 주었다.³⁸⁾ 이와 같은 명목상의 임명을 바탕으로 시로타로는 해마다 한 차례 조선으로 건너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번 송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규슈의 서쪽 해안에서 떨어진 쓰마시마라는 가공의 섬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 조선 배가 나타난 것까지는 의심할 여지가

37) 『燕山君日記』 연산군 7년(1501) 1월 30일(기묘).

38) 『中宗實錄』 중종 5년(1510) 6월 28일(임자).

없다. 다만 현존하는 한국 측 기록에 남아 있는 보고 내용을 보면, 이 표류민들이 닿았던 일본 섬이 어디였는지 밝혀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일본인들이 조선인 표류민들에게 그곳이 쓰마시마라고 말해 주었다라면, 그들이 표착했던 장소를 기억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송환된 표류민들이 조선 관료에게 이 섬이 실존하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희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섬의 특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여정을 입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재주를 확신하고, 게다가 조선 조정이 일본 지리에 어두운 사정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로타로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쓰마시마 영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만일 쓰마시마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야마다 노부하루를 ‘쓰마시마의 영주’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로타로는 정7품에 해당하는 명목상의 무임직을 받았다. 이 사람은 조선 여자와 혼인을 하여, 그의 처가가 있는 제포에 정착하였다. 또 그는 명목상의 무임직을 받은 受職人으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포에서 한양까지 왕래하기도 하였다.³⁹⁾ 그런데 시로타로는 1510년 4월 10일 제포에서 시작된 폭동을 누우치는 뜻으로 1510년 동평관에서 자살하였다.⁴⁰⁾

요컨대 이 책략에 개입한 일본인들은 장희이와 그의 동료 선원들이 표착한 섬을 쓰마시마, 즉 부인섬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만일 조선인들이 원했다라면 그 섬에서 살 수도 있었으며, 그들이 그곳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자 송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가로 시로타로에게는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 여자와 결혼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한편 노부하루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공적을 배경으로 하여 도서를 발급받았으며, 1502년부터 1504년까지 무역사절을 파견하였다.⁴¹⁾ 이처럼 일본인들이 쓰마시마라는 가공의 섬을 창안해 낸 것을 보면, 조선인과 조

39) 『中宗實錄』 중종 5년(1510) 6월 28일(임자).

40) 『中宗實錄』 중종 32년(1537) 4월 15일(계해).

41) 『燕山君日記』 연산군 8년(1502) 5월 3일(갑술); 『燕山君日記』 연산군 10년(1504) 윤 4월 29일(기축).

선 정부가 일본 지리에 어둡다는 점을 일본인들이 활용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4_ 1510~1590년대

조선 조정은 1510년 8월 부산포와 제포에서 일어난 폭동(한국에서는 三浦倭亂이라 부름)을 진압한 다음 무로마치 막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인 통교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509년에는 조선 조정의 관료들이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1450~1460년대에 도서를 발급받아서 무역을 해 오고 있던 통교자들이라면, 그동안 50년가량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꽤 나이가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⁴²⁾ 그런 배경에서 1509년에 조선의 관료들이 위조 도서를 사용해 오고 있던 일본의 무역사절을 색출해냈다.⁴³⁾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이 이듬해의 폭동 발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512년 8월에 조선 조정과 쇼군을 대신한 일본의 승려 사이에 약조(한국에서는 壬申約條라 부름)를 체결하여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외교관계를 복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조선 조정은 종래의 통교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그보다 먼저 쓰시마 이외 지역의 통교자들에게 발급해 주었던 도서와 무관직을 재점검하기로 하였다.⁴⁴⁾ 1450년대와 1460년대 이래로 무역을 해 온 장기 통교자들에게 조선 측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 약조에 담겨져 있는 조항이 수십 년 동안 발급해 오던 도서를 통한 접촉을 중지하려는 의도로

42) 『中宗實錄』 중종 4년(1509) 7월 6일(병신); 『中宗實錄』 중종 4년(1509) 7월 7일(정유); 『海東諸國紀』, 83쪽.

43) 『中宗實錄』 중종 4년(1509) 8월 29일(기축); 『中宗實錄』 중종 4년(1509) 8월 29일; 『中宗實錄』 중종 4년(1509) 9월 2일(신묘).

44) 『中宗實錄』 중종 7년(1512) 8월 20일(신유).

비취졌다. 그런데 만일 조선 국왕과 그의 관료들이 위에서 말한 僞裝使節의 기획에 쓰시마 사람들이 가담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면, 일본의 다른 지역에 근거를 둔 통교자들을 제거하려던 조선의 정책이 쓰시마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으로 건너오는 것이 전보다 더 제약을 받게 되고, 특권을 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무역상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애를 썼다. 1518년에 “아들 다이라 오니노리[平鬼德]”가 그의 아버지 시로타로의 무임직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뒤 오니노리는 정8품 五衛司猛의 무임관료로 인정받았다.⁴⁵⁾

1531년 로쿠로자에몬[老古羅汝毛]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일본인 통교자가 조선 조정에 다음과 같이 알려 왔다. 이복형제인 다이라 모리타네[平盛胤]와 다이라 오니노리[平鬼德]가 모두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로쿠로자에몬이 전에 무임직을 임명받은 적이 없으며, 그가 알려 온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종(재위 1506. 9~1544. 11)은 부산포에 지시를 내려 시로타로의 가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령하였다.⁴⁶⁾ 그 결과 1525년에 모리타네가 조선으로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1507년에는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하는 데 공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게다가 그 대가로 그에게 명목상의 정8품 무임직이 수여되었다. 그런데 예조는 1537년에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모리타네가 죽은 뒤에 모리타네라 칭하는 어떤 사람이 조선으로 건너온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⁴⁷⁾ 오니노리와 모리타네는 표류민 송환에서 비롯되는 통교특권을 부여받은, 다시 말해서 명목상의 무임직을 임명받고, 매년 조선으로 도항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또 다른 사례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시로타로의 친족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그들이 쓰마시마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 통교자들 역시 위사였을 것이다.

45) 『明宗實錄』 명종 14년(1559) 9월 25일(계사).

46) 『中宗實錄』 중종 29년(1534) 8월 18일(임자).

47) 『中宗實錄』 중종 29년(1534) 12월 18일(병오). 1599년 9월부터 들어온 일행은 정8품 무임직으로 밝혀졌다[『明宗實錄』 명종 14년(1559) 9월 25일(계사)].

1537년 4월 시로타로의 ‘동생 치카아키[親秋]’가 조선 조정을 상대로 하여, 시로타로의 ‘아들 가도미쓰[廉滿]’로 하여금 조선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소에 참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치카아키’는 쇼군의 위사를 거느리고 예조의 접견에 참석하였다. 이 ‘쇼군의 사절’은 한성에 와서 경전을 요구하고, 송환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당시 조선 조정이 실시하고 있던 무역 통제에 대하여 불만을 늘어놓았다.⁴⁸⁾

1559년에는 다른 일본인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자신을 시로타로의 아들이라고 조선 조정에 소개하였다. 다이라 야스기치[平康吉]는 자신의 아버지 무임직을 승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조는, 1510년에 시로타로가 죽은 지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지난 50년 동안 야스기치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조정에서는 야스기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⁴⁹⁾

시로타로의 자살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폭동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진정성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속임수를 동반하여 통교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그러한 책략이 시도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가 쓰마시마라는 일본의 가공의 섬으로부터 조선인 표류민을 호위하고 송환해 왔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1536년 12월에 다시 가공의 지역이 등장하게 된다. 고토지마[古東島]라는 섬의 나나리 치카타다[奈成親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위사가 제주도 사람 11명을 송환해 왔다. 치카타다는 ‘고토지마의 태수[古東島太守]’였는데, 이것은 고토지마의 지배자를 뜻하는 것이며, 태수란 冠位나 임명된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지역이 아무 데도 없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섬도 없었다. 이때 송환된 조선인들은 오우치[大内] 밑에 있던 관료들이 그 무렵 하카타에서 쓰시마로 돌려보낸 11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을 송환해

48) 『中宗實錄』 중종 32년(1537) 1월 13일(계사); 『中宗實錄』 중종 32년(1537) 4월 15일(계해). 쇼군의 위사(僞使)에 대해서는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傳』, 東京: 岩波書店, 155~156쪽 참조.

49) 『明宗實錄』 명종 14년(1559) 9월 25일(계사).

준 사람은 오우치의 우두머리, 하카타 관료의 이름, 쓰시마 사람의 이름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쓰시마의 관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카타다와 고토지마라는 섬을 새로 고안해 낸 것이다. 중중은 치키타다에게 도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 도서는 그 뒤 쓰시마에 남아 있었다.⁵⁰⁾

쓰시마 사람들은 1572년부터 1586년까지 고토지마를 내세워서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도서가 아홉 차례나 사용되었다.⁵¹⁾ 고토지마에서 온 두 번째 위사를 통한 접촉은 1572년과 157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쓰시마의 유력자들은 다이아 야스쓰구[平康繼] 앞으로 발급된 증서를 바탕으로 무역을 하였는데, 그는 정8품 五衛司猛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무관직에 임명되어 있었다.⁵²⁾

1510년의 폭동은 일본인과의 접촉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정책을 통해서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때까지 반향을 일으켰다. 중중과 조정의 관료들은 성종 연간과 그 이후에 인정된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하였지만, 성종 이전 국왕들의 치세 동안에 활약한 모든 통교자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부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선 조정이 통교특권을 회복시켜 준 사례로는 11건이 확인되었다. 조정이 새로 도서를 발급해 준 통교자들은 미나모토 한, 미나모토 이치, 미나모토 모, 야마다 노부하루, 이렇게 4명이었다.⁵³⁾ 성종 치세 기간이나 그 이후 그리고 1510년 이전에 도서를 받은 경우는 11건이었다. 게다가 노부하루에게 두 번째 발급된 날짜가 1520년 1월로 밝혀졌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사례이다.⁵⁴⁾

50) 『中宗實錄』 중중 31년(1536) 12월 24일(을사); 田代和生·米谷均, 1997, 「漂流民送還と情報傳達からみた16世紀の日朝關係」, 『歴史評論』 572, 56·62쪽 각주 14.

51)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九州史料叢書』 3, 九州史料刊行會 編纂, 九州史料刊行會, 1955, 14, 21, 27, 38, 46, 61, 68, 74, 83.

52)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17, 20.

53) 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679, 4~5쪽.

54) 田代和生·米谷均, 1995, 앞의 글, 42~43쪽.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무역 활동을 한 것을 기록한 자료는 16세기 거의 전 시기를 통하여 매우 드물다. 그런데 1572년부터 1586년까지 쓰시마 사람들은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한의 무역사절을 파견하였다.⁵⁵⁾ 이치의 무역사절은 적어도 9번,⁵⁶⁾ 모의 무역사절은 적어도 4번⁵⁷⁾ 그리고 노부하루의 무역사절은 적어도 10번 조선으로 파견되었다.⁵⁸⁾ 운 좋게 시기를 잘 맞추어서, 1469년 11월 성종 즉위 후에 표류민 송환이 있었기에 도서가 재발급될 수 있었던 것인데, 도서 재발급은 적법한 통교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16세기에 있을 위사 파견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III. 琉球에서 송환된 조선인 표류민

쇼토쿠오[尙德王]를 칭하는 한 僞裝國王使가 1479년에 하카타[博多] 무역 상인들의 인도를 받아 조선으로 건너왔다. 총 219명으로 구성된 사행단이 위조된 國書를 전달하였다. 그 가운데 조금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上官人 신지로[新時羅]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와 그의 副官人 산미사부로[三未三甫羅]가 1477년에 류큐로 건너갔었다고 한다. 그들은 1478년 7월 28일 류큐에서 출발하여 돌아왔는데, 그때 항로를 이탈하여 류큐에 표착해 있던 조선인을 송환해 주라고 류큐 국왕이 그들에게 위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절은 처음에는 진짜 사절로서 파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경상도 鹽浦에 도착하였을 때는 僞使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55)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18, 25.

56)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18, 25, 30, 36, 44, 54, 70, 78, 86.

57)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17, 23, 30, 59.

58)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15, 21, 26, 36, 46, 54, 62, 70, 78, 85.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쪼개진 반쪽의 符信, 곧 割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들 수 있다. 둘째, 류큐 국왕사라 칭하는 자가 1471년에 자신이 적법한 사절인 양(본디 위사) 조선 측에 제시했던 신원 확인 증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류큐에서 건너와서 그 해에 조선 조정의 접대를 받았던 통교자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들은 틀림없이 쇼신오[尙眞王]의 국서를 1469년에 사망한 쇼토쿠오의 이름으로 작성된 위조 국서로 바꿔치기 하였을 것이다. 그 割印은 류큐 국왕사라 칭하는 자가 자신이 류큐에서 건너온 적법한 통교자임을(사실은 위사) 확인하기 위하여 1471년에 조선 측에 제시한 신원 확인 증서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그해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1479년의 제주 표류민 송환은 이 증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표착에서 송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은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1477년 2월 1일 최소한 8명 이상이 탄 배가 제주에서 출항하여 楸子島로 향하려고 하였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 항로를 이탈한 그들은 7일에는 남쪽으로 떠내려갔다. 그들 일행 가운데 5명은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14일에 표착하였다. 어선 두 척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구해 주었으며,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16일에 준이[允伊]라 불리는 섬에 도착하였다.⁶⁰⁾ 그들이 쓰는 언어와 입고 있는 옷은 일본 사람들과 달랐다. 조선인들은 朝鮮國이라고 한자로 적었지만, 섬사람들은 그들이 쓴 글자를 읽지 못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섯 달 동안 머물렀다.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1박 2일 동안 동쪽으로 항해한 끝에, 그들은 所乃島라는 섬에 닿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섯 달 동안 체류하였다. 다시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출발하였는데, 섬사람 1명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함께 이동하였다.

59) 橋本雄, 2005, 『中世日本の國際關係』, 吉川弘文館, 77~86쪽; Kenneth R. Robinson, 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on: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1, pp. 112~115.

60) 『成宗實錄』에는 '6일'로 되어 있다[『成宗實錄』 성종 10년(1479) 5월 16일(신미)].

그들은 하루 동안 동쪽으로 가서 하이도마[倅突麻島]라는 섬에 정박하였으며,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그 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보츠나에[勃乃伊島]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한 달 동안 체류하였다. 나중에는 구이섬[后伊是麻]에 닿았는데, 그곳에서 한 달을 지냈다. 섬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 中船 규모의 배 한 척에 타고 하루 낮 하루 밤을 동쪽으로 항행하여 타마라섬[脫羅麻島]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작은 배에 섬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8명이 승선하여 하루 만에 이라부섬[伊羅波島]에 닿았다. 그곳 사람들의 언어와 복장은 준이라는 섬사람들과 비슷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한 달가량 체류하였다. 그런 다음 섬사람을 포함하여 6명이 작은 배를 함께 타고 동쪽으로 하루를 가서 하이라 미야코섬[倅羅彌古島]에 정박하였다. 그곳 섬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전에 머물렀던 이라부 사람들과 비슷하였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달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그런 뒤 섬사람들을 포함하여 10명이 중간 정도 크기의 배 한 척에 타고 2박 3일 동안 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그들이 닿은 곳은 류큐국과 경계를 이루는 해상이었다. 아마도 이곳은 지금의 오키나와[沖繩]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에 그들은 官府로 압송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대접을 잘해 주었다. 1일(11일?)에 류큐 국왕이 황금 가마를 타고 나타났다. 가마 앞뒤로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으며, 열 살쯤으로 보이는 소년소녀들이 말 뒤를 따랐다. 아이들 뒤에는 더 많은 군사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 행렬이 도착한 곳은 관부였다. 조선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하였다. 조선말을 알아듣는 일본인 통역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곧 시작될 국가 儀式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3명의 조선인들은 그곳에서 석 달을 체류하였다. 한 사람당 給綿 2필과 靑布 1필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돈이 모두 15,000文이었다. 그 밖에 그들에게 지급된 것은 후추[胡椒] 150근과 벼 560근 그리고 생선과 고기였다.

조선인 표류민들은 하카타 출신으로 신지로[新時羅]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배를 타고 조선으로 건너왔다. 류큐를 떠난 뒤 나흘 낮과 나흘 밤을 항해하여 그들이 닿은 곳은 사쓰마[薩摩州]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

다. 그곳을 떠나 이틀 낮과 이틀 밤을 항해한 끝에 나가보네[永骨]에 도착하였다.⁶¹⁾ 그들은 육로를 통해 이틀 동안 이동한 끝에 하카타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다섯 달 동안 체류하였다. 하카타를 출발하여 하루 동안 항해를 한 뒤 잇키섬[壹岐島]에 도착하여 사흘을 그곳에서 머물렀다. 다음으로 쓰시마에 도착한 그들은 두 달 동안 그곳에서 체류하였다. 그해(1479년) 4월 9일에 항해를 준비하여 5월 3일 鹽浦에 닿았다.⁶²⁾ 이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인 5월 16일 이 소식이 조정에 전달되었다. 6월 20일에는 성종이 세 사람을 제주로 돌려보내 주었다. 성종은 그들이 떠나 있던 2년 동안의 노역을 면제해 주었으며, 그들에게 반년 분의 祿料와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過海糧]을 지급해 주었다.⁶³⁾

류큐 국왕 쇼토쿠오[尙德王]의 사신이라고 꾸며댄 일본의 위사가 가져온 위조 국서에는 조선인 송환에 대하여 그럴싸하게 적혀 있었다. 年紀는 중국 연호인 청화[成化]를 사용하였다. 이 국서에는 1477년 5월에 7명의 서민이 조선에서 표류를 해 와서 류큐 인근의 남부 지역에 표착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들 중 3명이 배를 이용하여 류큐로 보내졌다. 나머지 4명은 병이 나는 바람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의 하카타에서 온 商船이 류큐에 도착하자, 국왕이 두 척의 배에 타고 온 선장에게 이 세 사람을 호위하여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⁶⁴⁾

이처럼 표류민 송환을 계기로 하여 또 다른 가짜 국왕사가 조선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割印이 찍혀 있었고, 게다가 현직 류큐 국왕이 이와 같은 신원 확인 체제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카타[博多] 상인들이 접대 환경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하카타 상인들로 구성된 일본인 책략가들은 그들이 조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류큐 국왕사를 칭하면서 일종의 군주 자격으로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61) 이곳의 일본 지명에 대한 독음 표기는 잠정적인 것이다.

62) 『成宗實錄』 성종 10년(1479) 5월 16일(신미).

63) 『成宗實錄』 성종 10년(1479) 6월 20일(을사).

64) 『成宗實錄』 성종 10년(1479) 6월 22일(정미).

해야만 그들이 좀 더 많은 양의 재화를 교환할 수 있었고, 훨씬 좋은 품질의 재화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마다 노부하루와 나나리 치카타다의 이름으로 펼쳐진 위장무역이 조선인 표류민 송환을 통해서 확립되었으며, 게다가 해마다 할 수 있었던 무역이었던 것에 반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류큐 국왕사를 칭한 국가차원의 무역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례 한 번뿐이었다.⁶⁵⁾

IV. 맺음말

표류민 송환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발이 묶인 자신의 백성들을 송환해 와야 할 의무가 조선 국왕에게 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국왕에게 표류민 송환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15~16세기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협력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그들이 공적을 쌓는 것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환의 틀을 정한 규칙은 조선에서 만들어 냈지만, 일본의 무역상인들과 국왕의 사절들이 고안해 낸 절차를 통해서 조선인 표류민들이 송환될 수 있었다. 표류민 송환의 이면에는 무역을 늘리고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다.

文引이나 圖書과 같은 특정 형태의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류큐에 표착한 조선인들이 쓰시마로 보내졌다. 규슈 지역에 살고 있던 누군가에 의해서 송환되든, 아니면 쓰시마로 송치된 다음 쓰시마 사람들이 만들어 낸 위장사절 곧 僞使에 팔려 보내지든, 호송자는 그들을 송환하는 유력

65) 류큐 국왕사를 칭하는 위사는 1470년대부터 1490년대까지 여러 차례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온 國王僞使는 1479년뿐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무렵에 조선인이 류큐에 표착한 것이 이때뿐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의 이름으로 쓰시마 태수로부터 문인을 발급받았다. 1440년대 초반부터는 일본인 통교자들이 문인 없이는 조선의 포구로 들어올 수 없었던 점에서 볼 때, 조선 조정의 쓰시마 태수에 대한 의존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15세기에 하나의 제도로 정착된 일본인의 조선 입항절차 때문에, 일본인의 조선인 송환이 쓰시마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 조정은 표류민 송환을 크게 세 가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첫째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송환한 공로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둘째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규정 외의 다른 채널을 통해 접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방편으로, 셋째는 앞으로 조선인이 일본에 표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표류민 송환과 관련해서는 일본 쪽이나 조선 조정 모두 호의나 공로보다는 무역이나 통교 통제와 같은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 번역 : 정일성(광주여자대학교)

참고문헌

〈사료〉

- 申叔舟 撰, 1933, 『海東諸國紀』, 朝鮮總督府.
 『新增東國輿地勝覽』, 明文堂, 1959. 2.
 『新撰事蹟通考』, 『肥後文獻叢書』第3卷, 隆文館, 1910.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九州史料叢書』3, 九州史料刊行會 編纂, 九州史料刊行會, 1955.
 『朝鮮王朝實錄』.

〈단행본〉

- 橋本雄, 1997, 「琉球國王使」と書契-割符制-十五世紀の僞使問題と博多商人, 『古文書研究』44-45.
 橋本雄, 2005, 『中世日本の國際關係』, 吉川弘文館.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外山幹夫, 1983, 『大名領國形成過程の研究-豊後大友氏の場合』, 雄山閣.
 이태진, 1989, 『朝鮮儒敎社會史論』, 知識産業社.
 하우봉 외, 1999, 『朝鮮과 琉球』, 아르케.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005,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중·근세사 한국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중·근세사 일본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논문〉

- 高橋公明, 1989, 「16世紀の朝鮮-對馬-東アジア海域」, 加藤榮一 外 編,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校倉書房.
 高橋公明, 1991, 「中世西日本海地域と對外交流」, 森浩一 外 編, 『海と列島文化 2-日本海と出雲世界』, 小學館.
 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 697.
- 米谷均, 1997, 「漂流民送還と情報傳達からみた一六世紀の日朝關係」, 『歴史評論』 572.
- 藤川誠, 1999, 「石見國周布氏の朝鮮通交と僞使問題」, 『史學研究』 226.
- 신동규, 2005, 「『조선왕조실록』 속의 日本國王使와 僞使」,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유재춘, 2005, 「朝鮮前期 僞使 발생 요인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이훈, 2005, 「琉球國王使와 僞使」,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舊藏「圖書」と木印」, 『朝鮮學報』 156.
- 佐伯弘次, 1978, 「大内氏の筑前國支配」, 川添 編, 『九州中世史研究』 第1輯, 文献出版.
- 川添昭二, 1977, 「九州探題と日鮮交渉」, 『西南地域史研究』 第1號.
- 한문중, 2005, 「僞使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중·근세사 한국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한문중, 2005,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의 처리」,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Robinson, Kenneth R., 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1.
- Robinson, Kenneth R., 2001, "Treated as Treasures: The Circulation of Sutras in Maritime Northeast Asia from 1388 to the Mid-Fifteenth Century," *East Asian History* No. 21.

[ABSTRACT]Japanese Impostor Identities an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Kenneth R. Robinson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Japanese frequently combined the repatriation of Korean drifters and impostor identities to trade with the Joseon government. Their tactics varied. In some instances, they repatriated Koreans through an impostor identity sending its first trade mission to Joseon. More important than repatriating these Koreans was receiving contact privileges from the King of Joseon. When successful, those impostor identities traded numerous times. In another instance, they utilized an impostor King of Ryukyu. The Joseon court used repatriation to reward this meritorious act, to prevent contact through another contact, and to ensure that repatriation would occur in the future. Repatriation both for Japanese and for the Joseon court often emphasized issues other than goodwill and merit.

keywords

Repatriation, Drifters, Korea, Joseon, Japan, Ryukyu, Contacts, Contact Privileges, Trade Mission, Impostor Identities

일본 江戸時代의 海難救助 정책과 '4개의 창구'에 대한 고찰

신동규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15세기 대항해시대 이래 세계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는 해양을 매개로 형성되었고, 자연히 선박들의 왕래에 의해 자연적·우연적·필연적으로 해난사고도 발생하였다. ‘海難’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가네자시 쇼조[金指正三]는 『근세 해난 구조제도의 연구[近世海難救助制度の研究]』에서 “선박이 항해 중 또는 정박 중에 선박과 선적물 및 승무원·승객, 즉 在船者の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에서 피해를 당한 위험”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세 일본[江戸時代]의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자연 풍파에 의한 破船, 難船, 膠船, 水船, 沈船, 當逢(충돌), 打揚, 행방불명 등”²⁾ ‘해상에서의 재난’으로 보고 있다. 이 글 역시 가네자시의 설을

※ 투고일: 2001년 4월 6일, 심사일: 2010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1) 金指正三, 1968, 『近世海難救助制度の研究』, 吉川弘文館, 3쪽. 물론, ‘海難’에 대해서 광의와 협의 개념으로 세분화시키고 있는데, 광의의 개념은 근대 이후 해상보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며, 협의의 개념은 ‘해상의 재난’으로 보고 있다.

2) 金指正三, 1968, 위의 책, 4쪽. ‘해난’ 사고규정에 대해서는 같은 책, 31쪽의 각주 2 참조.

따르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漂流와 漂着이라는 근래에 사용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에도시대[江戸時代]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이들 외국 선박이 원래의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난’이라고 규정하겠다.

한편, 이러한 해난사고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주로 일본 국내 선박에 한정된 해난구조의 법제사적인 연구로 시작되었는데, 스미타 쇼이치[住田正一], 이쿠시마 히로지로[生島廣治郎], 리코 미츠오[利光三津夫], 이노우에 가즈오[井上和夫] 등이 1621년 8월의 ‘사다메[定]’를 막부 최초의 법령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해난구조법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³⁾ 당시 이 법령은 1600년 이래 에도[江戸] 막부의 정치 중심지로서 에도가 변성하여 교토 및 각 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송으로 인해 해난사고가 다발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가네자시가 말한 바와 같이 에도 막부의 법령에 대한 사례로 보여주었을 뿐, 법제의 실시 상태를 포함해 그 전모를 밝힌 연구는 아니다.⁴⁾

이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 카네자시의 『에도시대에서의 해난의 연구[江戸時代における海難の研究]』⁵⁾와 전술한 『근세 해난구조제도의 연구』인데, 에도 시대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해난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있으며, 해난구조 법령의 내용과 해난구조에 대한 보수, 감독 및 화물처리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명하고 있어 일본의 해난구조 관련 연구 중에서는 가장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해난사고를 표류민의 발생과 연결시켜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에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하루나 아키라[春名徹],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한국에서는 이훈 등에 의한 동아시아 속에서 근세 ‘표류

3) 金指正三, 1968, 앞의 책, 42~43쪽.

4) 해난구조의 법제사적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中田薫, 1914, 「徳川時代ノ海法」, 『法學協會雜誌』 32-3·4; 竹越與三郎, 1920, 『日本經濟史』 8, 日本經濟史編纂會; 住田正一, 1927, 『日本海事法』, 巖松堂書店; 生島廣治郎, 1923, 「徳川時代に於ける海難救助の研究」, 『經濟學商業學國民經濟雜誌』 34-5·35-2, 神戸大學; 金指正三, 1955, 『日本海難救助法制史』, はしがき.

5) 金指正三, 1956, 『江戸時代における海難の研究』, はしがき.

민 송환체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환체제'를 포함한 표류민의 송환양식 그리고 표류민을 매개한 관련 국가들의 상호인식과 교류의 측면에서 선행학들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⁶⁾ 鄭成一에 의해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라도 주민에 대한 표류의 특징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모색한 연구⁷⁾가 발표되는 등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 이외에 해난 및 표류에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고⁸⁾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가 있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상기와 같은 주요 연구만 언급해 두겠다. 다만, 전술한 가네자시의 연구는 주로 일본의 국내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를 취급하고 있으며,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정책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며, 전술한 '표류민 송환체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해난사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표류민의 송환과 관련된 시각에만 관점을 두고 있어 근세 일본이 어떠한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선박들의 해난사고에 대처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금교정책과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며, 또 막번체제의 확립기에 외교창구로서 '4개의 창구[四つの口]'⁹⁾와의 관련성, 즉 해난구

6) 荒野泰典, 1984,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體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 400, 歴史科學協議會[후에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에 수록]; 春名徹, 1995, 「漂流民送還制度の形成について」, 『海事史研究』 52; 春名徹, 2005, 「近世日本船海難にかんする中國全記録の再検討—東アジアにおける近世漂流民送還制度と日本」, 『海事史研究』 62;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李薰,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학자료원;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國학자료원; 李薰·池内敏, 2008, 『朝鮮後期 漂流民と日朝關係(韓國の學術と文化)』, 法政大學出版局.

7) 鄭成一, 2003,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分析和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72, 韓國史學會.

8) 申東珪, 2006, 「前近代 일본의 西洋異國船 표착처리」, 『韓日關係史研究』 25, 한일관계사학회.

9)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序文·161쪽. 원래는 '四つの口'이나 이 글에서는 원의에 맞추어 '4개의 창구'로 번역하여 사용함. '4개의 창구'는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 幕藩制 국가의 '쇄국' 정책과 대외관계에 대한 의의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가 「幕藩制國家と外交」

조가 나가사키[長崎] 창구에서의 중국과 네덜란드 관계, 쓰시마번[對馬藩]에서의 조선 관계, 사쓰마번[薩摩藩]에서의 류큐 관계, 마쓰마에번[松前藩]에서의 아이누 관계와 어떠한 시스템으로 기능되고 있었는가는 중요한 논점으로 미해결의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조선·류큐·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와 표류를 소재로 삼아 첫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해난구조의 나가사키 체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둘째는 이들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의 처리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幕閣에서는 어떠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가를 제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이러한 해난구조와 ‘4개의 창구’가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시기적으로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天明 연간 전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8세기 후반부터는 러시아의 남하와 더불어 이른바 구로후네[黒船]의 내항 그리고 이에 대한 막부의 다종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를 한정해 두겠다.

II. 해난구조의 나가사키 체제화

에도시대 이전인 중세의 해난구조는 통일된 국가정권으로 강력한 기본적 방침을 세운 정책이라고 할 수 없었고, 어디까지나 ‘임의적 대응책’이었으나¹⁰⁾ 근세

(1978, 『世界史認識における民族と國家-1978年度歴史學研究會大會報告』, 歴史學研究別冊特集, 青木書店)라는 논문에서 쓰시마[對馬]·사쓰마[薩摩]·마쓰마에[松前] 3곳을 구치[口]라는 표현으로 처음 발표하였고, 이후 「大君外交體制の確立」(1981, 『講座日本近世史』 2, 有斐閣)에서 나가사키[長崎]를 포함시켜 보다 확실하게 ‘4개의 창구’를 개념화시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해 주기 바람. 鶴田啓, 1992, 「近世日本の四つの口」,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アジアの中の日本史Ⅱ-外交と戦争』, 東京大學出版會.

에 들어와 안정된 통일정권의 성립 후에 외국 선박에 대한 일정의 해난구조 정책이 시행되었다. 물론, 당시의 해난구조라는 것은 이른바 '鎖國(=海禁)'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쇄국령(=寛永의 禁令)'¹¹⁾과도 관련지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해난사고에 대한 처리가 언제부터 왜 나가사키[長崎]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에도시대에 최초로 외국 선박의 해난구조에 관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행된 것은 일본 근세 외교 사료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通航一覽』의 「漂着并漂流扱方」에 보이는 다음의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료 1]

寛永 12 乙亥년부터 중국선[=唐船]이 다른 영지[他國]에 표착하더라도 조속히 나가사키[長崎]로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奉行 사카키바라 모토나오[榊原職直, 원문: 柳原飛驒守], 바바 토시시게[馬場利重, 원문: 馬場三郎左衛門]가 지배하고 있었다.¹²⁾

즉, 위의 밑줄에 보이는 바와 같이, 寛永 12년, 즉 1635년 중국 선박이 일본 내의 다른 영지에 표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사키에 인도하여 처리할 것을 정한 것이다. 1635년에 [사료 1]과 같은 지시에 대해서는 에도 막부의 명에 의해 저술된 『通航一覽』의 편자 하야시 후쿠사이[林復齋]도 “이 해에 중국선의 통상은 나가사키에서만 취급할 것을 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¹³⁾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료 1]의 밑줄 부분에서 조속히 나가사키로 인도해야 한다는 지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가사키를 무역시장으로 한정함과 동시

10) 申東珪, 2006, 앞의 글, 278쪽.

11) 山本博文, 1991, 「鎖國令の背景」, 『歴史評論』 493, 歴史科學協議會; 海老沢有道, 1957, 「寛永鎖國令」, 『歴史教育』 5~11, 歴史教育研究會, 참조.

12) 林復齋, 1912, 『通航一覽』 5, 國書刊行會, 251쪽, “寛永十二乙亥年より, 唐船他國江漂着有之とも, 早速長崎江可引渡由被仰付候. 御奉行柳原飛驒守, 馬場三郎左衛門支配.” 이하, 『通航一覽』에 대해서는 저자, 연도, 출판사를 생략하고 표기함.

13) 『通航一覽』 5, 251쪽, “此年唐船の通商, 長崎一方と定められしによりてなり.”

에 표착처리의 중심지로 정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崎陽群談』에도 “중국선(=唐船)이 처음에 지쿠젠[筑前]의 하카타[博多], 사쓰마[薩摩]의 아쿠네[阿久禰]에 표착했는데, 1635년(寬永 12)부터 나가사키 항구에 인도할 것이라는 취지가 내려져,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¹⁴⁾라는 기록이 있어 외국 선박의 표착선 처리 내지는 해난구조가 1635년부터 나가사키 중심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대외관계 통제책으로서 중국과 네덜란드와의 외교창구 일원화를 위해 나가사키로 한정된 것에 따른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 어떤 해난사고로 인해 목표로 했던 지점(=중국이나 네덜란드 선박의 목표지인 나가사키)에 도착하지 못한 표류·표착 등의 사고에 대한 구제책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가사키 중심의 해난구조에 대한 지시는 2년 뒤인 1637년에 류큐에 표착한 南蠻船을 처리할 때도 행해지고 있었다.

[자료 2]

㉑ 寬永 14년 8월에 일본에 건너오려던 남만선 1척이 류큐[琉球]에 표착하였다. 사쓰마번의 감시역[薩摩番]이 그것을 붙잡아 사쓰마에 연행해 온 것을 즉시 나가사키에 보냈다. ㉒ 바테렌[伴天連, 그리스도교 선교사 또는 사제] 6명과 일본인 3명이었다. 奉行이었던 바바 토시시게[馬場三郎左衛門, =馬場利重], 사카키바라 모토나오[榊原飛驒守, =榊原職直]가 조사를 행한 바, 일본에 邪宗을 전파하기 위해 몰래 숨어들어왔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이 때문에 나가사키에 있는 감옥에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때 규슈[九州]에 내려진 奉書가 이를 약속하고 있다.¹⁵⁾

14) 大岡清相 編, 中田易直・中村實 校訂, 1974, 『崎陽群談』, 近藤出版社, 56쪽. “唐船, はしめ筑前博多, 薩摩阿久禰等へ着岸し處, 寬永十二年より長崎湊江かかり渡り來り可申旨被仰出, 夫今以渡り來り事.”

15) 『通航一覽』 1, 289~290쪽. “寬永十四年八月に, 日本へ罷越し申候南蠻船一艘琉球へ漂着す, 薩摩番のもの捕之, さつまへ連越し候を, 早速長崎へ送られける, 伴天連六人日本人三人也, 奉行馬場三郎左衛門榊原飛驒守詮義有之候處, 日本に邪宗を弘むへきために, しのひて來るよし白狀す, 依之長崎の牢に入おかれ, 落着不分明なり, 此時九州中に出され候御奉書略之.” 이 외에 『通航一覽』에는 다음과

즉, 밑줄 ⑧에서 남만선 1척이 류큐에 표착했으나, 류큐에 재주하고 있던 사쓰마의 감시역이 붙잡아 사쓰마 경유로 나가사키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밑줄 ⑩로 볼 때, 나가사키로 송환된 자들은 奉行 2명의 조사로 그리스도교 선교사 또는 신자임이 발각되어 감옥에 투옥되고 있었다. 표착한 남만선은 단순한 표류선박이 아니라, 일본에 잠입하려던 선교사 일행으로서 결국은 처벌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그리스도교 금교정책, 다시 말하면 이른바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서 처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가사키에서의 외국 선박 처리가 일본 전국만이 아닌 류큐까지를 포함시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류큐에서의 외국 선박에 대한 처리문제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616년에 영국 선박이 류큐에서 포르투갈 선박과 교전 중에 표착하여 사쓰마번을 거쳐 나가사키로 그 선원들이 이송되고 있었던 사례¹⁶⁾를 본다면, 사쓰마번에 한해서는 1635년 이전부터 나가사키 중심의 이국선 대책 내지는 해난구조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었다고도 평가해도 문제는 없을 듯하다. 이는 1609년에 류큐가 사쓰마번의 시마즈씨[島津氏]에 의해 공격을 받아 속변과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그리스도교 금교라는 통제정책이 국내만이 아닌 외국에서까지도 적용되었을 정도로 일본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조치는 전술한 당시의 '쇄국' 정책 및 그리스도교 금교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서양 선박에 대한 통제책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변화되었다. 즉, 그리스도교 금교를 위한 서양 선박의 통제정책에서 중국 선박이나 조선 선박 및 타국의 선박들에 대한 해

같은 기록도 실려 있다. “寛永十四丁丑年, 琉球に南蠻船一艘漂着到, 則薩摩に來たし, それより長崎に送り獄に置く”, “寛永十四年丁丑年, 琉球に黒船一艘漂着す, 薩摩へ送り來, 薩摩より長崎へ送來, 則入籠被仰付候.” 荒川秀俊, 1962, 『日本漂流漂着史料』, 地人書館, 81~82쪽 참조.

16) 荒川秀俊, 1962, 위의 책, 75~76쪽[『리차드콕스 일기』의 1616년 5월 24·25·29 일조].

난구조 정책이 편입되어 버린 것이고, 그만큼 막부에게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보다 그리스도교 금제가 더 중대한 외교 현안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그리스도교에 대한 부정의 자세를 극대화시킨 것은 1637년에 발발한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¹⁷⁾이었다. 막부는 이 봉기를 진압하고, 봉기의 배경에 존재한 포르투갈에 대해서 1639년 외교를 단절하면서 그리스도교 금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따라서 외국 선박의 처리에 대한 막부의 관심은 ‘통제’라는 측면이 강했고, 이것의 발현이 바로 諸大名에게 내린 다음과 같은 奉書였다.

[자료 3]

- 一. ㉠ 그리스도교 宗門을 비록 금제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나라에서 몰래 伴天連을 보내고 있기에 앞으로 그들의 선박이 着岸하는 것을 정지시킨다.
- 一. ㉡ 領内の 각 포구에 항상 확실한 자를 두어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 異國船이 着岸했을 때는 수년 전부터 정해 왔던 것과 같이 빨리 선내의 인원수를 조사하여 육지로 못 올라오게 하고, 속히 나가사키에 보낼 것.
- 一. 자연히 의심스러운 자들이 배를 타고 왔거나 또는 몰래 그 배에 승선한 자들을 상륙시키는 무리가 있다면 신고하고, 신고한 자의 신분지위에 따라 반드시 포상을 내려 주어야만 한다.¹⁸⁾

17) 煎本増夫, 1980, 『島原の亂(歴史新書 101)』, 教育社; 申東珪, 2007, 「근세 일본 ‘島原·天草의 난’에 보이는 天草四郎의 성격화와 그 영향」, 『日本思想』 13, 한국일본사상학회; 申東珪, 2008, 「근세 일본의 ‘島原·天草의 난’으로 본 江戸幕府와 네덜란드의 共助關係」, 『東洋史學研究』 105, 동양사학회, 참조.

18) 高柳眞三·石井良助 編, 1989, 『御触書寛保集成』, 岩波書店, 629쪽(1228번, 寛永十六卯年七月). “一. きりしたんの宗門雖爲御制禁, 今以從彼國密々伴天連を差渡二付て, 今度かれかた船着岸之儀御停止事. 一. 領内浦々ニ常々慥成者を付置, 不審有之船來にをひてハ, 入念可相改之, 自然異國船着岸之時は, 從先年如御定, 早船中之人數を改め, 陸地え不上して, 早速長崎え可送遣之事. 一. 自然不審なる者船にの七來, 又ハ密々其船中之者を陸へ上之輩あらハ, 可申出之, 隨訴人之高下, 急度御褒美可被下之…….”

자료 3의 밑줄 ㉔와 ㉕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령이 내려진 것은 바테렌, 즉 선교사 등의 밀입국 방지를 위해 포르투갈 선박에 대해 내항을 금지시키고, 각 포구에는 감시자를 두어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여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밑줄 ㉔에서는 선내의 인원수를 조사하여 수년 전부터 정해 왔다고 하는 나가사키로의 호송을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술한 자료 1과 『崎陽群談』에 보이는 1635년의 외국 선박 처리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외국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상륙을 금지시키고 무조건 나가사키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밑줄 ㉔의 뒷부분에는 상륙을 도외준 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1635년의 시점(자료 1)에서 중국 선박은 나가사키로 보내라는 지시였고, 1637년의 시점(자료 2)에서는 바테렌의 밀입국이 발각되는 사건과 함께 그해 말에는 그리스도교의 봉기인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으로 인해 자료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관련 선박에 대해서는 상륙조차 금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나가사키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1640년 6월 3일자의 서장을 보내면서 중국 선박과 포르투갈 선박의 해난구조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다.

[자료 4]

㉔ 1640년(寛永 17) 경진 6월 3일에 南蠻 카레우타선이 도래했을 때에는 조속히 斬罪에 처해야만 한다는 취지의 서장 안에 ㉕ 카레우타 외에 唐船 및 이국선이 着岸(표착)했을 때에는 이전에 지시한 바와 같이 빨리 선내의 인수를 파악하여 육지에 상륙시키고, 나가사키로 호송해야만 할 것.¹⁹⁾

19) 『通航一覽』 8, 443쪽. “寛永十七 庚辰年六月三日, 南蛮かれうた船渡來のとき, 速に斬罪に行ふへき旨御書付の内, かれうた外, 唐船並異國船着岸之時は, 此以前御仕置之如, 早く船中之人數を改め, 陸地へ上せ, 長崎へ可送遣之事.”

즉, 사료 4의 밑줄 ㉔에 의하면, 남만선이 내항해 왔을 때에는 斬罪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밑줄 ㉕에서와 같이 중국선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異國船이 왔을 때에는 조속히 인수를 파악해 상륙시켜서 나가사키로 호송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명확히 그리스도교 관련 선박과 이외의 외국 선박의 처리에 대한 차별성을 명시한 것으로 해난구조의 기본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641년에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사료 5]

㉔ 寛永 18년 신사년, 중국선과 네덜란드 선박 및 조선 선박 모두 어느 지역에 표착하더라도 그곳에서 배를 이끌어 정박시킨 뒤에 나가사키 부교[奉行]에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㉕ 그 외의 여러 나라의 선박이나 사람이 어디에라도 표착할 때에는 이것을 보고해야 한다.²⁰⁾

전술한 사료 4에서는 그리스도교로 의심되는 참죄의 대상인 외국 선박(= 특히, 포르투갈 선인 南蠻船)에 대해서는 그 승무원들을 상륙시키지도 못하게 하였으나, 사료 5의 밑줄 ㉔에서는 중국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 및 조선 선박에 대해서는 나가사키로 호송시켜 구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중국과 네덜란드가 ‘通商國’, 조선은 ‘通信國’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해난구조와 본국송환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즉, 사료 4의 시점인 1639년 포르투갈과의 단교 이래 외국 선박에 대한 처리는 그리스도교 국가(특히, 포르투갈)와 그 이외의 국가들로 양분되며, 이른바 해난구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로 인해 일본에 폐해를 끼치지 않는 국가들에게 한정된 것으로 변화되었다. 즉, 해난구조의 대상은 중국, 조선, 네덜란드와 기타 그리스도교와 관계없는 국가들이었던 것이다. 또한 밑줄 ㉕에서는 중국·네덜란드·조선 이외의 이국선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어

20) 『通航一覽』 8, 443쪽, “寛永十八辛巳年, 唐船, 阿蘭陀船並朝鮮船共に何國へ令漂着とも, 其處より挽船を相添, 長崎御奉行へ可送届旨被仰出之, 其他諸外國之船並人とも, 何方へ漂着之節も可准之.”

디에 표착하더라도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역시 나가사키 체제 속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후 1646년 10월 24일에는 전국의 다이묘[大名]들에게 이국선이 내항해 왔을 때에 처리방침을 覺書로서 로쥬[老中]였던 이즈[伊豆]의 마쓰다이라 노부츠나[松平信綱], 쓰시마의 아베 시게쓰구[阿部重次]로 하여금 전달케 하였다.²¹⁾ 여기서 말하는 각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외국 선박 표착시에 나가사키에 보고하거나, 나가사키로 호송시키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부터 조선이나, 중국인 그 이외 국가의 표류민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나가사키로 호송시켜 조사를 받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외국 선박에 대한 조치는 1671년 7월에도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었다.

[사료6]

覺, 中國船(=唐船)으로 보이는 선박이 에도[江戸]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각 포구에서 우연히 풍파에 만났을 때는 그 해당 포구에서 선박을 내어 그 중국 선박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성을 들이고 향후에 어떠한 때라도 그 취지를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²²⁾

위의 [사료 6]의 밑줄 부분은 일본에 무역을 위해 도항해 온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정이지만, 각 포구에서는 중국 선박이 풍파로 표착하였을 경우, 파손되지 않도록 구조해야 하며,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당시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남아 있다. 1680년 5월에는 효가노쿠니[日向國]에 파탄(パタン, 波丹) 사람 18명이 표착해 왔는데, 우선은 그

21) 『通航一覽』 8, 443쪽. “異國船來朝之時御仕置之覺書, 右之家來殿中江召寄, 伊豆, 對馬被渡之.”

22) 高柳眞三・石井良助 編, 1989, 앞의 책, 1142쪽(2402번, 寛文十一亥年七月). “覺, 唐船作之御船, 江戸より長崎までの浦々にて, 自然風波之節ハ, 其浦より船を出し, 御船不破損様ニ精を入へし. 向後何時によらず, 此趣を相守可入念者也.”

들이 그리스도 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미에[踏繪]²³⁾를 던지자 모두 웃었기 때문에(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하여 나가사키에 보냈으나, 나가사키에서 18명 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12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6명은 그해 9월 에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네덜란드 선박에 의탁시켜 바타비아로 보내 귀국시키고 있었다.²⁴⁾ 이 경우에도 귀국을 시켜 주는 해난구조 조치는 대상자가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러한 조치는 역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외국 선박에 대한 처리방침은 1686년에 “領内の 바다와 강에 바람에 의해 흘러 들어온 異國船이 보일 때에는 신속히 番船[감시선]을 붙여 나가사키 부교에게 빨리 알릴 것이며, 상담을 해야만 할 것”²⁵⁾이라고 하여 당시 그리스도교의 통제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에도 『通航一覽』 등의 사료에 의하면, 나가사키 중심의 외국 선박에 대한 표착처리나 해난구조의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다. 다만, 1749년 8월에 일본 국내의 선장과 선원들 대한 觸書を 보면, “타국의 선박과 만났을 때, 이상한 점이 있다면 허실을 가리지 말고 보고할 것. …… 알 수 없는 선박을 발견했다면, 밤낮을 가리지 말고 가능한 한 도와주도록 해야 할 것”²⁶⁾이라는 지시를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18세기 중엽에 들어와서 막부의 대외정책도 안정이 되었고, 대외관계의 창구로서 ‘4개의 창구’도 체계적으

23) 후미에[踏繪]는 에후미[繪踏]라고도 하는데,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한 그리스도교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 또는 마리아 상을 새긴 나무판이나 금속판을 밟고 다니게 한 것을 말한다. 한편, 그림을 밟을 때 이용되는 聖畫像도 후미에라고 한다.

24) 田邊茂啓, 1973, 『長崎實錄大成(正編)』, 長崎文獻社, 289~290쪽.

25) 『通航一覽』 8, 443~444쪽, “覺, 領内之海江, 異國船風にはなたれ見え來り候は, 早々番船を附ならへ, 長崎奉行江早速注進仕, 可致相談事. 右之通, 急度事かましく在所へ申遣はすに不及事也.”

26) 住田正一 編, 1969, 『海事史料叢書』 1, 成山堂書店, 166쪽, “他國船ニ出合ノ節珍敷取沙汰承候ハ、不亂虛實可致注進事. …… 難澁ノ船ト見掛候ハ、不限晝夜、隨分助來候様可致事.”

로 정비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기에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가 인도주의적인 성격으로 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아무튼 막부의 해난구조의 나가사키 체제화라는 기본방침은 18세기 후반인 텐메이[天明] 연간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의 남하 그리고 이와 동반된 구로후네[黒船]의 내항 이전까지는 계속되었다. 막부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1791년 외국 선박이 표착한 지역의 영주에게 적대적인 전조가 보일 때에는 격침시켜도 좋다는 임의적 사위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변화되는데, 1825년에는 이른바 '異國船打拂令'을 내려 외국 선박에 대한 완전한 추방으로 인해 1853년의 페리 내항이라는 강제 개항의 서막을 열게 되는 것이다.²⁷⁾

Ⅲ. 동아시아 선박의 해난구조

1_ 중국 선박의 해난구조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 전쟁 이후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회복과 日·明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日·明 강화가 실패로 끝나 중국 선박의 일본 내항을 금지했어야 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특히 중국산 생사의 수입은 일본 국내의 상황으로 볼 때 필수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막부가 국가주권자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중국 선박의 내항을 용인한다는 苦肉之策,²⁸⁾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배제하지만, 중국 상인들의 내항은 용인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모순된 국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아라노 야

27) 申東珪, 2006, 앞의 글, 276~277쪽 참조.

28)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90~91쪽.

스노리[荒野泰典]는 “日・明 강화교섭기에 표류민의 송환은 외교관계를 전제 한 형태를 취했다고 추정되는데 반하여 1630년대 이후는 ‘통상’ 관계를 전제로 한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²⁹⁾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필자 역시 찬성하는 바이다.

아무튼 중국 선박의 내항 승인은 무역과 관련된 국내문제의 대외적 해결이라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당시 중국 선박을 이용한 선교사들의 밀입국도 그리스도교 금교정책과 결부되어 외교적 현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의 사료 1에서 살펴보았듯이 1635년부터 중국선(=唐船)이 다른 領地에 표착하더라도 조속히 나가사키로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唐船이라고 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通航一覽』附錄 권15의 「唐船條」의 기사에는 중국 선박의 내항에 대한 처리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료 7]

㉑ 1611년(慶長 16) 11월 28일에 明의 상인이 원하여 중국 선박(=唐船)이 어떤 포구에 도착하더라도 나가사키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朱印狀을 내려주었다. ㉒ 1616년(元和 2) 병진 6월에 시마즈[島津]의 少將 이에히사[家久]가 明의 상인에게 서장을 보내 지금의 히라도[平戸]에 있는 한 상관을 나가사키에 두고 異國 통상의 장소로 삼기 때문에, 그 商船이 바람에 따라 사쓰마[薩摩]에 왔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 주었다.³⁰⁾

위의 밑줄 ㉑에서는 1611년 11월 28일부터 明의 상인이 원하여 어떤 포구에 도착하더라도 나가사키에서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밑줄 ㉒에서

29)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92쪽.

30) 『通航一覽』 8, 459쪽, “慶長 十六辛亥年十一月廿八日, 明商の願ひによて, 唐船いつれの浦に着岸すとも, 長崎に往て商賣すへき旨之御朱印を賜ふ. 元和二丙辰年六月, 島津少將家久, 明商に書を與へ, 方今官より平戸一官を長崎に置いて, 異國通商の所とせらるゝにより, 其商船風順によて薩摩に來るとも, しはらくも泊すへからさる旨を諭す.”

확인되듯이 1616년 6월부터는 나가사키만이 통상의 장소임을 알려 이 외의 지역에(그곳이 사쓰마 지역이라도) 잠시라도 머무르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가 1616년 8월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국 선박이 어디에 도착하더라도 船主에 따라서는 그 장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奉書를 내리기도 했지만,³¹⁾ 결국 전술한 1635년에 들어와 최종적으로 내항 항구를 나가사키 항구로만 한정하고 다른 지역에 표착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부터 호송시켜야만 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³²⁾

이러한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정이 보다 상세한 해난구조책으로 정해지는 것은 1668년의 일이었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의 明·淸 교체라는 혼란도 淸의 南明 정부 흡수로 안정 추세로 들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으며, 일본의 중국과의 무역체제로 안정적으로 이행할 시기였기 때문인데, 1668년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8]

- 一. ㉠ 중국 선박이 다른 항구에 표착하여 닻을 내렸을 때는 그곳의 영주가 경호를 붙여 파견해야 한다. 이에 따라 與力 2인, 步行者 1인, 同心 1인, 町の 하급관리 1인, 通事를 붙여 파견하고 送船에 표착한 중국인을 태우거나 또는 중국 선박에도 일본인을 태워 이동할 때에는 일본인과 함께 조사하고, 표착한 중국인을 태운 선박도 선내의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그 이후에 ㉡ 경호한 자 또는 숙박지의 주인 등에게 어음을 발행한다. 그 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상과 마찬가지로 선내의 화물 등을 조사한다.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는 중국인들을 남김없이 奉行所에 불러들여 通事を 통하여 표착의 상황을 심문해야 한다.
- 一. ㉢ 표착선박에 대해서 예인선을 붙일 때에는 중국인 쪽에서 예인선의 대금을 지불하게 한다.³³⁾

31) 『通航一覽』 8, 459쪽, “唐船之儀は何方江着岸共, 船主次第其所に於而, 可賣買旨被仰出候.”

32) 『通航一覽』 8, 459쪽, “寛永十二乙亥年より, 入津を長崎一方に定め, 他國に漂着すとも, 彼地に護送すへき旨令せらる.”

사료 8의 밑줄 ㉔에 의하면, 중국 선박이 나가사키가 아닌 다른 항구에 표착했을 경우 경호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與力・歩行者・同心 등과 함께 통사를 파견해 이송토록 하고, 반드시 중국 선박과 선원을 비롯해 파견된 일본인들 모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즉, 1635년 나가사키에서만 무역으로 한정된 이후 다른 지역에 표착한 중국 선박이 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향후 해난구조 처리를 이전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밑줄 ㉕부분에서는 평상시대로 표착선박에 대한 화물 조사와 중국 선원들에 대한 나가사키 奉行所에서의 조사를 지시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경호원과 표착선박의 승무원들이 머물렀던 숙박지의 주인에게 증문(=手形)을 발행하고 있었다는 점, 밑줄 ㉖에서는 표착선박에 대한 예인 비용을 표착선박에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문을 발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의의 해난사고자에 대한 구조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관례가 정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표착선박에게 부담시키는 관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1668년 사료 8의 표착 중국선의 처리규정이 내려진 직후인 1671년 2월 9일에 타이완의 선박이 고토[五島]에 표착했을 당시, 3월 2일자로 나가사키로 이송했던 경호원들에게 “선박 내에서 중국인으로부터는 무엇이랄도 받아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매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쪽에서 중국인에게 쌀・물・쌀감・소금 등을 포함해 조금이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³⁴⁾는 지시사항

33) 『通航一覽』 5, 251쪽, “一、唐船他之湊江致漂着、碇を入候時は、共所の領主より警固差添可被送越候、依之、與力二人、歩行者一人、同心一人、町使の者一人、通事相添爲改遣之、送船に質唐人を乗せ、又唐船にも日本人乗移參候時分、日本人共改之、質唐人乗候船も、船中并人共不殘改之、其以後警固之者又は宿主等一紙手形仕候、其上にて別條無之候得は、常之通船中荷物等改之候、諸事改仕舞候て以後、唐人不殘奉行所へ召寄、通事を以漂着之様子相尋候事、一、漂着般に引船相添參候節は、唐人かたより引船之賃銀遣之事。”

34) 『通航一覽』 5, 439쪽, “一、東寧出船一艘二月九日に、五島之内荒川と申所江參り、碇をおろし申候に付、我等警固被申付候、船中にて唐人方より何にてももらひ不申候、一紙半錢之物にでも買取不申候、又我等方より唐人飯米水薪塩之外、一紙半錢之物も賣不申候、若相違之儀於有之は、我等儀は不及申、宿森永長左衛

이 내려져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비용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해난구조시에 중국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이익의 편취를 금지함과 동시에 거래금지를 함으로써,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조를 규정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나가사키에 내항하는 중국 선박의 누케니[拔荷, 밀무역]가 흥행하자 1714년 나가사키 봉행 주변 大名들에게 중국 선박에 대한 악행의 단속과 海防 등을 명하였고, 이듬해인 1715년에는 매년 도항하는 중국 선박의 수를 제한한 통제정책을 실시했다.³⁵⁾ 아라노 야스노리는 이 시기부터 일본과 淸의 관계는 양국의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레벨의 무역=‘통상’ 관계가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⁶⁾

한편, 이때까지의 규정들에 구조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다지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었는데, 1766년에는 비용부담의 명확한 원칙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해난구조가 보다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9]

이전부터 중국선이 표착했을 때에는 그곳의 御料(막부 직할지)나 私領(다이묘 등의 領地)에서 나가사키 관청에 보내고, ④ 위의 표착한 중국선을 나가사키에 보내는 사이에 들었던 중국인의 양식·소금·된장·팥감 등 그 외의 비용 그리고 예인선의 대금은 나가사키에 도착한 이후 지불해 왔다. 하지만, ⑤ 破船이나 難船으로 화물을 바다에서 소실하거나 또는 의사자들이 있을 때에는 심각한 재난이기 때문에 나가사키 관청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상매 등을 언급하고 있기에 파손

門共に如何様之曲事にも可被仰付候、爲後日如此御座候。以上。”

35) 『通航一覽』 8, 460쪽, “正徳四年甲午年五月廿一日, 近年唐船定路を替, 密賣狼籍に及ふにより, 長崎奉行及び長崎近傍の諸領主に, 惡船斬獲かつ海防等の事を令せられ, 同月松平(島津), 中將吉貴等, 西國・四國・中國の諸大名にも其事を命せらる. 同五乙未年五月, 渡來の船其數を定め, 割符を與へられしかとも, 猶嚴に沙汰すへき旨仰出さる.”

36)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91쪽.

된 화물이 있는 難船이나 破船 등에 대해서는 화물을 인양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나가사키 奉行이 이를 받아내고, 그 나머지의 제비용은 해당 포구의 관청에서 지불한다. 물론, ㉔ 위의 비용을 적게 받더라도 허술한 취급이 없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의 표착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대로 제 비용을 나가사키 奉行所에서 조사한 후에 (중국선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㉕ 위의 취지는 규슈[九州] 각 지역에 있는 직할지의 代官과 私領의 領主·地頭에게 지시해야 한다.³⁷⁾

사료 9를 보면, 이전대로 표착 중국 선박의 해난구조가 나가사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밑줄 ㉔에서는 표착선을 나가사키로 이송하는 사이에 들었던 비용, 즉 중국인에게 제공되는 양식·소금·된장·팥감·예인선의 비용은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중국인이 지불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전부터 구조비용에 대한 표착 당사자 부담의 원칙이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다만, 밑줄 ㉕에서는 破船이나 難船으로 화물의 소실과 의사자가 발생한 심각한 재난이었을 경우에 나가사키 奉行이 비용을 받아내지만, 그 외의 비용은 해당 구조 지역에서 전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난구조 비용은 奉行所의 조사를 거쳐 중국 선박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밑줄 ㉔),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의 중국 표착선에 대한 구조비용은 증가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³⁸⁾ 한편, 이렇게 상세한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은 밑줄 ㉕에서 알 수 있듯이 규슈의 각 지역에 하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중국 선박 해난구

37) 高柳眞三・石井良助 編, 1989, 앞의 책, 848쪽(2926번, 明和三戌年二月), “從前々唐船漂着有之節は, 其所之御料私領より長崎表え引送, 右漂着唐船長崎え引送候迄之間, 唐人糧米鹽味噌薪其外諸入用引船賃等, 長崎より相渡來候由に候得共, 破船難船にて荷物海失或溺死等有之節は, 重き災難事に付, 於長崎表も爲手當定之外商賣等も申付候事に付, 破損荷物海失有之程之難船破船等は, 取揚荷物に懸り候入用之分計, 長崎奉行所より請取之, 其餘之諸入用は其浦々所役に可致候, 勿論右入用請取方相減候連, 匱略之取扱無之様可被申付候. 尤一通り之漂着船は是迄之通, 諸入用長崎奉行所にて吟味之上, 相當に相渡にて可有之候. 右之趣, 九州筋國々御料は御代官, 私領は領主, 地頭より可申渡候.”

38) 金指正三, 1956, 앞의 책, 271~283쪽;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94쪽 참조.

조의 기본법칙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_ 조선 선박의 해난구조

조선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는 중세(조선전기) 때부터도 조선 정부로부터의 '受職'과 세전선 증액의 수단으로서도 이용되어 왔으며, 또한 이 경우에 조선관계에 대한 외교창구 역할을 하고 있던 쓰시마를 경유하여 송환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쓰시마 측이 표류민을 인솔해 오는 경우, 조선국왕에 대한 복속의례보다는 그들의 무역적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접대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표류민 송환에 대한 사의를 표했던 것이다.³⁹⁾ 근세에 들어와서도 쓰시마 번[對馬藩] 중심으로 표류민의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가장 빠른 사례는 1606년으로 보인다.⁴⁰⁾ 이후, 1607·1623·1625년에도 조선 표류민을 송환하고 있는데, 1623년의 경우는 14명, 1625년의 경우는 3명이라는 인원수만 밝혀지고 있을 뿐, 모두 출신지와 표착지가 불명확하여,⁴¹⁾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직후인 17세기 초두 단계에서는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사이에 체계적인 표류민 송환체제나 해난구조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질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조선 선박에 대한 구조와 송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1627년의 일로 전라도 홍양현의 표류민 20여 명이 쓰시마번을 통해 송환되었는데, 이때부터 使送船을 별도로 만들어 漂人領來差倭로 하여금 송환케 하는 방식이 시작되었다.⁴²⁾ 이것이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로서 아라노 야스노리에 의하면, 조선에 표착된 일본 선박의 경우, 종씨의 文引이 없으면 왜적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나, 1627년 7월에 표착한 일본 선박부터는 부산 왜관의 소씨

39) 李薰, 2000, 앞의 책, 51~54쪽.

40)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81쪽; 池內敏, 1998, 앞의 책, 부록「近世朝鮮人の日本漂着年表」참조.

41) 池內敏, 1998, 앞의 책, 부록「近世朝鮮人の日本漂着年表」참조.

42)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81쪽; 李薰, 2000, 앞의 책, 129쪽.

[宗氏]에게 인도하여 보호·송환하고 있었기 때문에⁴³⁾ 1627년을 경계로 조일 간에 정식의 표류민 송환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27년 이후 일본에 표착한 조선 선박의 해난구조는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었을까. 우선, 『通航一覽』附錄 권15의 「朝鮮船」條의 기사에는 1636년에 시행된 조선 선박에 대한 상세한 처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사료 10]

1636년(寬永 13) 병자년 4월, 올해 가을에 통신사가 내빙해 오에 따라 그 선박이 만약에 풍파의 어려움에 조우해 표착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라도 구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다이로[大老]와 로쥬[老中]로부터 西國과 中國의 諸大名에게 奉書로서 내려졌다.⁴⁴⁾

위의 사료 밑줄 부분에 의하면, 1636년에 ‘通信使’라는 정식 명칭으로서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사절단에 대한 해난사고를 대비해, 만약에 일본 국내의 어느 지역에 표착하더라도 구호할 것을 막부 명의인 奉書로서 여러 다이묘들에게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선박이 아닌 사절단의 선박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려는 막부의 지시사항이기는 하지만, 해난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역시 이전부터 통상적인 전례, 즉 조선 선박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조선 선박의 표착 때에는 나가사키에 보내, 그곳으로부터 쓰시마로 보내 귀국시킨다”⁴⁵⁾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이 奉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81쪽.

44) 『通航一覽』 8, 465쪽. “寬永十三丙子年四月, ことし秋信使來聘により, かの船もし風波の難に遭ひ漂着あらは, 何地にても救護あるへき旨, 西國, 中國の諸大名に, 大老, 老中より奉書をもてこれを達す.”

45) 『通航一覽』 8, 465쪽. “往年より御定にて, 朝鮮船漂着の時は長崎に送り, 同所より對馬に渡して歸國せしむ.”

[사료 11]

㉓ 1636년(寬永 13) 11월 10일, 오늘 조선인이 내조하였다.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 요시나리[義成]가 그들을 동반하였다. 이것은 바야흐로 4월에 시작된 일로 西國과 中國의 여러 다이묘들에게 奉書를 내렸는데, 그 대략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올해 8월에 조선국으로부터 信使가 내조한다. 그에 대해 領内에서 대접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행하도록 하고, 내조의 인수를 해아려 오늘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가 먼저 앞서서 출발하였다. 차려내는 음식의 식단은 별지에 기록하여 보냈다. ㉔ 자연히 그들의 선박은 風波의 어려움을 만나 정해진 이외의 곳에 着岸시키더라도 닻줄과 물·뿔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황공하여 삼가 아뢴.”⁴⁶⁾

위의 밑줄 ㉓부분으로부터 사료 10에서 말한 통신사의 내일을 대비해 西國과 中國 지역의 다이묘들에게 내린 奉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밑줄 ㉔로 부터는 통신사들이 내조할 때 자연히 그들의 선박이 風波의 어려움에 조우한 다든지, 목표로 했던 곳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닻줄과 물·뿔감 등의 필요한 물건에 대한 구호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奉書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통신사가 일본 국내의 어느 지역에서 해난사고를 당하더라도 우선은 조속히 구조에 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비록 이것이 통신사라는 공식적인 외교의례에 준한 것이기는 하지만, ‘通信國’으로서 해난구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일반 표류민이나 조선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던 해난구조 방법, 즉 나가사키로 보내 쓰시마를 경유해 조선으로 귀국시키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가네자시 쇼조와 아라노 야스노리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선박

46) 『通航一覽』 1, 447~448쪽, “寬永十三年十一月十日, 今日朝鮮人來朝す. 宗對馬守義成相伴之, 此儀當四月始より有御沙汰, 西國中國之諸大名江奉書出, 大略其趣者, …… 當年八月從朝鮮國信使來朝候, 就夫於領内萬馳走之義, 可爲如去未歲候. 來朝之人數書立, 今日宗對馬守先達而可差越候. 膳部之獻立別紙に記之遣之候. 自然彼船遭風波之難相定泊之外, 何れ之地江令着岸候共, 其所之船出之, 綱碇水薪等無滯様に, 前廉可申付候. 恐々謹言.”

의 경우 두 가지의 송환방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⁴⁷⁾ 첫째로 쓰시마번에 표착했을 때는 막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표류민을 나가사키로 송환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한 뒤 귀국시키는 방법, 둘째로 일본 본토와 에조지[蝦夷地]에 표착했을 때에는 나가사키로 이송해 조사 뒤에 쓰시마번 경유로 귀국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가 거의 지켜지기는 했지만, 1770년의 경우와 같이 나가사키가 아닌 오사카[大坂]에서 직접 쓰시마 경유로 송환시키는 사례도 있었다.⁴⁸⁾ 구체적인 표류민 송환절차와 송환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라노 야스노리를 비롯한 선학들의 연구⁴⁹⁾가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조선 선박의 해난 구조라는 측면에서 규정을 고찰해 본다면, 1784년에 시행한 다음의 규정을 제외시킬 수 없기에 검토해 보겠다.

[사료 12]

1784년(天明 4) 갑진년 9월 21일

㉑ 조선인이 각 포구에 표착했다면, 지금까지는 그곳의 領主가 나가사키 奉行에게 보고하여 답서를 기다리고, 나가사키에 보냈는데, 이후에 표착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나가사키 奉行에게 보고한 후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연이어 (조선인을) 나가사키에 보낸다. 그때에 쓰키반[月番] 로쥬[老中]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㉒ 위의 나가사키 奉行所에 보낼 때에 여행 중이거나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을 사정이 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때에는 가마에 묶어 보내되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 ㉓ 위의 취지를 영지 내의 각 포구에 알리고 1만 석 이상의 大名들에게 두루 이해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

9월 21일⁵⁰⁾

47) 金指正三, 1956, 앞의 책, 258쪽;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82~84쪽.

48) 『通航一覽』 4, 18~19쪽, 「明和七庚寅年五月, 駿州 沖津驛朝鮮人漂着一件」.

49) 각주 6 참조.

50) 『通航一覽』 8, 465쪽, “天明四年甲辰年九月廿二日. 朝鮮人浦々江漂着致し候得は, 是迄は其所之領主より, 長崎奉行江申遣返答相待, 長崎江送り遣し候處, 以來は漂着いたし候は, 早速長崎奉行江申遣返答不相待, 引續長崎表江送遣候. 其節月番之老中江も可相届候. 右長崎表江送設遣し候節, 旅中等に而萬一不法成儀も有之, 手に餘り候は、, 駕籠江締り等附, 送遣し候而不苦候. 右之趣, 領分之

위 사료 12의 밑줄 ㉠에 의하면, 1784년 9월부터는 조선인이 표착했을 때에 이전과는 달리 나가사키에 보고한 후 답장이 없어도 즉시 나가사키로 이송시키고, 이를 막부의 쓰키반로쥬[月番老中; 1달마다 교대하는 당번 老中]에게도 보고할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즉, 불의의 사고를 당한 조선 선박의 조선인 구조와 송환을 위해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밑줄 ㉡에서는 나가사키 奉行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거나 처리가 애매할 때에는 우선 고통스럽지 않게 가마에 묶어서 나가사키에 보낼 것이며, 밑줄 ㉢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1만 석 이상의 大名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일본의 조선 선박이나 표류민에 대한 해난구조와 송환은 거의 국가권력의 전제하에 보호·송환·귀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동아시아 제 국가들의 이른바 ‘표류민 송환체제’라는 것은 국가권력과 국제관계라는 상호 간의 외교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증⁵¹⁾의 재확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막부에 의해 ‘通信國’으로 자리 매김 되어 있는 조선 선박의 해난구조는 권력강화와 정당성의 발현 그리고 국가권력의 상징으로서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3_ 류큐 선박의 해난구조

류큐[琉球] 선박의 해난사고에 대한 구조 및 표착사건 처리는 “옛날부터 류큐 선박이 표착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표착했다고 하더라도 시마즈씨[島津氏]에게 인도하여 사쓰마에서 귀국시키는 제도가 있었다”⁵²⁾라는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쓰마번을 경유한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通航一覽』附錄 권15의 「琉球船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内浦々有之候萬石以上之面々,兼而相心得居候様可被達置候. 九月廿二日.”

51) 申東珪,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7·18 합집호, 강원사학회.

52) 『通航一覽』 1, 282쪽, “昔年より琉球船漂着の時は, 何國にても島津氏に引渡し, 薩摩より歸國せしむる御制度なり.”

[자료 13]

본방(=일본의) 선박이 류큐국[琉球國]에 표착하면, 사쓰마국[薩摩國]으로 보내 그곳에서 보내 귀국토록 하고, 그 나라[=류큐]의 선박이 본방[=일본]에 표착해 왔을 때에는 나가사키에 보내어 나가사키에서 사쓰마국으로 넘기는 규정이었다.⁵³⁾

즉, 자료 13의 밑줄로부터 류큐 선박이 일본에 표착했을 경우나 일본 선박이 류큐에 표착했을 때에는 사쓰마를 중개지로 하여 상호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1609년 사쓰마번의 시마즈씨[島津氏]가 류큐를 침공하여 일종의 屬藩으로 삼기 이전부터 지리적 관계에 의한 관례적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에도 막부 성립 후에는 류큐를 ‘異國’=‘通信國’으로 인식해 대외적으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시마즈씨에 의한 류큐지배와 명에 의한 류큐 책봉이라는 상반된 양속관계를 용인한다는 특수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한 류큐 선박이나 표류민에 대한 취급은 이러한 류큐의 지위를 반영한 것이었다.⁵⁴⁾

하지만, 류큐의 경우 류큐 선박뿐만이 아니라, 시마즈씨의 屬藩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류큐에 표착한 외국 선박의 처리도 일본의 대외통제책 또는 연안경비 및 그리스도교 금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류큐를 외국이라는 입장에서 파악해 류큐에 표착한 외국인의 경우는 논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류큐 선박의 일본 국내 표착에 관련된 사항만을 살펴보겠다.

류큐 선박의 일본 표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명확한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근세 이전부터 규슈 지역과 밀접한 관계

53) 『通航一覽』 8, 465쪽, “本邦の船, 琉球國に漂流すれば, 薩摩國に送りて, それより歸朝し, 彼國の船, 本邦に漂着の時には, 長崎に送り, 同所より薩摩國に渡せる御規定なり.” 이외에 상기의 기록 바로 뒤에는 다른 사료를 인용해 “將軍家よりの御掟にて, 日本船琉球へ漂着すれば, 薩摩へ送る事也(『大島筆記』). 琉球國の船, 日本地に漂流の時には, 其所より長崎へ送届て, 長崎より薩摩へ渡して歸國す”라고 하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54)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85~86쪽.

에 있던 류큐 선박의 표착이 있었다는 것은 전술한 “옛날부터 류큐 선박이 표착했을 때는 ……”이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通航一覽』 권24의 「琉球國部」 24 「漂着條」에는 1705년(寶永 2)부터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⁵⁵⁾ 17세기에 들어와 해난구조 내지는 표착사례가 안 보이는 것은 아마도 1611년부터 시마즈 씨의 증문을 소지하지 않은 일본 상인들의 류큐도항 그리고 류큐에서 사쓰마 번 이외의 지역으로 상선을 파견하는 것을 금지⁵⁶⁾시킴으로써 도항 횡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막번체제가 확립기에 들어서는 1630년대부터 1680년대에 걸쳐 류큐 선박에 대한 표류·표착에 대한 대책은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한 연안방비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⁵⁷⁾ 해난구조라는 측면에서의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우선, 전술한 『通航一覽』의 기록을 토대로 해난구조 사실이나 송환 루트를 확인할 수 있는 1756년과 1762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14]

㉔ 1756년(寶曆 6) 병자년 6월 26일에 히젠노쿠니[肥前國] 고토[五島]에 표착했다. 따라서 나가사키에 보냈는데, 奉行이 동 지역에 있던 시마즈씨[島津氏] 기키야쿠[聞役]에게 인도했다. ㉕ 1662년(寶曆 12) 임오년 4월 22일에 사쓰마노쿠니[薩摩國]에 속한 오시마[大島]에 표착했다. 그곳에서 사쓰마[薩摩]에 이르러 扶助를 해 주어 귀국시켰다.⁵⁸⁾

55) 『通航一覽』 1, 282쪽. “寶永二乙酉年秋, 琉球人駿河國清水浦に漂着す.”

56) 那覇市企劃部市史編集室 編, 1966, 『那覇市史(資料篇第1卷2)』, 那覇市企劃部市史編集室, 456쪽.

57) 渡邊美季, 2004, 「漂流・漂着から見る近世琉球-中國と日本の狭間で」, 社會制度の持続性チーム研究會報告, 元興寺文化財研究所, 3쪽; 渡邊美季, 2002, 「近世琉球における對「異國船漂着」體制-中國人・朝鮮人・出所不明の異國人の漂着に備えて」, 琉球王國評定所文書編集委員會編, 『琉球王國評定所文書補遺別卷』, 浦添市教育委員會, 참조.

58) 『通航一覽』 1, 282쪽, “寶曆六丙子年六月二十六日, 肥前國五島に漂着す. よて長崎に挽送り, 奉行より同所詰島津氏聞役に引渡す. 同十二壬午年四月二十二日, 薩摩國附大島に漂着, それより薩摩にいたり, 扶助ありて歸國せしむ.”

[사료 15]

1745년(延享 2) 을축년 여름에 류큐인[琉球人]이 난풍을 만나 오슈[奥州]로 흘러 들어왔다. 이에 따라 육지로 에도[江戸]에 왔는데, 사쓰마 야시키[薩摩屋敷]에 넘겨졌다고 한다.⁵⁹⁾

위의 사료 14의 밑줄 ㉔로부터 1756년에 고토[五島]에 표착한 류큐 선박이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나가사키에 있던 사쓰마번 기키야쿠[聞役]⁶⁰⁾를 통해 인도되고 있었고, 밑줄 ㉕로부터는 1662년 사쓰마번의 오시마[大島]에 표착한 선박이 나가사키 등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사쓰마번에서 직접 귀국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료 15의 밑줄 부분은 오슈에 표착한 선박이 에도로 보내져 그곳의 사쓰마번저[薩摩藩邸]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해난을 당한 류큐 선박이 일본의 제 지역에 표착했을 경우, 나가사키로 호송되어 사쓰마번을 경유하지만, 나가사키에서 먼 관동 북부 지역에 표착했을 경우에는 에도[江戸]로 호송해 에도의 사쓰마번저를 통해 송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착 지역에 따라 관할 지역이 나가사키와 에도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역시 사쓰마번을 경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하고 있다. 다만, 해난사고의 구조시에 운임 등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라노에 의하면, 사쓰마번 측은 류큐 측에 화물 등의 운임비용을 청구하여 받고 있었으나, 류큐 측은 일본 국내에서의 표류민 송환은 ‘國役’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사례를 근거로 “이 소송의 결과는 불명하지만, 이러한 경위 속에 호혜관계, 즉 ‘독자적인 왕국’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려고 한 류큐의 의도와 그것을 침식하려고 하는 사쓰마번과 사쓰마 領民의 당시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다.”⁶¹⁾ 이러한 점은 같은 ‘通信國’이었던 조선과는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정

59) 『通航一覽』 1, 282쪽, “延享二乙丑年夏, 琉球人逢難風奥州へ吹付られ候。依之, 陸を江戸へ來り, 薩摩屋敷へ被渡候由。”

60) 에도시대에 외적의 내습 등의 급한 연락을 알리기 위해 나가사키에 설치한 직역 또는 감시역[目付]으로서 규슈[九州]·쑤고쿠[中國]의 각 藩에서 2명씩 파견되었다.

61) 荒野泰典, 1984, 앞의 글, 88~89쪽.

리해 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류큐 선박의 일본 표착사례와 그에 대한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은 사쓰마번이었으며,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류큐가 1609년 이래 사쓰마번의 침공으로 반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역시 일본의 대외관계 창구를 '4개의 창구'로 구분하여 통제해 왔던 막부의 통제정책 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네덜란드 선박의 해난구조

네덜란드와 일본과의 관계는 1600년에 리흐테호가 분고(豊後)에 표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은 日·蘭관계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관계 및 외교통제정책과 국내 무역정책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네덜란드 관계의 출발은 일본의 국제관계를 16세기와 17세기를 구분 짓는 분기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⁶²⁾ 이후 네덜란드는 1602년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동인도연합회사(Vereenigh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를 창립하고⁶³⁾ 1609년부터는 히라도[平戸]에 무역상관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일본 무역을 개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덜란드 선박의 해난사건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이를 위한 막부의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정책도 수립되게 되었다.

『通航一覽』 권251 「阿蘭陀國部-13」의 「漂着并難船破船扱方」에 의하면 네덜란드에 대한 해난구조 대책이 시작된 것은 1611년 7월 25일부의 다음과 같

62) 岡田章雄, 1984, 『三浦按針』, 思文閣出版, 5~20쪽.

63) 永積昭, 1971,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近藤出版社, 29~52쪽.

은 기록에 의한다.

[사료 16]

㉠ 1611년(慶長 16) 신해 7월 5일에 네덜란드선[=阿蘭陀船]이 일본[=本邦]에 도래해 왔을 때, 어느 곳에 표착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朱印狀을 내려 주었다. ㉡ 1617년(元和 3) 정사 8월 16일에 臺德院殿[=德川秀忠]으로부터도 또한 御朱印이 내려졌다.⁶⁴⁾

사료 16의 밑줄 ㉠에 의하면, 1611년 7월 5일에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일종의 무역허가장인 朱印狀을 발급하면서 일본 내의 어느 지역에 표착하더라도 지장 없이 보호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고, 밑줄 ㉡로부터 1617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뒤를 습직한 2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명으로 마찬가지로 朱印狀이 내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609년 히라도 상관 설치 이후부터 네덜란드인에 대한 무역허가를 용인하며, 이미 해난사고에 대비한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던 것으로 다른 서양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있었다. 더욱이 1621년에는 외국과의 원활한 대외교류를 위해 이국선 대책을 내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西國, 규슈 지역의 다이묘들에게 내린 지시로 선박의 표착이 있을 때에는 함부로 곡물을 탈취하거나 消散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상선이 태풍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봉공인은 상해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선박을 救助하여 도와줄 것⁶⁵⁾을 지시하고 있다.

64) 『通航一覽』 6, 324쪽. “慶長十六辛亥年七月五日, 阿蘭陀船本邦に渡來の時, 何地に漂着すとも, 相違あらさる旨の御朱印を賜ふ. 元和三丁巳年八月十六日, 臺德院殿よりもまた, 御朱印を賜はる.”

65) 荒川秀俊, 1962, 앞의 책, 79쪽, “一, 西國諸大名上下之舟損風波砌, 諸色不及沙汰, 穀物共不可捕散, 若狹少々成共於散者, 雖以來聞出, 曲事可申付事. 一, 賣買之廻船難風之砌者, 出助船可令介抱, 其上不相叶儀者, 不及了簡事. 一, 廻船破損之節, 其場江於奉公人者, 不因上下一切不可出會, 併浦々立合, 廻船之作法仁可指引事, 右條々被定置訖, 若於違背之輩者, 忽可被處嚴科之旨, 依仰下知如件. 元和七年八月日.” 申東珪, 2006, 앞의 글, 269~270쪽, 참조.

한편, 네덜란드에 무역은 허가했지만, 1633년 이른바 제1차 ‘鎖國令(=寬永의 禁令)’을 시작으로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대외통제 정책에서 네덜란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1637년 일본 최대의 종교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이 발생했을 때에 네덜란드가 막부군을 도와 그리스도교의 진압에 원조하면서 더욱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고,⁶⁶⁾ 1639년에는 포르투갈 선박에 대한 도항금지(=포르투갈과의 단교)를 실행하면서 막부는 금교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이라는 외교노선에 준한 日·蘭관계였기 때문에 1641년에는 네덜란드 상관을 히라도에서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로 이전시켜 나가사키에 한정된 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대신하여 중국산 생사의 일본 국내 수입을 네덜란드에 일임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역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교국과 달리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포교행위의 포기를 이미 막부에 상신하고 있었고, 막부의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日·蘭관계의 유지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⁶⁷⁾

이러한 외중에 1643년에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정책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네덜란드 선박 브레스켄스호가 난부번[南部藩] 무쓰노쿠니[陸奥國] 아마다[山田] 포구에 표착한 ‘브레스켄스호 표착 사건’으로 필자가 이전에도 일본의 이국선 처리대책으로서 간단히 언급한 사항인데,⁶⁸⁾ 네덜란드의 일본 북방 지역에 대한 탐험과 금은섬 탐험을 목적으로 바타비아를 출발한 브레스켄스호가 1643년 6월 16일에 식품과 음료수를 보급하기 위해 아마다浦에 하선했을 때 선장 스하프를 비롯한 10명이 난부번의 役人들에게 포박되어 같은 해 12월이 되고 나서야 네덜란드 상관의 상급 상무원에

66) 申東珪, 2008, 앞의 글 참조.

67) 申東珪, 2006, 앞의 글, 269쪽.

68) 申東珪, 2006, 앞의 글, 270~272쪽.

르세라크에게 인도된 사건을 말한다.⁶⁹⁾

막부는 이후 브레스켄스호와 같은 사건의 방지와 표착한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해난사고에 대한 처리방침으로서 로쥬[老中]의 명으로 오오메쓰케[大目付]와 나가사키 奉行에게 “네덜란드선이 일본의 어느 항구에 표착하더라도 그 안전을 보장할 것, 단지 그때에 네덜란드인의 사정을 솔직하게 갖추어 알릴 것이며, 토지의 영주·집정관의 임검을 받은 후에 자유롭게 출선시킬 것”⁷⁰⁾이라는 奉書を 보내 지시를 하달하고 있다. 즉, 이 표착사건 이후 네덜란드 선박이 일본의 어느 곳에서 표착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임의 출발을 용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방임형은 아니었다. 표착선박에 대한 감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전제로 했던 구조조치였으며 더불어 함부로 공격해서 내치지 말 것을 쇼군의 명으로 지시하고 있었다.⁷¹⁾ 즉, 1643년 브레스켄스호 사건의 해결로 인해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 해난구조에 대한 명실상부한 규정이 새롭게 성립된 것이다. 이후의 거의 모든 표착은 제 지역 다이묘들에 의한 안전보장과 해난구조에 의해 나가사키로 호송되고 있었으며,⁷²⁾ 네덜란드의 경우도 역시 ‘4개의 창구’ 중에서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던 나가사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특이한 것은 국내에 한정된 해난구조의 성격을 넘

69) 브레스켄스호 관련 연구는 이하의 연구들을 참조 바람. 板沢武雄, 1959, 「蘭船ブレスケンス號の南部入港」, 『日蘭文化交渉史研究』, 吉川弘文館; 永積洋子 譯, 1974, 『南部漂着記-南部山田浦のオランダ船長コルネリス・スハプの日記』, キリシタン文化研究會; 레이니아·H·헤스링크, 鈴木邦子 譯, 1998, 『オランダ人捕縛から探る近世史』, 山田町教育委員會.

70) 永積洋子 譯, 1974, 앞의 책, 사료화보: 「寛永二十年十一月七日 老中より大目付・長崎奉行宛の達書」, “重て阿蘭陀船若風破之難ニあひ, 日本内何れの所へ吹よすると云とも, 氣遣い口陸地へあがり, 其趣ヲ申斷船中之人數ヲモ[其所]守權人より改させ出船仕へし以來は縦おらんだ舟なりといふとも此度のことく[不届]之儀於有之ハ急度曲事ニ不被仰付從事.” 내용 중에 ‘[]’는 나가즈미 요코[永積洋子]의 독해문을 따름. 加藤榮一, 1998, 「ブレスケンス号の南部漂着と日本側の對應」, 『幕藩制國家の成立と對外關係』, 思文閣出版, 256~257쪽 참조.

71) 申東珪, 2006, 앞의 글, 272~273쪽.

72) 『通航一覽』 6, 324~338쪽.

어서 국외에 표착한 네덜란드 선박에 대해서도 구조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53년 조선의 제주도에 표착한 헨드릭 하멜 외 35명에 대한 처리였다. 이 사건은 하멜의 조선체재 경험인 『하멜보고서』로도 유명하지만, 1666년에 하멜을 포함한 8명이 일본으로 탈출하면서 막부도 알게 되어 이후 당시 조선에 남아 있던 잔류 네덜란드인 8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면서 조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일본의 송환 요청에 따라 조선 정부도 그들을 송환시키고 있다.⁷³⁾ 외국에 표착한 사례는 1706년에도 있는데, 류큐에 표착하였다 하더라도 사쓰마를 거쳐 나가사키로 네덜란드 선원들을 호송시켜 보호하고 있었다.⁷⁴⁾ 이러한 사례로 볼 때,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막부의 해난구조 조치는 각별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국내의 해난구조로는 1665년의 5월 24일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一番船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되자, 모든 마치[町]에 품삯을 내게 하고, 또 오토나[乙名]들에게는 代銀 5貫目を 내게 하여 구조하고 있었다.⁷⁵⁾ 이 외에도 1661년 6월 타이완에서 정성공의 공격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한 네덜란드 선박의 표착, 1717년 태풍으로 인한 표착 등의 기록이 『通航一覽』에 보이고 있다. 1772년에는 고토[五島]에서 나가사키로 入津하려던 네덜란드 선박 1척이 승무원들이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고 파손된 선박은 버려두었기 때문에 나가사키에서는 役人과 水夫 등을 보내어 나가사키로 끌어오게 하였고, 파손된 선박은 1773년에 입찰하여 매각하고, 침수당한 화물은 다음 해의 무역품으로서 증가시키고 있었다.⁷⁶⁾ 그리고 1798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나

73) 申東珪, 2007,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269~345쪽.

74) 『通航一覽』 6, 329쪽, “寶永三丙戌年八月二日, 薩摩より琉球に漂着の阿蘭陀人, 諸厄利亞人六人を送り來る. 同年九月歸帆の蘭人に渡され, 歸國せしむへき旨命せらる.”

75) 『通航一覽』 6, 331쪽, “寛文五乙巳年五月廿四日, 阿蘭陀一番船箇之内より出火及焼失. 尤稻佐辨財天之前迄帆駟走り, 般之上廻り悉く焼落, 町中騒動す. 此節辨柄濡絲五萬五千斤餘, 總町に頼遣す. 依之一町に四分宛之賃銀を出す. 且又乙名中へ者肴樽代銀五貫目出之.”

76) 『通航一覽』 6, 331~334쪽, “安永元壬辰年, 入津之船一艘五島沖にて破船致し,

가사키 항구의 입구 부근에 있는 다카호코지마[高鋒島] 부근에서 난파하여 물에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막부는 이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구조책으로서 船頭 기우에몬[喜右衛門]으로 하여금 선체를 부상시키게 하여 다음 해 4월에 출항시킨 일도 있었다.⁷⁷⁾ 다만, 이러한 난파의 경우, 비용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해난사고의 구조사례를 볼 때, 네덜란드가 ‘通商國’으로서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선박과 같은 처우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

V. 맺음말-해난구조와 ‘4개의 창구’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에도시대의 해난구조 정책과 그 변화에 대해서 동아시아 선박[唐船=中國船, 朝鮮船, 琉球船]과 네덜란드 선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글의 결론으로서 본문에서 다루었던 논점과 함께 이러한 해난구조가 에도시대 외교관계의 창구였던 나가사키·쓰시마·사쓰마·마쓰마에 창구로 체계화된 ‘4개의 창구’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도시대의 외국 선박들에 대한 해난사고의 대처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은 막부가 대외통제책으로서 이른바 ‘鎖國[=海禁]’ 정책을 강화해 나갔던 시기인 1635년부터 나가사키 중심의 해난구조 체계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점

乗組人數類船に乘移り, 右船は乗捨置し故, 長崎より役人并水夫等を被遣當漆へ挽送り, 九月十五日入津致すに付, 稻佐飽之浦淺之沼之上に挽寄せ, 追追荷揚有之, 空船は翌年入札拂に被仰付之. 但此船漏物, 翌巳年之商賣に加るなり.”

77) 片桐一南, 1986, 「蘭船の出帆手続きと村井喜右衛門の沈船引揚げ事件」, 『海事史研究』 43, 日本海史史學會; 片桐一南, 1990, 「村井喜右衛門の沈船引揚げ絵画資料」, 『海事史研究』 47, 日本海史史學會.

이다. 물론, 이 글에서 살펴본 1616년의 영국 선박의 사례와 같이 나가사키로 선원들이 이송되고는 있었지만, 관례의 형태는 아니었고, 사료 1에서 보듯이 1635년 막부의 지시에 의해 일반적 규정으로 정착되고 있었다.

둘째, 막부의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의 나가사키 체제화는 막부의 그리스도교 금교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637년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봉기 이후, 이 글에서 살펴본 1639년에 여러 다이묘들에게 내린 奉書(사료 3)에 보이듯이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 그리고 이들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들의 상륙금지와 나가사키 호송 등을 지시한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당시 외국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의 대상에서 그리스도교 관련 선박은 제외되었고, 이것으로부터 해난구조의 대상은 막부가 인정한 국가들 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 글에서 살펴본 해난구조의 조치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선박들에 대한 해난구조의 기본방침은 17~18세기 막부의 국제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토대를 부여해 주고 있었던 이른바 '4개의 창구'에 의한 대외관계 규정에 따라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즉, '4개의 창구'로서 우선 중국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은 나가사키 창구, 조선 선박은 쓰시마 창구, 류큐 선박은 사쓰마 창구를 거점으로 삼아 표류민 등의 송환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에도시대 대외관계 구조적 시스템이었던 '4개의 창구'가 해난구조의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한편, '4개의 창구' 중 마쓰마에 창구에서의 아이누는 국가 형태로서 중앙 권력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해난구조의 사례가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1756년 조선인 이지항이 에조치(蝦夷地)에 표착하여 마쓰마에 번(松前藩)의 해난구조에 의해 귀국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에조치에서 마쓰마에번에 의한 해난구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역시 쓰시마 창구를 경유하여 조선으로 송환되고 있었다. 한편, '4개의 창구'가 17~18세기의 해난구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든 해난구조의 귀결점이 나가사키로 체제화되고 있었고, 이는 '4개의 창

구' 중에서 나가사키 창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창구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세 일본의 해난구조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4개의 창구' 설정에 따른 대외통제책의 일환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에도시대 해난구조의 시스템이 '通信國'과 '通商國'에 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안전과 송환이 보장되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특히, '通信國'이었던 조선과 류큐에 대해서는 '신의'를 통하는 국가'로서 구조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류큐의 경우는 사쓰마번이 류큐 측에 화물 등의 운임비용을 청구해 받아 낸 사례도 있지만, 당시 류큐 측은 해난사고에 대한 구조가 '國役'이라고 하며 사쓰마번 측에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通信國'으로서의 위치가 해난구조(=표류민 송환을 포함해서) 비용문제에서도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通商國'이었던 중국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에 대해서는 구조에 들었던 예인선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한편, '通信國'과 '通商國'에 준한 해난구조 역시 '通信國'(조선)은 쓰시마 창구와 사쓰마 창구에서, '通商國'(네덜란드·중국)은 나가사키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난구조의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4개의 창구'가 기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7~18세기의 중국, 조선, 류큐, 네덜란드 선박으로 18세기 말 구로후네 내항 이후 서유럽 각국의 선박들에 대한 해난사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해 두겠다. 18세기 말 이후부터는 러시아의 남하와 외국 선박의 잦은 내항 등으로 막부의 대외정책도 변화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막부의 해난구조 정책도 근대성을 띠면서 변화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 그리고 '4개의 창구'로서 마쓰마에 지역 중심의 해난구조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岡田章雄, 1984, 『三浦按針』, 思文閣出版.
- 高柳真三・石井良助 編, 1989, 『御触書寛保集成』, 岩波書店.
- 高柳真三・石井良助 編, 1989, 『御触書天明集成』, 岩波書店.
- 金指正三, 1956, 『江戸時代における海難の研究』, はしがき.
- 金指正三, 1968, 『近世海難救助制度の研究』, 吉川弘文館.
- 金指正三, 1955, 『日本海難救助法制史』, はしがき.
- 那覇市企劃部市史編集室 編, 1966, 『那覇市史(資料篇第1卷2)』, 那覇市企劃部市史編集室.
- 大岡清相 編, 中田易直・中村質 校訂, 1974, 『崎陽群談』, 近藤出版社.
- 申東珪, 2007,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 永積昭, 1971,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近藤出版社.
- 永積洋子 譯, 1974, 『南部漂着記-南部山田浦のオランダ船長コルネリス・スハプの日記』, キリシタン文化研究會.
- 李薰,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 李薰・池内敏, 2008, 『朝鮮後期漂流民と日朝關係(韓國の學術と文化)』, 法政大學出版局.
- 林復齋, 1912, 『通航一覽』 1-8, 國書刊行會.
- 田邊茂啓, 1973, 『長崎實錄大成(正編)』, 長崎文獻社.
- 煎本増夫, 1980, 『島原の亂(歴史新書101)』, 教育社.
- 住田正一, 1927, 『日本海事法』, 巖松堂書店.
- 住田正一 編, 1969, 『海事史料叢書』 1, 成山堂書店.
- 竹越與三郎, 1920, 『日本經濟史』 8, 日本經濟史編纂會.
-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 荒川秀俊, 1962, 『日本漂流漂着史料』, 地人書館.
- レイニア・H・ヘスリンク, 鈴木邦子 譯, 1998, 『オランダ人捕縛から探る近世史』, 山田町教育委員會.

〈논문〉

- 渡邊美季, 2002, 「近世琉球における對「異國船漂着」體制—中國人・朝鮮人・出所不明の異國人の漂着に備えて」, 琉球王國評定所文書編集委員會 編, 『琉球王國評定所文書補遺別卷』, 浦添市教育委員會.
- 渡邊美季, 2004.07.11, 「漂流・漂着から見る近世琉球—中國と日本の狭間で」, 社會制度の持続性チーム研究會報告, 元興寺文化財研究所.
- 山本博文, 1991, 「『鎖國令』の背景」, 『歴史評論』 493, 歴史科學協議會.
- 生島廣治郎, 1923, 「徳川時代に於ける海難救助の研究」, 『經濟學商業學國民經濟雜誌』 34-5・35-2, 神戶大學.
- 申東珪,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7・18합집호, 강원사학회.
- 申東珪, 2006, 「前近代 일본의 西洋 이국선 표착 처리」, 『韓日關係史研究』 25, 한일관계사학회.
- 申東珪, 2007, 「근세 일본 '島原・天草의 난'에 보이는 天草四郎의 신격화와 그 영향」, 『日本思想』 13,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申東珪, 2008, 「근세 일본의 '島原・天草의 난'으로 본 江戸幕府와 네덜란드의 共助關係」, 『東洋史學研究』 105, 동양사학회.
- 鄭成一, 2003,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分析和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72, 韓國史學會.
- 中田薰, 1914, 「徳川時代ノ海法」, 『法學協會雜誌』 32~3・4, 法學協會事務所.
- 春名徹, 1995, 「漂流民送還制度の形成について」, 『海事史研究』 52, 日本海史史學會.
- 春名徹, 2005, 「近世日本船海難にかんする中國全記錄の再検討—東アジアにおける近世漂流民送還制度と日本」, 『海事史研究』 62, 日本海史史學會.
- 板沢武雄, 1959, 「蘭船ブレスケンズ號の南部入港」, 『日蘭文化交渉史研究』, 吉川弘文館.
- 片桐一南, 1986, 「蘭船の出帆手続きと村井喜右衛門の沈船引揚げ事件」, 『海事史研究』 43, 日本海史史學會.
- 片桐一南, 1990, 「村井喜右衛門の沈船引揚げ絵画資料」, 『海事史研究』 47, 일본해사학회.
- 鶴田啓, 1992, 「近世日本の四つの'口」」,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アジア

の中の日本史Ⅱ－外交と戦争』, 東京大學出版會.

海老沢有道, 1957, 「寛永鎖國令」, 『歴史教育』 5-11, 歴史教育研究會.

荒野泰典, 1978, 「幕藩制國家と外交」, 『世界史認識における民族と國家-1978年度
歴史學研究會大會報告』, 歴史學研究別冊特集, 青木書店.

荒野泰典, 1981, 「大君外交體制の確立」, 『講座日本近世史 2』, 有斐閣.

荒野泰典, 1984,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體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 400, 歴史科
學協議會.

[ABSTRACT]

A Study on Salvage Policies and “4 diplomatic windows” in Japan’s Edo Era

Shin, Dongkyu

This article considered how marine rescue was made under certain system regarding marine accident of Chinese, Joseon (朝鮮) Dynasty’s, Ryukyu (琉球)’s, and Dutch ships before the appearance of Kurohune (黒船) which can be regarded as a starting point of port opening from the beginning of Edo Bakuhu (江戸幕府), Japan as materials, what were the regulations about marine rescue of foreign ships, and how such marine rescue functioned under certain correlation with so-called ‘4 diplomatic windows (四つの口)’ as diplomatic places of Edo era.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about dealing and managing of marine accident to foreign ships in Edo era was started to be settled in systematization of marine rescue centering on Nagasaki since 1635 when Bakuhu reinforced so-called ‘seclusion’ policy (鎖國政策) as a foreign restriction policy. Of course, according to the cases of some marine accidents before, the foreign ships were transferred to Nagasaki (長崎) but it was not the usage and only was settled as general regulation by the order of Bakuhu in 1635 as revealed in this article.

Second, Nagasaki systematization of marine rescue to foreign ships by Bakuhu was made withi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Christianity prohibition policy of Bakuhu. This can be verified from strict

examination to suspicious ships as seen at the order to Daimyo in 1663 and from the order of prohibiting the landing of foreign ships' crews and of convoying to Nagasaki after the uprising centering on christians which was known as 'revolt of Shimabara (島原) and Amakusa (天草)' in 1637. In such aspect, it is evaluated that christian related ships were excluded in the subjects of marine rescue to foreign ships and only the ships of nations admitted by Bakuhu were rescued.

Third, when summarizing managements and cases of marine rescues searched at this article, basic policy of marine rescue to foreign ships was set according to the foreign relationship policy by so-called '4 diplomatic windows' which made an important base to the formation of Bakuhu's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at is, as '4 diplomatic windows', repatriation of castaways making as a stronghold to Nagasaki for Chinese and Dutch ships, Tsushima (對馬) for Joseon ships, and Satsuma (薩摩) for Ryukyu. This proves that '4 diplomatic windows' which was a structural system of foreign relationship in Edo era functioned as a basic system of marine rescue.

Fourth, marine rescue system in Edo era was managed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trust exchanging countries' and 'trading countries'. These countries were secured their ships' safety and repatriation but to the other countries, safety was not guaranteed and rather they were the subjects of Christianity prohibition policy. In particular, to Joseon and Ryukyu which were 'trust exchanging country', rescue costs were not an important matter, but to the ships of China and Netherlands which were 'trading country', the costs of tugboat for rescue were charged to them. While because marine rescue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trust exchanging countries' and 'trading countries' was made at Tsushima and Satsuma for 'trust exchanging country(Joseon)' and at Nagasaki for

‘trading country(China, Netherlands)’, it was another proof that as a basic system of marine rescue, ‘4 diplomatic windows’ was functioned.

keywords

Edo-Bakuhu, foreign ship, marine accident, sea-rescue, international relations, 4 diplomatic windows, coastal defence, Sakoku, Dutch, Nagasaki, Tsushima, Satsuma, Ryukyu, Christianity, drifting, castaway, drifting ship

清代 中國의 外國人 漂流民의 救助와 送還에 대하여

- 朝鮮人和 日本人의 사례를 중심으로 -

류쉬핑(劉序楓) ■ 대만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부연구원

I. 머리말

최근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학술교류가 빈번해지고, 그에 더해서 역사 자료를 공개하거나 간행하게 됨에 따라,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류큐[琉球]·조선과, 중국·류큐의 표류·표착에 관한 연구가 돋보인다.¹⁾ 그런데 중국·류큐 관계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중국 측의 檔案 사료를 이용한 연구가 아직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청대 중국이 외국인 표류민을 어떻게 구조하여 송환하였는지 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체제 성립과 배경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는 주로 청이 중국을 통일하여 지배권을 확립

※ 투고일: 2010년 4월 6일, 심사일: 2010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1)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劉序楓, 2008, 「漂流·漂流記·海難」,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東京: 岩波書店, 217~224쪽.

한 1680년대 무렵부터 1850년대까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편전쟁 후인 1840년대 이후가 되면, 중국이 남경조약에 따라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더 나아가 廣州·廈門·福州·寧波·上海의 다섯 항구를 개항한다. 그러자 서양 여러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중국 연해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조선·류큐도 중국의 뒤를 이어 개항을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가 차례로 붕괴되어 갔다. 그와 함께 종래의 표류민 송환체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세변화와 흐름을 고려하면서, 해난구조와 관련된 제도가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확립·변천되어 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중국에 표착한 표류민 또는 중국을 경유하여 송환된 표류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조선·일본·류큐 사이의 해난구조제도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동아시아 해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청대의 漂流民 救助制度 형성

근세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폐쇄적인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류민을 서로 송환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 표류민 송환제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자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일본을 중심에 두고 조선·중국·류큐와의 송환절차를 연구한 적이 있다.²⁾ 그 뒤 중국과 일본, 중국과 류큐, 조선과 일본, 조선과 류큐 사이의 표류민 송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들

2) 荒野泰典, 1983, 「近世の日本漂流民送還體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 400(『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재수록).

연구를 바탕으로 두면서, 거기에 새로운 사료를 활용하여,³⁾ 동아시아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표류민의 상호 송환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가 지적한 것처럼, 근세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제도가 성립하기 전부터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는 서로 표류민을 송환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이 관행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상호 송환이 실현될 수 없었다. 즉 첫째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권력이 대외관계를 장악·통치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어 있어야만 했다. 둘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표류민을 송환할 수 있도록 국제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했다.⁴⁾

17세기 초반까지도 불안정했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1683년에 청조가 중국을 통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갔다. 그러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각자 대외관계의 체제를 설정하면서 서로 항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아시아의 중심적인 존재였던 청조의 해난구조제도의 성립을 개관하고자 한다.

청조 초기의 제도는 明代부터 이어져 온 것이 많다. 康熙·雍正朝의 『大清會典』에는 외국인 표류민을 구조해서 송환한 사례가 많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海難救助에 관한 통일된 규칙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만에 근거를 두고 있던 鄭氏정권이 항복을 하자 1684년(康熙 23)에 海禁令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조 예부가 주변의 조공국(베트남·조선·류큐)에 자문을 발포하여, 외국에 표류한 중국인 표류민을 구조하여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⁵⁾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에 표착한 여러 외국의 표류민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그들을 구조해서 각자 본국으로 송환해 주었다고 생각된

3) 주로 중국 측의 檔案 사료를 사용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劉序楓 編, 2004, 『清代檔案中的海難史料目錄-涉外編』, 台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4) 荒野泰典, 1983, 앞의 글, 118쪽.

5) 『歷代實案』 1, 台北: 台灣大學影印本, 1972, 226~227쪽.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7세기 후반부터 표류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뒤 1718년(康熙 57) 이후가 되면 廣州와 廣東 곧 兩廣總督의 요청에 따라 지방의 총독과 巡撫가 해마다 연말이면 외국인 표류민의 구조사례를 중앙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청조는 국내 각지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표류민의 처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⁶⁾

게다가 1729년(雍正 7)에는 옹정 황제가 중국에 표착한 외국 배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즉 중국 관부의 공금을 사용하여 중국에 표착한 외국 선박을 구조하고 더 나아가 구조된 표류민들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명령했다.⁷⁾

그런데 1737년(乾隆 2)에 浙江에 표착한 류큐 선박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관이 요청을 하자, 건륭 황제가 그전의 옹정 황제와 거의 같은 내용의 上諭를 내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난민을 구조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난구조를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⁸⁾

이어서 구조에 관한 조례가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었다.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乾隆 연간의 『欽定戶部則例』 권105, 蠲卹, 卹賞 下에 나오는 「撫卹被風番船」 항목에 언급되어 있다. 연해의 奉天, 山東, 江南, 浙江, 福建, 廣東 등 각 성에서 난민을 撫恤할 때 지급한 금전, 식량, 의류 등의 물품과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난민구조에 들어간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래에는 「地丁銀」과 「俸工銀」(捐俸)이라고 하는 지방의 세금이나 관원의 급료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옹정 황제의 公費 개혁에 따라, 「存公銀(地方의 公費)」의 사용이 인정된 뒤로는, 난민구조에 필요한 경비가 확보되었다. 난민을

6)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澳門基金會·暨南大學古籍研究所合編, 1999, 『明清時期澳門問題檔案文獻匯編』 1, 北京: 人民出版社, 397쪽.

7) 『乾隆會典則例』, 卷94, 「禮部, 主客, 朝貢下, 拯救」項, 雍正七年條; 『清世宗實錄』 2, 北京: 中華書局, 卷85, 雍正7年8月丁未條, 132쪽.

8) 『清高宗實錄』 1, 北京: 中華書局, 卷52, 乾隆2年閏9月庚午條, 889쪽.

본국으로 송환한 뒤에는 지방관이 사용한 경비의 명세를 戶部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⁹⁾ 또 표류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적 화물을 약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이 내려졌다.¹⁰⁾

요컨대 외국인 표류민을 구조하는 내용, 예를 들어 「안전하게 호송하여(安插館驛)」, 「옷과 식량을 지급하고(資給衣糧)」, 「선박을 수리해서(修理舟楫)」, 「본국으로 되돌려 준다(遣返本國)」고 하는 규정은 종래의 구조 前例를 원용하여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중앙에서는 예부와 호부가 각각의 관련 사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각 지방관이 책임을 지고 표류민에게 衣食과 銀錢과 생활용품을 주었다. 각국의 난민에 대하여, 「멀리서 온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중화제국의 王道思想에 근거해서, 조공국이든 비조공국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一視同仁」이라고 하는 대우를 하였는데, 지방의 存公銀兩을 투입하여 표류민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본국으로 송환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표류민에 대한 구조제도는 1737년(乾隆 2)부터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처리 방법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즉, 표착한 난민을 발견한 연해 주민은 먼저 관할 관아에 통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소재 縣이나 海防廳에서 관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필답이나 통역을 통해 취조를 하였다. 그런 다음 주거의 준비, 옷과 음식의 공급, 선박과 선적물의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州縣에서 상급 관서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원칙상 표류민은 省城 소재지로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총독이나 순무는 그 사실을 조정에 上奏하고, 아울러 호부와 예부에 참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조정의 지시가 떨어지면 해당 항구나 北京으로 지시가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 표류민들을 그들의 본국에서 온 조공사절과 함께 귀국시키거

9) 渡邊美季, 1999・2000, 「清代中國における漂着民の處置と琉球」(1)・(2), 『南島史學』 54・55호.

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a,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153~56쪽, 道光 11年 11月 27日, 浙江 巡撫 富呢揚阿의 奏摺에 “沿海居民乘危搶奪, 照搶奪律加一等, 杖一百, 流二千里. 爲從, 杖一百, 徒三年”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歷代實案』, 3684~86쪽;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b, 『清代中琉關係檔案三編』, 北京: 中華書局, 195쪽 참조.

나, 아니면 商船에 태워서 귀국시키기도 하였다. 송환경로는 대체로 각국 조공 사절의 진공 루트를 따라서 해당 항구나 국경 도시로 보냈다. 외국인 표류민의 송환경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류큐[琉球] → 福州

필리핀[呂宋] · 暹羅(Siam) 등 동남아시아 → 廈門(사이먼) 또는 廣州 · 마카오

베트남[安南] → 廣州[海路]

；廣東 欽州나 廣西 鎮南關[陸路]

조선 → [陸路] 北京 → 鳳凰城 → 의주

일본인 표류민의 경우 맨 처음에는 고정된 경로가 없었다. 다만 표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의 출항지까지 보내서 그들을 무역선에 위탁하여 송환하였다. 그러다가 1750년대부터는 표착지에서 浙江 嘉興府의乍浦로 그들을 보낸 다음, 서양인 선박에 태워서 廣州나 마카오로 송환하기도 하였다.

물론 배 상태가 양호하여 항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이면, 公金으로 배를 수리해 준 다음, 식량과 비용 등을 주어서 자력으로 귀국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배에 싣고 있던 선적물의 처리는 표류민의 의사에 따라서 가지고 돌아가게 하든가, 아니면 현지에서 「變價」 곧 그 짐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송환경비로 쓰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배와 함께 선적물도 매각하였는데 이때 관세는 면제되었다.

이상은 외국인 표류민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 그런데 표착지나 표류민의 국적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약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중국과 조선 사이의 표류민 구조와 송환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中國의 日本人 漂流民 救助와 送還

「쇄국」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은 자기 나라 주민의 해외 도항을 일절 금지했다. 그런데 근세 중기 이후 연해 수송이 활발해지면서, 해난을 만나 해외로 표류하는 표류민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과 중국으로 표류하는 일이 가장 많았다. 조선에 표착한 사람을 조선 측이 對馬藩에 인도하는 것을 별도로 한다면, 일본인 표착민은 중국과 네덜란드의 무역선에 의해서 송환되는 것에 대해서만 막부가 인정을 하였으며, 그 외 나라로부터의 송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¹¹⁾ 따라서 중국 이외 지역에 표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唐船(넓은 의미로 中國船) 무역망을 이용해서 먼저 중국으로 보내지고, 그런 다음 중국 관부의 보호를 받아 나가사키로 가는 민간 무역선으로 옮겨져서 일본으로 송환되었던 것이다.

이미 별고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1644~1861년 사이에 중국·일본 사이의 표류민 송환은 자력으로 귀국한 한 번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 무역선에 의해 이루어졌다.¹²⁾ 물론 배가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公金으로 수리를 해 주고, 식량과 경비를 지급하여 자력으로 귀국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선적 화물의 처리는 표류민의 의사에 맡겨서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매각하여 돈으로 바꿔 쓸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배와 함께 매각하였는데, 이때 관세는 면제되었다.¹³⁾ 일본 배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형 배가 많았고, 더구나 배의 구조에 결함이 있어서 外洋의 항해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인지, 선박과 선적물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11) 司法省調査課, 1934, 「漂流人處分法」, 『徳川禁令考』 卷61, 664~665쪽. 또한 근세 일본의 외국인 표류민의 송환에 대해서는 荒野泰典, 1983, 앞의 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2) 劉序楓, 2001, 「清代環中國海域의海難事件研究-以清日兩國間對外國難民의救助及遣返制度爲中心1644-1861」,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 第8輯, 台北: 中央研究院 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13) 渡邊美季, 2000, 앞의 글, 36~45쪽.

〈표 1〉 중국을 경유하여 송환된 일본인의 표착지(1644~1880)

표착지	中 國								安南	呂宋	기타	不明	총계
		滿洲	江蘇	浙江	福建	臺灣	廣東	不明					
건수	44	2	7	9	4	10	11	1	3	14	6	1	68

※ 자료: 荒川秀俊 編, 1962, 『日本漂流漂着史料』, 東京: 地人書館; 川合彦充, 1967, 『日本人漂流記』, 東京: 社會思想社; 加藤貴 校訂, 1990, 『漂流奇談集成』, 東京: 國書刊行會 등에 의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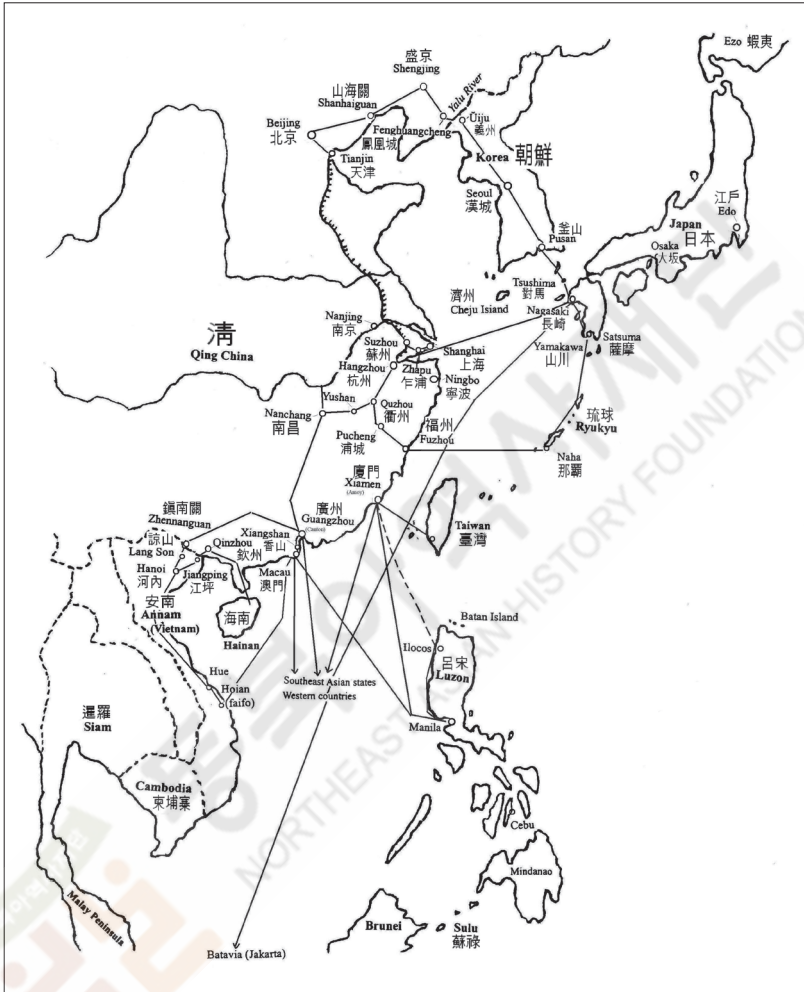
경우가 많았다.¹⁴⁾

현재 확인 가능한 백수십 건의 표류기록 중에서, 중국(타이완 포함) 표착 또는 중국 경유로 일본에 송환된 사람은 60건 이상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귀국한 표류민의 대부분은 중국 땅을 밟았으며, 중국의 사정을 보고 듣고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표착한 일본인의 경우 맨 처음에는 송환경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표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행 무역선의 출항지, 예를 들면 廣州·泉州·福州·普陀山·寧波 항구까지 표류민들을 보내면,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에 그들을 위탁해서 송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1755년(乾隆 20)부터는 표착지에서 浙江省 嘉興府 平湖縣의 乍浦港으로 보내도록 고정되었다. 錢塘江의 북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乍浦港은 운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당시 강남의 경제·문화 중심지였던 蘇州와 杭州로 통해 있었다. 일본과 무역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銅貿易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蘇州에 會館(銅局)을 설치하는 한편, 乍浦에도 회관을 두고 있었다. 무역선이 乍浦로 입항하면, 일본에서 수입해 온 구리를 운하를 통해 운반하여 먼저 蘇州의 銅局으로 보내고, 그곳에서는 대운하나 長江을 따라 北京과 각 성의 鑄錢局으로 수송했다. 乍浦港은 당시 대일무역의 기지로서 번성하고 있었다.¹⁵⁾

14) 川合彦充, 1967, 『日本人漂流記』, 東京: 社會思想社, 293~294쪽; 劉序楓, 2001, 앞의 글, 186쪽.

15) 劉序楓, 1992, 「清代的乍浦港與中日貿易」,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 5, 202쪽.



〈그림 1〉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민 송환 기본경로(18세기 중엽)

표류민을 표착지로부터 자푸[乍浦]로 호송하는 루트는 해로 외에 육로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남부의 廣東 연해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安南], 필리핀[呂宋]에 표착한 경우, 먼저 마카오나 廣州로 보낸 다음 육로를 통해 江西 → 浙江을 경유하여 자푸에 송치하기도 하였다. 臺灣에 표착한 경우는 배로 福建의 廈門으로 보내서, 省都인 福州로 전송한 다음, 육로로 浙江으로 들어

가乍浦로 가는 경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육로의 경우는 주로 강을 오르내리는 강배나 가마를 이용해서, 청대의 조공사절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가는 식이었다. 이 루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廣州가 당시 조공사절(류큐는 제외)이 출입하는 주요 항구였으며, 더구나 경로를 따라 官에서 설치한 驛所라든가 館舍 같은 시설이 있어서, 표착민을 호송할 때 신변의 안전과 물자의 보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 표류민을 구조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공국이든 非조공국이든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 官府 측이 관리를 파견해서, 표착지에서부터 각 성을 따라 귀국향인 乍浦까지 호송했다. 지방관이 실시하는 마지막 심문조사를 거친 다음 문제가 없으면 표류민을 일본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게 인도하였다. 일본인 표류민이 귀국할 때까지 중국의 무역상인들이 그들을 돌봐 주었다. 표류민의 생활비용도 관에서 제공하는 公金 외에 상인이 어느 정도 자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된다. 체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방관으로서도 상인으로서도 경제부담이 커지게 되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가령 1753년(乾隆 18) 浙江省 定海縣에 표착했던 무쓰국[陸奥國, 仙台]의 난민 13명이 寧波에서 5개월 남짓 체재하였을 때, 중국의 관부에서 부담한 구조비용이 800여 냥이나 되었다.¹⁶⁾ 1853년(咸豐 3) 江蘇 崇明에 표착한 사쓰마[薩摩]의 난민 19명(그중 3명 사망)이 10월에 乍浦로 송치되어 이듬해 6월 말에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이들에게 들어간 생활비용으로 平湖縣이 은 674냥과 쌀 47석 9두 9승을 썼다.¹⁷⁾

그런데 대일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상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를 대신하여 일본인 표류민을 나가사키[長崎]로 송환하는 것이 일종의 봉사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상인에게 꼭 손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즉 일본인을 송환해 준 중국의 무역상인들에 대해서 일본 측이 무역선의 순번을 앞으로 올려준다거나,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서 빨리 귀국시키기도 하고, 정해진

16) 『皇朝文獻通考』, 卷295, 日本: 四裔考三.

17)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b, 앞의 책, 617~620쪽, 浙江巡撫何桂清的奏摺.

무역량 외에 추가로 거래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가 중국 측 송환 관계자들에게 포상을 하였는데, 荷主에게는 쌀 70가마, 船頭한테는 쌀 50가마 내지 30가마, 부선장격인 와키센토[脇船頭]와 財副·통역·구호인에게는 쌀 20가마씩을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항해 중에 쓸 물품으로 닭·돼지·야채 등을 주는 것이 정례로 되어 있었다.¹⁸⁾

清朝와 日本 사이에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표류민의 송환은 모두 민간 상인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표류민을 송환할 때는 北京의 지시를 받은 지방관이 일본인들을 송환할 무역선의 船頭와 일본인 표류민에게 해상 왕래를 인정하는 증명서인 「部牌」와 「護照」 등을 발급하였다. 나가사키 부교는 이것을 필사한 사본과 일본어로 번역한 문서를 함께 幕府에 제출했는데, 막부와 나가사키부교는 이것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는 않고, 다만 唐通事 명의로 ‘표류민을 잘 넘겨받았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주었다. 무역상인이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이 증서와 「護照」를 官府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본인 표류민을 무사히 송환해 주었음을 증명하였다.

「護照」에는 귀국자 전원의 성명과 배의 화물을 기입하는 한편, 出洋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귀국하여 그것을 관부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¹⁹⁾ 요컨대 중국에 표착한 일본인의 경우는 민간 상인의 통상관계를 통하여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표착했다가 중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송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에 표착했거나 그곳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귀국한 표류민의 사례는 적어도 24건 확인되고 있다. 그들이 표착한 곳으로는 필리핀과 그 주변 여러 섬들이 가장 많아서 14건

18) 劉序楓, 2001, 앞의 글, 189쪽 참조.

19) 刊本『華夷変態』中冊, 1981, 東京: 東方書店, 1417~1421쪽; 荒川秀俊 編, 1969, 『近世漂流記集』, 東京: 法政大學出版社, 52~53쪽; 中村實, 1989, 「東アジアの鎖國と日本」, 加藤榮一 外 編,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東京: 校倉書房, 353쪽 참조.

〈표 2〉 동남아시아에 표착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한 일본인 표류민

No.	선적지 선명	승선 인원	표류 연도	표착지	경과 지역	귀국출 발- 도착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비고
1	尾張 権田孫左 衛門船	15	康熙 7 1668	바탄섬	浙江普陀山	普陀山- 長崎	康熙 9 1670	11	自力 歸國
2	陸奥 荒浜船	?	康熙 47 1708	呂宋	?	乍浦- 長崎	1710	1	川合彦充 327쪽
3	筑後 久留米船	6	康熙 51 1712	呂宋	마닐라-廣東電白 -廣州	廣州- 長崎	康熙 52.윤5 1713, 7	4	마닐라에서 唐 船으로 中國에 송환 도중 난파 되어 廣東 표착 2인 사망
4	江戸 福聚丸	15	乾隆 18, 3 1753, 4	呂宋 이로코(Ilocos)	마닐라-廈門-寧 波-乍浦	乍浦- 長崎	乾隆 20, 5 21, 2 1755, 1756	5	10인, 마닐라에 서 영주 그 밖의 선원은 商船으 로 廈門에 이송
5	筑前 本宮丸	18	乾隆 27, 12 1763, 1	呂宋 南部	소쿠보우(Cebu)- 福建漳浦-漳州- 廈門-福州-乍浦	乍浦- 長崎	乾隆 32, 7 1767, 8	2	宿霧에서 村丸 일행과 함류 唐 船으로 福建에 송환
6	筑前村丸	19	乾隆 30, 3 1765, 4	呂宋 宿霧 (Cebu)	同上	乍浦- 長崎	乾隆 32, 7 1767, 8	15	宿霧에서 本宮 丸 일행과 함류 唐船으로 福建 에 송환
7	筑前 伊勢丸	20	乾隆 29, 10 1764	민다나오섬 (Mindanao)	보르네오섬 (Borneo) 반 자르마진 (Banjarmasin)- 자바(Java)	吸留吧 (Batavia) -長崎	乾隆 36, 6 1771	1	보르네오 在住 唐人에게 팔려 서 네덜란드 선 박으로 송환
8	陸奥 姫宮丸	6	乾隆 30, 12 1766, 1	安南	安南 會安(Hoian)	會安- 長崎	乾隆 32, 7 1767, 8	3	會安외서 住吉 丸 일행과 함류; 長崎貿易 唐船 으로 귀국

No.	선적지 선명	승선 인원	표류 연도	표착지	경과 지역	귀국출 발- 도착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비고
9	常陸 住吉丸	6	乾隆 31. 1 1766.3	安南	安南 會安	會安- 長崎	乾隆 32. 7 1767. 8	4	會安에서 姬宮 丸 일행과 합류 長崎貿易 唐船 으로 귀국
10	陸奥 大乘丸	16	乾隆 59. 12 1795.1	安南 西山	安南王城-마카오 -廣州-江西-浙 江-乍浦	乍浦- 長崎	乾隆 60. 11. 12 1796. 1	9	마카오에서 商 船으로 마카오 로 이송
11	陸奥 德永丸	5	嘉慶元 1 1796.3	바탄섬 諸島	카가얀(Cagayan) -마닐라-마카오 -廣州-江西-浙 江-乍浦	乍浦- 長崎	嘉慶 3. 12 1799. 1	4	唐船이 送還을 거 부, 呂宋船으로 마카오로 이송
12	安芸 稻若丸	8	嘉慶 11 1806.1	大洋에서 미국 선박에 의해 구조	하와이-마카오- 廣東-마카오-자 카르타	자카르타 -長崎	嘉慶 12 1807. 6	3	마카오에서 唐 船으로 자카르 타로, 네덜란드 배로 귀국
13	安芸 虎市丸	3	嘉慶 18. 2 1813.3	呂宋	呂宋-마카오-廣 州-江西贛州-福 建邵武-浙江嚴州 -乍浦	乍浦- 長崎	嘉慶 19. 6. 12 1814~1815	3	마닐라의 중국인 商館에서 숙박 마카오 商船으로 마카오로 송환
14	陸奥 神社丸	12	道光元 1 1821.2	파라오 (Palau)? (呂宋)	呂宋-이로코 (Ilocos)-澎湖- 廈門-福州-乍浦	乍浦- 長崎	道光 6. 1. 5 1826. 2. 6	7	福建 商船으로 廈門으로 이송 도중 澎湖 표착
15	陸奥 融勢丸	11	道光 8. 2 1828. 3	바탄섬	마닐라-浙江温州 府永嘉-乍浦	乍浦- 長崎	道光 8. 12 1829. 1	11	마닐라 도착 후 唐人의 商館으로 보내져서 숙박 福建 商船으로 중국에 이송
16	伊豆 仁壽丸	13	道光 9. 1 1829. 2	呂宋 카가얀 (Cagayan)	마닐라-마카오- 廣東-江西-浙江 -乍浦	乍浦- 長崎	道光 9. 12 10. 1 1830	12	마닐라 도착 후 唐人의 商館으로 보내져서 福建人 에게 넘겨짐 마카오 商船으로 마카오로 송환

No.	선적지 선명	승선 인원	표류 연도	표착지	경과 지역	귀국출 발- 도착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비고
17	備前 神力丸	19	道光 10, 11 1830, 12	바탄諸島	마닐라-마카오- 廣東-江西-浙江 嚴州-杭州-乍浦	乍浦- 長崎	道光 11, 12 1832, 1	14	呂宋貿易을 하 는 영국 배로 마 카오에 이송
18	遠江 昌榮丸	3	道光 20 1840	大洋에서 미국 선박에 의해 구조	하와이-마카오- 廣州-廈門-福州 -乍浦	乍浦- 長崎	道光 22, 1 1842, 2	2	
19	陸奥 觀吉(音) 丸	8	道光 22, 7 1842, 8	呂宋 사마르 (Samar)섬	라이덴(Leyte)- 마닐라-香港-마 카오-香港-舟山 -乍浦	乍浦- 長崎	道光 23, 12 1844, 1	6	마카오 商船으 로 마카오로, 唐 船으로 香港으 로, 미국 배로 舟山에 이송
20	攝津 永住丸	13	道光 22, 2 1842, 3	大洋에서 에스 파니아 배에 의해 구조	미국-하와이-마 닐라-마카오-香 港-舟山-寧波- 杭州-乍浦	乍浦- 長崎	道光 23, 12 25, 7 1844, 1845	5	마카오에서 松德 丸 일행과 합류 乍浦에서 觀吉 (音)丸 일행과 합류
21	加賀 松德丸	7	道光 22, 9 1842, 10	大洋에서 미국 배가 구조	하와이-마카오- 廈門-寧波-杭州 -乍浦	乍浦- 長崎	道光 23, 12 1844, 1	1	마카오에서 永住 丸 一行과 합류 乍浦에서 觀吉 (音)丸 일행과 합류
22	紀伊 天壽丸	13	道光 30, 3 1850, 4	大洋에서 미국 배가 구조	캄차카 (Kamchatka)- 하와이-香港-마 닐라-上海-平湖 -乍浦	乍浦- 長崎	咸豐 元 12 1852, 2	5	나머지 8인 은 러시아배로 1852.8 下田에 송환
23	攝津 榮力丸	17	道光 30, 12 1851, 1	大洋에서 미국 배가 구조	미국-하와이-香 港-廈門-香港- 上海-平湖-乍浦	乍浦- 長崎	咸豐 4, 7 1854, 8	11	乍浦에서 薩摩 표류민 일행 17 인과 합류
24	尾張 永榮丸	12	咸豐 7, 11 1857	大洋에서 영국 배가 구조	미국-香港-福州 -上海	上海- 長崎	咸豐 8, 11 1858	12	영국 배로 귀국

※ 자료: 荒川秀俊 編, 1962, 앞의 책; 川合彦彦, 1967, 앞의 책, 부록 「近世日本漂流編年略史」; 劉序楓, 2001, 「清代環中國海域的海難事件研究-以清日兩國間對外國難民的救助及遣返制度爲中心, 1644~1861」, 〈표 1〉, 210~215쪽.

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 표착한 일본인 표류민의 귀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과 류큐를 제외하고는, 모두 唐船과 네덜란드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24건 가운데 No. 1의 自力歸國 사례를 제외한다면, 네덜란드 배에 의한 송환이 두 건이었으며(No. 7, No. 12), 그 나머지는 모두 唐船에 의한 송환이었다. 19세기 중엽이 되면 태평양에서 서양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마카오나 홍콩을 거쳐서 중국 측에 넘겨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²⁰⁾ 아래에서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례 1: 자력귀국 (필리핀 파탄섬 표착, 1668년, No. 1)

먼저 자력으로 귀국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68년(康熙 7)은 아직 청조의 遷界令이 유효한 시기였는데, 필리핀의 파탄섬에 표착한 일본인 11명이 자력으로 배를 만들어서 귀국하였다. 그들은 1670년 여송에서 출발, 浙江 普陀山을 들렀다가, 그곳에서 1개월 남짓 체재한 뒤, 지역 주민의 원조를 받아 자력으로 일본에 귀국한 적이 있었다.²¹⁾ 그 외에는 모두 나가사키로 가는 중국의 무역선에 의해 송환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 배가 큰 바다의 항해에 견디지 못하여 현지에서 배를 매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귀국하는 도중에 다시 해난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수의 중국 배에 나누어 태워서 송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²²⁾

○ 사례 2: 베트남 표착(1795년, No. 10)

1794년(乾隆 59)에 센다이[仙台領]의 大乘丸에 승선한 16명이 베트남의

20) 川合彦充, 1967, 앞의 책, 附錄「近世日本漂流編年略史」.

21) 『通航一覽』5, 東京: 國書刊行會, 1912, 51~62쪽, 續帝國文庫, 1900, 『校訂 漂流奇談全集』, 東京: 博文館, 50~70쪽; 『異國漂流記集』, 東京: 吉川弘文館, 1962, 19~32쪽.

22) 劉序楓, 2001, 앞의 글, 189~190쪽.

西山에 표착하여 베트남의 왕도에 보내진 다음, 그곳에서 5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1795년 5월 마카오의 상선에 의해 마카오로 송환되었다. 마카오 理事官이 廣東의 香山縣에 보고하여, 난민을 중국 측에 인도하였으며, 廣東 → 江西를 경유하여 浙江의 乍浦에 송치되었다. 그들은 같은 해 11월에 나가사키로 가는 중국 무역선 두 척에 分乘되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²³⁾

○ 사례 3: 필리핀 파탄섬 표착(1830년, No. 17)

1830년(天保 元) 11월에 파탄 諸島에 표착했던 비젠[備前]의 神力丸에 탔던 19명 중 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4명이 배로 마닐라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唐人의 보호를 받았다. 이듬해인 1831년 5월 마카오로 가는 영국 상선에 의해 마카오에 송치되어 마카오 役所에 넘겨졌다. 필담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그곳에서 표류민을 중국 측에 인도하였는데, 香山 → 廣東 남해 → 江西를 거쳐, 浙江의 乍浦로 송환되었다. 그들은 12월에 두 척의 唐船에 나누어 타고 나가사키로 귀국했다.²⁴⁾

23) 「南瓢記」, 『異國漂流記續集』, 東京: 地人書館, 1964; 「安南紀略藁」卷1, 『近藤正齋全集』第1, 東京: 國書刊行會, 1912;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澳門基金會·暨南大學古籍研究所合編, 1999, 앞의 책, 618~619쪽.

24) 「神力丸馬丹漂流口書」, 『江戸漂流總集』第4卷, 東京: 日本評論社, 1993; 「巴旦漂流記」, 倉地克直, 1998, 「神力丸漂流史料について(3)」, 『岡山大學文學部紀要』30號.

Ⅳ. 中國의 朝鮮人 漂流民 救助와 送還

1. 中國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

근세를 통해 조선의 배가 해외에 표류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구조와 송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과 조선 사이의 송환을 다룬 연구는 아직 많다고 할 수 없다.²⁵⁾ 이와 관련된 조선 측 자료로는 『日省錄』,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同文彙考』, 『濟州啓錄』, 『通文館志』가 있다. 한편 중국 측의 檔案 사료에도 많은 기록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²⁶⁾

조선 배의 중국 표착 또는 중국을 경유해서 귀국한 건수를 『통문관지』에서 찾아보면, 1710년(康熙 49)부터 1884년(光緒 10)까지 175년 동안에 172건이 집계되어 해마다 평균 약 1건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이 밖에 1698~1837년에 류큐에 표착해서 중국을 경유하여 귀국한 건수는 17건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더한다면 모두 189건이 된다. 이상은 육로를 통해 중국에서 義州로 송환된 기록이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배가 항해 가능한 경우, 중국 관부의 公金으로 배를 수리해 주고, 식량과 비용 등을 지급하여 자력으로 귀국시킨 예도 있었다. 게다가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1661년부터 1871년 사이에, 류큐에 표착한 조선 배의 기록이 31건 보이는데, 그 가운데 26건은 중국을 경유해서 송환된 것이다.²⁷⁾ 이것을 보면 실제로 조선인의 선박이 해외에 표착한 건수는 위에 서술한 『통문관지』의 기록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25) 池內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京都: 臨川書店; 李薰 著, 池內敏 譯, 2008, 『朝鮮後期漂流民と朝日關係』,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6) 간행된 것으로서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c,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 北京: 中華書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a, 앞의 책이 있다.

27) 小林茂 外, 1998,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宝案研究』 9.

〈표 3〉 중국을 경유하여 송환된 조선 선박의 표착지(1687~1884)

표착지	中國	滿洲	直隸	山東	江蘇	浙江	福建	台灣	廣東	不明	琉球	安南	呂宋	총계
건수	175	56	1	24	33	29	16	15	0	1	26	1	1	202

※ 주: 이 통계 숫자는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통문관지』 권9~12, 「紀年」; 『동문회고』; 『제주계록』(『각사등록』 19 수록);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小林茂 外, 1998,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등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배의 표착지 분포를 살펴보면, 한반도와 인접한 만주 지역, 특히 遼東半島 연안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江蘇, 浙江, 山東, 福建, 台灣의 순서인데, 류큐 지역에 표착한 사례도 중국 연해의 각 성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가 보인다. 배의 출항지를 보면, 요동반도에 표착한 배의 대부분은 서북부의 평안도에서 출항한 것이고, 중국 동부 연해나 류큐에 표착한 것은 한반도 남부의 전라도 배가 가장 많았다. 표착한 선박의 종류는 연해의 어선이나 소형 수송선, 무역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 표류민은 육로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표착지의 役所에서 전문위원을 파견해서, 표류민을 北京까지 호송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조에서는 사절이 묵는 北京의 會同館에 그들을 수용해 놓고, 조선의 조공사절이 귀국할 때를 기다렸다가, 사절과 함께 본국으로 동반 귀국하도록 했다. 사절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청조 측의 예부에서 朝鮮通事를 파견하였다. 육로를 통해 국경 지대인 鳳凰城까지 표류민을 송환한 다음, 義州의 조선 관원에게 인도한 경우도 있었다. 만주 연해에 표착한 경우에는 北京으로 송환하지 않고 먼저 盛京(瀋陽)으로 보낸 다음, 北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서 성징에서 바로 의주로 송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경로는 다음과 같다.

표착지(중국 본토) (육로) → 北京 會同館 → 山海關 → 盛京 → 鳳凰城 → 압록강 → 의주

표착지(만주지구) → 盛京 → 鳳凰城 → 압록강 → 의주

조선인 표류민이 北京이나 盛京으로 이송되고 나면,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먼저 北京(또는 盛京)의 예부에서 조선 국왕 앞으로 咨文(公文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조선 국왕은 예부의 자문을 받게 되면, 이것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자문을 예부에 다시 보내야 했다. 그리고 표류민이 본국에 송환되고 난 다음에는, 조선 국왕이 청조 황제에게 「謝漂人出送表」를 제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에 대응하여 청조의 예부에서 또 「表文」을 받았음을 알리는 문서를 통해 조선 국왕에 통달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표류민 송환 활동이 종료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²⁸⁾

즉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육로를 통해 송환하는 경우 이외에도, 배가 항해할 수 있을 때에는, 중국 측이 公金으로 배를 수리해 준 다음, 표류민들에게 식량과 비용 등을 지급하여 자력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예도 있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1777년과 1872년에 두 차례 자력 귀국이 이루어졌다.²⁹⁾ 이들은 모두 山東에 표착한 배로 난민의 희망에 따라 해로로 귀국시킨 것이다. 해로를 통해 귀국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난민의 희망이 있어야 하고, 둘째, 배가 튼튼하여 항해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화물의 육상 수송이 불편한 경우에 한하고, 넷째, 山東과 한반도의 사이처럼 거리가 가까워서 항해의 위험성이 적어야 하는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로송환을 하였던 것이다.

중국 이외 지역에 표착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나라의 조공선이나 무역선을 통해서 먼저 중국 본토로 보내야 했으며, 그런 다음에는 앞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본국에 송환되었다. 다음으로 조선에서 류큐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표착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28) 禮部和 朝鮮國王 사이에 교환된 公文書에 대해서는 『同文彙考』 所收의 諸文書 참조.

29)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a, 앞의 책, 14쪽, 護理山東巡撫國泰奏摺;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a, 앞의 책, 89~490쪽, 護理山東巡撫丁寶楨奏摺.

2_ 류큐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

조선인이 류큐에 표착한 경우, 류큐는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 오던 것을 중국 경유로 송환경로를 변경하였다. 1684년에 청조가 海禁을 해제하자, 류큐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하던 경로도 변경되었다. 1696년(康熙 35) 이후가 되면, 종래에 류큐 → 나가사키 → 쓰시마 → 부산으로 이어지던 송환경로가 류큐 → 福州 → 北京 → 조선으로 바뀌게 된다.³⁰⁾ 여기에는 1609년에 류큐가 사쓰마에 정복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697년 이후 조선 배가 류큐에 표착한 사례가 26건 확인되었다. 1704년 에라부지마[永良部島]에 표착한 1건을 제외한다면(No. 5), 류큐에 표착한 조선인들은 모두 류큐 선박에 의해 먼저 福州로 이송된 다음, 중국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송환되고 있었다(표 4 참조).³¹⁾ 조선인 표류민들이 중국에 도착한 후 중국 측이 그들을 구호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_ 동남아시아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조선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배가 조선 연안에 표착해서 난파한 경우, 조선인 표류민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송환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1801년(嘉慶 6) 국적 불명의

30) 李薰, 1997,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の送還を通してみた朝鮮,琉球關係」, 『歴代寶案研究』 8, 8~9쪽 ; 豊見山和行, 2001, 「近世琉球における漂流・漂着問題についてー漂着民救護制度を中心に」, 『第八回琉中歴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沖縄: 琉球中國關係國際學術會議, 47~48쪽.

31) 한국 학계에서는 최근 조선인의 異國 표류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인의 류큐 표착에 관해서는 이훈의 연구 외에, 하우봉 외, 1999, 『朝鮮과 琉球』, 서울: 아르케; 손승철, 2001, 「조선전기 피로인·표류민 송환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등이 있다.

〈표 4〉 류큐에 표착한 조선 선박(1661~1871)

No.	표착 연도	표착지	선주 등 대표자	인수	선적·출항지	출항 연월	귀국방식 경과 지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참고 자료
1	1661 順治 18	琉球		18	全羅道 務安 土島	順治 18	薩摩-長崎- 對馬-釜山-	康熙元	18	『同文彙考』 2309; 『李朝實錄』
2	1662 康熙 元	永良部島	金麗輝	32	全羅道 海南	康熙 元	薩摩-長崎- 對馬	康熙 2	28	『同文彙考』 2310; 『李朝實錄』; 『海外 聞見錄』
3	1669 康熙 8	永良部島		21	全羅道 海南	康熙 8, 2	薩摩-長崎- 對馬	康熙 8, 7	21	『同文彙考』 2313; 『李朝實錄』
4	1697 康熙 36	古米山	安民男	18	全羅道 靈岩	康熙 36, 9	琉球接貢船 福建-北京- 義州 領曆官解 回	康熙 37	18	『通文館志』; 『同文 彙考』 1251; 『歷代 實案』 1531; 『中山 世譜』 126
5	1704 康熙 43	永良部島		39	全羅道 靈岩	康熙 43, 1	薩摩-長崎- 對馬-釜山-	康熙 43, 6	37	『漂人領來謄錄』 4 260
6	1715 康熙 54	國頭安田 浦	金瑞	9	全羅道 珍島	康熙 53, 9, 漂到琉 球某島, 54, 3 轉 送那霸	琉球-福建- 北京-義州 冬 至使	康熙 55, 12	9	『通文館志』; 『實案』 172; 『同文彙考』 1255; 『評定所文 書一』 94; 『李朝實 錄』; 『世譜』 132; 『備邊司謄錄』
7	1726 雍正 4	(沖永良 部島)烏 岐奴地方	孫應善 (星)	9	全羅道 濟州	雍正 4, 2	進貢船 福建-北京- 義州 冬至使	雍正 6, 3	9	『實案』 1988; 『世譜』 138; 『通文』 154; 『彙考』 1257; 『耽羅 聞見錄』; 『備邊司謄 錄』; 『桑蓬錄』
8	1733 雍正 11	慶良間島 (馬齒s)	徐厚廷	12	慶尚道	雍正 11	琉球護送船 福建-北京- 義州 差通官	雍正 13	12	『通文』; 『評定所文 書』 61~126; 『實案』 2200; 『彙考』 1261; 『備邊司』; 『實錄』
9	1739 乾隆 4	德之島	康世贊	21	全羅道 靈巖 所安島		琉球接貢船 福建-北京- 義州 齋咨官	乾隆 6	20	『通文』; 『實案』 2306, 15; 『彙考』 1265; 『增補耽羅志』; 『實錄』; 『備邊司』

No.	표착 연도		표착지	선주 등 대표자	인수	선적·출항지	출항 연월	귀국방식 경과 지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참고 자료
10	1779	乾隆 44	琉球 (大島)	李再晟	12	全羅道 靈巖	乾隆 44. 11	琉球接貢船 福建-北京- 義州 差通官	乾隆 45	12	『通文』; 『實案』 3492; 『彙考』 1318
11	1794	乾隆 59	國頭安田 村	安太丁	10	全羅道 康津	乾隆 59. 1	琉球接貢船 福建-北京- 義州 差通官	乾隆 60	10	『通文』; 『評定所 文書』 299~359; 『實案』 4053; 『彙 考』 3526; 『中朝 續編』 26
12	1795	乾隆 60	琉球	張三芝	7	黃海道 長淵		琉球接貢船 福建-北京- 義州 年貢使	嘉慶元	7	『通文』; 『彙考』 3528
13	1796	嘉慶 元	琉球 (大島)	李唱寶	15	全羅道 康津	乾隆 60. 11	琉球進貢船 福建-北京- 義州 領啓官	嘉慶 2	10	『通文』; 『實案』 4199; 『彙考』 3534
14	1802	嘉慶 7	琉球 (大島)	文順德	6	全羅道 牛耳島	嘉慶 7. 1	琉球進貢船 呂宋-福建- 北京-義州 年貢使 呂宋-澳門- 廣東-北京- 義州 齋咨官	嘉慶 8 嘉慶 10	4 2	『漂海錄』; 『通文』; 『實案』 4632; 『彙 考』 3538; 『世譜』 191;
15	1814	嘉慶 19	宮古諸島 (太平山)	千一得	7	全羅道	嘉慶 19. 11	護送船 廣東-福建- 北京-義州 差 通官	嘉慶 21	6	『通文』; 『實案』 5368; 『中琉選編』 484; 『中朝續編』 81
16	1825	道光 5	大島笠利 郡	黃勝巾	5	全羅道 海南 濟州	道光 4. 9	護送船 福建-北京- 義州 節使	道光 6	5	『通文』; 『實案』 5368; 『世譜』 223; 『彙考』 3559
17	1828	道光 8	勝連津堅 一泊	孫勝得 金光顯	12	全羅道 海南濟	道光 7. 12	福建--北京- 義州 節使	道光 9	12	『通文』; 『實案』 6184; 『世譜』 226; 『彙考』 3561

No.	표착 연도		표착지	선주 등 대표자	인수	선적·출항지	출항 연월	귀국방식 경과 지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참고 자료
18	1831	道光 11	琉球尹江島	高成尚	33	全羅道靈巖濟	道光 11, 11	福建-北京-義州節使	道光 13	26	『通文』; 『寶案』 6482; 『世譜』 230; 『彙考』 3565
19	1832	道光 12	八重山平久保(石垣島)	李寅秀	12	全羅道全州	道光 12, 11	福建-北京-義州差通官	道光 14	3	『通文』; 『寶案』 6553; 『世譜』 232; 『彙考』 3565
20	1832	道光 13	八重山川平(石垣島)	安順敬	8	全羅道海南	道光 13, 1	福建-北京-義州差通官	道光 14	6	同上
21	1834	道光 14	八重山与那國	孫益福	9	朝鮮	道光 14, 9	接貢船 福建-北京-義州差通官	道光 17	6	『通文』; 『寶案』 6702; 『世譜』 234; 『彙考』 3568
22	1836	道光 16	姑米島	李季信 李明得	10	朝鮮	道光 16, 9	進貢船 福建-北京-義州年貢使帶回	道光 17	4	『通文』; 『寶案』 6842; 『世譜』 236; 『彙考』 3569; 『中琉三編』 507
23	1841	道光 21	萊壁山(伊平屋島)	李光岩	11	全羅道黑	道光 21, 3	護送船 福建-北京-義州		8	『寶案』 7253; 『世譜』 244; 『中琉三編』 553; 『評定所二』 225
24	1849	道光 29	不明(德之島)	任尚日	7	全羅道康津	道光 29, 8	進貢船 福建-北京-義州	咸豐元 2	7	『寶案』 7812; 『世譜』 255; 『濟州啟錄』 30~31
25	1854	咸豐 4	不明(大島)	梁鶴信	47	全羅道康津	咸豐 3, 12	進貢船 福建-北京-義州領曆官	咸豐 5, 12	6	『寶案』 8205; 『世譜』 261; 『濟州啟錄』 69, 76, 83
26	1855	咸豐 5	不明(萊壁山)	韓致得	3	全羅道無注里	咸豐 5, 9	進貢船 福建-北京-義州	咸豐 7, 1	2	『寶案』 8275; 『濟州啟錄』 69, 76, 83

No.	표착 연도	표착지	선주 등 대표자	인수	선적· 출항지	출항 연월	귀국방식 경과 지역	귀국 연월	귀국 인수	참고 자료
27	1856	咸豐 6 (鳥島)	金應彩	6	全羅道 康津	咸豐 6. 9	接貢船 福建-北京- 義州	咸豐 9	6	『寶案』 8313; 『世譜』 261; 『濟州啟錄』 91, 95; 『沖繩縣史料前近代』 5, 495-
28	1860	咸豐 10 伊是名島 (葉壁山)	梁明得	9	全羅道 康津	咸豐 9. 9	進貢船 福建-北京- 義州	咸豐 11	9	『世譜』 267; 『寶案』 8472; 『中朝續編』 362
29	1865	同治 4 (大島)	文白益	15	全羅道 海南	同治 4. 11	進貢船 福建-北京- 義州	同治 6. 5	15	『世譜』 276; 『濟州啟錄』 119
30	1870	同治 9 久米島	高才淑	6	全羅道 海南	同治 9. 1	進貢船 福建-北京- 義州 通官	同治 10. 7	6	『世譜』 279; 『濟州啟錄』 178; 『中琉選編』 1076

※ 자료: 小林茂 外, 1998,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宝案研究』 9; 李薰 著, 松原孝俊·金明美 譯, 1997,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の送還を通してみた朝鮮·琉球關係」, 『歴代宝案研究』 8.

표류민 5명이 조선에 표착하였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송환방법을 찾지 못해 조선 정부가 그들을 조선에 머물게 한 적이 있었다. 1802년에 조선이 그들을 청조 측으로 보냈지만, 국적이 판명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北京으로 보내더라도 별 도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지고 말았다.³²⁾

또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1653년에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 배 스페르웨르호의 선원들은 조선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1668년에 그들이 일본에 인도될 때까지 그들은 「감옥」 생활을 강요당했다. 억류의 원인은 조선과 네덜란드 사

32) 『宮中檔嘉慶朝奏摺』 13, 台北: 故宮博物院, 349쪽.

이에 아무런 국제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³³⁾

한편 조선인이 중국·류큐 이외의 동남아시아에 표착해서 귀국한 사례는 2건뿐이었다. 가장 빠른 예는 1687년(康熙 26)에 베트남의 호이안(會安)에 표착한 高尚英과 金泰璜(다른 기록에는 金大璜으로 기록) 등 24명의 사례인데, 결국 베트남 측은 중국 Ningbo(寧波)의 貿易船主 朱漢源에게 의뢰하여 구조물자를 지급하고 官에서 작성한 咨文을 맡겨서 그들을 본국의 제주도까지 송환했다.³⁴⁾ 당시 중국 측에서는 海禁을 막 해제한 혼란시기여서, 외국인 표류민에 대한 구조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상인에게 의뢰하여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주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건은 표 4의 No. 14에 소개한 표착사건인데, 그들은 1802년(嘉慶 7) 류큐에 표착했다가, 류큐에서 중국으로 송환되던 도중, 다시 필리핀에 표착한 조선인 文淳得(어떤 기록에는 文順德) 등 6명이었다.

위의 송환사례를 통하여, 당시 청조를 중심으로 한 조공 체제 아래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외국인 표류민을 어떻게 구조하여 송환하였는지 그 일단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³⁵⁾ 그 표류의 경위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文淳得과 그의 숙부 文好謙 등 6명이 1802년(嘉慶 7) 정월에 류큐의 오시마[大島]에 표착하였는데, 도쿠노시마[德之島]를 거쳐, 4월에 나하[那覇]의 도마리무라[泊村]로 호송되었다. 거기에서 반년가량 머무른 다음, 10월에는 같은 류큐에 표착한 중국 泉州府의 표류민 徐三貫 등 32명과 함께, 류큐의 護送船을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또 한 번 조난을 당해, 필리핀의 동북부 馬宜 지방에 표착했다. 一呖尾³⁶⁾로 이동한 그들은 현지의 福建

33) 荒野泰典, 1983, 앞의 글, 149쪽.

34) 이 건에 관해서는 陳益源, 2009, 「回顧在韓國·日本與越南之間的兩起漂流事件」, 『韓國學論集』 45, 漢陽大學校, 41~77쪽에 소개가 있다.

35) 이 표착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별고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설명에 그친다. 자세한 것은 劉序楓, 2005, 「清代環中國海域的海難事件研究—以清嘉慶年間漂到琉球·呂宋的朝鮮難民返國事例爲中心」, 福建師範大學中琉關係研究所 編, 『第九屆中琉歷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北京: 海洋出版社를 참조.

36) 중국 사료에서는 一呖戈, 一呖哥, 芑沃, 佬沃 등의 표기가 보인다. 이곳은 현재

系 華僑의 원조를 받아서,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체재한 다음, 류큐 배는 이듬해 3월에 조선인 문호겸 등 4명과 중국인 5명을 태우고 福建을 향해 출발했다. 남아 있던 조선인 문순득 등 2명과 중국인 25명은 마닐라로 이송되었다가, 8월에 마카오 배에 의해 마카오로 보내졌다. 현지에서 표류 경위에 대하여 심문을 받고 나서, 조선인은 廣東에서 육로를 이용하여 北京까지 보내졌는데, 그 뒤 조선의 사절에 인도되어 의주를 경유하여 귀국했다. 그들이 고향인 전라도의 牛耳島로 돌아간 것은 1805년(嘉慶 10) 정월이었다. 한편 먼저 귀국한 문호겸 등 4명은 1803년(嘉慶 8) 12월에 福州에서 北京으로 보내졌으며, 이듬해인 1804년 3월 조선의 冬至使 편에 이끌려 본국으로 돌아갔다.³⁷⁾ 그들은 문순득 일행보다 9개월 빨리 고향에 돌아온 셈이다.

이국에서 만 3년의 표류생활을 보낸 문순득은 귀향 후 『漂海錄』이라는 표류기록을 남겨서, 琉球와 필리핀의 풍속·언어·농작·복식·선박 등에 관련된 견문을 많이 기술했다.³⁸⁾ 이 표류사건은 조선, 류큐, 필리핀, 마카오, 중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環中國海地域의 표류민 송환체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례가 된다.³⁹⁾

4_ 唐船貿易망의 존재

이상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듯이,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민 송환을

呂宋島 西北岸에 있는 Laoag, 즉 Ilocos로 추정된다. 淸의 乾隆 연간에 중국 연해의 一呖戈에서 출항한 呂宋 선박의 표착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37) 『同文彙考』 4, 3538쪽.

38) 이 글에서 사용한 사료는 多和田眞一郎, 1994, 『「琉球・呂宋漂海錄」の研究—二百年前の琉球・呂宋の民俗・言語』, 東京: 武蔵野書院, 35~76쪽에 수록되어 있는 영인본이다. 이하 주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료는 모두 이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漂海錄』은 文淳得의 구술기록인데, 당시 조선의 牛耳島에 유배된 실학자 丁若銓과 그 제자인 李綱會에 의해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다. 『柳庵叢書』, 新安文化院, 2005 참조.

39) 문순득에 관한 최근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조. 최성환, 2010,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목포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담당했던 것은 각지에 산재해 있던 중국계 상인과 그들에 의해 형성된 무역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조 정부는 解禁을 해제한 다음, 1684년부터 福建의 廈門과 廣東의 廣州, 浙江의 寧波, 江蘇의 上海에 각각 海關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 관리와 관세 징수기관으로 삼았다. 解禁令의 철폐는 연해의 민중에게 더 많은 생활 터전을 제공한 셈이었다.⁴⁰⁾

이와 같이 唐船에 의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역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면서 唐人貿易網을 형성해 나갔다. 이 무역망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 서양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차례차례 참가하였는데, 시종일관 거기에는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표 2의 동남아시아 표착 일본인의 귀국사례 그리고 앞에서 본 필리핀에 표착한 문순득 일행의 사례를 보면, 동남아시아 각지에 다수의 중국 상인들이 산재해 있었으며, 그들이 일본인과 조선인 표류민들을 돌봐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唐船의 무역망에 따라 일본·조선·중국 등 여러 나라의 표류민이 중국으로 이송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¹⁾

40) 중국인의 해외무역 또는 해외 이주는 1684년의 海禁令 解除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인이 이주해 간 곳은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이 많았는데, 이 주 원인으로는 인구 압력과 전쟁, 정치적 망명, 재난 그리고 통상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인의 동남아시아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1683년에 淸朝가 中國을 統一하고, 그 이듬해인 1684년에 종래의 海禁을 전면적으로 철폐하여, 중국인의 해외 도항과 무역을 인정한 뒤부터였다. 이 시기 조선과 일본, 그리고 류큐는 여전히 자국민의 해외 도항과 무역, 이주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면서 해외무역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그리고 해금령 철폐 이후 대량의 물자이동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生絲와 絹織物, 陶磁器 같은 특산물이 해외로 팔려나갔으며, 그 대가로 대량의 銀과 아시아 각 지역의 특산물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자이동과 함께 사람들의 왕래, 정보의 교환, 문화의 전파가 이어졌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후반 이후 이른바 唐船貿易體制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41) 1684년 해금령 철폐 이후 더욱 활기를 띠게 된 중국인의 해외 도항과 이주는 중국의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商船에 편승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간 수많은 이주자들에 의해서 생활물자가 운반되기도 하고, 본국에 있는 친족들에게 송금을 한다든지 물자를 수송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바다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표류를 하게 된 사람들도 생겨나게 마련이었었는데, 그들을 구조하여 상선에 태워 본국으로 송환해 주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서양 선박의 존재였다. 서양 선박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 서양 여러 나라의 대부분은 조공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내항하고 있었는데, 互市場은 남부의 廣東에 집중되어 있었다. 廣東 이외에 浙江의 寧波, 福州의 廈門에도 외국 선박이 내항한 적이 있었다. 다만 그것은 극히 소수의 예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오래가지도 않았다. 1757년(乾隆 22) 치안과 재정을 이유로, 류큐와 필리핀을 제외하고, 외국선이 來港하여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을 모두 廣州 한 곳으로 한정하였다. 건륭 20년대에 점차 구체화되어, 上海와 寧波 곧 乍浦는 일본과 銅貿易, 廈門은 南洋貿易 그리고 廣州는 주로 西洋貿易이었으나 남양무역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 선박에 편승해서 廣州로 보내진 표류민이 늘고 있었다. 거꾸로 중국이나 일본, 조선, 류큐에 표착한 동남아시아와 서양인 표류민도 廣東을 거점으로 본국에 송환되고 있었다.

廣州 이외에 포르투갈인의 거류지였던 澳門 곧 마카오도 표류민 송환의 중요 거점 가운데 한 곳이었다. 청조 정부는 1730년(雍正 8)에 香山縣丞을 설치해 관리하고, 1743년(乾隆 8)에는 거기에 더하여 海防同知를 옮겨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포르투갈 측에서는 마카오의 이사관 委黎多를 두어 관리하고 있었다.⁴²⁾ ‘위려다’는 Procurador의 음역으로 議事會 멤버의 일원을 말하는 것인데, 澳門의 행정·海防·무역 등의 사무관리 외에, 마카오의 서양인과 중국인 사이의 재판분쟁을 처리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⁴³⁾

서양 선박이 표류민을 마카오로 보내면, 마카오의 이사관을 통해서 먼저 香山縣丞에게 보고한다. 그런 다음 香山縣에서 마카오의 海防同知에게, 해방

일이 점차 관행처럼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건륭 연간(1736~1795)에 이르러 중국에 표착한 외국인을 구조하여 그들의 본국으로 송환해 주는 절차가 확립되었다. 즉 1737년 이후가 되면 漂流民 送還이 唐船貿易體制와 서로 연동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42) 중국어의 全名은 「督理澳境事務西洋理事官委黎多」이다.

43) 劉芳 輯, 章文欽 校, 1999, 『清代澳門中文檔案彙編』 上冊, 澳門: 澳門基金會, 1쪽.

주지는 다시 廣東의 순무와 兩廣의 총독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중국 측의 지시가 내려지면 표류민을 마카오에서 중국 측에 이송하고, 香山縣을 경유해서 廣州로 보내진다. 이처럼 마카오가 동아시아 표류민 송환체제의 중요한 結節點 중 하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조선인과 일본인 표류민의 중국 표착(또는 중국을 경유한 귀국) 사례를 중심으로, 청조 중국이 외국인 표류민을 어떻게 구조하여 송환하였는지 그 실태를 고찰한 것이다. 본문의 고찰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듯이, 외국인 표류민에 대한 救助制度는 1737년(乾隆 27)에 확립되었다. 즉 구조경비의 확보라든가 송환체제의 정비 등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에 표착한 외국인 표류민은 외교나 무역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부분 정중하게 구조되어 본국에 송환될 수 있었다. 가령 조선인, 일본인, 류큐인이 동남아시아에 표착했을 때, 현지의 지방관이 그들을 구조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 지방관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역의 화교나 무역상인의 네트워크가 그들을 구조해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구조된 표류민이 일단 중국 본토로 보내지면,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조공이나 무역체제를 이용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있었다. 19세기 초기 조선인 文淳得의 표류사례와 일본인의 동남아시아 표착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사정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 측은 조선인 표류민의 호송에 관해서 항상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관부에서는 표착지에서 北京까지 특별히 임명한 役人을 파견하여 조선인 표류민들을 호송하는 것이 규례였다. 표류민들이 北京에 도착하고 나면, 조선사절이 묵는 會同館에

안치하였다가, 조선사절의 귀국을 기다려서 사절과 함께 본국에 동행시켜 귀국하게 하였다. 사절이 안 올 경우에는 청조 측의 예부와 병부에서 朝鮮通事를 파견하여, 兵士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태워서 국경 지역인 鳳凰城까지 호송한 다음, 의주의 조선 관원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이에 발생한 경비는 모두 청조 정부의 부담이었다. 또 두 나라 정부 사이에는 표류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공문서가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非조공국이면서 게다가 외교관계가 없었던 일본의 표류민을 송환할 때는 조선의 경우와 조금 달랐다. 각 省의 책임 아래 役人을 통해 성과 성 사이에 인수인계를 하여, 일본 무역선의 출항지였던 자포[乍浦]까지 일본인 표류민을 보냈다. 그들을 호송할 때 들어간 비용은 중국의 각 성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 乍浦에 도착하게 되면 민간 상인에 의뢰해서 일본인 표류민을 돌보게 하고, 바닷길을 통해서 나가사키로 송환시킨 것이다.

이상은 조선인과 일본인 표류민의 구조와 송환문제를 중심으로, 청조 측 해난구조체제의 실태를 논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일본 외에 사실은 류큐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양 여러 나라의 표류민도 많이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각각에 대하여 구조와 송환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경우 표류민 송환체제는 18세기 중엽에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무렵에 와서 비로소 여러 나라 사이의 국제 정세가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국내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무역선이 왕성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표류민의 송환도 그때에 와서 비로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표류민의 송환을 담당한 것은 주로 다음의 세 부류였다. 즉 ① 唐船貿易망, ② 朝貢貿易체제, ③ 서양 여러 나라의 무역선, 이 세 가지가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표류민 송환체제를 형성했던 것이다.

표류민 송환의 주요 거점으로는 澳門·廣州·廈門·福州·乍浦·北京·의주·부산·쓰시마·나가사키·사쓰마의 山川·那覇·마닐라·바타비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마카오와 廣州가 동양과 서양 무역선의 結節點으로서 표류민 송환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각지에 있었던 난민수용과 송환

거점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동아시아 해역의 漂流民 送還網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 번역 : 정일성(광주여자대학교)



참고문헌

〈사료〉

- 『宮中檔道光朝奏摺』全20冊, 台北: 故宮博物院, 未刊.
- 『宮中檔雍正朝奏摺』全32冊, 台北: 故宮博物院, 1977~1980.
- 『宮中檔乾隆朝奏摺』全32冊, 台北: 故宮博物院, 1982~88.
- 『宮中檔嘉慶朝奏摺』全34冊, 台北: 故宮博物院, 未刊.
- 劉芳輯·澳門基金會, 1999, 『葡萄牙東波塔檔案館藏清代澳門中文檔案彙編』2冊.
- 『明清檔案』324冊,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出版, 1986~1995.
- 『明清史料』100冊,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出版, 1930~1975.
- 中國第一歷史檔案館·澳門基金會·暨南大學古籍研究所合編 1999, 『明清時期澳門問題檔案文獻匯編』全6冊, 北京: 人民出版社.
- 『史料旬刊』, 1~40期, 北平: 故宮博物院文獻館, 1930~1931.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84~1985, 『康熙朝漢文硃批奏摺』全8冊, 北京: 中華書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89~1991, 『雍正朝漢文硃批奏摺彙編』, 全40冊,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3, 『清代中琉關係檔案選編』, 北京: 中華書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4, 『清代中琉關係檔案續編』, 北京: 中華書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6a,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 北京: 中華書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6b, 『清代中琉關係檔案三編』, 北京: 中華書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8a,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8b, 『清代琉球國王表奏文書選錄』, 安徽: 黃山書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2000a, 『中葡關係檔案史料匯編』,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2000b, 『清代中琉關係檔案四編』, 北京: 中華書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2002, 『清代中琉關係檔案五編』,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 『清代外交史料』嘉慶朝6冊.道光朝4冊, 北平: 故宮博物院編, 1932~1933.

〈그 밖의 미간행 사료: 北京中國第一歷史檔案館, 臺北故宮博物院藏〉

- 『軍機處錄副奏摺 外交類』.
- 『宮中硃批奏摺 外交類』.
- 『禮科史書等』.

『內閣大庫檔案』,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藏.

〈단행본〉

加藤貴 校訂, 1990, 『漂流奇談集成』, 國書刊行會.

金指正三, 1968b, 『近世海難救助制度の研究』, 吉川弘文館.

多和田眞一郎, 1994, 『「琉球・呂宋漂海録」の研究—二百年前の琉球・呂宋の民俗・言語』, 武蔵野書院.

大庭脩, 2001, 『漂着船物語—江戸時代の日中交流』, 岩波新書.

大庭脩・松浦章・荻田貫 編, 1985~1997, 『江戸時代漂着唐船資料集』1~6, 關西大學出版會.

德永和喜, 2005, 『薩摩藩對外交渉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小林茂文, 2000, 『ニッポン人異國漂流記』, 小學館.

琉球中國關係國際學術會議, 2001, 『第八回琉中歷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琉球大學法文學部.

劉序楓, 2004, 『清代檔案中的海難史料目錄(涉外篇)』, 台北: 中央研究院.

李薰, 池內敏 訳, 2008, 『朝鮮後期漂流民と日朝關係』, 法政大學出版局.

赤嶺誠紀, 1988, 『大航海時代の琉球』, 沖繩タイムス社.

竹原孫恭, 1982, 『城間船中國漂流顛末』, 竹原房.

池內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倉地克直, 『漂流記録と漂流體驗』, 思文閣出版, 2005.

川合彦充, 1967, 『日本人漂流記』, 社會思想社.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논문〉

金指正三, 1968a, 「江戸時代海難について」, 『海事史研究』10.

桃木至朗, 2000, 「東南アジア史における漂流の研究は可能か—漢籍とチャンパ・ベトナム史の事例から」, 『前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海域交流成立條件に関する基礎的研究』, トヨタ財團研究助成報告書.

渡邊美季, 1999, 「清代中國における漂着民の處置と琉球」(1), 『南島史學』54.

渡邊美季, 2000, 「清代中國における漂着民の處置と琉球」(2), 『南島史學』55.

渡邊美季, 2002, 「近世琉球の對『異國船漂着』體制—中國人・朝鮮人・出所不明の異

- 國人の漂着に備えて」,『琉球王國評定所文書補遺編』,浦添市教育委員會.
- 渡邊美季, 2005a, 「清に對する琉日關係の隱蔽—『旅行心得之條々』の分析を中心に」, 『アジア民衆史研究』 10.
- 渡邊美季, 2005b, 「清に對する琉日關係の隱蔽と漂着問題」, 『史學雜誌』 114-11.
- 渡邊美季, 2006, 「中日の支配論理と近世琉球—「中國人・朝鮮人・異國人」漂着民の處置をめぐる」, 『歷史學研究』 810.
- 得能寿美・木津祐子, 2001, 「『漢文』『漢文集』」, 『八重山博物館紀要』 18.
- 服部純一 編, 1984, 『日本人漂流記文獻目錄』, 同志社大學圖書館.
- 山下恒夫 再編, 1992, 『石井研堂これくしょん江戸漂流記總集』 全6卷, 日本評論社.
- 西里喜行, 1995, 「清代光緒年間の「琉球國難民」漂着事件について—救國運動との關連を中心に」, 『第二回琉球・中國交渉史に關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 小林茂 外, 1998,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宝案研究』 9.
- 松浦章, 1982, 「李朝時代における漂着中國船の一資料—顯宗八年(1667)の明船漂着と「漂人問答」を中心に」,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5.
- 松浦章, 1983, 「十八~十九世紀における南西諸島漂着中國帆船より見た清代航運業の一側面」,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6.
- 松浦章, 1984~1985, 「李朝漂着中國帆船の「問情別單」について」(上・下),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7・18.
- 劉序楓, 1993, 「十七・八世紀の中國と東アジア—清朝の海外貿易政策を中心に」, 『アジアから考える』 2(地域システム), 東京大學出版會.
- 劉序楓, 1997, 「享保年間の唐船貿易と日本銅」, 中村實 編, 『鎖國と國際關係』, 吉川弘文館.
- 劉序楓, 2002, 「清代環中國海域の海難事件研究—以清日兩國間對外國難民的救助及遣返制度爲中心 1644~1861」,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 8, 台北: 中央研究院.
- 劉序楓, 2005, 「近世中國と日本間における漂流・漂着事件について」, 『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交流の諸相—海賊・漂流・密貿易』,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 劉序楓, 2006, 「清代檔案と環東亞海域の海難事件研究—兼論海難民遣返網絡の形成」, 『故宮學術季刊』 23~3.
- 劉序楓, 2007, 「清代琉球船舶の海外漂流—以漂到東南亞的事例爲中心」, 辛德蘭 編, 『第十屆中琉歷史關係學術會議論文集』, 台北: 中琉文化經濟協會.
- 劉序楓, 2008, 「清末の東亞變局與中日琉關係—以漂流民的遣返問題爲中心」, 『第

- 十一回 琉中歴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沖縄: 琉球中國關係國際學術會議.
- 劉序楓, 2008, 「漂流, 漂流記, 海難」, 桃木至朗 外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 劉序楓, 2009, 「近世東亞海域の偽裝漂流事件—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の漂流中國事例爲中心」, 『韓國學論集』第45輯, 漢陽大學.
- 俞玉儲, 1999, 「清代の琉球船が貿易を目的に漂流したことについての私見」, 『第四回 琉球・中國交渉史に關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 李薰, 1997,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の送還を通してみた朝鮮・琉球關係」, 『歴代宝案研究』8.
- 赤嶺守, 1999, 「清代の琉球漂流民送還體制について—乾隆二十五年の山陽西表船の漂着事例を中心に」, 『東洋史研究』58~3.
- 中村質, 1990, 「漂着唐船の長崎回送規定と實態」, 九州大學國史學研究室 編, 『近世近代史論集』, 吉川弘文館.
- 최성환, 2010,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목포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 春名徹, 1994, 「近世東アジアにおける漂流民送還體制の形成」, 『調布日本文化』4.
- 春名徹, 1995a, 「東アジアにおける漂流民送還制度の展開」, 『調布日本文化』5.
- 春名徹, 1995b, 「漂流民送還制度の形成について」, 『海事史研究』52.
- 春名徹, 2000, 「歴史學における〈漂流〉の現在」, 『調布日本文化』10.
- 春名徹, 2001, 「漂流民の世界」, 尾本恵市 外 編, 『海のアジア』5(越境するネットワーク), 岩波書店.
- 春名徹, 2005a, 「文學としての漂流記」, 『江戸文學』32.
- 春名徹, 2005b, 「近世漂流民送還制度の終焉」, 『南島史學』65・66.
- 春名徹, 2005c, 「近世日本船海難にかんする中國全記録の再検討—東アジアにおける近世漂流民送還制度と日本」, 『海事史研究』62.
- 湯熙勇, 2002a, 「清代前期中國における朝鮮國の海難船と漂流民救助について」, 『南島史學』59.
- 湯熙勇, 2002b, 「清代中國におけるベトナム海難船の救助方法について」, 『南島史學』60.
- 八百啓介, 2005, 「江戸時代における東南アジア漂流記—『南海紀聞』とボルネオ情報」, 『日本歴史』687.
- 平和彦, 1975, 「近世南西諸島における唐通事」上, 『琉大史學』7.

- 平和彦, 1980, 「近世奄美諸島漂着の中國人と朝鮮人の護送」, 『南島—その歴史と文化』, 第一書房.
- 豊見山和行, 2000, 「一七世紀における琉球王國の對外關係—漂着民の處理問題を中心に」, 藤田覚 編, 『十七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豊見山和行, 2001, 「近世琉球における漂流・漂着問題—漂着民救護と日本漂着事例から」, 『第八回琉球中歴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 和田正彦, 1995, 「漂流民の眼からみた18世紀後半のヴェトナム」, 『南島史學』 45.
- 荒川秀俊 編, 1962, 『日本漂流・漂着史料』, 地人書館.
- 横田佳恵, 1994, 「鎖國體制下における漂流民送還體制—五島藩を中心に」, 『史艸』 35.
- 黒木國泰, 1997~1998, 「近世日向沿岸漂着唐船・琉球船と密貿易」 1・2, 『宮崎女子短期大學紀要』 23, 24.
- 黒木國泰, 1999, 「漂流・漂着船史料からみた17・18世紀環シナ海地域システムと鎖國體制」, 『宮崎女子短期大學紀要』 25.
- 黒木國泰, 2001~2002, 「延岡内藤藩の幕府領細嶋漂着唐船對處マニュアルについて」 上・下, 『宮崎女子短期大學紀要』 27, 28.
- ハメル・ヘンドリック 著, 生田滋 訳, 1969, 『朝鮮幽囚記』, 東洋文庫 132, 平凡社.

[ABSTRACT]

The Rescue and Repatriation of Foreign Drifters by Qing China: Focusing on Cases Involving Koreans and Japanese

Liu, Xufeng

The repatriation system for Koreans and Japanese who drifted to China was established in 1737. Because Joseon Korea was a tributary of Qing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always used particular care when escorting Korean drifters. The government led them on overland routes from the area where they landed to Beijing, and in Beijing gave them lodging in the Envoy Residence (C. *Huitongguan*). They waited for the visiting Korean envoys to depart for Joseon, and accompanied the envoys on the overland route to their home country. The Qing China government fully bore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In contrast to this, in the case of Japan, which was not a tributary of Qing China, because there were n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repatriating Japanese drifter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each Chinese province, the Japanese were sent to Zhapu, from which Chinese trade ships sailed to Japan. Each province bore the costs associated with escorting the drifters to Zhapu. Upon their arrival at Zhapu, the Chinese government requested of a Chinese trader set to depart for Japan, and the Japanese drifters were repatriated to Nagasaki.

These repatriation systems for drifters were established in the mid-

eighteenth century. Around this time, international affairs between various countries began to become stable. And in Qing China, government institutions became stable and Chinese ships advanced prosperously overseas. For such reasons, we can say that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too, came to be conducted in a stable manner. Overseeing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were, mainly, 1) the tribute system; 2) Chinese trade networks; and 3) the trade ships of various Western countries. Through these elements of interaction, the acceptance of people from various areas and their repatriation destination were linked, and the East Asia maritime region's drifter repatriation zone was established.

keywords

China, Joseon Korea, Japan, drift, repatriation, tribute, Chinese trade ships, Beijing, Envoy Residence (C, *Huitongguan*), Nagasaki, Zhapu

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제도와 국제관계

정성일 | 광주여자대학교 콜마케팅학과 부교수

I. 머리말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바다를 매개로 하여 활발한 교류를 해 왔다. 더구나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한 축을 이루면서, 선사·고대 이래 동북아시아 해양사(해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이었다.

이 글은 동아시아 해역의 해난구조제도가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근대 이후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본 것이다. 종래의 연구는 대체로 조선·중국·일본의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과 류큐[琉球]를 포함하여,¹⁾ 조선과 일본,²⁾ 일본과 중국,³⁾ 중국과 조선⁴⁾의 각각에

※ 투고일: 2010년 4월 6일, 심사일: 2010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 1) 李鉉淙, 1964, 「南洋諸國人之來往貿易에 對하여」, 『史學研究』 18, 韓國史學會; 李鉉淙, 1973, 「琉球·南蠻關係」,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孫承喆, 1992, 「朝鮮前期 對琉球 交隣體制의 構造와 性格」,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

대하여 관계사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표류민 문제만 놓고 볼 때, 조선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훈과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의 연구가, 조선과 중국에 대해서는 김경옥과 마쓰우라 아키라[松浦章]의 연구가 그리고 조선과 류큐의 표류민에 대해서는 이훈, 이케우치 사토시, 도쿠나가 가즈노

- 중, 아세아문화사; 李薰, 1994, 「朝鮮後期 漂民의 송환을 통해서 본 朝鮮·琉球관계」, 『史學志』 27, 단국대학교 사학회; 李元淳, 1994, 「朝鮮前期 朝鮮廷臣의 琉球認識」, 『裨鍾茂總長退任紀念 史學論叢』, 간행위원회; 河宇鳳, 1994, 「朝鮮前期의 對琉球關係」, 『國史館論叢』 59, 국사편찬위원회; 孫承喆, 1995, 「『歷代實案』을 통해 본 조선과 유구관계」,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간행위원회; 李元淳, 1995, 「『歷代實案』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의 朝琉關係; 直接通交期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65, 국사편찬위원회; 楊秀芝, 1995, 「琉球王國의 對外關係에 관한 一考察: 朝鮮朝의 事大交隣과 관련하여」, 『韓日關係史研究』 3, 한일관계사연구회; 金在勝, 1996, 「韓國, 琉球間 漂流에 의한 文化的 接觸」, 『東西史學』 2, 韓國東西史學會;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1998,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歷代實案研究』 9, 沖繩縣立圖書館史料編纂室; 糟谷政和, 1998, 「1850年代朝鮮船の琉球漂着と朝鮮通事」, 『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科論集』 4, 茨城大學人文學部; 河政植, 1998, 「1530년 濟州漂着 琉球民 送還의 의의」, 『동양사학연구』 63, 동양사학회; 하우봉 외, 1999, 『朝鮮과 琉球』, 아르케; 李薰 著, 松原孝俊·金明美 譯, 1997,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의 送還을 通して みた 朝鮮·琉球關係」, 『歷代實案研究』 8, 沖繩縣圖書館史料編纂室; 양수지, 2003, 『조선인이 본 15세기의 유구왕국』, 집문당; 德永和喜, 2005, 『薩摩藩對外交渉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佐伯弘次, 2006, 「15世紀後半の博多貿易商人道安と朝鮮·琉球」, 『전북사학』 29, 전북사학회.
- 2) 이훈, 1991,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26, 국사편찬위원회; 趙恒來·河宇鳳·孫承喆 編, 1994, 『講座 韓日關係史』, 玄音社;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閔德基 外, 2000, 「韓日間 漂流民에 관한 研究」, 『韓日關係史研究』 12, 한일관계사학회; 이훈,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한일관계사학회,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정성일, 2002,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서 본 근현대 한일관계: 제도사적 접근(1868-1914)」,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申東珪,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우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7·18합집호, 강원사학회; 이훈, 2003, 「『漂流』을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 3) 閔德基, 1994, 「朝鮮·琉球를 통한 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對明 접근」, 『韓日關係史研究』 2, 한일관계사연구회; 劉序楓, 2005, 「近世中國と日本間における漂流・漂着事件について」, 『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交流の諸相-海賊・漂流・密貿易』,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渡邊美季, 2006, 「中日の支配論理と近世琉球-中國人・朝鮮人・異國人漂着民の処置をめぐる」, 『歴史學研究』 810.

부[德永和喜]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동시에 고려의 대상에 넣고 분석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문제를 동아시아 해역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에 조선(한국)이 일본과 중국 외에 서양 여러 나라와 체결하였던 條約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였다.⁵⁾ 그와 함께 일본 자료는 외무성 外交史料館의 『外務省記錄』 등을 이용하였다.⁶⁾

II. 일본의 해난구조정책과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서양 국가에 開港을 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1842년에 영국과 南京條約을 체결한 것은 아편전쟁(1840~1842)의 후속 조치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를 통해 영국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의 廣東·廈門·福州·寧波·上海의 다섯 개 항구에서 거주하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법으로 보장하였다(제2조). 그와 동시에 영국인들이 선박을 수리할 수

4) 松浦章, 1982, 「李朝時代における漂着中國船の一資料—顯宗八年(1667)の明船漂着と『漂人問答』を中心に」,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5; 松浦章, 1985, 「李朝漂着中國帆船の『問情別單』について」(上·下),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7·18; 김경옥, 2008,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到民들의 추이—『備邊司謄錄』『問情別單』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44, 조선시대사학회.

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중·하 (입법참고자료 제18호·제26호·제27호); 송병기·박용옥·박한설, 1970~197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 국회도서관.

6) 이 연구에서는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朝鮮國ノ部』(문서번호 3. 6. 7. 1~10)를 주로 분석하였다. 이 밖에 『遭難船漂民及漂流物關係雜纂』(문서번호 3. 6. 7. 4; 전 2책), 『困難船及漂民救助取扱參考書』(문서번호 3. 6. 7. 5; 전 2책), 『日韓兩國困難船漂流民救助例規參考書』(문서번호 3. 6. 7. 2; 전 2책)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있는 항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중국은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기로 한 것이다(제3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조선과 일본 등 주변 국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 외교·무역 질서가 앞으로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의 전통적인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체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보다 12년 뒤인 1854년에 일본은 미국의 개항 요구를 받아들이고 和親條約을 맺었다. 1856년에는 미국 총영사가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2년 뒤인 1858년에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幕府 말기에 있었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도 이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꽤 이른 시기부터 해난구조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 선박이 해난을 당하여 외국 선박에 의해 구조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 1869년부터 일본 외무성 기료록 속에 남아 있는 것도 그 한 가지 보기가 될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 대하여 개항을 하게 되는 1876년까지 일본 배가 해난을 당하였다가 외국 선박에 의해 구조된 사례를 정리해 보면,⁷⁾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일본 배를 구조해 준 것은 대부분 독일·영국·미국·네덜란드·프랑스·러시아 같은 서양 여러 나라의 선박이었다. 보기 드물게 조선 선박에 의해 일본 배가 구조된 적도 2건 있었다. 1876년 가고시마현과 나가사키현·히로시마현 선적의 일본 배가 조난을 당한 것을 조선 선박이 구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21건은 모두 일본 배가 서양 선박에 의해 구조된 사례이다.

둘째, 일본 배를 구조해 준 서양 선박에 대하여 일본 측이 물질적인 謝禮를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1869년 독일 선박이 일본의 善久丸이라고 하는 배

7) 『困難船被救助一覽表』, 「自明治2年至同9年困難船被救助一覽表」, 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戰前期, 3. 6. 7. 18;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日本國之部』, 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戰前期, 3. 6. 7. 1-3.

를 구조해 주었을 때, 나가사키현에서 옷칠을 한 바탕에 금·은 가루를 뿌려 장식한 장롱, 곧 마키에 단스[蒔繪簞子] 1개와 비단[縞吳羅] 한 단씩을 독일 선장과 按針役에게 각각 사례품으로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 선박의 水夫 9명에게는 공예품[靑具細工針差]을 1개씩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1870년 미국 선박에 의해 구조된 猶龍丸의 경우에는 “구조해 준 하이마루호 선장의 요청에 따라서” 洋銀 500매를 通商司에서 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 측이 謝禮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일본 외무성이 분명하게 적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사례를 보면 현물과 함께 현금까지 지급한 적도 있었으며, 현금으로 지불한 적도 많았다. 원양 항해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해난구조비용의 有料化가 먼저 진행되었다. 그 뒤 서양 선박이 아시아 해역에 출몰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까지 그것이 파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금으로 지불한 액수를 1인 1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사례의 수준이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869년 영국 군함에 의해 구조된 일본 배의 경우 1인 1일을 기준으로 68円 정도를 지불하였다. 1873년 미국 선박에 구조되었을 때는 그것이 9엔 정도였으며, 이듬해인 1874년 영국 선박에 대해서는 33엔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사례비 액수가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다. 다만 위에서 본 사례비 규모의 차이는 일본 배가 구조될 때의 상황과 일본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 서양 선박에 의해 구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례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도 6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서양 선박에 의해 구조된 21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구조를 받은 일본 측이 구조해 준 선박에 대하여 현금이든 현물이든 사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 선박이 일본 배를 구조해 준 경우, 구조를 해 준 조선 측 선박에 대하여 일본이 사례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이것은 위에서 본 서양 선박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 아마도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無償送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난구조체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⁸⁾

이처럼 1876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서양 선박이 왕

래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일본·중국의 배가 서양 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조난을 당한 배를 구조해 준 서양 선박에 대하여 사례 명목으로 현금이나 현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었다. 게다가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불균형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무상송환을 골자로 하는 동아시아 해역의 해난구조제도가 유상송환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해난구조비용과 관련하여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당위성도 존재하였음은 물론이다.

표 1은 일본이 주요 국가와 맺은 해난구조비용 관련 국제조약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⁹⁾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 배가 미국·영국·독일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선박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해난구조 경험을 토대로 일본은 그 이전 동아시아에서 구축·운영되어 오던 해난구조제도의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1879년에 영국과 가장 먼저 해난구조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보다 2년 뒤인 1881년에는 일본이 미국과 해난구조 관련 조약을 맺었다. 같은 성격의 국제조약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인된 것은 영국·미국보다 20년 가까이 더 늦은 1898년의 일이다.

8) 일본의 해난구조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1876년 이전까지 나타난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870년(고종 7, 메이지 3)까지는 해난을 당한 '외국'의 표민에 대하여 그 이전 시기의 '법정신'이었던 '무상송환'의 원칙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으며, ㉡ 1871년 이후 '외국'의 표민에게 '구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시작하였는데, ㉢ 1875년까지는 대체로 '조선국'의 표민이 '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무상송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1873년에 표착지(쓰시마)에서 선박 수리비를 표류민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하여 조선 측이 강력히 항의하자, 일본 외무성은 書契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꺼려하여 종래대로 조선인 표류민에 대해서는 무상송환 방침을 지키려 하였다. 정성일, 2002, 앞의 글, 82쪽; 이훈, 2000, 앞의 책, 234~251쪽; 池內敏, 1998, 앞의 책, 117~133쪽 참조.

9) 정성일, 2002, 앞의 글, 122쪽.

〈표 1〉 일본이 주요국과 체결한 해난구조비용 관련 국제조약

상대국	조인 시기	對人費用	對物費用	行政費用
		부담자	부담자	부담자
영국	1879. 3. 26	의류, 식료, 여비, 의사자 유해 구조, 치료, 사망자 매장	난파선, 또는 배안에 있는 물화의 회복이나 보호	난파 장소로 출장을 가는 정부관리·경찰·지방관의 비용, 難船人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公信 왕복비
		난민의 본국 정부	물화를 받아 가는 관계자	정부관리·경찰·지방관리가 소속한 정부
미국	1881. 5. 17	옷과 음식, 여비, 의사자 유해 수습, 치료, 사망자 매장	난파선, 또는 배안에 있는 물건의 회수와 보존	난파 장소로 출장을 가는 정부관리·경찰·지방관의 수당, 난민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公信 왕복 비용
		난민의 본국 정부	貨財의 관계자	정부관리·경찰·지방관리가 소속한 정부
중국	1898. 9. 4	옷과 음식, 여비, 의약, 시신 수습과 매장	선척 물화의 구조와 보존에 소요된 인부 수고료	官吏의 여비, 보살피고 호송하는 비용, 電信과 公文信 왕복 비용
		난민의 본국 정부	선척 소유주 또는 물화의 소유주	난민의 본국 정부가 상환할 대상이 아님

※ 자료: 일본 内閣官報局, 『法令全書』 각 연도

먼저 일본이 영국·미국·중국 등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해난구조 비용 항목을 크게 셋으로 나누고 있었다. 필자는 그것을 각각 對人費用, 對物費用, 行政費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¹⁰⁾

첫째, 대인비용이란 海難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대인비용의 범위를 정한 것을 보면 의류비와 식료비, 여비를 포함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고 사망한 사람을 매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10) 자세한 것은 정성일, 2002, 앞의 글, 91~96쪽 참조.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비용을 난민의 본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도 일본-영국, 일본-미국, 일본-중국의 세 경우가 모두 동일하였다.

둘째, 대물비용이란 해난을 당한 선박과 그 배 안에 실려 있는 짐, 곧 ‘물건’의 구조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일본-영국과 일본-미국의 경우, 난파를 당한 선박과 그 배 안에 있는 물건을 건져 내서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해 두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주체에 대해서는 그 화물을 받아 가는 사람이나 그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정해 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 비용의 부담 주체는 난민의 본국 정부가 아니라, 그 선박이나 화물을 수취하는 관계자 곧 해당하는 개인으로 규정해 둔 것이다. 그런데 일본-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에서는 이 비용의 적용범위를 “선척 화물의 구조와 보존에 소요된 인부의 수고료”라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일본-중국의 경우,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배주인이나 화물의 소유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영국·미국·중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文句 표현상의 차이가 조금 발견될 뿐 내용면에서는 세 경우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행정비용이란 표착지의 행정기관이 ‘公務’를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킨다. 난파 장소로 출장을 가는 경찰관이나 지방 관리 또는 조난자들을 호송하는 관리가 이동 중에 쓰는 여비라든가, 본부와 연락하는 데 들어가는 통신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비용은 표착지의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당시 국제관례였다. 그런데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일본-영국이나 일본-미국의 경우에는 “관리, 경찰, 지방 관리가 속한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난민의 본국 정부가 상환 대상이 아니다”고 표기하고 있다. 즉 일본은 영국·미국과 협약을 맺을 때는 “표착지의 본국 정부”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 비용 부담의 주체를 “난민의 본국 정부가 아니다”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일본에 표착한 중국 선박의 경우 이 해

난사고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중국 정부가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 문구를 달리 해석한다면, 일본 정부가 이 행정비용을 중국의 난민 본인이나 난파선의 선주에게는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며, 이럴 경우 일본이 영국·미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과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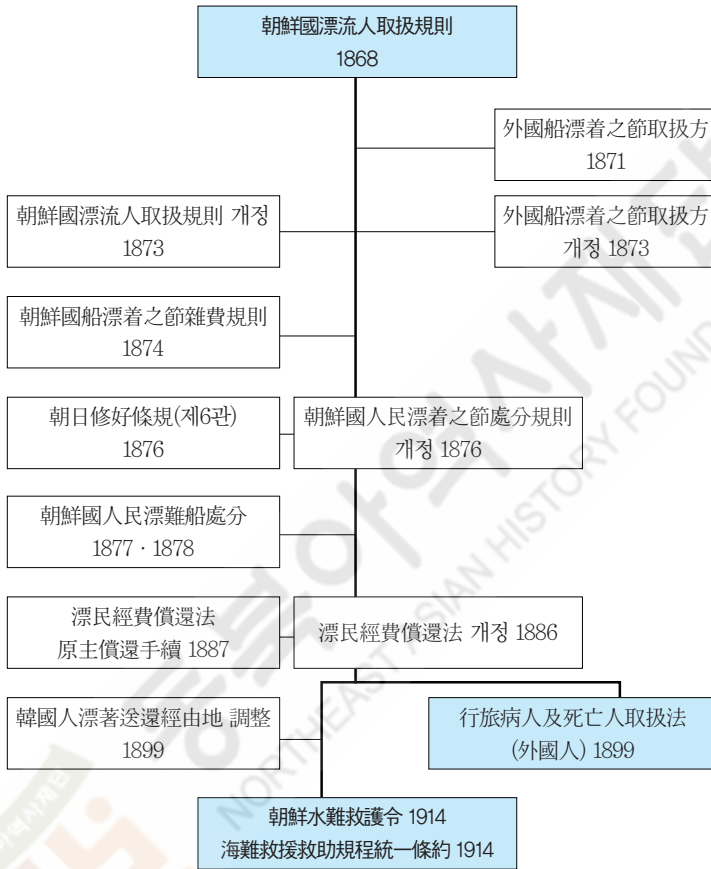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879년부터 1898년 사이에 일본이 영국·미국·중국 등과 맺은 해난구조비용 관련 조약을 놓고 보더라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국·미국·중국과 각각 맺은 해난구조비용 상환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대체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이 중국과 맺은 것도 그 전에 일본이 영국·미국과 체결하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표현상의 차이와 경과규정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일 뿐, 협정의 기본 골격은 1879년 일본과 영국 사이의 협약 이래 변함이 없었다.

III.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 협약

조선과 일본 사이의 표류민 송환체제는 조선후기(일본의 에도시대)부터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두 나라의 외교관계 변화에 따라 해난구조제도 역시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 변화는 일본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선의 대응이나 조선 국내사정과 무관하게 그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조선 측의 요구가 거기에 반영되었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이 조선인(한국인) 표류민을 어떻게 취급했으며 해난구조 관련 법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갔는지를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시기 구분을 해 본다면 제1기(1868~1875), 제2기(1876~1886), 제3기(1887~1914)의 셋으

〈그림 1〉 한일 해난구조 관련 법제화 개념도



※ 자료: 정성일, 2002, 「漂流民 送還體制를 통해 본 近現代 韓日關係: 制度史的 接近(1868~1914)」,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68쪽을 일부 수정함

로 나눌 수 있다.¹¹⁾

제1기는 일본의 메이지유신(1868) 이후부터 조선의 개항(1876) 이전까지를

11)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난구조 관련 법제화 과정을 구조와 구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성일, 2002, 앞의 글 참조.

말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전통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종래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데 있다. 일본은 이미 1850년대부터 미국 등 서양 여러 나라와 화친조약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서양 선박의 왕래가 잦았다. 서양 선박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난구조비용의 일부를 船主나 荷主가 부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난파선의 본국 정부도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절풍과 해류의 움직임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표류하는 건수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일본의 표착지 주민들과 관료들은, 종래의 방식(무상송환)을 서양 선박처럼 무상송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일본 쪽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1871년에 중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일본은 자국에 표착한 중국 선박에 대하여 배 수리비를 난파선의 선주나 표류민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였다. 그것이 그림 1의 오른쪽 맨 위에 표시한 「외국선표착시취급방법」(1871)이다.

그러나 일본에 표착한 조선 선박에 대해서는 일본이 종래의 방식대로 무상송환 방침을 견지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 외무성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¹²⁾ 다시 말해서 당시 조선과 書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일본이 ‘하

12) “1871년 4월의 포고, 곧 「外國船漂着之節取扱方」에서 ‘값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송환에 들어가는 여러 잡비를 부담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전라도 강진 출신 조선인 표류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 나가사키현 측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는 “이 포고는 청국 표선을 취급하는 포고의 서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조선 漂船의 자비부담을 강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1873년 7월 초 무렵에 “(조선의) 표류민들로부터 징수한 배 수리비를 반환하라”고 나가사키 현령[長崎縣令]에게 지시했으며, “전에 징수했던 금액을 나가사키현에서 왜관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여, “8월 15일 전액을 조선 측에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池內敏, 1998, 앞의 책, 120~121쪽). 그런데 일본 측이 조선인 표류민으로부터 받았던 선박 수리비를 조선 측에 전액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보다도 이 사건에서 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현지 주민들과 지방 관리들, 더 나아가서는 일본 측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서 해난구조비용의 일부를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 船主나 조선 정부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일본인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참은' 표류민 송환비용문제 때문에,¹³⁾ 조선 측과 또 다른 마찰의 불씨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음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제1기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는 동아시아 해역의 해난구조제도가 전통 방식에서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海難을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조난 선박의 본국 정부도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제2기는 조선의 개항(1876) 이후부터 「漂民經費償還法」의 개정(1886)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상송환에서 유상송환(정액상환)으로 달라진 점이다. 따라서 조난을 당한 표류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송환에서 유상송환으로 바뀌는 시기여서 변화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1873년에 쓰시마에 표착했던 전라도 강진 출신 표류민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벼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선박 수리비를 부담했던 적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 일종의 학습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이전 시기인 에도[江戸] 幕府 때부터 이미 중국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이 무역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던 이른바 通商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구조와 송환비용의 일부를 표류민들에게 부담시

다. 이것을 보면 해난구조 측면에서도 전통 방식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음을 조선 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했던 시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3) “韓船에 대한 수리비는 평균 10원 정도로 1년에 10번 조선 배가 (일본에) 표착한다 해도 (수리비가) 100원에 불과하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仁慈의 마음을 손상시켜서 유감”이라면서, “조선인들의 선박 수리비 5원 35전을 표류민들이 가지고 있던 벼를 팔게 한 돈으로 갚게 한 것은 외국에 대해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폈던 사람은 1873년 4월 1일 초량 공관장으로 부임한 외무성 관리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이었다(이훈, 2000, 앞의 책, 238쪽). 그는 현재 후쿠오카현[福岡縣] 구루메시[久留米市]에 해당하는 옛 구루메번[久留米藩]의 의사 집안에서 1819년에 태어났으며 1883년 사망하였다. 그는 일본의 소설가인 히로쓰 류로[廣津柳浪, 1861~1928]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선인의 해난구조를 유상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⁴⁾

1876년부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담은 왕복문서의 전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876년(메이지 9) 8월 24일 일본국 理事外務大丞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가 조선국 講修官 議政府 堂上 趙寅熙 앞으로 보낸 문서는 다음과 같다.¹⁵⁾

답서를 보낸다. 두 나라 인민이 불행하게도 客土에 漂着하게 될 때는 그 지방 관민이 즉시 구휼하고 구원하여 옷과 음식과 그에 상당하는 여러 물건을 공여하되, 잡아 가두는 것과 같은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 생명과 권리를 보전하여 본국으로 호위하여 돌려보내는 것은 修好條規 제6관에 있으며, 전과 같이 두 나라 인민을 위하여 지방에서 所用되는 經費는 모두 이웃 나라와 交隣하는 의무로 하고 그 본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지불하게 하지 않는 것이 慣例라 할지라도, 조약 체결 이후 두 나라 인민의 왕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인민도 따라서 많아지고 있다. 이를 賓禮로서 대우하는 것은 번잡한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漂民救助 經費는 쌍방 상호 간에 이를 약정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에 적당한 옷 한 벌을 주는 것 외에, 1일 食料로서 일본에서는 金 10錢, 조선에서는 錢 50文으로 정하며, 표민을 넘겨줄 때 錢數를 會計하여 그 본국 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清算하기로 한다. 이것을 모두 청산하고 나면 그 나머지 雜費는 각각 그 漂着國의 의무이므로 서로 謝禮할 필요가 없다. 한낱 표민을 위하여 특별히 선척을 내는 것은 너무나 정중할 뿐더러 船費도 고르지 못하므로 郵船으로서 이를 護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체류 시간은 자연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다. 그 사이에 신체에 적당한 위로를 하여 양생시키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申東珪, 2002, 앞의 글; 劉序楓, 2005, 앞의 글; 劉序楓, 2009, 「近世東亞海域의 僞裝漂流事件—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의 漂流中國事例爲中心」, 『韓國學論集』 45, 한양대학교.

1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입법참고자료 제18호), 120~121쪽의 내용을 필자가 일부 문구와 표현에 한하여 수정하였음(이하 같음).

에게 땀감을 채취하고 새끼를 꼬는 것과 같은 몸을 쓰는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임금을 급여하여 그 소득의 錢物으로써 체류경비의 일부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러한 때에는 본국 정부에서 지불할 금액은 겨우 그 부족분을 보상할 뿐이다. 어떤 표민이 귀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전물이 있을 경우, 그것이 본인 노역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官에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마땅히 안심하고 본업에 복직하게 할 것이다.

두 나라 정부에서는 이 遵行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삼가 아된다.

메이지 9년 8월 24일

일본국 이사 외무대승 미야모토쇼이치 (인)

조선국 강수관 의정부 당상 조인희 각하

위의 문서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회답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¹⁶⁾

……¹⁷⁾ 두 번째는 두 나라 표민을 구휼하는 데 들어간 경비를 회계하여 상환을 요청하는 것과, 표민을 체류 중에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일을 시켜서 상환해야 할 몫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하여 돌려주자는 등의 사항이다. 위의 건에 대하여 잘 알았으며, 귀하의 뜻이 두 나라 인민을 交使케 함에 있으니, 이토록 세심한 곳까지 모두 생각하여 갖춘 것에 대하여 더욱 감탄하였다. 생각하건대 마땅히 이에 따라 시행하며, 章程을 오래도록 영구히 준수할 것이다. 이에 회신을 하고자 하니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삼가 아된다.

병자 7월 초6일

1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121쪽.

17)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1876년 8월 24일(음력 7월 6일) 작성된 문서를 2통 보내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일 무역의 혁파와 관세에 관한 조인희·미야모토 쇼이치 사이의 의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한·일 표민경비 상환의 건에 관한 왕복문」이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위의 2통에 대한 회답서를 1장에 작성하여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한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120쪽). 여기에서 생략한 것은 첫 번째 문서인 무역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회답서이다.

강수관 의정부 당상 조인희 (인)

대일본국 이사관 외무대승 미야모토쇼이치 각하

위에 소개한 왕복문서의 교환(1876. 8) 이후 두 나라가 표류민 송환과 관련하여 실무절차를 변경한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자.¹⁸⁾

㉠ 送還經路: 일본의 표착지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배편이 있을 때에는 바로 부산의 일본인민관리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머물러야 하는 날수가 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조기 귀국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니, 조선인 표류민 입장에서든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다만 일본의 표착지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편이 없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나가사키현청이나 쓰시마에 있는 나가사키현의 지청으로 송치하도록 하였다.

㉡ 滯在와 送還비용: “추위와 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옷 1벌(이것은 표착지의 「公費」로 지급-인용자 주) 이외에, 1일 식료로서 일본에서는 金 10전으로 그리고 조선에서는 錢 50문으로” 계산하여 서로 상환하기로 정하였다.²⁰⁾ 이 규정에 따라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 체재 중의 비용과 조선으로 송환될 때의 경비 명목으로 ‘1인 1일 금 10전씩’ 계산하여,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불하기로 약정이 맺어진 것이 다.²¹⁾ 나머지 부족분은 일본의 「公費」로 지출하게 되어 있었다.

18) 정성일, 2002, 앞의 글, 85~86쪽.

19) 이것은 1873년 8월의 송환경로규정(太政官 布告 제282호)보다 한 걸음 진전된 것이다.

20) “寒暑ニ適スル時衣一領ノ外、一日食料、日本ニテハ金十錢、朝鮮ニテハ錢五十文ト定メ” 『日韓兩國困難船漂民救助例規參考書』(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 번호 3. 6. 7. 2) 제1권 제13호 「漂民取扱方約定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124~125쪽.

21)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1962년 11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 관서 지방에 있는 재일교포 실업인들의 친목단체인 鷄林구락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1960·61년 두 해 분의 해난구조비 57만 2천 엔(일화)을 지난 14일 주일대표부를 통해 변제했다 한다”(『동아일보』 1962년 11월 19일자, 「僑胞

㉔ 勞役 동원: 일본 체재 중이던 조선인 표민들이, 비록 ‘건강하면’이란 조건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노역에 동원되어 그 대가로 받은 工錢 곧 품삯으로 해난구조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㉕ 死亡者 처리: 표류민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시신을 일본에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²²⁾ 이 규정으로 조선인 표민은 죽어서도 영영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 것이다.²³⁾

위에서 본 것처럼 1876년 11월 단계에서 이전의 규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송환경로, 체재·송환비용, 노역 종사, 사망자 처리 문제 등이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박 수리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실무선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77년 7월 3일(음력 5월 23일)²⁴⁾과 1878년 5월 14일(음력 4월 19일)²⁵⁾에 「韓國漂

實業人이 辨濟, 對日海難救助費」). 이 신문기사는 일본에 표착한 한국 선박의 해난구조비 57만 2천円을 한국 정부가 제때에 갚지 못하자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의 교포 실업가들이 대신 돈을 마련해 주어 그 돈으로 주일대표부가 일본 정부에 뒤늦게 상환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보면 해난구조비의 유상 송환 체제가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 22) 옛 幕藩시대는 물론이고 메이지시대에 들어와서도 “(조선인 표민의) 시신을 棺에 넣어 보내되, 일본 땅에는 매장하지 말도록” 해 왔던 것을 1876년에 와서는 일본 정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법제화를 한 것이다. 1868년 6월 「朝鮮國漂流人取扱規則」과 표 3 참조.
- 23)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선인 표민들이 동료의 시신을 몰래 숨겨서 조선으로 가져왔다가 적발된 사례가 보인다. 이것을 보면 새로운 ‘死亡者處理規定’이 얼마나 조선인들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공포된 이듬해인 메이지 10년(1877) 6월 15일자 山口縣의 문익에 대하여 內務省은 ‘표민이 자비를 들어서 遺骸를 가지고 가기를 원할 때에는 들어 주되, 다만 (표민이) 해당 비용을 즉시 갚지 못할 때에는 그 費目을 열거하여 귀국 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증서를 받아 두고, 그것을 在釜山港 日本人民管理官에게 보내 조회하여 상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日韓兩國困難船漂流民救助例規參考書』 제2권 「庶 第339號 指令案 및 별지 ‘朝鮮國人漂着之節處分方之儀ニ付伺’」). 이것을 보면 1876년 11월의 太政官 達 제110호가 시신의 송환 자체를 완전 봉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24) 조선의 東萊府伯 洪祐昌과 일본의 管理官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국에 표도한 조선국인이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었을 때, 전에는 일본국 정부

가 이를 위하여 모두 수선을 하고 일본 배로 견인을 하여 송환하게 하였다. 파손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매각하여 그 가격을 급부함을 통례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국 이사관 미야모토 쇼이치가 전에 이미 조선국 강수관 조인희와 두 나라 표류민경비를 의정하였으므로 이에 해당 선박의 수선에 대해서도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駐釜山港 일본국 관리관 곤도 마사키와 조선국 동래부백 홍우창이 만나서 협의하여 새롭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앞으로 조선국민이 일본에 표도하여 그 배를 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편에 따라 일본국 지방관이 그 요구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은 반드시 漂民經費를 벗어나는 것일 터이다. 그러므로 駐釜山 일본 관리관으로부터 이를 조선국 동래부에 보고하면, 해당 정부는 신속히 따로 이를 완전히 청산한다. 다른 항에서도 이 예에 따른다.

제2조

만약 그 배의 파손 정도가 매우 심하여 수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형편에 따라 일본 지방관은 선주로 하여금 이를 매각시키고 그 가격을 급부한다.

제3조

만약 그 선주가 이를 매각하려고 하여도 그 船材가 가치가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이를 사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형편에 따라 일본국 지방관은 선주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서 남은 생각이 없게 한다.

제4조

만약 조선국민이 日本海 孤島에 漂到하였다가 그 船桴를 수선할 工材를 얻지 못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지장을 받게 되면, 때에 따라 일본국 지방관은 船主를 타일러서 이를 매각하게 하고 포기시키는 등 적당히 처리한다. 위와 같이 약정하고 상호 날인함으로써 憑信을 명백히 한다.

조선력 정축 5월 23일

동래부백 홍우창 (인)

일본력 메이지 10년 7월 3일

관 리 관 곤도 마사키 (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128~130쪽.

- 25) 「韓國漂流船取扱補約에 관한 왕복문」의 전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878년(메이지 11) 5월 14일(음력 4월 19일) 署管理官 소에다 사다메[副田節]가 東萊府伯 尹致和 앞으로 작성한 문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글로써 인사를 올린다. 일본력 메이지 10년 7월 3일 조선력 정축 5월 23일 駐釜山港 일본국 관리관 곤도 마사키[近藤真鋤]와 조선국 동래부백 洪祐昌이 會同하여 議定한 漂流民送還協約은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조항을 추가하여 그 결함을 보충하려고 한다. 만약 조선국인이 일본국에 漂到하였다가 그 船桴가 파손되어 수선하기 곤란한 것은 반드시 매각하거나 태워 없애고 송환하려 애쓰지 않는다. 다만 간단히 수선하면 탈 수 있는 것은 해당 표민으로 하여금 口牒 내에 수리비를 귀국 전에 동래부에 辨納하여 일본 관청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을 적게 하고(만약 표민이 글을 알지 못할 때에는 대리로 일본어로 구첩을 쓰고 그가 손도장을 찍도록 한다), 그런 다음 수리를 하여 급여한다. 또 완

流船取扱約定」²⁶⁾이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그림 1〉의 왼쪽 부분 참조). 앞의 4개 항에 추가하여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㉑ 漂船 수리비의 清算: 조선인 표선의 수리비용을 조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청산하도록 하였다.
- ㉒ 漂船의 매각 또는 소각: 수리가 어려운 선박은 매각하거나 소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㉓ 漂船 수리비의 사전 고지와 수리비 상환 약속: 선박의 수리나 운송에 앞서 소요비용을 미리 漂民에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표민의 진술서에 “귀국 후 그 비용을 일본 관청에 갚겠다”는 약속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²⁷⁾

요컨대 제2기(1876~1886년)에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한 배라 할지라도 고토[五島], 히라도[平戸], 잇키[壹岐], 쓰시마[對馬] 이외의 먼 지방은 구첩 안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국 후 동래부에 변납하여 일본 관청에 갚기로 한다는 것을 적게 한 뒤 운송을 허가한다. 해당 표민을 송환할 때 일본 지방관은 표민의 구첩을 첨부하여 在朝鮮國 일본 관리관에게 보내며, 관리관이 해당 구첩을 증거로 하여 수리비와 운송비를 모두 청산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동래부는 그 구첩에 따라 수시로 計價할 것이다.](밑줄-인용자 주) 해당 條款은 귀하도 역시 異議가 없을 것으로 안다. 삼가 아뢴다.

메이지 11년 5월 14일

서관리관 소에다 사다메 (인)

동래부백 윤치화 귀하”

이에 대하여 1878년(무인) 4월 19일(음력) 동래부백 윤치화가 서관리관 소에다 사다메 앞으로 작성한 문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조회한 바 漂民送還에 관한 협약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또 선척을 수리하여 송환하는 절차도 협정에 보완해서 답아야 것이 있다. ……(밑줄 부분은 앞의 문서 내용과 일치하므로 생략-인용자 주)……해당 條款은 시기가 적당하니 어찌 다른 생각이 있으리오.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삼가 아뢴다.

무인 4월 19일

동래부백 윤치화 (인)

서관리관 소에다 사다메 귀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133~134쪽.

26) 「海難救援救助規程統一條約」이 일본의 太政官 達로 포고된 일본 국내법 속에서는 「朝鮮國人民漂着之節處分」의 일환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27) 정성일, 2002, 앞의 글, 89~90쪽.

유상송환이었다. 일본 정부가 1871년 이후 줄곧 추진하려 했으나 조선의 개항이 이루어지는 1876년까지는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漂民의 送還費用 自費負擔 원칙을 ‘일부’ 관철한 것이며, 漂船의 수리비용을 표민의 본국 정부가 책임지도록 변경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 표착 조선인의 漂船 수리비용은 조선 정부가 그 ‘實費’를 청산하기로 약정되었지만, 漂民의 滞在와 送還비용은 조선인의 경우 ‘1인 1일 금 10전씩’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완전한 ‘실비’ 부담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²⁸⁾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난구조비용 상황이 ‘정액상환’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제3기는 「漂民經費償還法」이 개정된 이듬해인 1887년부터 「朝鮮水難救護令」이 제정되고 「海難救援救助規程統一條約」이 비준되는 1914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해난구조비용이 ‘실비상환’으로 바뀐 점과 해난구조제도가 ‘국제조약’의 형태로 통일된 점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곧 일본 에도시대의 해난구조제도가 메이지유신 이후 새롭게 전환된 것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 사이에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幕藩시대를 통하여 일본이 중국 등 여타 국가의 경우와 달리, “조선인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²⁹⁾ 漂船을 구조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28) “漂民의 滞在와 送還 비용을 미리 예정하여 정하였다”는 뜻으로, 일본의 臨時代理公使 다카히라 쇼고로[高平小五郎]가 조선 측에 보낸 문서에는 「費額豫定」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반해서 조선의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允植이 보낸 답서에서는 「豫定費額」으로 되어 있다[『日韓兩國困難船漂民救助例規參考書』 제2권(메이지 19년, 1886년) 「公信 제114호 별첨 甲號 제39호 및 乙號」];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상, 125~127쪽). ‘해난구조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定額固定制」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1876년부터 1886년까지의 해난구조제도의 특징을 유상송환, 그중에서도 ‘定額償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게 될 1887년 이후의 ‘實費償還’의 특징과 대비되는 것이다.

29) “朝鮮人の儀ハ被入御念.” 『山口縣史料 近世編 法制下』, 山口縣文書館, 1977. 「御書付其外後規要集」 2 覺(唐船漂着其外難船の事), 80쪽; 岸浩, 1986, 「長門沿岸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を巡る諸問題の検討」, 『朝鮮學報』 119・120, 437쪽.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령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제6관의 전문을 소개한 다음, “「天皇制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평등을 강제했다」고 하는 설은 作意的인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일방적 불평등성은 전혀 없으며[皆無], 藩政시대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연구자가 있다.³⁰⁾ 이에 반해 “1876년의 병자 조일수호조규는 양국의 표류민을 구조하고 송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 ‘誠信’의 의미가 쇠퇴해 있었으며, 이미 변질되기 시작하였다”고 반론을 펴는 한국인 연구자가 있다.³¹⁾

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사이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일까? 이 문제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해난구조의 수준을 둘러싼 ‘衡平’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이 영국·미국 등과 맺은 해난구조 관련 조약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소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체결하였던 해난구조 협약을 살펴보고, 그것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IV. 조선과 세계 주요국의 해난구조 협약

조선은 일본에 대한 개항(1876)에 이어서, 미국(1882)·영국(1883)·러시아(1884)와 차례로 해난구조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였다. 또 조선은 1899년에

30) 岸浩, 1986, 위의 글, 437쪽.

31) 이훈, 2000, 앞의 책, 253쪽.

는 중국과도 해난구조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이 여러 나라와 맺은 해난구조 협정의 내용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이 1882년에 미국과 맺은 조약에서는 對人費用과 對物費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行政費用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또 대인비용에 대한 정의도 “구호와 양식 등 응급필수품 급여”라고만 되어 있었다. 해난구조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船主나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여,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의 내용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그 이듬해인 1883년에 조선이 영국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앞에서 본 일본-영국 사이의 조약(1879)과 비슷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대인비용의 경우 옷과 음식, 치료와 시신 매장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비용의 부담을 난민의 본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것을 보면 조선-영국과 일본-영국의 해난구조비용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영국의 경우 대물비용을 난파선과 선적물의 구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한 점에서 일본-영국의 경우와 일치한다.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그 배나 화물의 原主 곧 원래 주인으로 정한 것도 일본-영국의 경우와 같다. 다만 조선-영국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용을 난민의 본국 정부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점에서 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용 항목인 행정비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영국, 일본-영국의 경우가 동일하다. 해난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파견된 해당 관리의 출장비, 난민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통신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난민을 구조해 준 표착지 정부(예를 들어 조선에 영국 선박이 표착한 경우라면 조선 정부)가 부담하게 한 것도 일본-영국의 경우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표 1과 표 2 참조).

그런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883년에 체결된 조선-영국의 해난구조비용 조건이 같은 해에 맺어진 조선-독일은 물론이고, 이듬해인 1884년의 조

〈표 2〉 조선이 주요국과 체결한 해난구조비용 관련 국제조약

상대국	조약명		본문 조항	대인비용	대물비용	행정비용	비고	전거
	조인 (서력)	비준교환 (서력)		부담자	부담자	부담자		
미국	한미수호통상조약		3	구호, 양식 등 응급필수품 급여	선박 구호 적하 안전	(규정 없음)	지방관의 구조 구호 의무, 영사에게 통지, 선원 선박 송환, 모든 비용으로만 표기, 세부 구분 없음, 피난 때 선박 수리 등 구호비용은 선주 부담, 기항(寄港) 때 구호비용은 선주 부담	『舊韓末條約彙纂』(중) 289~290쪽; 구한말의 조약(중) 289~290, 296~297쪽
	1882. 5. 22	1883. 5. 19		모든 비용을 선주 또는 난민의 본국 정부(미국)가 부담				
영국	한영수호통상조약		7	구호, 의복, 급양, 전송, 의사자 수색, 환자 치료, 시신 매장	난파선, 또는 그 배에 속한 재산의 복구, 보존	난파선을 향해 가는 정부관리·지방관리·경관의 비용, 난파 선원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공식 통신비	지방관의 구조 구호 의무, 영사에게 통지, 가장 가까운 개항장까지 운송 수단 제공, 기항 때 구호비용은 선주 부담	『舊韓末條約彙纂』(중) 318~319쪽; 구한말의 조약(중) 318~319, 332~333쪽
	1883. 11. 26	1884. 4. 28		난민의 본국 정부(영국) 부담	선주나 하주가 상환, 난민의 본국(영국) 정부에 상환 요청 불가	표착지 정부(조선) 부담, 영국에 상환 요청 불가		
독일	한독수호통상조약		7	구호, 衣食, 전송, 의사자 수색, 환자 치료, 시신 매장	난파선 또는 그 배에 속한 재산의 복구, 보존	난파선을 향해 가는 정부 관리·지방관리·경관의 비용, 난파 선원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공식 통신비	지방관의 구조 구호 의무, 영사에게 통지, 가장 가까운 개항장까지 운송 수단 제공, 기항 때 구호비용은 선주 부담	『舊韓末條約彙纂』(중) 380~381쪽
	1883. 11. 26	1884. 11. 18		난민의 본국 정부(독일) 부담	구호된 재산에서 부담, 재산의 구호를 받은 관계자가 지불	표착지 정부(조선) 부담, 독일에 상환 요청 불가		

상대국	조약명		본문 조항	대인비용	대물비용	행정비용	비고	전거
	조인 (서력)	비준교환 (서력)		부담자	부담자	부담자		
러시아	한러수호통상조약		7	구호, 의복, 급양, 전송, 익사자 수색, 환자 치료, 시신 매장	난파선, 또는 그 배에 속한 재산의 복구, 보존	난파선 구원 때문에 가는 정부관리·지방관리·경찰의 비용, 난파 선원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공식 통신비	지방관의 구조 구호 의무, 영사에게 통지, 가장 가까운 개항장까지 운송 수단 제공, 미개항장에 정박하면 수선과 필수품 구매 허용, 모든 비용은 선주 부담	『舊韓末條約彙纂』(하) 10~11쪽; 구한말의 조약(하) 10~11, 23~24쪽
	1884. 7. 7	1885. 4. 14 (비준) 1885. 10. 14 (서울에서 교환)		난민의 본국 정부(러시아) 부담	구호를 받은 선주나 하주가 부담	표착지 정부(조선) 부담, 러시아에 상환 요청 불가		
중국	한청통상조약		10	구호, 양식 제공	선박 구호, 하물 보존	(규정 없음)	지방관의 구조 구호 의무, 영사에게 통지, 기항(피난) 때 선박 수리 등 구호 비용은 선주가 부담 (선원 선박의 송환에 관한 세부 항목 구분 없음)	『舊韓末條約彙纂』(하) 374쪽; 구한말의 조약(하) 374, 378, 384~385쪽
	1899. 9. 11			모든 비용을 선주나 해당 선박의 관계 당국이 부담	선박 구호, 하물 보존	(규정 없음)		

※ 자료: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중·하,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4~1966;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室, 『舊韓末의 條約』(全2冊), 신서원, 1985; 정성일, 2002, 앞의 글, 121쪽의 표를 수정·보완

선-러시아의 조건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³²⁾ 더구나 조선과 영

32) 조선이 이탈리아와 맺은 「韓伊修好通商條約」(1884. 6. 26 조인, 1886. 7. 24 비준 교환)과 조선이 프랑스와 체결한 「韓佛修好通商條約」(1886. 6. 4 조인)의 제7조를 보면 5개항에 걸쳐 해난구조비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한영수호통상조약」, 「한독수호통상조약」과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의 책 중, 438~439쪽;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앞

국, 조선과 독일 사이의 조약 내용은 약간의 표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 대인비용과 대물비용의 범주와 부담 주체도 조선-영국과 조선-러시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둘 사이에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조선-영국의 조건과 동일하게 조선-러시아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당시 상황을 해난구조비용의 조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이 중국과 맺은 협약의 내용을 보면, 조선이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와 체결한 것과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조선-중국의 협약 체결시기가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보다도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을 보면 조선이 이미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는 ‘萬國公法’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유상송환’을 골자로 하는 해난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중국 표류민의 송환에 대해서만 ‘무상송환’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통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1850년대부터 서양 선박이 중국에 드나드는 과정에서 ‘유상송환’이 대세임을 중국이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오로지 조선에 대해서는 전통 방식을 고집한 것은 중국 측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륙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해류의 흐름 때문에 중국대륙에서 한반도로 표착해 오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았기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무상송환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중국이 서양 여러 나라와 새로운 방식의 해난구조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전통 방식을 잔존시키고 있는 이중구조가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조선이 중국과 맺은 대인비용의 조건을 보면 구호에 들어가는

의 책 하, 94쪽]. 이것을 보면 188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해난구조비용 관련조약이 ‘국제 수준’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용과 양식 지급비용으로 규정하였으며, 대물비용의 경우에는 선척과 화물의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15년 전에 체결되었던 미국·영국·러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대인비용의 경우에도 난민의 본국 정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조건이었지만, 유독 조선-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또 선박과 선적물의 구조비용인 대물비용의 경우는 船主나 荷主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이것은 불과 1년 전인 1898년에 일본-중국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조선-중국 사이에 합의된 해난구조비용 조건은 대인비용이든 대물비용이든 “모든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難船의 관계 당국이 상환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더구나 1898년 일본-중국 사이에서는 행정비용의 범주와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해서 명문규정을 두어 합의를 했는데도, 조선-중국의 경우에는 구조·송환과 관련된 관리의 출장비와 통신비 같은 이른바 행정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조선-중국 사이의 행정비용은 종래의 방식대로 ‘무상송환’ 곧 표착지 정부 부담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은 1840년대부터 그리고 일본은 1850년대부터 서양 여러 나라 선박과 잦은 접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海難을 당한 중국 배나 일본 배가 서양 선박에 의해 구조되기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양의 관습에 따라서 구조해 준 선박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謝禮를 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이 서양 여러 나라와 해난구조비용의 지불과 상환에 관하여 근대법의 형식을 빌어서 명문화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1876년 일본에 개항을 한 뒤 18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서양 선박과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해난구조비용에 관한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표 3 참조).

그런데 조선·중국·일본 세 나라는 서양 국가와는 새로운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아시아 3국 사이에는 해난구조비용 측면에서 볼 때 전통 방

〈표 3〉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 관련 협정 비교

조인시기	조선	일본
1854		미국, 영국, 러시아와 화친조약 체결
1858		미국과 수호통상조약 체결
1868		메이지유신
1871		청과 수호조규 체결
1876	조·일 수호조규 체결, 개항	
1877		영국선 난파 구조비용
1879		영국과 난파선구조비용상환 협약
1881		미국과 난파선박비용상환 비준
1882	미·영·독과 수호통상조약 체결	
1882	청과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1882	미국(5. 22)과 해난구조비용 관련 협약 체결	
1883	영국(11. 26), 독일(11. 26)과 해난 구조비용 관련 협약 체결	
1884	이탈리아(6. 26), 러시아(7. 7)와 해난구조비용 관련 협약 체결	
1886	프랑스(6. 4)와 해난구조비용 관련 협약 체결	
1886	漂民經費償還法 개정(9. 7)	
1888	러시아와 통상조약 체결	
1898		청과 난파선구조비용상환법 약정
1899	청(9. 11)과 해난구조비용 관련 협약 체결	水難救護法, 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
1899	일본표착 한국인 송환경로 조정	
1900		臺灣水難救護規則 시행세칙
1911		미국과 난파선구조비용상환 비준
1914	朝鮮水難救護令	
1914	海難救援救助規程統一條約 비준	
1914	해난구원구조규정통일조약 가맹	

식을 꽤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서양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동아시아 3국이 상대국의 선박에 적용하는 일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일본이 조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1886년에 개정된 ‘漂民經費償還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표민경비상환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협정이 성립된 시기를 기존의 연구처럼 1887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인 188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³³⁾ 그 이유는 먼저 표 4의 두 번째 항목에 소개되어 있는 「韓日漂民船救撈費償還法」 관련 왕복문서 중 일본 측이 조선 정부에 보낸 문서의 첫 머리에서, “두 나라의 표민경비상환법과 관련하여 메이지 19년(1886) 9월 7일 제 39호 서한의 왕복으로 협정이 성립”되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대한 조선의 회답문서에도, 일본 측과 똑같이 “메이지 19년(1886) 9월 7일 협정이 성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협정문의 내용을 “本衙門이 연해 지방과 세 항구에 訓達하여 준행하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위의 내용으로 개정된 ‘표민경비상환법’이 그 이듬해인 1887년(메이지 20) 6월 3일 勅令 제2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6월 6일자 관보에 실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887년 8월 5일 일본 외무성은 표 4의 ‘한일표민선구로비상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민경비상환법’ 중에서 ‘原主償還手續’을 마련하고, 이것을 省令 제2조로 공포하였다. 이것을 보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개정된 ‘표민경비상환법’의 협정이 “1886년에 성립”되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국내법이 그 이듬해인 1887년에 공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3) 기존 연구자는 물론이고 필자도 이전 논문에서 ‘표민경비상환법’의 개정 시기를 1887년으로 보았다(岸浩, 1986, 앞의 글, 478쪽; 이훈, 2000, 앞의 책, 257쪽; 정성일, 2002, 앞의 글, 101쪽). 그런데 1886년과 1887년에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교환된 왕복문서에서 ‘표민경비상환법’의 협정 성립 시기를 188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여 1876년의 ‘표민경비상환법’을 개정한 협정이 성립한 시기를 1886년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표 4〉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비용 관련 협약 개정(1886~1887)

명칭	연도	발신인	수신인	내용	전거
韓日漂民 經費償還 法改正에 관한 양북 문서	1886. 9. 7 (양력)	臨時代理 公使 高平小五 郎	督辦交涉通 商事務 金允植	글로써 인사를 올린다. 귀국과 아국 두 나라가 표 민경비상환 건에 관하여 메이지 9년(1876-인용 자) 8월 24일 미야모토 이사관과 조 강수관이 계 약을 약정하고 그 뒤로 준행하여 왔는데, 현재 는 과거의 시세와 상이하여 해당 약조 중에 실제 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費額 豫定の 예를 폐지하고 새로 상호 간에 實費를 계 산하여 각국 정부나 표민으로부터 적당히 상환하 게 하도록 귀국 정부와 議定하고자 이번에는 아국 정부에서 本使에게 통달이 있었기에, 앞으로 차 국(표착국-인용자 주) 정부에서 피국(난민의 본 국-인용자 주) 표민을 구호해서 보내 주고 옷과 음식을 급여하며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시신 을 매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피국 정 부로부터 실비를 계산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또 선척을 구호하고 화물을 건져 내는 비용과 같은 것은 原主가 상환하여 서로 그 정부에 대하여 청 구하지 않기로 협정하려고 하는 바이다. 다만 미 야모토 이사관과 조 강수관이 계약한 취지는 본 래대로 유지하여 지킬 것이며, 두 나라 정부는 되 도록 간편하게 협약을 하여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한 것인 바, 이에 조회하오니 아무쪼록 회답하기 주기 바란다. 삼가 아뢴다.	『舊韓末條約 彙 纂 1876~1945』 상, 121~122, 125~126쪽
	1886. 8. 11 (음력)	大朝鮮督 辦交涉通 商事務 金允植	大日本代理 公使 高平小五郎	답신을 보낸다. 메이지 9년(1876-인용자) 8월 24일 미야모토 이사관과 조 강수관이 계약을 의 정하고 그 뒤로 준행하여 왔는데, 현재는 과거의 시세와 상이하여 해당 약조 중에 실제에 적합하 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費額豫定の 예 를 폐지하고 새로 상호 간에 實費를 계산하여 각 국 정부나 표민으로부터 적당히 상환하게 하도록 조선 정부와 議定하라고 이번에는 귀국 정부에서 訓達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차국(표착국-인용자 주) 정부에서 피국(난민의 본국-인용자 주) 표민 을 구호해서 보내 주고 옷과 음식을 급여하며 다 친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시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舊韓末條約 彙 纂 1876~1945』 상, 122~123, 126쪽

명칭	연도	발신인	수신인	내용	전거
				지출한 모든 비용은 피국 정부로부터 실비를 계산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또 선척을 구호하고 화물을 건져 내는 비용과 같은 것은 原主가 상환하여 서로 그 정부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기로 협정하려고 하는 바이다. 다만 미야모토 이사관과 조강수관이 계약한 취지는 본래대로 유지하여 지킬 것이며, 두 나라 정부는 되도록 간편하게 협약을 하여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한 것이라는 貴曆 9월 7일자 귀하의 서한으로써 조회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즉 위의 한 조항은 貴使가 공평하게 辦理하였다고 인정하고, 본 衙門은 연해 지방과 세 항구에 訓達하여 준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에 회답을 하는 바이다. 삼가 아뢴다.	
韓日漂民船救勞費償還法協定에 관한 왕복문서	1887. 7. 1 (양력)	臨時代理 公使 高平小五郎	督辦交涉通 商事務 金允植	글로써 인사를 올린다. 귀국과 아국 두 나라의 표민경비상환방법에 관하여 메이지 19년(1886-인용자) 9월 7일 제39호 서한의 왕복으로 협정이 성립되었던 바, 이번에 아국정부로부터 선척을 구호하고 화물을 건져 내는 비용을 앞으로 해당 船貨로써 原主에 환부하는 때에는 원주가 수에 비추어 상환하고, 만약 그때 그 원주가 통화를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선척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써 상환하거나, 즉시 그 선회로써 비용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건져 낸 물건을 모두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추징하지 않기로 협정한다면 公便할 것인 바, 귀국 정부에 상의하라는 훈령이 있었기에 위의 취지를 조회하게 되었는데, 만약 뜻이 없으시다면 시행에 대하여 아무쪼록 회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귀하의 의견을 얻고자 한다. 삼가 아뢴다.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 132, 135쪽
	1887. 5. 13 (음력)	大朝鮮督 辦交涉通 商事務 金允植	大日本代理 公使 高平小五郎	답신을 보낸다. 귀국과 아국 두 나라의 표민경비상환에 관하여 메이지 19년(1886-인용자) 9월 7일 제39호 서한의 왕복으로 협정이 성립되었던 바, 이번에 아국 정부로부터 선척을 구호하고 화물을 건져 내는 비용을 앞으로 해당 船貨로써 原主에 환부하는 때에는 원주가 수에 비추어 상환하고, 만약 그때 그 원주가 통화를 소지하지 않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 132~133, 135쪽

명칭	연도	발신인	수신인	내용	전거
				으면 해당 선화를 매각하여 그 대가로써 상환하거나, 즉시 해당 선화로써 비용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건져 낸 물건을 모두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추징하지 않기로 협정한다면 公便할 것인바, 귀국 정부에 상의하라는 훈령이 있었기에 위의 취지를 조화하게 되있는 바 異見이 없으시다면 시행에 대하여 아무쪼록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를 모두 검토하였다. 위는 본 대신으로서도 시행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즉시 연해 각 지방관에게 諭示하여 준행시키고자 한다. 귀 대리공사가 귀국 정부에 보고하신 뒤 각 지방관에게 諭達하여 주시기를 이에 회답하여 귀하의 의견을 얻고자 한다. 삼가 아뢴다.	

※ 자료: 국회사서관 입법조사국, 1964,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 『日韓兩國困難船漂民救助例規參考書』 第2卷(明治 19年) 「公信 제114호 별첨 甲號 제39호 및 乙號,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그런데 표 4의 왕복문서만 놓고 본다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해난구조비용의 상환 방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본의) 제안 → (조선의) 검토 → (두 나라의) 협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니, 이 협약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³⁴⁾ 더구나 1886년 9월 7일(음력 8.11)에 작성한 왕복문서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76년에 정한 費額豫定 곧 상환금액을 고정시켜 놓은 定額償還의 방법이 시대 변화를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새롭게 實費를 계산하여 상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개정 취지 자체도 비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미 1879년에 일본이 영국과 그리고 그보다 3년 뒤인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각각 “실비상환”을 골자로 하

34) 기존 연구에서는 이때 법 개정을 할 때,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岸浩, 1986, 앞의 글, 478쪽; 이훈, 2000, 앞의 책, 257쪽).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두 나라의 외교문서에서는 이 법 개정이 두 나라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표 4 참조).

는 해난구조비용 관련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조선은 영국(1883. 11), 독일(1883. 11), 이탈리아(1884. 6), 러시아(1884. 7), 프랑스(1886. 6) 등과 차례로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맺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조선-일본 사이의 협정도 ‘국제 표준’에 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1886년에 개정된 ‘표민경비상환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표민경비 곧 해난구조비용의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행정비용’에 관한 규정이 아예 빠져버린 점이다. 그런데 난파선이 있는 곳까지 담당관리들이 가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비와 수송비, 통신비 등을 말하는 이른바 ‘행정비용’이 1899년 9월 11일 조선이 중국과 맺은 협정 속에서도 빠져 있다(표 2 참조).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본 사이의 협약 속에서 이 조항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불균형’이나 ‘불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조선이나 일본이 서양 여러 나라와 체결한 조약 속에는 ‘행정비용’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일본 두 나라가 서로 이 ‘행정비용’과 관련하여 따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행정비용’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비용의 성격을 일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표류를 당한 조선인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안긴 적이 있었다. 표류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領事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가 1900년(광무 4, 메이지 33) 3월 5일 外務大臣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시마네현[島根縣]에 표착한 조선인 표민 29명과 관련된 漂民費用이 金 820円 24錢 5厘였는데, 그 가운데 표민을 호송하는 巡査의 旅費만 해서 308엔 11전이나 되어 무려 전체의 37.6%를 차지하고 있었다. 메이지 19년(1886-인용자 주) 9월 督辦 金允植과 다카히라[高平] 代理公使 사이에 합의된 公文書에 따르면, 「救護解送」의 네 글자 속에는 본디 (표민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차운임과 기선운임 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의 관리가 호송을 위해 출장을 가는 여비까지 조선 정부에 상환을 요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밀줄-인용자 주)로 염치없게 생각된다.³⁵⁾

일본 외무성의 영사조차도 “일본 관리가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을 호송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여비까지 조선 정부에 상환을 요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선과 외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일본의 영사가 일본 측의 이런 행위를 오죽했으면 “염치없는 일”이라고 외무성에 보고하였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사건이 그 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시마네현에 표착했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29명에 대한 해난구조비용으로서, 조선 정부는 1886년에 두 나라가 협약을 맺은 ‘표민경비상환법’에 따라 820엔이 넘는 돈을 일본 정부에 상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37.6%를 차지하는 308엔이 ‘국제 관례상’ 난민의 본국 정부(조선)에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일본 외무성이 부당하게 조선 정부에 청구하여 받아간 돈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문제의 근원은 행정비용에 관한 규정의 미비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표 4에서 본 조선-일본 사이의 협약에서 행정비용 조항이 빠진 데 따른 不公正性 내지 不平等性 때문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의 인식 부족³⁶⁾과 일본 정부의 굴절된 조선 인식을³⁷⁾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확

3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困難船漂民救助一件・朝鮮國ノ部』 제11권 참조.

36) 1886년 음력 8월 11일(양력 9. 7) 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이 작성하여 일본과 교환한 협정문의 끝 부분을 보면, “(일본이 보낸) 貴曆 9월 7일자 서한의 내용을 (조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에 이어서 “조항의 내용을 일본의 관리가 공평하게 辦理하였을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본 아문에서는 (조선의) 연해 지방과 (개항을 한) 세 항구에 지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회신을 하고 있다(표 5 참조). 왜 당시 조선 정부가 그 전에 미국·영국·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와 맺은 협정문 속에 ‘행정비용’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데도 (표 3 참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판단’에만 맡겨 두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37) 일본 외무성의 통상국장이 주도하여 1886년의 협정문에 ‘행정비용’을 포함시키지

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냉혹한 외교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것을 정부에만 맡겨 두고 말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80년대에 들어와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해난구조비용 관련 조약을 체결 하였지만, 이 협약의 직접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이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在釜山領事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가 1900년(광무 4, 메이지 33) 3월 5일 外務大臣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조선의 관민은 옛날 관례를 묵묵히 지켜 나가는 풍습이 있어서, 일본인이 조선 연안에 표착하는 일이 한두 번이라도 발생하면, 어떤 경우이든 그 지방관이 상당한 정도의 구조를 하여 구호 관리까지 붙여서 부산항으로 송환해 오는데도, 그 비용 등은 모두 (조선의) 지방관에서 지불한다. 아직까지도(1900년-인용자 주) 협약서에 기초하여 (조선이) 在釜山日本領事館을 상대로 그 비용을 청구해 온 적이 없다(밑줄-인용자 주).³⁸⁾

위 문건은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이 보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定額送還(1876~1886년)이든 實費送還(1887년 이후)이든 해난구조제도가 이른바 유상송환으로 바뀐 지 15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조선에서는 과거의 무상송환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즉 “조선 연안에 표착한 일본인에 대하여 조선의 지방관이 ‘상당한 정도’로 구조를 해 주면서도, 그와 관련된 비용을 일본 정부에 청구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한 일본 영사의 보고를 놓고 볼 때, 19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난구조비용 관련법 규정의

않은 연유에 대해서는, 정성일, 2002, 앞의 글 참조.

38)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困難船漂民救助一件』 제9권.

존재와 그 법의 실제 적용 사이에는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⁹⁾

V. 맺음말

중국과 영국(1842), 일본과 미국(1854) 그리고 조선과 일본(1876) 사이에 맺어진 條約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일본·조선은 차례로 서양 여러 나라에 開港을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 해역의 해난구조제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이전 시기에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외교관계가 없었지만 무역관계를 이용하여, 표류민을 서로 구조하여 송환해 주고 있었다.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조선-중국, 조선-일본은 국가권력이 개입한 무상송환 방식을 그리고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국-일본은 민간상인을 활용한 유상송환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해역의 해난구조 관행이 1840~1850년대부터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0년대에 오게 되면 조선·중국·일본과 서양 여러 나라 사이에 근대적인 해난구조 협약이 성립하게 된다.

일본은 1879년에 서양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영국과 해난구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2년 뒤인 1881년에는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맺었다. 일본이 중국과 해난구조비용 협약을 체결한 것은 1898년이였다. 한편 조선의 경우 1876년의 개항 이후 해난구조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협약을 맺었으며, 그 뒤 영국(1883), 독일(1883), 이탈리아(1884), 러시아(1884), 프랑스(1886) 등과 차례로 해난구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도 ‘국제 수준’

39) 정성일, 2002, 앞의 글, 101쪽.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쪽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는 실증 분석을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의 해난구조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해난구조비용의 범위와 부담 주체가 각국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해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구호·송환하는 데 들어가는 對人費用은 주로 난민의 본국 정부가 부담하였다. 또 난파선과 선적물을 구조·보존하는 데 소요되는 對物費用은 船主나 荷主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리고 해난사고가 일어난 곳까지 표착지 정부의 관리가 출장을 가서 일 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여비와 통신비 같은 行政費用은 난민의 본국 정부에 부담시키지 않고 표착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협약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1886년에 개정된 조선-일본 사이의 협정처럼, 당시 국제관행에 어긋나게 행정비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이 국제관례를 무시하면서 현지 일본 관리의 출장 여비까지 조선 정부에 청구하여 받아간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지방관 중에는 과거의 관행을 따른 나머지,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들을 구조하여 송환해 주고도 그에 따른 비용을 일본 정부에 청구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처럼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이 나라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존재와 그것의 실제 적용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협정의 내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이 만들어지게 된다. ‘海難救援救助規程統一條約’이 그것인데, 일본은 1914년에 이 조약을 비준한다.⁴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총독부는 1914년에 ‘朝鮮水難救援令’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로써 해난구조

40) “메이지 43년(1910) 9월 23일 벨기에국 브뤼셀에서 조인된 「해난의 구원·구조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는 다이쇼 3년(1914) 1월 12일 제국정부에서 벨기에국 정부에 기탁을 마쳤으며, 이에 해당 조약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의 기탁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실시할 수 있다.” [明治43年9月23日白耳義國比律悉ニ於テ調印セラレタル海難ニ於ケル救援救助ニ付テノ規定ノ統一ニ關スル條約ノ批准書ハ大正3年1月12日帝國政府ヨリ白耳義國政府ヘ寄託ヲ了セリ因テ該條約ハ其ノ第18條ノ規定ニ依リ右寄託ノ日ヨリ1月ヲ經タル後實施セラル, 조선총독부 고시 제59호, 조선총독부 『관보』 제474호(大正), 1914. 3. 2].

제도의 근대화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그 뒤 오랫동안 동아시아 해역의 항해와 해양교류 관련 법규는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 ‘수난구조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⁴¹⁾

41) 우리나라의 현행 수난구조법(2005. 7. 29 일부 개정)은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상에서 일어나는 수난구조 업무를 해양경찰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66년 2월 23일 일부 개정되었다. 그런데 해상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구조 대상선박의 범위와 구난담당조직, 관할해역 등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94년 12월 22일 ‘수난구조법’이 개정되어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의 개정 법률에는 우리나라가 1979년에 가입한 해상수색구조(SAR: Search and Rescue) 협약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 해상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범국가적 수난구조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해양경찰이 해상수색구조의 명확한 주관기관이 되었다. 한편 현행 ‘수난구조법’ 제23조에 따르면, 구조와 구호비용을 “구조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비용을 구조된 사람이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또 동법 제24조에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구조를 받은 사람과 구조를 해 준 사람 사이에 비용의 부담과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해난구조비용의 유료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하여 신속한 수색과 구조(SAR)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19세기 중엽 이후의 ‘근대 해난구조제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중수·양동신, 2007,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론』, 다솜출판사, 43~45쪽, 263~275쪽).

참고문헌

〈사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1965,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중·하(입법
참고자료 제18호·제26호·제27호).

『동아일보』, 1962. 11. 19.

송병기·박용옥·박한설, 1970~197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 국회도서관.

일본 內閣官報局, 『法令全書』(明治·大正)

일본 아마구치현 문서관, 1977, 『山口縣史料 近世編 法制下』.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困難船及漂流民救助取扱參考書』(문서번호 3. 6. 7. 5; 전 2책)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日韓兩國困難船漂流民救助例規參考書』(문서번호 3. 6. 7.
2; 전2책)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遭難船漂流民及漂流物關係雜纂』(문서번호 3. 6. 7. 4; 전2책)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困難船及漂流民救助雜件·朝鮮國ノ部』(문서번호 3. 6. 7.
1-10)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外交史料館所藏 外務省記錄總目錄』 戰前期, 原書房,
1992.

조선총독부, 大正(1914) 3. 2, 『관보』 제474호.

〈단행본〉

금중수·양동신, 2007,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론』, 다솜출판사.

나애자, 1998,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

양수지, 2003, 『조선인이 본 15세기의 유구왕국』, 집문당.

李薰, 2000,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趙恒來·河宇鳳·孫承喆 編, 1994, 『講座 韓日關係史』, 玄音社.

河宇鳳 외, 1999, 『朝鮮과 琉球』, 아르케.

한일관계사학회, 2001,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金指正三, 1968, 『近世海難救助制度の研究』, 吉川弘文館.

多和田真一郎, 1994, 『「琉球·呂宋漂海録」の研究—二百年前の琉球·呂宋の民俗・
言語』, 武蔵野書院.

徳永和喜, 2005, 『薩摩藩對外交渉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池内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논문〉

김경옥, 2008,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到民들의 추이-『備邊司謄錄』「問情別單」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44, 朝鮮時代史學會.

金在勝, 1996, 「韓國, 琉球間 漂流에 의한 文化的 接觸」, 『東西史學』 2, 韓國東西史學會.

吉田光男, 1986, 「一九世紀忠清道の海難-漕運船の遭難-九〇事例を通して」, 『朝鮮學報』 121, 朝鮮學會.

渡邊美季, 2006, 「中日の支配論理と近世琉球-「中國人・朝鮮人・異國人」漂着民の処置をめぐる」, 『歴史學研究』 810.

劉序楓, 2005, 「近世中國と日本間における漂流・漂着事件について」, 『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交流の諸相-海賊・漂流・密貿易』,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劉序楓, 2009, 「近世東亞海域的偽裝漂流事件-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的漂流中國事例爲中心」, 『韓國學論集』 45輯, 漢陽大學校.

閔德基, 1994, 「朝鮮・琉球」를 통한 에도 막후(江戶幕府)의 對明 접근」, 『韓日關係史研究』 2, 韓日關係史연구회.

민덕기, 2001,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배우성, 2007, 「地圖와 記憶-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삼국의 琉球 인식」, 『역사문화연구』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西谷正 著, 尹龍赫 譯, 2007, 「高麗・朝鮮과 琉球의 交流-그 考古學的 研究 序說」, 『錦江考古』 4, (財)忠清文化財研究院.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1998,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寶案研究』 9, 沖縄縣立圖書館史料編集室.

松原孝俊, 「琉球の朝鮮語通詞」, 1997, 『歴代寶案研究』 8, 沖縄縣立圖書館史料編集室.

松浦章, 1982, 「李朝時代における漂着中國船の一資料-顯宗八年(1667)の明船漂着と『漂人問答』を中心に」,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5.

松浦章, 1984・1985, 「李朝漂着中國帆船の「問情別單」について」(上・下),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17・18.

孫承喆, 1992, 「朝鮮前期 對琉球 交隣體制의 構造와 性格」,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

-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 孫承喆, 1995, 「『歷代實案』을 통해 본 조선과 유구관계」,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 紀念 史學論叢』, 동 논총간행위원회.
- 申東珪, 2002,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우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7·18 합집호, 강원사학회.
- 楊秀芝, 1995, 「琉球王國의 對外關係에 관한 一考察: 朝鮮朝의 事大交隣과 관련하여」, 『韓日關係史研究』 3, 한일관계사연구회.
- 湯熙勇, 2002, 「清代前期中國における朝鮮國の海難船と漂流民救助について」, 『南島史學』 59, 南島史學會.
- 岸浩, 1986, 「長門沿岸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を巡る諸問題の検討」, 『朝鮮學報』 119·120.
- 엄찬호, 2007, 「『海東諸國紀』의 역사지리적 고찰」, 『韓日關係史研究』 27, 한일관계사학회.
- 六反田豊, 1999,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濟州啓錄』の分析」, 『年報 朝鮮學』 7,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 李元淳, 1994, 「朝鮮前期 朝鮮廷臣의 琉球 認識」, 『裴鍾茂總長退任紀念 史學論叢』, 동 논총간행위원회.
- 李元淳, 1995, 「『歷代實案』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의 朝琉關係: 直接通交期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65, 국사편찬위원회.
- 李鉉淙, 1964, 「南洋諸國人の 來往貿易에 對하여」, 『史學研究』 18(痴庵申奭鎬博士 華甲紀念論文集), 韓國史學會.
- 李鉉淙, 1973, 「琉球·南蠻關係」, 『한국사』 9(兩班官僚國家의 成立), 국사편찬위원회.
- 李薰, 1991,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26, 국사편찬위원회.
- 李薰, 1994, 「朝鮮後期 漂流民의 송환을 통해서 본 朝鮮·琉球관계」, 『史學志』 27, 단국대학교 사학회.
- 李薰 著, 松原孝俊·金明美 譯, 1997, 「朝鮮王朝時代後期漂流民의 送還を通してみた朝鮮·琉球關係」, 『歷代實案研究』 8, 沖繩縣圖書館史料編集室.
- 李薰, 2003, 「漂流」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 田中建夫, 1995, 「申叔舟 『海東諸國記』-日本と琉球の歴史·地理·風俗·言語」, 『國文學解釋と鑑賞』 60-3, 至文堂.

- 鄭成一, 2002,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서 본 근현대 한일관계: 제도사적 접근(1868-1914)」,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 糟谷政和, 1998, 「1850年代朝鮮船の琉球漂着と朝鮮通事」, 『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科論集』 4, 茨城大學人文學部.
- 佐伯弘次, 2006, 「15世紀後半の博多貿易商人道安と朝鮮・琉球」, 『전북사학』 29, 전북사학회.
- 増田勝機, 1978, 「朝鮮に漂着した琉球船」, 『研究紀要』 22, 鹿兒島短期大學.
- 池田英史, 2008, 「고려·조선과 류큐(琉球)의 물질문화교류」, 『大丘史學』 91, 大丘史學會.
- 河宇鳳, 1994, 「朝鮮前期의 對琉球關係」, 『國史館論叢』 59, 國史편찬위원회.
- 河政植, 1998, 「1530년 濟州漂着 琉球民 送還의 의의」, 『동양사학연구』 63, 동양사학회.

[ABSTRACT]

Korea–Japan Maritime Rescue Syste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Modern Ages

Chung, Sungil

The modern East Asian system for maritime rescue and repatriation of drifters, which now included Western countries, began to become stable from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However, in the twentieth century, as East Asian countries became linked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maritime rescue and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was undertaken according to global standards.

In 1876, Japan became the first country to gain open ports in Chosŏn. Then in 1886,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Law for Repayment of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This revision focused on the repatriation of Korean drifters. However, compared to drifters from other countries landing in Japan, that revision was a so-called unequal treaty with regard to Korean drifters. In 1879, Japan concluded an agreement relating to maritime rescue with England, and in 1881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osŏn concluded maritime rescue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in 1882, England in 1883, Russia in 1884, and Qing China in 1899. However, during this period the details of Korean government’s agreements with each of these countries differed.

In 1914, international standards began to be established, and in that year the government in Korea introduced the “Law of Maritime Rescue

and Escort.” This system informed voyage and interaction in the East Asian maritime region from that period.

keywords

Korea, Japan, China, Eng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Russia, maritime rescue, repatriation, drifters, expenses for repatriation of drifters

논문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의 허구와 문제점

- 식민사관과 관련하여 -

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I. 머리말

경상북도 안동의 한국학 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 후원으로 2008년 11월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구슈[九州]대학의 사에키 코지[佐伯弘次] 교수는 왜구에 관한, 최근 일본 학계의 인식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상 세 사람¹⁾의 견해는 다나가 다케오[田中健夫]와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견해²⁾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

※ 투고일: 2010년 2월 1일, 심사일: 2010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31일.

- 1) 여기서 세 사람이란, 하마나카 노보루[浜中昇],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李頌을 가리킨다.
- 2)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商圏」,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高橋公明, 1987,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 33에 근거하고 있는, 이른바 ‘왜구=고려·조선인 주체’ 설 내지는 ‘왜구=고려·일본인 연합’ 설을 가리킨다. 이 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판에 관해서는 이영, 1996, 「고려 말기 왜구 구성원에 관한 고찰-‘고려, 일본인 연합’론 또는 ‘고려, 조선인 주체’론의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5집을 참조.

로, 前期倭寇의 주체를 일본인과 고려, 조선인으로 보는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舊說인 일본인 주체설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④ 다만 ‘庚寅年 왜구’를 쇼니씨[少弐氏]가 파견한 것이라는 이영의 견해는 일본 학계에서는 부정적이다.

한편 중국에서 활동했던 前期 왜구는, …… 浙江 연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방국진의 휘하에 舟山列島 등지의 海民이 있었고, 그들이 ‘島夷’, 즉 왜구와 결탁하여 해적활동을 했다는 점, 방국진과 張士誠이 멸망한 뒤에 휘하의 諸豪들은 망명하여 ‘島夷’와 손을 잡았으며, 중국 연해를 침입했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⑤ 이와 같은 왜구와 중국 연해 지방의 海民이 연합하여 중국 연해를 침입한 것과 고려를 습격한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문제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구는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며, 동아시아적인 규모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³⁾

이상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5년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이 제기해 온, 이른바 ‘왜구=고려·조선인 주체’ 설 내지는 ‘왜구=고려·일본인 연합’ 설에 대하여 최근의 일본 학계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庚寅年 왜구’를 쇼니씨[少弐氏]가 파견한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⁴⁾에 대해서도 일본 학계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⁵⁾

3)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2008년 11월 당시 자료의 佐伯弘次, 「일본침공 이후의 여 일관계」 중에서 발췌.

4) 이를 ‘경인년 왜구=쇼니씨[少弐氏] 배후’ 설이라고 하자. 이 설에 대해서는 이영, 1999, 「庚寅年以降の倭寇と内亂期の日本社會」,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를 참조.

5) 사에키는 그 근거로 후술하는 모리 시게야키의 견해를 들었다. 모리 시게야키는 ‘경인년 왜구=쇼니씨 배후’ 설에 대하여 “왜구 활동에 종사한 세력은 쇼니씨의 지령에 반드시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森茂暁, 2005, 『南朝全史-大覺寺統から後南朝へ』, 講談社). 이에 대해 필자는 별고에서 ‘고려 말의 왜구’를, 쓰시마[對馬島]와 북규슈 지방의 군사·정치 상황과 왜구의 침구 상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① 1350~1361년, ② 1362~1371년, ③ 1372~1375년 ④ 1376~1383년 ⑤ 1384~1391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영, 2008a,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회』 제91집 참조.

셋째, 최근 일본 학계에서 새로 제기된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즉, 사에키는 “⑥에서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컨대 왜구의 구성원은 일본인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왜구의 실상을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과 고려(조선)인까지 포함된 다국적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본 학계의 새로운 경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세 요점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문제가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필자의 ‘경인년 왜구=쇼니씨 배후’ 설과 이른바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은 양립할 수 없다. 전자가 타당하다면 후자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경인년 왜구=쇼니씨 배후’ 설에 대한 일본 측 연구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가면서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이 지닌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기존 연구의 재검토

1_ 하시모토 유[橋本雄]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 하시모토 유[橋本雄]의 견해를 검토하기로 하자. 그는 ‘前期倭寇’가 병량미를 구하기 위한 침략행위였다고 하는 가설은 아주 매력적이다⁶⁾”라고 하면서도, “^a 13세기 전반까지 왜구 토벌에 노력하였던 쇼니씨가 경인년 이후 갑자기 왜구의 두목이 되었다고 하는 이영의 주장에는 선뜻 찬동하기 어렵다”⁷⁾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발간한 저서에서 다음과

6) 橋本雄, 2002, 「書評 李嶺著『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學研究』 758號.

7) 橋本雄, 2002, 위의 글.

같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⁸⁾

또한 周知하는 바와 같이, ㉞ 1350년, 전기왜구가 조선의 沿岸部에서부터 중국의 山東 방면에 걸쳐서 갑자기 활발하게 침구한다(『고려사』, 『고려사절요』). ㉟ 류큐[琉球] 방면을 침구한 왜구를 ‘고찰(=想定)’한 이나무라씨[稻村氏]나, 전기왜구의 정체를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논한 이영이, 왜구란 일본 국내로 군수물자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 무장집단이었다고 함께 주장한다(그리고 이나무라는 왜구의 통솔자를 기쿠치씨[菊池氏]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이영은 그것을 쇼니씨라고 추측하였다).

필자도 일본국내의 전란과 전기왜구가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의 海商 및 海寇 집단이, 戰時(남북조동란)의 높은 수요[好景氣]를 이용해 ‘왜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㊸ 단, 그것이 일본 국내와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서만 완결되는 문제인가하면, 단순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 이 「蘭秀山の 난」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에 의하면, 반란의 首班인 蘭山の 王氏, 秀山の 陳氏는 海上에서 거대한 세력을 지닌, 방국진의 영향이 미치는 존재였으며, 또 ㊹ 반란군에는 舟山列島の 다른 섬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나 고려 연안의 해상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해상세력의 활동상황을 想定하는 입장에 서면, 전기왜구의 ‘正體’를 日麗關係史(=二國史)의 틀만 가지고 해명하는 것—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라고 論斷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㊺ 중국 대륙의 정세나 일본 국내에서의 ‘간노노조란[觀應の擾亂]’이 전기왜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군수물자를 약탈, 공급하는 多民族 複合的인 海寇야말로 전기왜구의 正體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하시모토가 제시한 논점을 정리한 뒤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8) 橋本雄, 2005, 「肥後地域の國際交流と僞使問題」, 『中世日本の國際關係, 東アジア通交圈と僞使問題』, 吉川弘文館.

보기로 하자.

첫째, 하시모토의 언급 ⑧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필자는 이미 쇼니씨와 소씨가, ‘13세기의 왜구’를 철저히 금압하고 또 ‘왜구의 공백기’를 초래한 주역이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⁹⁾ 그렇다면, 일본의 국경 방어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왜구를 금압해 온 그들이 ‘경인년의 왜구’의 배후 조종 세력이었다고 하는 필자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으로 초래된 ‘왜구의 공백기’에 일본 사회는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한다. 즉, 몽고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호조[北条] 도쿠소[得宗] 권력은 專制化되어 갔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상은 아쿠토[惡黨]·해적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변화해 갔던 것이다.¹⁰⁾ 실제로 고려 충숙왕 10년(1323) 6월에 왜구가 군산도와 추자도에서 늑고 약한 남녀를 납치해 간 것¹¹⁾도 당시 이러한 일본의 국내 사정이 왜구로 표출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자의 생각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방증할 수 있다. 즉, 간겐[寬元] 3년(1245)에 반체제 무사들인 ‘아쿠토’를 단속해야 할 슈고[守護]와 지토[地頭]와 같은 고케닌[御家人] 무사들이 오히려 아쿠토를 숨겨 주고 보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¹²⁾ 그래서 겐노[元應] 2년(1320)에는 빈고노쿠니[備後國] 슈고 나가이 사다시게[長井貞重]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오오타노쇼[大田庄] 구라시키[倉敷] 오노미치우라[尾道浦]에 슈고다이[守護代] 이하 수백 명의 아쿠토를 난입시켜 큰 배 수십 척을 준비해 ‘佛聖人供已下, 資産財物’을 약탈하는 일이 발생한다.¹³⁾ 이는 30년 뒤, 고려에 침구해 인명을 납치하고 물자를 약탈하는 왜구와 일치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아쿠토를 단속해야 할 입장에 있는 슈고와 지토, 고케닌들이 아쿠토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9) 이영, 1999, 앞의 글 참조.

10) 網野善彦, 1995, 「鎌倉末期の諸矛盾」, 『惡黨と海賊』, 法政大學出版局.

11) 『고려사』 권제35, 세가 제35, 충숙왕 10년 6월 정해조.

12) 佐藤進一·池内義資 編, 『中世法制史料集』 第1卷, 鎌倉幕府法, 追加法 253條.

13) 網野善彦, 1995, 앞의 글 참조.

경향은 세토나이카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수상 및 육상 교통로에서 도쿠소 미우치비토[身内人], 슈고, 지토, 고케닌들도 모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¹⁴⁾ 예전에 막부가 체제 밖으로 밀어내고자 한 아쿠토 및 해적과 같은 경향은 체제 내부로 도도하게 침투해 체제 그 자체가 그것과 동질화되어 가고 있었다.¹⁵⁾ 사실 슈고 나가이 사다시게가 오노미치우라에 난입한 것은 놀랍게도 ‘아쿠토의 追捕’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이었다.¹⁶⁾

이상과 같은 일본 국내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쓰시마의 슈고 쇼니 요리히사와 슈고다이 쇼 쓰네시게[宗經茂] 또한 휘하 세력을 동원해 고려를 침구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쿠토’가 약탈 및 납치 행위가 국경을 넘어 전개되면 ‘왜구’라고 불렸던 것이다. 더욱이 쓰시마와 고려 사이에 존재하였던 진봉관계¹⁷⁾도 이미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쇼니씨가 예전처럼 왜구를 적극적으로 금압해야 할 필요성이나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쇼니씨는 두 차례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의 최대의 피해자였다. 그것은 주 침공지였던, 쓰시마와 이키섬[壱岐島] 그리고 치쿠젠[筑前], 히젠[肥前] 지방이 쇼니씨의 관할 지역 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¹⁸⁾ 그리고 ‘일본 침공’ 이후, 호조씨 정권은 몽골의 재침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워, 쇼니씨의 부젠[豊前]과 히젠의 슈고직을 박탈했다. 따라서 쇼니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약 1세기 전의 침공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서도 고려에 대한 침구의 명분은 충분했다. 실제로 일본 침공의 직후인 겐지 2년(1276)에 다자이 쇼니[大宰少弐] 무토 쓰네스케[武藤經資]를 중심으로, 기나이 지방의 아쿠토들까지 동원해 고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더라도

14) 網野善彦, 1995, 앞의 글 참조.

15) 網野善彦, 1995, 앞의 글 참조.

16) 網野善彦, 1995, 앞의 글 참조.

17) 이영, 1999, 앞의 글 참조.

18)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으로 인해 쇼니씨가 입은 피해는 단순히 쇼니씨의 슈고 관할 지역이 주요한 전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몽골의 재침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자 호조씨가 쇼니씨로부터 부젠[豊前]과 히젠[肥前]의 두 지역의 슈고직을 박탈해 자기 일족에게 주었던 것이다.

도 알 수 있다.¹⁹⁾

둘째, 하시모토는 “⑥ 1350년, 전기왜구가 조선의 沿岸部에서부터 중국의 山東 方面에 걸쳐서 갑자기 활발하게 침구한다”고 하면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중국에 최초로 왜구가 침구한 것은 경인년(1350) 이후 9년째에 해당하는 1358년의 일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위의 두 사료가 아니라, 『元史』에 기록되어 있다.²⁰⁾ 그가 단순히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기술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위의 서술방식은 고려 말 왜구의 실체가 마치 하시모토의 주장대로 ‘다국적 복합적인 집단’이었다고 하는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셋째, 하시모토가 언급한, “④ 류큐[琉球] 方面을 침구한 왜구를 ‘고찰(=想定)한 이나무라씨[稻村氏]나, 전기왜구의 정체를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논한 이영이, 왜구란 일본 국내로 군수물자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 무장집단이었다고 함께 주장한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선, 14세기 후반의 왜구 활동의 배경을 당시 일본 국내의 내란 상태와 결부시켜, 침구의 동기를 ‘병량미의 확보’라 하고, 왜구의 배후에 쇼니씨와 같은 지방의 호족이 존재했다고 한 것은 필자만이 아니었고, 또 필자가 최초도 아니었다. 이미 1939년에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高氏]가 일단 규슈로 내려온 뒤 다시 규슈의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올라갈 때, 만쓰라토[松浦黨] 이하 고쿠진[國人]들에게 무기 및 병량미의 보급을 부

19) 이 문제에 관해서는 網野善彦, 1995, 앞의 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년(1350)이 되어서야 왜구의 본격적인 재침이 시작되는 것은 왜구가 초래할지도 모를 사태, 즉 여몽연합군의 재침 가능성에 대한 쇼니씨 측의 危懼 때문이었을 것이다.

20) 『元史』 권46, 「순제본기」 9, 至正 23년(1363) 8월 정유삭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倭人寇蓬州, 守將劉暹擊敗之, 自十八年以來, 倭人連寇瀕海郡縣, 至是海隅遂安.” 즉 지정 18년 이래로 왜구가 연년 원나라 해안 지방을 침구하고 있었는데, 수장 유섬이 봉주(산둥성)에 침구한 왜인을 격파하기에 이르러 평온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써 왜구가 중국에 침구하게 된 것은 원나라 말기의 지정 18년(1358)부터임을 알 수 있다.

담시킨 사실이다. 당시처럼, 생산되는 쌀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를 경작하는 농민이 일단 유사시에는 곧바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시대에는, 규슈 지방에서 많은 청년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긴키[近畿] 지방으로 보내지면, 그 보급을 대륙에서 해결하고자, 더욱이 비상수단-약탈에 의해 보급하기에 이르렀던 것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려에 침구해 간 왜구가, 그 대장은 큰 쇠로 만든 투구를 쓰고, 손과 발에는 모두 보호구를 착용하고, 좌우에는 보병을 거느리며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이성계가 쓴 화살이 적의 두꺼운 갑옷을 뚫고 사람과 말을 쓰러트렸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 등, 이 왜구가 결코 단순한 暴民 집단이 아니라, 강한 통제를 유지한, 따라서 그 배후에는 강력한 지도자-오오우치[大内]·오오토모[大友]·마쓰라토[松浦黨] 그 외의 다른 존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²¹⁾

여기서 보듯이, 아키야마와 필자의 견해는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상이하지만 ‘침구의 동기=병량미의 보급’과 그 ‘배후 세력=강력한 지도자’에 대하여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다른 예를 보자.

남북조 내란 연구의 大家로 평가받고 있는 사토 신이치[佐藤進一]도 사료적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왜구)이 항상 대량의 쌀과 인간의 약탈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면, 그 행동은 반드시 군사력의 보급,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의 쟁란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없다”²³⁾고 하였다.

또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도 “왜구의 주체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무장집단과 북규슈의 변경 지역의 細民 등이 쌀과 콩 그리고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 침구했다”고 하였다.²⁴⁾ 심지어는 역사학자가 아닌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쓰

21) 秋山謙藏, 1939, 「倭寇の進出と農民の掠取」,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22) 단,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다다라하마[多々良浜] 전투에서 승리하고 東上한 것은 1336년 4월 3일이고, ‘경인년 왜구’의 발생은 1350년이니 아키야마의 생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23) 佐藤進一, 1965, 「倭寇の後援者」, 『南北朝の動亂』, 中央公論社.

24) 田村洋幸, 1974, 「倭寇はなぜこの時期から起こったか」, 兒玉幸多·豊田武·齋

네이치[宮本常一]도 “무라가미[村上]·이마오키[今岡]·구츠나[忽那] 등의 諸氏が 세토나이카이에서의 북조에 대한 항전을 정지하고 있는 기간에, 왜구의 한반도에 대한 습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즉, 다음에 있을 북조 측에 대한 항전에 대비하여 반도에서 ‘병량미’를 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구에게서 볼 수 있는 조직과 그 전술, 그리고 무력은 상당한 수준 이상의 것으로, ‘상당히 큰 통솔력과 연합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고 또 단순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약탈하기 위한 것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 것이다” 고 했다.²⁵⁾

이처럼, 왜구의 발생 배경을 무엇보다 먼저 남북조 내란과의 관련 속에서 찾는 것은 일본 중세사 연구자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던 것이다.²⁶⁾

넷째, 또한 하시모토는 “㉔ 단, 그것이 일본 국내와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서만 완결되는 문제인가 하면, 단순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한 뒤, 1368년(洪武元年)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蘭秀山の 난’을 언급해, “㉕ (난수산의) 반란군에는 舟山列島の 다른 섬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나 고려 연안의 해상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의 연구²⁷⁾를 인용하고 있다. 후지타 연구가 지닌 문제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후술하겠지만, 이는 사료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당시 고려에는 공권력으로부터 자립적인 그리고 파악되지 않은 ‘해상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존재했었다라면

藤忠 編, 『日本歴史の視点』 2, 中世, 日本書籍.

25) 宮本常一, 1987, 『旅の民俗と歴史』, 八坂書房.

26) 위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사료에 입각한 본격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 立論이 아니었으며 단지 아마도 ‘~가 아닐까’라는 식의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필자는, 왜구 이전의 10세기 무렵부터 고려와 일본 간 교류를 매개한 쓰시마와, 그 쓰시마를 지배한 쇼니씨와 소씨[宗氏]에 주목해 『고려사』 등의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왜구의 배후(쇼니씨)·침구의 시대적 배경·목적 등을 특정한 것을 큰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7) 藤田明良, 1977, 「『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號, 青木書店.

왜구의 침공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곤란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조직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시모토의 “㉠ 전기왜구의 정체가 다민족·복합적 海寇였다”고 하는 지적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일체의 근거 사료가 없는 허구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 학계에서는 왜구를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이해해 왔다.

〈표〉 일본 학계의 왜구 분류

		전기왜구	후기왜구
1	활동 시기	13~14세기 후반	16세기
2	활동 지역	주로 한반도, 중국 일부 지방	주로 중국 대륙
3	주체	일본인이 중심	중국인 중심, 일본인은 20~30%에 불과

만약 이 당시의 왜구가 ‘다민족·복합적’인 해적이었다면, 다음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즉 후기왜구의 경우, 그 활동 지역이 주로 대부분 중국 대륙이었고, 한반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일본 학계에서는 조선 정부가 쓰시마주[對馬島主]를 통해 이른바 ‘전기왜구’의 침구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을 들고 있다.²⁸⁾ 만약 전기왜구가 ‘다민족·복합적’인 집단이었다면, 쓰시마주를 통한 왜구 통제라는 單線的인 방법으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즉 일본 측 주장에 따라라면, 왜구 집단의 구성은 다민족·복합적인 것으로, 따라서 침구 루트도 쓰시마 내

28) 다나가 다케오는 “이는 조선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쓰시마에 식량을 쥐서 환심을 사고 왜구를 금압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왜구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것은 이조실록의 기사에서 왜구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라고 했다(田中健夫, 1959, 「朝鮮との通交關係の成立」,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12쪽).

지는 일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침구해 오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쓰시마만 통제해서는 전기왜구의 침구를 막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만약 당시 왜구가 그의 주장대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다면, 그것으로 기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직의 원리·이동 및 전투작전 수행시의 지휘체계·약탈물의 분배 방법·근거지·연합의 동기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 없이는 단지 재미있는空想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하시모토의 견해는, 머리말에서의 사에키의 언급과 함께, 후지타 아키요시의 이른바 ‘왜구=다민족, 복합적 해적’ 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후지타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_ 후지타 아키요시

머리말에서 언급한 사에키를 포함해, 하시모토와, 가이즈 모두가 후지타 아키요시의 다음과 같은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368년 몽골 제국은 분열되어 옛 수도 카라코룸으로 옮겨 가고, 大都에는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입성했다. ④ 大元시대와 같은海上交易은 부정되고 왜구를 단속할 수 있는 일본 국왕을 필요로 하는海禁의 시대가 되었다. ⑤ 때를 같이해서 고려에서도 沿海·島嶼지역에서의 諸民族이 雜居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空島化(섬 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시도 되어지고, 왜구 지배 지역에 대한 군사침공이 이어졌다. 사료에 보이는 왜구의 출현은, 이러한 국제 관계의 변화에 규정되어져 직접적으로는 ‘바다를 넘은 神領興行’ 무역선을 지탱하고 있었던 저변 조직의 한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29) 藤田明良, 1998, 「東アジアにおける海域と國家, 一四~一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 『歴史評論』 575.

우선 ㉔는 前後 因果關係가 뒤바뀐 것이다. 명대에 들어와 해상교역을 부정하는 海禁 정책이 추진된 가장 큰 원인은 ‘왜구의 발호’ 때문이었다.³⁰⁾ ㉕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서,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에서는 왜인과 조선 측 주민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雜居하고 있었으며, 세종 원년(1419)에 조선 조정이 추진한 쓰시마 정벌³¹⁾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들의 잡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³²⁾

이처럼 조선 남부에서는 왜인과 조선 인민과의 교류와 잡거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잡거 상황에는 唐人이라 불리는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

쓰시마에는 이러한 당인의 거점이기도 했다. (쓰시마) 정벌 당시에 ‘보호’받고 있었던 ㉔ 중국인 피납자들은 142명에 달하지만 그들 모두가 실제로 납치당해서 온 것은 아니다. 쓰시마의 당인들 중에는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秦盛幸과 같은 인물도 있었던 것이다.

㉔ 이러한 자국의 연안과 도서 지역에서의 ‘여러 국민들’의 잡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그들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 지배 속에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교류의 한 거점이었던 쓰시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오에이[應永]의 外寇’였다. ㉔ 정벌을 실시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쓰시마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국가(조선, 일본 또는 명나라)에 명확하게 귀속시키는 것, 그것이 이 대규모 파병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³³⁾

30) “연해의 간교한 백성들이 왜구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을 해변에서 이전시키는 시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명조는 해방과 표리관계에 있는 해금정책을 취했다. 해금정책은 주로 왜구의 발호에 대한 방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熊遠報, 1997, 「倭寇と明代の海禁—中國學界の視点から」, 大隅和雄・村井章介 編,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關係』 山川出版社를 참조.

31) 일본에서는 이를 ‘오에이[應永]의 外寇’라고 한다.

32) 藤田明良, 1998, 앞의 글.

33) 藤田明良, 1998, 앞의 글.

우선 ㉔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후지타는, 당시 왜구들은 외교문서를 담당할 수 있는 유식한 사람은 납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유식한 중국인들은 납치당하지 않고 스스로 일본에 왔다고 생각하고 싶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납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효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진성행과 같은 인물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는 임진왜란 당시 ‘강항’을 비롯한 조선 학자들이 일본에 납치당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성행이란 인물이 왜구들에 의해 피랍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 없는 한, 그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만약 후지타의 주장이 옳다면 다음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쓰시마 정벌을 앞두고 조선 정부는 연해 지역에 살게 하였던 일본인들을 모두 다 내륙지방으로 이동시킨다.³⁴⁾ 이는 후지타의 ‘잡거 상태의 해소’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여러 민족의 잡거 상태’가 왜구의 발생 요건이라면, 조선 국내의 일본인들은 다 살해하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돌려보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 측 사료에 대한 후지타의恣意的인 해석과曲解는 그의 논문 도처에서 발견된다. 후지타는 이상과 같은 자신의 추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水賊’이라고 불리는 조선인 해적이 15세기가 되면 정부에 의해 문제시 되고 있었음이 근년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당시도 고려인 해구가 있었던 사실이 『元史』에 보인다.

[사료 1]

일본국이 알리기를, 고려의 도적들이 바다를 지나다니면서 약탈행위를

34) “박은과 허조가 계하기를, ‘섬에 있는 왜인은 우리나라 민족과 종류가 다르오니, 서울과 경상, 전라도에 많이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빌건대, 나누어 깊고 궁벽한 곳에 두소서’ 하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마땅히 상왕에게 아뢰어라’고 하였다. 『세종장헌대왕실록』 제4권, 세종 원년 7월 초6일조.

일삼으면서 스스로 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 고려 국왕 백안첨목아가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해서 金口腰 1개와 鈔 二千錠을 하사했다.³⁵⁾

당시에도 일본과 원나라를 왕래하는 海商이나 禪僧들이 많아서, 일본으로부터 이런 정보가 원나라에 도착했어도 이상하지 않다. 백안첨목아(공민왕)에 대한 하사품에 대해서는 『고려사』에도 상응하는 기사가 있어서 내용의 신빙성은 낮지 않다. 13세기 이후, 고려는 자주 쓰시마와 마쓰우라 주민들에게 습격당했는데, 거꾸로 고려의 해도민들이 일본을 습격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³⁶⁾

후지타가 “『고려사』에도 상응하는 기사가 있어서 내용의 신빙성은 낮지 않다”고 한 것은 다음 사료 2를 가리킨다.

[사료 2]

원나라가 직성사인 보사니를 보내어 왕에게 금띠와 초(지폐) 2천 정을 주었다.³⁷⁾

따라서 원나라 조정이 ‘일본국’의 보고 내용을 신뢰하고 금구요(금띠)와 초(지폐)를 고려에 하사했다고 하는 기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후지타가 인용한 사료 1이 몇 개의 단문으로 구성된 복문이고 각각 主語가 다르다는 것이다. 사료 1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일본국이 알리기를, 고려의 도적들이 바다를 지나다니면서 약탈행위를 일삼으면서 스스로 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
- ㉡ 고려 국왕 백안첨목아가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한다.

35) “日本國白，高麗賊過海剽掠，身稱島居民，高麗國王伯顔帖木兒調兵勦捕之，賜金擘腰一，鈔二千錠”，『원사』 권42, 지정 12년 8월 정미(7일)조.

36) 藤田明良, 1998, 앞의 글 참조.

37) 『고려사』, 공민왕 원년 8월 무오일조.

㉔ (그래서, 원나라 조정이) 金口腰 1개와 鈔 二千錠을 하사했다

여기서 ㉔의 주어는 당연히 ‘일본국’이다. 그런데 ㉔의 주어는 ‘일본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㉔가 ‘일본국’이 알린 내용이라면, 고려 조정이 일본국에 전한 것을 원나라에 보고한 것이 되는데, 이 시기에 고려와 일본 양국 사이에는 사절의 교환이 없었다.³⁸⁾ 물론 일본에 의해 붙잡힌 ‘고려 도적’들이 알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섬에 거주하는 도적’들이 당시 국왕의 이름이 ‘백안첨목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일체의 공식적인 외교접촉이 없었던 고려와 일본 사이를 생각하면, 당시 일본 측이 공민왕의 이름을 알았을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㉔의 주어는 고려 측의 보고를 원나라의 해당 관사가 조정(황제)에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㉔의 주어는 원나라 조정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일본국이 고하기를, 고려의 도적들이 바다를 건너 약탈을 행하고 있는데 스스로 칭하기를, 섬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한다. (고려국의 보고에 의하면) 고려국왕 백안첨목아 (공민왕)가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황제 또는 조정이) 금구요 1개와 초 2천정을 하사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국’이라는 명칭이다. 이처럼 사료에 ‘일본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국가 기관’을 의미한다. 후지타는 海商이나 禪僧들이 이런 정보를 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런 정보를 직접 전달한 것은 아마도 후지타의 지적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공식적인 문서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口頭로 전달한 것을, 원나라 조정이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였을까? 그리고 고려 조정에 위와 같은 물품

38)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 이후 고려가 일본에 최초로 외교사절을 파견한 것은 공민왕 15(1366)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 2007a,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공민왕 15(1366)의 금왜사절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26집 참조.

과 지폐를 下賜하였을까? 아마도 공식적인 외교 문서[牒]를 지참하지 않았다면 해상이나 선승이라는 私的인 자격만 가지고서는 원나라 조정에 접근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외교관례에 어울리는, 공식적인 문서를 지참했기 때문에 『원사』에서도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일본국’이라고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공식적인 외교문서를 작성해 원나라 조정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공기관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우선 무로마치 막부, (남조와 북조의) 조정 그리고 규슈 현지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다자이후[大宰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왕 원년(1352) 당시 막부나 (남북의) 조정이 위와 같은 외교문서를 원나라 조정에 보낼 뚜렷한 이유나 動機는 전무하다. 만약 고려의 海島民들이 일본을 침구했다고 하는 보고가 사실이었다면, 논리적으로나 지리적인 근접성을 고려할 때, 원나라 조정이 아니라 먼저 고려 조정에 대하여 항의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같은 내용을 전하는 사절이 고려에도 내왕하였다면, 위의 사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시기 일본의 막부나 조정이 고려에 사절을 파견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자이후는 어떠할까? 과거에도 다자이후가 중국이나 고려에 공적, 사적으로 사절을 파견하고 외교문서를 전달한 사례는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³⁹⁾ 다자이후의 책임자가 무역의 이익을 노리고 거짓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해 중국에 사절을 파견한 사례는 이미 헤이안[平安]시대부터 있어 왔다.⁴⁰⁾ 따라서 ‘다자이후’가 『元史』에 보이는 ‘일본국’의 실체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당시의 ‘다자이후’란 바로 ‘다자이쇼니[大宰少弐]’ 요리히사[頼向]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리히사가 원나라 조정에 대하여 그러한 ‘거짓 보고’를 해야 했

39) 이 문제에 관해서는 森克己, 1948,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등에 상론하고 있다.

40) 森克己, 1948, 위의 책 참조.

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필자가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경인년(1350) 이후의 왜구’의 배후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요리히사로서는 고려에 대한 왜구의 침구 사실을, 원나라 조정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원나라 조정이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구의 침구를 빌미로 삼아 원나라가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일본을 침공해 올지도 모른다는 위구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럴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바로 쓰시마를 비롯한 북부 규슈 지역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세력권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후지타가 제시한 『원사』의 ‘일본국’이 보고한 내용은 바로 왜구의 배후 조종 세력인 요리히사가, 왜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원나라 조정의 반응을 살피고, 또 만일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이었다고 생각한다.

Ⅲ.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의 허구성

1_ ‘왜구=쇼니씨 배후’ 설의 비판에 대한 반론

지금까지 필자의 ‘왜구=쇼니씨 배후’ 설에 대해 일본 측에서 제기한 주요 비판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후지타의 이른바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은 도처에 사료의 곡해 또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에키의 지적은 그 立論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4세기 후반 고려와 중국을 침구한 왜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1999년 이후 추진해 온 연구 결과를 발췌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것은 ⑧ 왜구의 침구 시기와 지역을 요리히사가 처한 군사

및 정치 상황과 결부시켜 고찰한 연구 그리고 ⑥ 일본에 所在 고려 불교 문화 재에 관한 연구, ⑦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헌사료에 근거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④의 예로,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쇼니 요리히사[少弐頼尚]를 중심으로」⁴¹⁾가 있다. 그 내용은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는 결코 ‘다민족 복합적인 해적’들이 산발적이고恣意的인 약탈 행위가 아니라, 요리히사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침구였다. 즉, 당시 ‘간노노조란[觀應の擾亂]’이라는 일본 중앙의 정세가 규슈 지역에 반영되어 ‘왜구’로 표출된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⑤ ‘경인년 왜구=쇼니씨 배후’ 설의 물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일본의 佐賀縣立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7卷本 「金字妙法蓮華經」을 제시해, 1357년 당시 침구한 왜구들의 약탈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요리히사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밝혔다.⁴²⁾

그리고 쓰시마 쓰쓰[豆酸]의 다쿠쓰다마[多久頭魂] 신사 소재 청동제 대형 반자의 原銘과 追銘을 검토한 결과, 그 반자는 공민왕 6년(1357) 9월에 왜구들이 약탈해 오오쿠라 쓰네타네[大蔵経種]라는 인물이 같은 해 10월에 기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오오쿠라 일족은 요리히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규슈 지방의 호족이었음을 밝혔다.⁴³⁾

⑦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헌사료에 근거한 연구로는,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⁴⁴⁾이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공민왕 18년(1369, 正平 24)에, 쓰시마의 미쓰시마초[美津島町] 오야마[大山] 마을을 근거지로 하였던, 오야마미야우치사에몬[大山宮内さへもん]이라는 인물이, 쓰시마 슈고⁴⁵⁾의 지

41) 이영, 2009,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쇼니 요리히사(少弐頼尚)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26호.

42) 이영, 2007b, 「왜구의 허상과 실상」,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를 참조.

43) 이영, 2008b, 「쓰시마 쓰쓰(豆酸) 다쿠쓰다마[多久頭魂] 신사 소재 고려 청동제 飯子과 왜구」, 『한국중세사연구』 제25호를 참조.

44) 이영, 2008a, 앞의 글.

45) 쇼니 요리히사의 아들, 쇼니 후유스케[少弐冬資].

시를 받은 슈고다이 소 쓰네시게로부터 渡航料⁴⁶⁾를 면제받고 배 두 척으로 전년도부터 남해도와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던 쓰시마 사람들을 송환하였다. 그런데 그 뒤 곧바로 왜구의 침구가 재개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고려에서부터의 철수와 왜구의 재침이 쇼니씨의 지시를 받은 소 쓰네시게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의 왜구 관련 사료의 재검토를 통해, 쓰시마의 영주 소씨가, 14세기 후반 당시의 왜구가 쓰시마의 소씨[宗氏]의 上官(=쇼니씨)의 지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自認하였음을 밝혔다.⁴⁷⁾

그리고 『고려사』와 『南北朝遺文』 등과 같은 한일 양국의 문헌 사료를 검토해, ‘경인 이후의 왜구’의 침구 목적은, ‘경인 이후의 왜구’는 쓰시마와 이키노시마 등 서쪽 섬에서 할거하는 규슈의 난신들이 병량(전쟁 수행 물자)의 확보를 위해 고려를 침구하는데, 이를 막부가 막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서변 해도의 완고한 백성들, 예를 들면 마쓰우라 지역 사람들이 남조의 군세와 더불어 침구해 간다고 하는 것이 이 고려시대 말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⁴⁸⁾

그런데 위와 같은 사료는 다음과 같이 조선시대 초기에도 확인되고 있다.

[사료 3]

…… 짐이 江東에 수도를 정하고 해외의 나라들 중에서는 오로지 그대를 가장 가깝게 생각한다. 그대는 짐의 마음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삼가고 따르며 大倫을 두터이 하라. 형벌을 피하여 숨은 자들을 숨겨 주지 말라[毋容逋逃]. 간사한 도둑[姦宄]들을 용서하지 말라.⁴⁹⁾

46) 이를 ‘고라이구지[高麗公事]’라고 한다.

47) 이영, 2008a, 앞의 글 참조.

48) 이영, 2006,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4집.

49) 田中健夫 編, 『善隣國寶記』[卷中 建文 4年(1402) 2月 初六日付, 「明建文帝詔書 源道義(足利義滿)充」].

사료 3은 명의 建文帝가 1402년(建文 4, 應永 9) 2월 初 6일에 源道義(=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에게 보낸 조서로, 명나라 사신 天倫道彝 등이 일본에 가지고 온 것인데, 그 내용은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에 책봉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형벌을 피하여 숨은 자[逋逃]’와 ‘간사한 도둑[姦宄]’은 모두 왜구를 지칭하는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逋逃’라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다음의 사료 4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료 4]

황제가 일본 국왕 源道義에게 명한다. …… 옛날 海寇들이 숨어서 노략질을 해 제 마음대로 변경 지방을 괴롭히며 피차 간의 왕래를 방해했고 백성들은 그 재앙에 피해 를 입었다. 짐이 왕에게 명하여 이를 섬멸하게 해, 악의 무리들을 제거하게 하자, 왕은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붙잡아 그 선박을 파괴하고 그 무리들을 살육하고 도적의 두목 [首賊]을 붙잡아 사자를 파견해 京師(南京)로 압송했다. 그러나 渠魁는 먼 바다 섬으로 도주해 [渠魁遠竄海島] 큰 바다에서 숨으니, 해적이 출몰해 그 지방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魚蝦出沒, 莫適其鄉]. 배를 동원해 급습할 수도 없고 무기도 또한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舟楫猝不能及, 鋒鏑猝不能加].⁵⁰⁾ ……

이 사료 4는 영락 5년(應永 14, 1407) 5월 26일에 명에 파견한 사신 堅中圭密 등이 일본 국왕 源道義(아시카가 요시미쓰)에게 전달한 永樂帝의 勅書다.⁵¹⁾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당시 왜구들은 일본의 본토에서 해적 행위를 일삼았는데, 요시미쓰가 그들을 토벌해 두목들을 중국으로 압송했지만, 큰 두목들은 먼 바다로 도주해 큰 바다에 숨었고 그래서 해적들은 또 출몰하니[渠魁遠竄海島, 偷息鯨波, 魚蝦出沒, 莫適其鄉]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

50) 田中健夫 編, 위의 책[卷中 永樂 5年(1407) 5月 26日付, 「永樂帝勅書 日本國王源道義(足利義滿)充」].

51) 오에이[應永] 13년(1406)에 명나라 사신 潘賜 등의 귀국 길에 동행한 건명사 堅中圭密 등은 다음 해인 14년에 명나라 수도에 도착해 방물을 바치고 붙잡아 온 왜구 道金 등을 바쳤다. 田中健夫 編, 앞의 책(『明實錄』 永樂 5년 5월 기묘조) 참조.

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당시 왜구들은 처음부터 ‘먼 바다 어느 섬의 주민’이 아니라, 본토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진짜 수괴가 본토에서 도주해 와, 海島에 있으면서 해적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渠魁遠竄海島’의 ‘竄’은 ‘숨다, 달아나다’의 뜻으로 ‘逋逃’와 같은 의미이다. 위의 두 사료는 명나라 황제의 조서지만, 여기서 당시 왜구의 실체를, ‘포도’라고 한 것은 중국 측의 추측이 아니라 일본 측의 해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다음 사료 5이다.

[사료 5]

…… 또한 海島의 小民들이 자주 (귀국의) 변경 지방을 침구한다고 (우리들) 비난하는데, 이는 실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지금 만약 이를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예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를 명하였던 것이 될 것이다. 어찌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옳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할 리가 있겠는가? 어찌 이를 생각하지 못 하였는가?

그렇지만 형벌을 피하여 숨은 자들이 망명해[逋逃亡命] 때로는 몸을 먼 바다의 섬에 숨기고 때때로 나와서 변경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沿海 지방의 관리에게 명하여 이를 제압해야 할 것이다.⁵²⁾ ……

이 사료 5는 오에이[應永] 26년(永樂 17, 1419) 7월 20일에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가 효고[兵庫]의 福嚴寺에 있던 명나라 사신과의 절충을 앞둔 접반사 역할을 하던 元容周頌에게 준 서신이다. 對明外交를 단절할 의지와 명나라에 침구한 왜구들에 대한 막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逋逃’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이것은 당시 왜구를 ‘형벌을 피해 숨은[逋逃]’라고 표현하고 있는 일본의 사료인 것이다. 이와 같이 ‘逋逃’로 기록되어 있는 사료는 또 있다. 다음 사료 6을 보자.

52) 田中健夫 編, 앞의 책[卷中 應永 26年(1419) 7月 20日付, 「足利義持書 元容周頌充」].

[사료 6]

國君이 말씀하시길, 대저 이웃하는 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 상인들이 왕래하고 변경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어찌 바라지 않겠는가? ……

(귀국의) 변경을 약탈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서) 도주한 무리들[逋逃之徒]이 바다 섬[海島]에 숨어서 하는 것이다. (이들을) 공격하고자 하면 마치 번개처럼 재빨리 몸을 감추고 토벌대가 귀환하면 곧바로 다시 개미들처럼 모여들어서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을 붙잡아서 죽여도 좋다. 어찌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는가?⁵³⁾ ……

이 사료 6은 사료 5가 작성된 지 사흘이 지난, 오에이 26년(永樂 17, 1419) 7월 23일에 효고의 복엄사에서 명나라 사신과 만난 元容周頌이 베껴 써서 쇼군에게 바친 영락제의 칙서를 본 쇼군 足利義持가, 그에게 다시금 대명외교를 단절할 의지를 명나라 사신에게 전할 것을 명한 서신이다. 여기서도 ‘체포될 것을 피하여 도주한 무리[逋逃之輩]’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당시 고려, 명 그리고 일본 삼국은 왜구의 실체를 ‘포도’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것은 일본 측의 해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 사료 3~사료 6에서 왜구들의 본거지로 지적하고 있는 ‘海島’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다음 사료 7을 보자.

[사료 7]

황제가 일본 국왕 源道義에게 명한다. 사신들이 귀국해 말하기를, 왕은 덕을 닦고 선행을 좋아하며 충의롭고 선량하다고 한다. 짐이 깊이 그대를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또한 明 조정의 명령을 잘 받들어 이키[壱岐], 쓰시마[對馬], 여러 섬[諸島] 사람들을 금지하여 해변의害를 일으키지 못하게 애썼다고 한다. 이는 아주 칭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대는 더욱 노력해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버리고 올바른 일[正業]에 종사하도록 해, 모두 농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

53) 田中健夫 編, 앞의 책[卷中 應永 26年(1419) 7月 23日付, 「足利義持書 元容周頌充」].

다. 그대는 또한 영원히 그 명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⁵⁴⁾

이 사료 7은 오에이 11년(1404) 명나라에 파견한 사신 明室梵亮 등의 귀국에 동행하여 일본에 온 명나라 사신 某가 전달한 영락제의 칙서이다. 여기서는 왜구들의 은거지 ‘먼 바다 섬[海島]’으로 이키, 쓰시마와 여러 섬들, 즉 이른바 ‘삼도’를 지목하고 있다. 또 다음의 사료 8을 보자.

[사료 8]

황제가 일본 국왕 源道義에게 명한다. …… 쓰시마, 이키 등 멀리 있는 섬[遠島]의 해구[海寇]들이 출몰해 해안 지방을 겁탈(劫掠)하는 것을 짐이 왕에게 명하여 이를 못하게끔 했더니, 왕은 곧 군대를 보내어 그 무리를 섬멸하고, 그 배들을 파괴하고 그 수괴를 붙잡아 모두 京師(명의 조정)에 보내었다.⁵⁵⁾ ……

사료 8은 오에이 13년(1406)에 일본에 온 명나라 사신 潘賜 등이 전한 영락제의 칙서이다. 여기서도 쓰시마, 이키 등 멀리 있는 섬을 왜구의 근거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료 7>~<사료 8>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과 명은 왜구의 실체를 ‘(일본에서) 형벌을 피해[遁逃], 이키[壱岐] 쓰시마 여러 섬[諸島]에 숨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쇼군 요시모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막부가 무슨 이유로 인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막부의) 체포를 피해 먼 바다 섬에 숨은 그들은, 쇼군의 정치, 정책에 반대 입장을 지닌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료들에서 우리들의 흔히 왜구 발생의 원인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쓰시마’ ‘이키’ ‘마쓰우라’ 등 이른바 왜구의 소굴로 알려진 ‘三島’ 지방이, 경작지가 협소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때문에 해당 지역민들이 왜

54) 田中健夫 編, 앞의 책[卷中 永樂 2年(1404) 12月 2日付, 「永樂帝勅書 日本國王源道義(足利義滿)充」].

55) 田中健夫 編, 앞의 책[卷中 永樂 4年(1406) 1月 16日付, 「永樂帝勅書 日本國王源道義(足利義滿)充」].

구가 되어 침구해 왔다⁵⁶⁾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일본 본토의 막부 정권의 체포를 피해) 도주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조선 초의 왜구에 대하여 일본의 공권력이 ‘포도’라고 언급한 것은 위 사료가 최초가 아니다. 다음의 사료 9를 보자.

[사료 9]

日本國遣僧信弘來報聘書云, 草竊之賊, 是連逃輩, 不遵我令, 未易禁焉,⁵⁷⁾

사료 9는 『고려사』의 기사로, 우왕 3년(1377) 8월에 일본국이 “승려 신흥을 보내와 ‘草竊之賊(좀 도둑)’들은 (일본에서) 도망간 집단으로, 우리들[北朝]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아직 금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포도의 실체는 이미 필자가 별고⁵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부의 규슈 지역 총사령관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에 대해 싸우던 宮方, 즉 남조에 가세한 마쓰라토[松浦黨]를 위시한 규슈 지역의 무장 세력이었다. 조선 초기의 ‘포도’ 역시 단순한 生活苦로 인한 약탈이 아니라 막부와 적대하는 무장세력, 쓰시마를 주요 근거지로 하는 북규슈 지역의 토착 호족 쇼니씨와 기쿠치씨였다. 즉, 그들은 혼슈의 서쪽 끝 야마구치현[山口縣] 현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大内氏가 새로운 규슈탄다이 시부카와[渋川氏]를 이용해 규슈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항했다가 패하자 쓰시마를 거쳐서 한반도로 밀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의 사료 10~사료 12를 보자.

[사료 10]

臣 등이 지금 들으니, 오우치도노[大内殿] 왜인이 장차 쓰시마 왜인 소

56) 현재 한국 역사 학계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왜구 발생의 일반적인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박용운, 1987, 『고려시대사』, 일지사를 참조.

57) 『고려사』 권133, 「열전」 46. 우왕 3년 8월조.

58) 이영, 2006, 앞의 글 참조.

사다시게[宗貞茂]를 토벌한다 하니, 신 등은 소 사다시게가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쫓겨 떠 돌아다니다가 필경은 의지할 곳이 없어 우리 변방을 도둑질해 백성이 그 해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⁵⁹⁾

[자료 11]

兵曹가 아뢰옵기를, 쓰시마 도만호 사에문타로가 사신으로 보낸 上官 승려 소긴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 오우치도노[大內殿]와 쇼니도노[小二殿]가 서로 싸웠는데, 쇼히코로쿠[宗彦六]는 원래 쇼니도노의 管下로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구원했습니다.

군사들 중에서 굶주리고 피곤한 자는 中路에 돌아와 귀국에 양식을 구걸하기 도하고, 혹은 전투에 나가서 이기지 못한 자는 귀국의 내륙 깊숙이까지 침구할까 매우 두렵습니다’라고 하오니, ‘청컨대 각 도의 감사, 절제사, 처치사와 각 鎭과 각 浦에 공문을 보내어 방어를 더욱 엄중히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⁶⁰⁾

[자료 12]

경상좌우도 병마도절제사와 수군도안무처치사에게 傳旨하기를, “지금은 왜인 頼沙文의 말에, ‘小二殿이 전쟁에 패하여 영토를 잃고 군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쓰시마 섬에 와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만약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된다면 혹시 쳐들어올 이치가 있을 것이니, 卿이 이 뜻을 알고 방어하는 일을 곡진하게 조치하여 敵人에게 侮視당하지 않게 하고 또 왕래하는 왜인을 통해 소식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자세히 묻도록 하자” 하였다.⁶¹⁾

59)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12월 19일조.

60)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정미 7월조.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는 “1428년 3월에 소 모리쿠니[宗盛國, 宗貞盛의 동생]가 조선에 규수 군관 50여 명분의 병량을 요구해 쌀 80석을 지급받은 것으로 봐서 소긴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1427년에서 1428년 사이에 쇼니씨와 오우치씨가 항쟁하고 있었던 것, 사다모리가 쇼니씨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출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荒木和憲, 2003, 「對馬島主宗貞盛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朝鮮學報』 189집.

61) 『세종실록』 권96, 세종 24년 6월 갑진조.

사료 10은 『태종실록』의 내용으로, 사료 11에 보이는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가 쓰시마를 토벌한다면 쓰시마의 島主 소 사다시게는 이를 이기지 못하고 도피하기 위해 조선을 침공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료 12는 당시 조선을 침구하던 왜구들이 오우치씨와 전투를 벌이던 쇼니씨 휘하의 소 히코로쿠의 병력으로, 양식(병량)을 얻기 위해 또는 전투에서 패배한 자들이 약탈을 위해 침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12는 소이전, 즉 쇼니씨가 규슈 본토에서의 전투에 패배해 부하 5000여 명을 이끌고 쓰시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양식(병량미)이 부족하면 조선으로 침구해 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쓰시마의 영주 쇼니씨와 그 부하 소씨를 둘러싼 북 규슈의 군사 정치의 정세 변동으로 인해 전투가 발생하면, 병량미 확보를 위해 또는 약탈을 위해 패잔병들이 조선으로 침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규슈 본토에서의 決戰을 앞두고 병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패배한 뒤 일시적 도피를 목적으로 쇼니씨 또는 기쿠치씨를 중심으로 한 정서부의 군세가 막부의 토벌을 피하여[逋逃], 이키와 쓰시마를 거쳐서 한반도로 침구해 간다고 하는 상황은, 또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반복되는 것이다.

‘포도’라고 하는, 고려, 명, 일본의 삼국에 왜구 관련 문헌 사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세의 대외관계사 연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가 자신이 발표한 다수의 왜구 관련 논문에 왜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는지 그 底意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그는 ‘逋逃’라는 용어가 집증적으로 보이는 『善隣國寶記』를 직접 편찬하고 주석까지 달았던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2_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과 식민사관

지금까지 일본 학계에서 제기한 ‘왜구=다민족, 복합적 해적’ 설의 허구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연구자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을 토대로 한 역사 교과서의

기술은 물론, 역사소설이나 만화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거기에는 이른바 植民史觀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⁶²⁾

앞에서 언급한 모리 시게아키는 최근에 발간한 『전쟁의 일본사8-남북조의 동란[戰爭の日本史8-南北朝の動亂]』 중의 「일조·일류관계의 여러 문제[日朝・日琉關係の諸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⁶³⁾

다음은 조선과의 관계이다. 14세기 말까지 존속했던 고려와, 일본과의 정식 통교관계는 없었지만 교류 그 자체는 있었다. 예를 들면, 소위 왜구로 고민하고 있었던 고려는 1367년(貞治 6) 5월, 일본의 북조·무로마치 막부에 사자를 파견해 왜구를 진압하고 통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왜구의 근거지인 규슈에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던 당시의 막부로서는, 이러한 고려의 요청에 대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거꾸로 생각하자면, 당시 다자이후를 거점으로 하여 규슈 전역에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정서부와 왜구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기타카타 겐조[北方謙三] 씨의 역사소설 『무왕의 문[武王の門]』(上・下, 新潮社, 1993)은, 규슈 왕국을 수립한 정서부의 主師 가네오시 친왕[懷良親王]이 자신이 속한 南朝라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무역, 교역이라고 하는 인적 교류를 매개로 하여, 고려와 결합함으로써 규슈의 독립을 지향한다고 하는 장대한 구상에 서 있다.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現實化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구상이었다.

모리의 연구서 총 268쪽 중에서, 고려와 일본 관계에 관한 서술은 단 1쪽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왜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역사현상을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역사소설의 내용을 인용,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가하고 있는

62) 식민사관은 한국사 또는 한국 문화 발전의 ‘他律性論’과 ‘滿鮮史觀’ 그리고 ‘日鮮同祖論’, ‘停滯性論’ 등을 중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63) 森茂曉, 2007, 「日朝・日琉關係の諸問題」, 『戰爭の日本史8-南北朝の動亂』, 吉川弘文館.

것을 볼 때, 모리가 과연 역사 연구자인지 아니면 문예 평론가인지 혼란스러우며 또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일본의 남북조시대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리가 거론하고 있는 『무왕의 문(武王の門)』은 소수의 제한적인 연구자들이 읽는 논문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와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이 소설은 1993년에 출간된 이후 11년이 지난 2004년 현재 11쇄나 발간된 책이다. 그러면 모리가 “무역, 교역이라고 하는 인적 교류를 매개로 하여, 고려와 결합함으로써 규슈의 독립을 지향한다”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소설에 인용된 다음 문장들을 보기로 하자.

(가네요시 왕자)-대륙 연안과 고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일본의 수군만이 아니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

(아쿠리: 가네요시 왕자의 여자)-㉔ 오히려 고려 수군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들도 역시 고려 왕조를 타도하려고 합니다만, 일본 수군의 힘이 필요합니다.⁶⁴⁾

당시의 왜구가 장사성 휘하의 수군과 고려의 수군(해적) 그리고 일본의 정서부의 수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작가의 설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시모토가 인용한, 후지타의 연구, 즉 “(난 수산의) 반란군에는 舟山列島の 다른 섬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나 고려 연안의 해상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㉔ 오히려 고려 수군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들도 역시 고려 왕조를 타도하려고 합니다만, 일본 수군의 힘이 필요합니다”에서 보듯이, 중국과 고려 연안에서 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왜구’들이 사실은 일본인들보다도 고려 수군이 더 많다고 서술함으로써 ‘일본인의 해적 행위’를 ‘고려인의 소행’으로 전가하고 있다. 또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들 고려 수군이 고려 왕조를 타도

64) 北方謙三, 1993, 『武王の門』, 新潮社, 142쪽.

하러 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일본 수군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침략의 명분’을 슬그머니 복선으로 깔고 있다. 이는 고려를 침구한 왜구가, 고려 백성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南浦: 富山浦에 거주하는 왜인)–⑥ 고려와 규슈 사이에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백성[海の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고려와 규슈를 하나로 묶은 존재입니다.

(가네요시 왕자)–나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 배를 탔네 …… ㉟ 어쩌면 바다의 백성[海の民]들이 두 나라를 연결해 줄지 모른다고 ……⁶⁵⁾

⑥와 ㉟를 보면, ‘바다의 백성들’이 두 나라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언급 속에서도 고려에 대한 卑下가 엿보인다. 작가는 고려를, 일본 국가 전체가 아니라, 규슈라고 하는, 그 면적이 불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에 불과한 지역 권력(정서부)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堀田安秋(가네요시 왕자의 부하)–이 집 주인은, 고려 왕조의 일족입니다만, 왕조 내에서의 지위는 높지 않습니다. 몰래 고려 수군과 손잡고 원나라의 寧海나 膠州를 침구하고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약탈해 온 물건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 私兵은 2천 명 정도 거느리고 있어서 고려 왕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⁶⁶⁾

여기서는 중국과 고려 연해 지방을 침구하고 있는 고려 수군의 배후 조종 인물로 고려 왕족인 西浦라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는 불과 2천 명 정도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려 왕조가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작가의 인식에 따르면, 고려 조정은 백성들도 이미 등을 돌렸고 겨우 사병 2천 명을 거느린, 왕족 내부의 배

65) 北方謙三, 1993, 위의 책, 148쪽.

66) 北方謙三, 1993, 앞의 책, 152쪽.

신자가 고려 수군을 조종해 ‘왜구’행위를 저지르고 있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 西浦라고 불러 주십시오, 南浦님의 이름을 본 따서 지은 일본 이름입니다.

(가네요시 왕자)-㉞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西浦)-㉮ 일본 수군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㉞ 고려는 항상 대륙의 속국이었습니다. 원나라든 송나라든 항상 속국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왕조는 아무 말 없이 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작아도 나라는 나라입니다. 고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는 떳떳하게 자기 다리로 서야 합니다.⁶⁷⁾

위의 문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創氏改名’을 연상시키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단지 ‘서포’라는 親日인 인물이 일본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이야기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한 것은, 일제 강점기 당시의 창씨개명이 결코 일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과 친해지고자,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다”라는 식의 민족적인 우월감에 입각해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

작가의 高麗史와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질서에 관한 無知함과 왜곡된 인식은, “㉞ 고려는 항상 대륙의 속국이었습니다. 원나라든 송나라든 항상 속국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왕조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원에 위치한 대륙 국가와 주변 국가 사이의 이른바 ‘책봉관계’를 매개로 하여 성립되어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책봉질서 속에 편입됨으로써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를 실현하고 또 책봉국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였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국제관계였다. ‘속국’이라 함은, 근대 이후의 이른

67) 北方謙三, 1993, 앞의 책, 153쪽.

바 ‘식민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었다.

작가의 이러한 對한반도 인식은 ‘식민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식민사관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타율성론’으로 한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 한반도 지역의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다. 즉, 한반도의 역사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중국, 만주, 일본 등 주변 민족의 자극과 지배에 의해서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일본의 ‘남한 경영설’과 ‘임나 일본부설’을 조작하여 한반도의 일부가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하고 중세에는 唐明清 등 중국의 여러 왕조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타율성론’의 실체인 것이다. 다음을 보자.

① (西浦)-원나라는 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도, …… 왕조인 제가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백성을 불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소 가난해도 좋지만 ……

(고려) 왕조가 원나라에 아부하는 한, 백성은 불쌍해집니다. ……

-고맙습니다. ① 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대륙에서 독립한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속국 상태로는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부유해집니다. 대륙에서부터 독립해도 이 나라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습니다. 힘을 합칠 상대가 필요합니다.

② 西浦가 가네요시를 응시하고 있다. 어디까지 규슈 정세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힘을 합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에 대하여 뜻을 같이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⁶⁸⁾

원나라와 고려 왕조를 타도해야 한다(②)고 하면서, 우선은 “대륙에서 독립한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①)” 하고 또 “대륙에서부터 독립해도 이 나라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며, 힘을 합칠 상대가 필요하다(②)”고 西浦라는 작가가 설정한 가공의 인물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 “가네요시는 西浦가 힘을 합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뜻을 같

68) 北方謙三, 1993, 앞의 책, 170쪽.

이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㉔)고 하고 있다.

이처럼 기타카타[北方]는, 왕조 내부에 반역을 꾀하는 西浦라는 인물을 설정해 고려가 宋이나 元과 같은, 대륙 국가에 맹목적인 事大主義 정책으로 일관하는 허약한 국가이며 백성들을 불쌍하게 하는 왕조라고 매도한다. 그리고 작가는 西浦라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해 원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 왕조를 타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정서부)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서부는 그러한 고려 내부의 원조 요청에 응해 줘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다음을 보자.

상해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보통 바다로 돌아와 있었다. 이미 현재 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황해다. …… ㉕ 고려의 세키부네[關船]는 하구에 있는 항구를 습격할 것이다. 약탈한 물건도 배에 싣고 있다. 그것을, 명나라 세키부네가 추격해 온다. 상해 앞바다를 침구 지역으로 정한 것은 양측의 배의 속도를 계산해서 고려의 고참 수군대장이 결정한 것이다. …… 이 해역에서는 장사성의 휘하에 있는 수군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언젠가 500척의 세키부네가 되었다.⁶⁹⁾

고려에 원정 간 수군은 희생은 컸지만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다. …… 그러나 주원장은 수군의 주력 대부분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㉖ 장사성의 잔당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 일본과 고려 수군과 연합해 원나라에 대신한 명나라를 크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⁷⁰⁾

㉗ 지도 위에는 이키, 쓰시마가 있고 더 위에 고려의 남쪽 지방까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니 고려까지가 마치 하나의 국가 같다.⁷¹⁾

작가에게 있어서 왜구는 ‘장사성의 잔당인 해적들과 고려와 일본 수군의 연합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바로 위의 규슈

69) 北方謙三, 1993, 앞의 책, 184쪽.

70) 北方謙三, 1993, 앞의 책, 259쪽.

71) 北方謙三, 1993, 앞의 책, 346쪽.

와 고려가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것(㉑)이다. 그것도 고려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면적을 지닌 규슈 지역의 정서부 권력이 주체가 되고 고려는 그의 보호를 받는 국가인 것이다.

이상의 단편적인 문장들을 통해, 이 소설이 일본의 전통적인 침략논리에 입각해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친일파(西浦)의 등장 -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청나라로부터의 형식적인 독립(청일전쟁) - 조선의 식민지화(조선 왕조의 멸망) 등, 마치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을 자신의 이야기의 줄거리로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을 단순히 작가 개인의 허황된 妄想이라고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출간된 이후 11년 동안이나 꾸준히 읽혀서 11쇄나 발행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대 역사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임을 자부하는 모리 시게아키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現實化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구상이었다”고 한 점이다. 물론 모리가 고려사는 물론, 이 시대의 대외관계사 연구자도 아니지만, 일본의 역사 학계에 아직도 식민사관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이 단순히 양국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라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美化하고 그것을 미래에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정치논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일본 학계의 이른바 ‘전기왜구’의 구성원에 관한, 現學 학계의 주요 논쟁점은 ‘왜구=쇼니씨 배후’ 설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인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학설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

다.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은 주로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의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에키 코지[佐伯弘次], 하시모토 유[橋本雄] 등은 그의 학설에 근거해 ‘왜구=쇼니씨 배후’ 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후지타의 연구는 논문의 도처에서 한국 측 사료에 대한 곡해와 논리의 비약이 발견되어 도저히 하나의 학설로 立論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어서 사에키가 ‘왜구=쇼니씨 배후’ 설의 근거로 제시한, 남북조시대의 대표적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모리 시게아키[森茂暁]의 비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모리의 지적은 高麗時代史는 물론 해당 시기의 對外關係史에 관해 門外漢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왜구=쇼니씨 배후’ 설의 일본 측 비판에 대하여, 필자는 그동안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또 기존의 알려진 사료의 재해석을 통하여 그리고 일본 소재 고려의 불교 문화재를 물적 증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 ‘왜구의 주체’와 ‘발생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바로 ‘逋逃’ 즉 ‘일본에서 도주한 무리’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시 왜구의 주체 및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규슈 지역에서의 군사적 분쟁이 초래한 상황, 즉 ‘병량미 확보’와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일시적 도피’ 때문이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사료 용어가 바로, ‘逋逃’였던 것이다.

왜구를 핵심 주제로 하는, 일본 중세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일본의 역사 학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동 시기의 대외관계사와 일본 중세사의 연구 성과를 상호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고찰해 오지 못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왜구의 주체나 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붕괴’라고 하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고려와 일본 사회 내부의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고 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붕괴’가 당시 일본 사회를 외부에서 규정짓고 있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고 그로 인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모순이 일시에 폭발해 결국 남북조 동란으로 표출되었으며 그것은 십수 년 뒤, 국경을 넘

어서 왜구로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왜구 연구는, 이웃 나라의 역사에 대한 편견과 沒理解 때문에, '왜구'라는 역사현상을 因果關係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다민족·복합적 해적'이라고 하는, 사료에 근거도 없는 애매 모호한 존재로 규정짓고 말았다. 그 결과, 해당 시기의 일본 역사를 동아시아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으며, 그것이 바로 중세 대외관계사 연구가 아직까지 일본사 연구의 주요 연구 테마가 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남북조시대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모리가, 해당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한 소설 속에 보이는 고려에 관한 敍述은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對韓반도 인식, 즉 植民史觀의 노골적인 반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본사 연구자들의 한반도에 관한 인식에 식민사관이 여전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적' 설을 견지하는 일본 측 연구자들 중, 자신은 모리와는 달리, 이러한 식민사관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자신들이 이웃 나라 역사에 無知하면서 함부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결과가 초래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쿄대학 서양사의 다카야마 히로시[高山博]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하고 싶다.

“역사는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에 있어서 자기들의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면 충분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좋기 때문이다. 그 집단 외부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은 애매,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空想의 산물이기도 하다.”

“극히 최근까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보다 글로벌한 動向을 보는 역사, 즉 글로벌 히스토리의 필요성은 그다지 절실하지 않았다. 오늘처럼 서로 다른 정치 문화 집단이 평화적으로 항상 접촉하는 것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複數의 역사 간의 어긋남과 격차가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다른 집단의 역사 속에 자기들의 인식과는 다른 像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이미지나 자기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 그 修正을 강하게 요구하게끔 된다. 이

것이 정치 문제화되면 국가간의 심각한 대립을 일으킬 것이다.⁷²⁾”

고려 말-조선 초의 왜구 속에 중국인은 물론 고려(조선)인도 주체적으로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웃 나라의 자국의 역사에 대한 無知가 초래한 공상의 산물이다.

72) 高山博, 2002, 『歴史學, 未來へのまなざし』, 山川出版社.

참고문헌

- 高橋公明, 1987,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 33.
- 高山博, 2002, 『歴史學, 未來へのまなざし』, 山川出版社.
- 橋本雄, 2002, 「書評 李嶺著『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學研究』 758號.
- 橋本雄, 2005, 「肥後地域の國際交流と僞使問題」, 『中世日本の國際關係, 東アジア通交圈と僞使問題』, 吉川弘文館.
- 宮本常一, 1987, 『旅の民俗と歴史』, 八坂書房.
- 藤田明良, 1997, 「蘭秀山の乱」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號, 青木書店.
- 網野善彦, 1995, 「鎌倉末期の諸矛盾」, 『悪党と海賊』, 法政大學出版局.
- 박용운, 1987, 『고려시대사』, 일지사.
- 北方謙三, 1993, 『무왕의 문(武王の門)』, 新潮社.
- 森克己, 1948,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 森茂暁, 2005, 『南朝全史-大覺寺統から後南朝へ』, 講談社.
- 이영, 1996, 「고려 말기 왜구 구성원에 관한 고찰-고려, 일본인 연합론, 또는 '고려, 조선인 주체'론의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5집.
- 이영, 1999, 「庚寅年以降の倭寇と内乱期の日本社會」,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이영, 2006,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4집.
- 이영, 2007a,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공민왕 15(1366)의 금왜사절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26집.
- 이영, 2007b, 「왜구의 허상과 실상」,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 이영, 2008a,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회』 제91집.
- 이영, 2008b, 「쓰시마 쓰쓰(豆酸) 다쿠쓰다마 신사(多久頭魂神社) 소재 고려 청동제 반자(飯子)와 왜구」, 『한국중세사연구』 제25호.
- 이영, 2009, 「가라쓰(唐津) 카가미 신사(鏡神社) 소재 고려 수월관음도의 유래」, 『한일관계사연구』 제34집.
- 이영, 2009,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쇼니 요리히사(少弐頼

- 尙)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26호.
- 이영, 2010,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연구의 문제점과 영향 - 왜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본사 연구회 편, 『동 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
-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商圏」,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 田村洋幸, 1974, 「倭寇はなぜこの時期から起こったか」, 兒玉幸多・豊田武・齋藤忠編 『日本歴史の視点』 2, 中世, 日本書籍.
- 佐藤進一・池内義資 編, 『中世法制史料集』 第1卷, 鎌倉幕府法, 追加法 253條.
- 佐藤進一, 1965, 「倭寇の後援者」, 『南北朝の動亂』, 中央公論社.
- 秋山謙藏, 1939, 「倭寇の進出と農民の掠取」,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 荒木和憲, 2003, 「對馬島主宗貞盛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朝鮮學報』 189輯.

[ABSTRACT]

The fiction and questions of the theory of
“waegu=multi-nations and complex pirates”

Yi, Young

The theory of “waegu=multi-nations and complex pirates,” which is insisted by japanese historians, is deprived from the unknown and misunderstanding about the history of Korea.

The keyword to know the true face of the Waegu of 14th century, is ‘podo.’ It means ‘the group of escape from Japan.’ And the situation of escape is caused by the internal war of Japan(so-called, Nanbokucho-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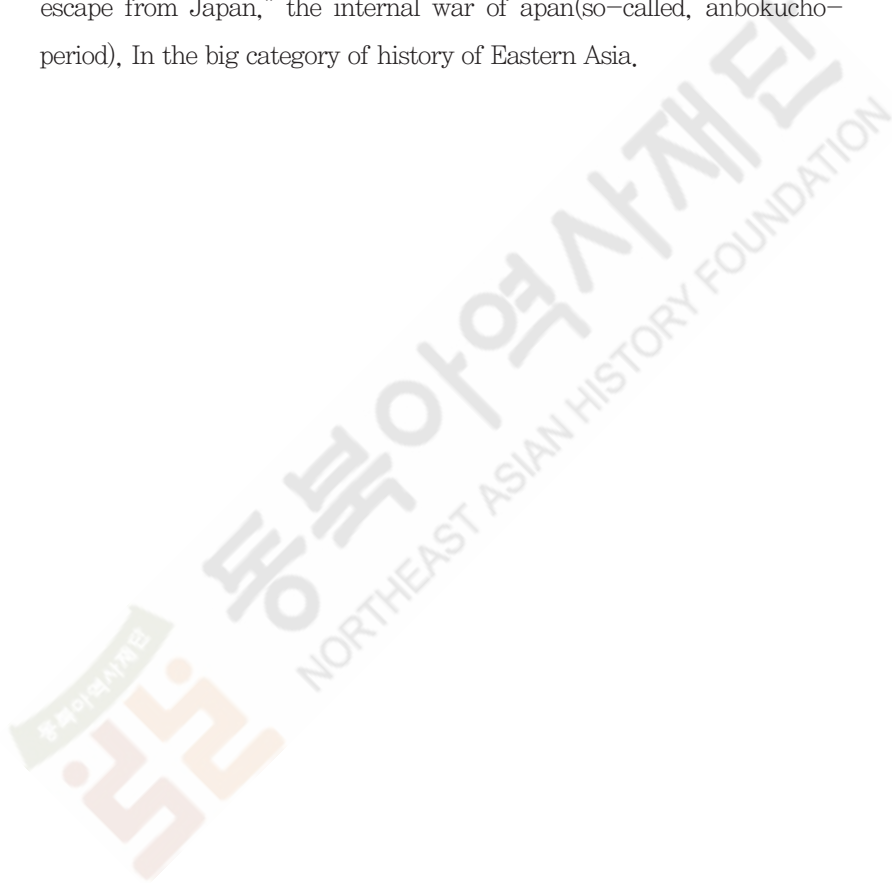
The japanese historians did not have idea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outbreak of waegu(wakou), in the big category of “the change of an international order of eastern asian society,” in other words “the agitation and collapse of Pax mongolica.”

Because of the mis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ethnic prejudice, the japanese historians could not understand the historical phenomenon, waegu in a causal relationship, but characterized it as a vague being, like the theory of “waegu=multi-nations and complex pirates” or the theory of “waegu=alliance of Korean and Japanese.”

As a result, they cut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japanese history of that time, in the big category of history of Eastern Asia.

keywords

the theory of “waegu=multi-nations and complex pirates,” the theory of “waegu=alliance of Korean and Japanese,” the internal war of kanno(1350~1352), Pax mongolica, global history, “podo=the group of escape from Japan,” the internal war of apan(so-called, anbokucho-period), In the big category of history of Eastern Asia.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

-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 -

취안허슈(權赫秀) | 중국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교수

I. 머리말

1882년 10월¹⁾ 중국 天津에서 체결된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中朝章程』으로 약칭함)은 전통적 조공관계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대적 통상관계의 전개를 규정한 내용으로 1894년의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중 두 나라 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 문헌으로서 19세기 말 한중관계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中朝章程』에 관한 전문연구로 한국 학계의 金鍾圓,²⁾ 중국 학계의 張存武,³⁾ 高偉濃,⁴⁾ 李秀蓮,⁵⁾ 王蕾,⁶⁾ 宋慧娟,⁷⁾ 費馳,⁸⁾ 韓

※ 투고일: 2009년 5월 4일, 심사일: 2009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 이 글은 東北師範大學哲學社會科學特色研究項目 “中韓經貿關係的近代轉型過程研究(NENU-SKC 2007022)” 연구결과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1) 이 글에서 표기된 시간은 모두 서기로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호와 음력을 괄호로 병기해 두었다.

2) 金鍾圓, 1960,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對하여」, 『歷史學報』 12; 金鍾圓, 1975,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 그 영향」,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金鍾圓,

冰,⁹⁾ 方香¹⁰⁾, 朱相吉¹¹⁾과 일본 학계의 秋月望¹²⁾ 등의 연구가 있다. 그중 한국 학계의 연구는 대체로 통상장정의 체결과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서 특히 그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중국 학계 연구의 경우 주로 청 정부 대조 선정책의 변화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일본 학계의 연구는 특히 체결경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중일 삼국 학계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中朝章程』의 체결경위와 내용 또는 영향에 관한 단편적인 접근으로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연구의 시각과 노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다국다언어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참조 및 교차적 분석이 많이 아쉬웠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중일 등 관련국가의 기초사료와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 및 교차적 분석을 바탕으로 『中朝章程』의 체결배경, 기본내용 및 그 성격과 영향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본 주제의 연구에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한다.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혜안.

- 3) 張存武, 1978, 『淸韓宗藩貿易: 1637~1894』,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專刊 39. 이 책은 사실 『中朝章程』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조공무역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연구서이다.
- 4) 高偉濃, 1992, 「十九世紀80年代中朝外交和貿易體制的演變」, 『朝鮮學論文集』 1.
- 5) 李秀蓮, 1997, 「光緒初年中朝商貿關係的嬗變」, 『安徽史學』 第4期.
- 6) 王蕾, 2001, 「圍繞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有關問題的再檢討」, 『韓國學叢書』 第9輯.
- 7) 宋慧娟, 2006, 「簡析〈中朝水陸貿易章程〉對中朝關係的影響」, 『吉林教育學院學報』 第9期.
- 8) 費馳, 2006, 「清代中朝邊境貿易的演變探析(1634—1894年)」, 『東北師範大學學報』 第3期.
- 9) 韓冰, 2007, 「『強加』與『優待』—淺論〈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陳尙勝 主編, 『山東半島與中韓交流』, 香港出版社, 473~490쪽.
- 10) 方香, 2008,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배경에 대한 고찰」, 延邊大學民族研究院 編, 朴昌昱教授八十壽辰紀念論文集 『中國朝鮮族歷史諸問題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68~302쪽.
- 11) 朱相吉, 2008, 「朝鮮後期朝·淸邊市貿易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타이완 학자 張存武의 위의 연구서와 마찬가지로 이 글은 『中朝章程』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중 두 나라 사이의 邊市貿易에 관한 연구였다.
- 12) 秋月望, 1984, 「朝中貿易交渉の経緯——一八八二年派使駐京問題を中心に」, 『九州大學東洋史論集』 第13號; 秋月望, 1985, 「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報』 第115輯.

II. 조공관계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노력 - 『中朝章程』의 체결 배경

19세기 중반부터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전환과 더불어 전개된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결국 구미열강의 견고한 군함과 정예한 대포(堅船利砲)에 의해 속속 나라의 대문을 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840~1842년의 아편전쟁에서 대영제국에 패한 청 정부가 老大한 동양제국의 대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854년 미국의 ‘黑船’에 의해 幕府 일본이 부득이 개항을 선택하였으며, 이른바 “은둔의 나라(the hermit nation)”로 불리던¹³⁾ 조선 왕조마저 신흥 일본의 무력위협으로 체결된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에 의해 드디어 나라의 문호를 열게 되었는데 파란만장한 근대 한중관계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¹⁴⁾

실제로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은 두 나라가 선후로 근대적 역사시기에 진입한 사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나라 모두 나름대로 근대화의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 정부의 경우 1860년대부터 이미 ‘自強’을 목표로 한 초기 근대화 과정을 시작하였고¹⁵⁾ 조선 왕조의 경우 역시 대원군 집권시절의 부국강병정책에 이어

13) 이른바 “隱遁의 나라” 또는 “隱者の 나라”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외국인 교수로 있던 미국인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의 저서 *Corea The Hermit Nation*(申福龍 譯註, 『隱者の 나라 韓國』, 探求堂, 1976년 9월 초판)에 의해 널리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李泰鎮, 1999, 「근대한국은 과연 은둔국이었던가?」, 『韓國史論』 41·42 참조.

14) 權赫秀, 2004a,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會 編, 『中國朝鮮史研究』 第1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權赫秀, 2007a, 「江華條約與清政府關係問題新論-兼與王如繪先生商榷」, 『史學集刊』 第4期.

15) Mary Clabaugh Wright, 1962,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The Tung-Chih resto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夏東元, 1992, 『洋務運動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樊百川, 2003, 『清季的洋務新政』 1·2卷,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참조.

1880년대 고종 정부의 개화정책으로 근대화 노력을 다그쳐 가기 시작하였다.¹⁶⁾ 요컨대 1880년대 초 무렵 한중 두 나라 모두 西勢東漸에 의한 이른바 ‘서양의 충격’을 받으면서 선후로 초기 근대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바로 그러한 초기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 조공관계 및 그에 따른 조공 무역 방식을 개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청 정부는 1879년부터 이홍장-이유원의 서신연락 채널을 통해 조선 왕조 고종 정부로 서양열강과의 수교통상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위험을 견제하도록 적극 권고하기 시작하였고¹⁷⁾ 이듬해인 1890년 9월 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귀국 직전의 조선 왕조 修信使 金宏集에게 手交한 『朝鮮策略』을 통해 당시 청 정부 주일공사관 참서관 黃遵憲은 이른바 ‘親中國’策의 일환으로 “鳳凰廳貿易을 보다 확대하고 중국 상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부산·원산·인천 등 항구로 와서 통상하도록 奏請하여 일본 상인들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⁸⁾

이른바 ‘봉황청무역’이란 바로 당시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조공무역을 가리키는데, 국경에서의 互市貿易과 조공사절에 의한 使行貿易을 포함한 조공무역은 조공관계의 정치적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인 불평등한 경제무역관계로서 특히 조선 왕조 측에 일방적인 부담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¹⁹⁾ 실제로 1882년 조선 정부의 대표 魚允中이 청 정부에 제시한 문

16) 李泰鎮,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16~92쪽; 延甲洙, 2001, 『대원군집 권기부국강병정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17) 권혁수, 2007b,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비밀외교채널—이홍장-이유원의 왕복서신을 중심으로」, 권혁수,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해안, 79~108쪽.

18) 權赫秀, 2008,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33~165쪽. 한편 『조선책략』의 경우 저술자인 黃遵憲 본인이 남긴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에 여러 異本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검토 및 원문 교감은 權赫秀, 2007c, 「關於黃遵憲〈朝鮮策略〉版本及其原文校勘」,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17輯,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319~366쪽 참조.

19) 全海宗, 1960, 「清代韓中朝貢關係考」, 『震檀學報』 卷29·30; 張存武, 1978, 앞의 책; 李哲承, 2000,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朱相吉, 2008, 앞

서에 의하면 會寧, 慶源 開市의 경우만 해도 雙市에 쌀 9,200석, 동전 9만 여냥이 들어가고 單市에도 쌀 7200석에 동전 5만 여냥이 들어간다고 하였으니²⁰⁾ 조공관계체제 하의 호시무역이 조선에 가져다 준 재정적 부담은 실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조선 왕조 측에서 당연히 전통적 조공무역관계의 개변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실제로 고종 정부는 1881년 2월 말 中樞府 知事 李容肅을 국왕의 밀사자격으로 청나라 天津에 파견하여 直隸總督 겸 北洋通商大臣 李鴻章에게 조선 정부의 공식의사를 담은 비밀문서인 8개 조항의 『請示節略』을 제출하였다. 그중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앞서 『조선책략』에서 주장한 것처럼 청나라 상인의 조선 개항장 통상을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사실상 한중 두 나라의 海禁 해제 및 통상을 요구하였다.²¹⁾ 이에 이홍장은 조선 국왕이 공식 咨文으로 요청해 올 경우 청나라 황제에게 상주해 주겠다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었고,²²⁾ 당시 청 정부 내에서도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 두 나라 상인들의 상대국 개항장 통상을 허용하지는 건의까지 제시되었다.²³⁾ 여기서 조선 정부 측의 요구는 고종 정부 초기 개화정책에서 대외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인 반면에 이홍장이 그 취지에 동감하면서 조선 정부의 공식 咨文 요청과 청나라 황제의 재가라는 절차를 요구한 것은 또한 조선에 대한 전통적 조공관계의 기본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도라고 볼 수 있다.²⁴⁾ 말하자면 국내외 사정의 변화로 말미

의 글 등 참조.

- 2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津海關道周馥函 附件二: 咸鏡道開市事略」,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595쪽; 魚允中, 『從政年表』 3, 130~131쪽.
- 21)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清交涉』, 단국대학교출판부, 126~130쪽(이 책은 근래 臺灣에서 중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바로 宋炳基 著, 楊秀芝 譯, 2006, 『一八八二年朝美條約의 訂立與清代中國』, 臺北: 樂學書局이다); 金鍾圓, 1999, 앞의 책, 296~297쪽; 具仙姬, 1999, 『韓國近代對清政策史研究』, 도서출판 혜안, 27~37쪽.
- 22) 吳汝綸 編, 1965, 『酌覆朝鮮詢問各條』, 『李文忠公全書』 奏稿 卷40, 臺北: 文海出版社影印本, 11~17쪽.
- 23) 故宮博物院 編, 1933,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第2卷, 「幫辦吉林邊務事宜吳大澂奏請開朝鮮通商口岸摺」, 33~34쪽.
- 24) 具仙姬, 1999, 앞의 책, 58쪽.

암아 한중 두 나라 모두 전통적 무역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 정부와 조선 정부의 정책적 의도는 처음부터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후 통상장정 관련 교섭 양상의 변화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그 무렵 光緒 황제의 재가에 의해 이홍장이 청 정부 對朝鮮 정책의 결정 및 집행구조에서 주도적 위치와 역할을 공식 보장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 정부와 이홍장은 조선에 대한 서양열강과 수교통상 권고 및 武備自強策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위협을 견제하는 한편 전통적 조공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이른바 견제정책을 공식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²⁵⁾ 이듬해인 1882년 봄 이홍장은 이미 청 정부 招商局 요원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한중 두 나라 통상에 관한 사전조사를 일방적으로 진행시켰고²⁶⁾ 곧이어 천진에 도착한 조선 정부 統理機務衙門 主事 어윤중 일행은 北洋通商大臣衙門으로 통상장정의 체결, 조공절차의 개혁, 會寧과 慶源 開市の革罷와 청나라 官商에 대한 供饋 폐지, 조선 정부 대표의 北京 상주 등 요구에 관한 고종 명의를 자문을 제출하고 또한 5월 19일 이홍장의 막료출신인 天津海關道 周馥과 회담을 가졌다.²⁷⁾ 말하자면 전통적 조공무역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 있어서 한중 두 나라 초기 근대화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양측의 노력이 모두 있어 왔지만 조선 왕조 고종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청 정부에 앞서 위와 같은 요구를 공식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母喪으로 천진을 곧 떠나게 될 이홍장을 대신하여 金允植, 어

25) 權赫秀, 2000,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 백산자료원, 59~62쪽.

2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張樹聲文 附件 十二: 東行日錄」, 앞의 책 第2卷, 623~624쪽; 馬建忠, 1982, 『東行三錄』, 上海書店影印本, 6쪽; 金允植, 『陰晴史』 上, 117쪽.

27) 魚允中, 앞의 책, 130~131쪽; 金允植, 위의 책, 131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津海關道周馥函 附件 四: 照錄朝鮮國王咨北洋通商大臣文稿」, 앞의 책 第2卷, 596~597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 一: 光緒八年四月初三日津海關道周馥與朝鮮魚允中李祖淵問答筆談節略」, 앞의 책 第3卷, 979~983쪽.

윤중 일행을 만난 천진해관도 주북은 조공무역의 개변 및 통상장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조공관계를 계속 고집하는 입장을 보여주었고 청나라 광서 황제 역시 같은 해 6월 14일자 上諭로 조선과 통상문제는 처리할 수 있지만 조공의 철폐 및 조선 정부 대표의 北京 상주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지시하였다.²⁸⁾ 결과적으로 한중 두 나라 사이에 근대적 통상장정과 관련된 일종의 예비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천진회담은 조선 정부 측의 적극적인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청 정부와 이홍장의 사전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 정부 측의 주요 관심사는 전통적 조공관계의 강화를 비롯한 정치외교적 문제였고 반면에 조선 정부 측 대표들은 겨우 부분적인 수정요구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²⁹⁾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23일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임오군란으로 말미암아 한중 두 나라의 통상장정 교섭은 일단 중단되었다가 임오군란 사태가 수습된 후인 같은 해 9월에야 다시 재개되었다. 요컨대 1880년대 초에 이르러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변화와 더불어 한중 두 나라 모두 근대적 역사 특히 초기 근대화 노력이 시작되면서 조공관계 체제 하의 전통적 무역관계를 개변하려는 의도와 움직임은 조공관계 체제의 중심과 주변인 한중 두 나라 측에서 모두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조선 정부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섭자세를 보여 왔는데 그러한 교섭양상이 바뀌어진 것은 바로 그 무렵 갑작스럽게 일어난 임오군란 때문이었다.

28)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津海關道周馥函 附件一: 照錄問答節略」, 앞의 책 第2卷, 589~595쪽; 『李文忠公全書』, 「妥議朝鮮通商章程摺」, 36~43면; 魚允中, 앞의 책, 131쪽; 金允植, 앞의 책 下, 133~134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上諭」, 앞의 책 第2卷, 680쪽.

29) 金鍾圓, 1999, 앞의 책, 306~312쪽; 權赫秀, 2000, 앞의 책, 115~119쪽.

Ⅲ. 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 불평등 교섭양상 — 『中朝章程』의 체결경위

1882년 7월의 임오군란은 한국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 전환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시 바야흐로 근대적 전환과정을 시작하는 한중관계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³⁰⁾ 임오군란 사태가 수습된 뒤 조선 정부는 곧바로 謝恩 謁 陳奏使 趙寧夏, 김굉집 일행을 청나라로 파견하였는데 고종의 특명을 받은 조녕하 일행은 특히 친진을 방문하여 임오군란 이후 내정외교 방침과 관련된 『善後事宜六條』를 제시하면서 이홍장의 자문과 협조를 공식 요청하였다.³¹⁾ 한편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 정부의 경우 방금 시작하였던 간접적 또는 소극적 간섭정책인 이른바 견제정책이 곧바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간섭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적극적인 간섭정책의 기초는 대체로 청일전쟁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당시 청 정부의 대조선정책을 총괄하고 있던 이홍장은 같은 해 9월 17일 조녕하 일행과의 제3차 회담을 통해 통상장정의 체결에 긍정적인 확답을 주었다. 당시 이홍장은 이미 馬建忠 등에게 통상장정의 초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해 두었는데 프랑스 유학을 통해 근대 중국 최초로 국제정치와 국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마건충은 당시 외교분야에서 이홍장의 핵심막료로 활약하면서 특히 1882년 5월 『朝美修好條約』의 체결과 같은 해 7월 임오군란 탄

30) 林明德, 1984, 『袁世凱與朝鮮』,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3~35쪽; 藤間生大, 1986, 『壬午軍亂と近代東アジア世界の成立』, 東京: 春秋社, 5~70쪽, 229~300쪽; 權赫秀, 2000, 앞의 책, 92~141쪽; 李陽子, 2002, 『朝鮮에서의 袁世凱』, 新知書苑, 17~39쪽.

31) 糟谷憲一, 1992, 「壬午軍亂直後の閔氏政權と〈善後六條〉」, 『東アジア—歴史と文化』 創刊號; 權赫秀, 2000, 앞의 책, 102~106쪽;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16~126쪽.

압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³²⁾ 실제로 9월 17일 회담 당시 이홍장은 조녕하, 김굉집에게 자신이 이미 마건충 등에게 통상장정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두었으니 곧바로 광서 황제의 裁可를 거쳐 總理各國事務衙門을 통해 그 내용을 조선 측으로 통보하여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조녕하 일행도 아무런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³³⁾

이처럼 임오군란을 계기로 통상장정 관련 교섭은 이홍장과 청 정부에 의해 완전히 주도되는 불평등 양상으로 전환되었고 그러한 교섭 양상은 그 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었는데 바로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호 평등한 통상무역관계의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 9월 23일에 問議官으로 임명된 어윤중이 9월 28일에 천진에 도착한 후 재개된 통상장정 관련 교섭은 사실상 조선 왕조 고종 정부 공식 대표자격의 어윤중과 이홍장의 막료출신인 천진해관도 주복과 候選道 마건충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어윤중은 이홍장 측에서 이미 마련해둔 통상장정 초안에 약간의 수정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홍장은 겨우 어윤중을 한 번 만나 주는 것으로 그쳤다.³⁴⁾ 10월 3일 天津海關道衙門에서 진행된 회담은 사실상 한중 두 나라 사이에 통상장정체결과 관련된 유일한 본격적인 실무회담으로서 청 정부 측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당시 어윤중은 이홍장 측에서 작성한 통상장정 초안에 관한 수정 요구를 문서로 제출하였고 이에 주복과 마건충도 이홍장의 지시에 따라 답변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논의된 양측의 의견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 표 1과 같다.³⁵⁾

32) 坂野正高, 1985, 『中國近代化と馬建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49쪽; 權赫秀, 1995, 「馬建忠與朝鮮」, 鄭判龍, 李鍾殷 主編, 『朝鮮-韓國文化與中國文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76~192쪽; 權赫秀, 2004b, 「馬建忠留法史實辨誤二則」, 『江蘇社會科學』 第1期; 岡本隆司, 2004, 앞의 책, 17~134쪽; 岡本隆司, 2007, 『馬建忠の中國近代化』,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81~172쪽.

3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二: 八月初六日與朝鮮大臣趙寧夏. 金宏集筆談」, 앞의 책 第3卷, 912~917쪽.

34) 魚允中, 앞의 책, 139~141쪽.

35) 魚允中, 앞의 책, 141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二: 照錄朝鮮侍講魚允中節略」, 앞의 책;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附

〈표 1〉 10월 3일 천진회담에서 한중 두 나라 대표 사이의 논의 내용

어윤중의 수정 요구	주북, 마건충의 답변내용
제2조항 駐韓 청나라 商務委員에게만 주어 진 영사재판권을 駐中 조선 상무위원 에게도 부여해 주도록 요청	청나라 會典의 조공관련 규정 및 국제공 법의 관례에 따라 駐中 조선 商務委員에 게 영사재판권 부여할 수 없음
제3조항 ‘往來捕魚’ 및 漁稅 관련 규정 일 본 측의 간섭 막기 위해 취소 요청	海禁을 해제한 이상 두 나라 漁民들의 ‘往來捕魚’ 허락 조항을 외국간섭의 이유 로 취소할 필요 없음
제4조항 중국 商民 漢城開棧 및 ‘內地採 辦’ 관련 규정 일본 측 간섭 이유로 수정 요청	외국간섭의 이유로 漢城開棧 및 ‘內地採 辦’ 관련 규정 취소할 필요 없음
초안 제6조항 조선산 紅蔘에 대한 30% 관세를 인하 요청	조선 측에 대한 특별배려 차원에서 紅蔘 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

당시 어윤중은 이홍장 측에서 마련한 통상장정의 기본내용을 대체로 수용하는 한편 한중 두 나라가 이미 구미열강 및 일본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의 내용과 서로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히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주북과 마건충은 이홍장의 지시로 위와 같은 답변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³⁶⁾

요컨대 이번에 정해진 무역장장은 실로 平行各與國과 체결한 조약내
용과 다른 것이다. 굳이 다른 나라의 援例要求가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첨가할 수 있는데, 즉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屬邦으로

件 三: 照錄津海關道周馥.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앞의 책 第3卷, 983~986쪽;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卷13, 「議朝鮮通商章程 附: 朝鮮侍講魚允中節略: 津海關周道.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37~41쪽; 金鍾圓, 1999, 앞의 책, 335~339쪽.

3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 二: 照錄朝鮮侍講魚允中節略; 附件 三: 照錄津海關道周馥.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앞의 책 第3卷, 983~986쪽;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卷13, 「議朝鮮通商章程 附: 朝鮮侍講魚允中節略: 津海關周道.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37~41쪽.

서 이번에 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기에 여러 與國의 一體均霑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또한 장정의 첫머리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 만약 귀 측에서 장정 속에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여 기어코 같도록 하자고 요청한다면 결국 귀국이 은연중 중국과 대등하게 나서는 것으로 오로지 일본 사람만 두려워할 뿐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어윤중은 사실상 근대적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평등한 무역관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홍삼 수입관세율의 15% 인하의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은 사실상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대적 전환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고종 정부의 일관된 대중국 정책과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였다. 반면에 주복과 마건충은 조선 측의 위와 같은 노력을 조공관계 이탈 움직임으로 경계하면서 속방관련 구절을 통상장정에 새삼스럽게 명시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임오군란 직후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청 정부의 적극 간섭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당시 한중 두 나라 조공관계의 객관적 현실 배경 및 통상장정 관련 교섭의 일방적인 전개양상 특히 어윤중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무시한 채 통상장정의 불평등한 결과를 단순히 국제정세나 외교에 밝지 못한 어윤중의 ‘외교적 실책’으로 탓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결론으로 생각된다.³⁸⁾

한편 이날 회담과정에서 주복과 마건충은 다른 나라와 이미 체결한 근대적 조약과 대조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 의견을 제시한 어윤중의 교섭입장을 비난하면서 특히 한중 두 나라 사이에 곧 체결하게 될 것은 근대적 국제법에 바탕

37) 權赫秀, 2000, 앞의 책, 92~141쪽.

38) 金鍾圓, 1999, 앞의 책, 348~349쪽. 한편 같은 책 334쪽에서 문의관으로 임명된 어윤중이 조녕하 일행과 함께 천진으로 건너왔다는 내용은 잘못된 기술로서 어윤중의 『從政年表』 3, 141쪽의 고종 19년 임오 8월 18일·19일(1882년 9월 28일 29일)자 기록에 의하면 28일 천진에 도착한 어윤중이 그 이튿날인 29일에야 북경으로 부터 천진에 다시 찾아온 조녕하 일행과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약이 아니라 청 정부의 특별 허락을 거친 장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두었다.³⁹⁾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것은 조약으로서 반드시 두 나라의 인준을 거친 뒤에야 실행할 수 있지만 이번에 체결하는 것은 章程으로서 (청나라) 조정에서 특별히 윤허한 것이다. 하나는 피차가 서로 체결한 約章이고 하나는 상하가 정한 條規로서 그 명칭이 다르므로 내실 역시 다르다.⁴⁰⁾

주복과 마건충의 위와 같은 해명은 물론 조선과 체결하게 될 통상장정을 만국공법에 바탕한 근대적 조약과 차별화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바로 조선과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구미열강과의 근대적 조약관계와 차별화하면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전통국제질서를 계속 고집하는 청 정부의 총체적인 대외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명은 스스로 ‘조약’과 ‘약장’ 및 ‘장정’과 ‘조규’를 혼동할 정도로 논리적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근대적 국제법의 법리적 근거 역시 분명치 않아 이홍장과 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보다도 주복과 마건충이 회담과정에서 어윤중의 교섭입장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일종의 궤변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이홍장은 물론 총리아문을 비롯한 청 정부에서 훗날 주복과 마건충의 위와 같은 해명 내용을 공식인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었다. 요컨대 주복과 마건충의 위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조약’이 아닌 ‘장정’이라는 명칭과 상

39)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 三: 照錄津海關道周馥 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앞의 책 第3卷, 984쪽;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卷13, 「議朝鮮通商章程 附: 津海關周道 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40쪽.

40) “他國所定者條約, 必俟兩國之批准而後行, 茲所定者章程, 乃朝廷所特允, 一爲彼此互訂之約章, 一爲上下所定之條規, 其名異而其實故不同也.” 金旼奎는 2002, 「近代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淸日修好條規(1871년)－條規體制의 生成」, 『大東文化研究』第41輯, 329쪽; 金旼奎, 2006, 「조규? 조약?」, 『역사비평』 여름호, 274쪽에서 위 사료를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이 글의 한글 번역과 약간 차이가 있다. 특히 김민규의 번역에서 “조약은 피차가 대등하게 맺는 약장” 운운 부분의 “대등하게”라는 문구는 사료 원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관없이 위 통상장정은 나름대로 근대적 국제법의 원리와 형식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문헌으로 말하자면 전통적인 조공관계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체결된 근대적 통상장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공관계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위 통상장정의 시대적 제한이라고 한다면 전통적 호시무역을 근대적 통상관계로 전환시킨 점은 오히려 위 통상장정의 근대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데 따라서 당시 한중관계의 과도기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훗날 총리아문으로 보낸 이홍장의 서신에 의하면 자신의 지시로 작성된 무역장정 초안을 앞서 천진에 도착한 사은 겸 진주사 조녕하 일행에게도 전달해 주었지만 조녕하 일행은 별도의 사명이 있어 미처 아무런 수정 요구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조선 국왕이 이번 통상장정 교섭을 위해 특별히 파견해 온 어윤중만이 위와 같은 수정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주북과 마건충과의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⁴¹⁾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통상장정교섭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는 사실상 어윤중 외에도 그보다 관직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높은 사은 겸 진주사 조녕하·김굉집 일행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홍장 역시 천진에 먼저 도착한 조녕하 일행과의 9월 17일자 회담에서 이미 통상장정 체결의향을 밝혀두었고 곧바로 주북과 마건충에게 통상장정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실상 통상장정 관련 교섭을 이미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중국 외교에서 여러 사람을 통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시키는 양상은 그 무렵 대일본 외교에서 수신사 등 공식 라인 외에 開化僧 李東仁으로부터 金玉均 등 開化派 인사를 포함한 비공식 라인도 함께 가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1880년대 초반 고종 정부의 심지어 난맥상까지 보여주는 적극적 외교자세와 노력의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훗날 통상장정의 마지막 부분에 통상장정 관련 교섭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조녕하·김

41)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앞의 책 第3卷, 983쪽;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卷13, 「議朝鮮通商章程」, 37~41쪽, “酌定水陸貿易章程八條……當交朝鮮陪臣趙寧夏, 魚允中等核閱, 趙寧夏等另有承議要件, 未及致詳, 魚允中原係該國王派令專議此事, 而素畏日本, 恐其援例要求, 斷斷辯論.”

굉집이 어윤중과 함께 조선 정부 측의 서명자로 명시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이홍장의 언급처럼 사실상 통상장정 교섭차 조선 정부의 공식대표 자격으로 파견되어 온 어윤중의 기록에 의하면 9월 28일 천진에 도착한 뒤의 행적 특히 통상장정 관련 교섭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⁴²⁾

9월 29일

北京으로부터 돌아온 趙寧夏, 金宏集, 李祖淵 일행이 투숙한 客棧을 찾아가 만남, 그 후 馬建忠을 방문

9월 30일

天津海關道 周馥을 방문

10월 1일

天津海關道署에서 周馥과 만남

10월 2일

北洋通商大臣衙門으로 이홍장을 禮訪

청나라 招商局 總辦 唐廷樞가 來訪

10월 3일

天津海關道署에서 周馥 등과 통상장정을 논의함

요컨대 청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통상장정 관련 교섭은 사실상 10월 3일 단 1회의 본격적인 실무회담(그것도 겨우 이홍장 측이 미리 작성해 둔 장정 초안에 약간의 수정 요구를 개진하는 정도)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따라서 한중 두 나라 공식대표에 의한 공식적인 조인절차 같은 것도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주일 뒤인 10월 10일에 이홍장은 곧바로 상주문을 올려 상기 통상장정의 필요성 및 체결경위를 보고하면서 광서 황제의 재가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위 장정의 관련규정에 의한 상무위원의 파견까지 함께 요청하였으며,⁴³⁾ 같은 날 총리아문으로도 서신을 보내 위와 같은 내용

42) 魚允中, 앞의 책, 141쪽.

43) 『李文忠公全書』奏稿 卷44, 「妥議朝鮮通商章程摺」, 36~43쪽; 中國第一歷史檔

을 통보하였는데⁴⁴⁾ 말하자면 조선 정부 측 대표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상장정의 인준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위 상주문에서 이홍장은 통상장정 8개 조항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전통적 조공관계의 ‘典禮’는 결코 쉽게 개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아울러 한중 통상장정의 필요성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고하였다.

첫째, 이미 조선에게 미국 등 구미열강과 수교통상 하도록 권고해 온 이상 중국과도 통상을 전개하여 조선의 富強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山東 일대 어민들이 종종 조선 근해 지역까지 出漁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아예 海禁정책을 풀어 주고 漁稅 징수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훨씬 더 적합하다.

셋째, 국경 지역의 호시무역을 폐지하여도 吉林 지방의 경제와 민생에 별다른 弊害가 없으므로 조선 측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상관계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리아문으로 보낸 서신에서 이홍장은 자신이 마건충 등에게 지시해 작성한 통상장정 8개 조항의 내용은 모두 청나라 會典의 관련규정과 만국공법의 ‘屬邦貿易往來’ 관련규정을 고루 참작하여 “(한중 두 나라) 彼此에게 모두 이익이 되면서도 屬國交涉의 體統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쓴 것이다”고 특별히 강조하였고 또한 조녕하·어윤중 등 조선 측 대표들도 이미 그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통상장정의 체결을 통해 청 정부의 외교적 및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면서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조선 정부의 일부 이익과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은 바로 한중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조공관계와 근대적 조약관계를 공존시키려는 이른바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one diplomacy two systems)’의 과도기적 대외정책을 적용시키려는 당시 청 정부 총체적인 대외관계 방침의 일환으로 볼

案館 編, 1996,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擬定派員辦理朝鮮商務章程清單」,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84~86쪽.

44)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卷13, 「議朝鮮通商章程」, 38~41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앞의 책 第3卷, 979~986쪽.

수 있다.⁴⁵⁾

이에 광서 황제는 10월 12일자 上諭를 통해 총리아문에서 이홍장의 상기 보고 내용과 통상장정 8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따라서 총리아문에서는 禮部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적 협의를 거쳐 10월 23일자 상주문을 통해 광서 황제의 최종 재가를 얻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상기 『中朝章程』의 공식 발효 시기를 바로 청나라 광서 황제의 최종 재가가 내려진 1882년 10월 23일로 보고 있다.⁴⁶⁾ 요컨대 『中朝章程』은 처음부터 두 나라 대표에 의한 공식적인 서명과 날인 등 조인절차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中朝章程』의 재가를 요청하는 이홍장과 총리아문의 상주문을 비롯한 청 정부 외교문서는⁴⁷⁾ 물론 19세기 말 당시 조선 정부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직접 간행한 외교문서인 『中朝約章合編』⁴⁸⁾에 수록된 『中朝章程』의 원문에도 양측의 서명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 후 20세기 초 영국 세력에 의해 실제로 지배되고 있던 청나라 海關總稅務署에서 간행한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Vol. II*에서 상기 『中朝章程』의 마지막 부분에 이홍장의 ‘督同’하에 주복과 마건충·조녕하·김굉집·어윤중이 각각 한중 두 나라를 대표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은 ‘光緒 八年 八月 日’에 ‘議定’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위와 같은 章程 문헌이 청 정부 외무부에 의해 제공되었던 사실을

45) 權赫秀, 2000, 앞의 책, 120~121쪽; 權赫秀, 2004a, 앞의 글, 38~54쪽; Hexiu Quan, 2008, “The Two Systems of Diplomacy of Late Qing China: External Relationship, Modernization and Transitional Phas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5-1; 權赫秀, 2009, 「晚清對外關係中的「一個外交兩種體制」現象芻議」, 『中國邊疆史地研究』 第4期.

4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奏摺」, 앞의 책 第3卷, 1004~1006쪽; 權赫秀, 2000, 앞의 책, 121~122쪽.

47) 『李文忠公全書』 奏稿 卷44, 「妥議朝鮮通商章程摺」, 38~43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鈔摺」, 앞의 책 第3卷, 987~993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奏摺」, 앞의 책 第3卷, 1004~1006쪽;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總理衙門大臣奕訢等奏覆遵議朝鮮水陸通商章程折」, 90~91쪽.

48)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中朝約章合編』,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

감안할 때 청나라 외교당국에 의해 상기 장정의 국제법적 문헌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임의로 표기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그리고 1957년 중국 학자 王鐵崖가 편찬한 『中外舊約彙編』 제1책⁵⁰⁾과 1965년 한국 국회도서관에서 편집, 간행한 『舊韓末條約彙纂』 하권에 수록된 『中朝章程』의 경우 역시 전적으로 청나라 海關總稅務司에서 간행한 상기 문헌에 근거한 것임을 아울러 밝혀둔다.⁵¹⁾

여기서 『中朝章程』의 영어 번역본에 관한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청나라 해관에서 편찬한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의 경우 먼저 1908년에 편찬되었다가 9년 뒤인 1917년에 다시 증보판이 출간되었으며⁵²⁾ 그중 수록한 『中朝章程』은 당시 청나라 해관에서 임의로 번역한 것이라고 이미 편집자가 명백히 밝혀두었다.⁵³⁾ 그 후 『舊韓末條約彙纂』 하권에 수록된 『中朝章程』의 영어 번역본 역시 위 책의 제2판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⁵⁴⁾ 요컨대 『中朝章程』의 경우 처음부터 중국어본이 유일본이었고 그 밖의 영어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은 모두 후세의 편집자들에 의해 임의로 옮겨진 비공식 번역본으로 볼

49) China, *The Maritime Customs, 1917,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Vol. II, Second Edition, Shanghai: Published at The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pp. 847~853. 흔히 『海關中外條約』으로 번역되고 있는 위 문헌의 1908년 제1판 “Introduction to first edition”에서 이미 수록된 조약과 장정이 모두 “from the original archived in the Tshngli Yamen(Wai-wu pu)” 즉, 청 정부 總理衙門(1901년 후 外務部로 개편됨)에서 소장한 조약 원본이라는 사실을 밝혀두었는데 그중 제2권 853쪽에 명기된 『中朝章程』의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欽差署理北洋通商大臣太子太傅前文華殿大學士直隸總督部堂一等肅毅伯 李督同 二品銜津海關道周馥 二品銜候選道馬建忠會同 朝鮮國 奏正使趙齊夏 奏副使金宏集 問議官魚允中 議定光緒八年八月 日.”

50) 王鐵崖 編, 1957, 『中外舊約彙編』 第1冊, 北京: 三聯書店, 404~407쪽.

51)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392~406쪽.

52) China, *The Maritime Customs, 1917*, 앞의 책, Vol. I, “introduction to first edition,” “introduction to second edition,” pp. V~VI.

53) China, *The Maritime Customs, 1917*, 앞의 책, Vol. II, p. 847.

54)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5, 앞의 책, 401쪽.

수 있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일찍 1891년에 이미 청나라 해관 總稅務司에서 조선의 대외조약 및 장정에 관한 자료집으로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Korea and Foreign States, 1876~1889*⁵⁵⁾를 간행하였는데 그 속에 수록된 『中朝章程』의 영어 번역본이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영어 번역본이었다. 따라서 그 후 1908년과 1917년에 편찬된 상기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Vol. II*에 수록된 『中朝章程』의 영어 번역본 역시 그보다 훨씬 앞서 편찬된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Korea and Foreign States, 1876~1889*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舊韓末條約彙纂』 하권을 비롯하여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어 번역본은 여전히 1917년에 증보판으로 출간된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제2권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국내외 학계의 관련연구에서 이른바 『中朝章程』의 한 중 두 나라 측 서명자에 관한 내용은 모두 잘못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朝章程』 조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공식적인 서명절차와 서명자도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조약의 공식조인절차 같은 것을 전혀 무시한 것은 당시 이홍장과 그의 막료들이 국제법과 외교 관련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⁵⁶⁾ 바로 조선 정부와 체결한 장정을 서로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체결한 근대적 국제조약과 구분하고 나아가서 조선과의 관계를 근대적 조약체제하의 외교관계와 구분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

55)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1891, *Treaties, Regulations, etc., between Korea and Other Powers, 1876~1889*, Shanghai.

5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교분야에서 이홍장의 주요 막료로서 통상장정의 초안을 작성한 마건충은 프랑스 유학을 통해 근대 중국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국제법과 근대외교에 관한 학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당시 청나라 및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국제법의 기본원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萬國公法』 第2章 “論商議立約之權”에서도 조약의 체결방식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美) 惠頓(Henry Wheaton) 著, (美) 丁韋良(William M. P. Martin) 譯, 何勤華 點校, 2003, 『萬國公法』,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58~173쪽.

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근대적 조약체제의 부분적 내용을 수용해 가면서 전통적 조공관계체제를 그대로 유지 심지어 한층 더 강화하려는 당시 청 정부 대조선정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광서 황제의 재가가 내려진 그 다음 날인 10월 24일 이홍장은 곧바로 고종에게 보낸 자문을 통해 총리아문의 10월 23일자 상주문과 광서 황제의 상유 그리고 통상장정의 내용을 일괄 통보하면서 조선 정부 측에서 ‘欽遵辦理’ 하도록 요구하였고⁵⁷⁾ 청 정부 禮部에서도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 정부로 자문으로 통보해 주었다.⁵⁸⁾ 앞서 어윤중과의 회답에서 주복과 마건충이 통상장정의 경우 근대적 조약과 달리 상호 인준절차 없이 청나라 조정의 윤허만 있으면 된다고 이미 밝혀두었듯이 위와 같은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양상은 바로 통상장정 체결과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진행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한 주일 뒤인 10월 30일에 이홍장은 귀국인사차 찾아온 어윤중을 만나 그가 제출한 통상장정 관련 네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었다.⁵⁹⁾

첫째, 제4조항의 內地潛入 금지조항 문제

두 나라 상민의 내지 잠입 행위 모두 엄격하게 단속하되 특히 조선 상민의 중국 내지 잠입 인삼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요구함

둘째, 제5조항의 육로 통상장정의 체결 및 국경답사 문제

다음 해 봄 어윤중의 국경 지역 시찰 후 다시 천진으로 찾아와서 협의

57)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一: 署北洋大臣李鴻章發朝鮮國王咨」, 앞의 책 第3卷, 1009~1010쪽; 魚允中, 앞의 책, 142쪽.

58)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朝鮮國王爲感謝定立通商章程致禮部文」, 122~123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禮部文」, 1107~1108쪽.

59)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一: 照錄朝鮮魚允中面呈請示通商章程四條」;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附件二: 九月十九日與朝鮮魚允中問答」, 앞의 책 第3卷, 1011~1013쪽; 魚允中, 앞의 책, 142쪽. 한편 魚允中의 『從政年表』 3, 142쪽의 기록에 의하면 “九月十九日” 즉 10월 30일보다 하루 앞선 “九月十八日” 즉 10월 29일에 이홍장과 주복에게 작별인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신이 문서로 네 가지 질문을 제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홍장의 답변이 있었던 사실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하기로 하되 11월 중 먼저 조선 국왕 명의의 자문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이홍장에게 공식 통보해 주도록 요구함

셋째, 제6조항의 조선산 홍삼에 대한 관세 징수 문제

이미 海關이 개설되어 있는 청나라 개항장에서는 해관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아직 해관이 개설되지 않은 奉天·吉林 지방의 경우 장차 육로 통상장정에 체결된 후에 다시 징수하기로 함;

넷째, 제7조항의 한중 해상교통 문제

일반 商民을 제외한 조선 정부 관원의 경우 공무차 중국을 방문할 때 선상 식대만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선을 왕래하는 청나라 군함 탑승을 허용하고, 장차 輪船招商局 선박에 의해 한중 국제 항선을 개설할 경우 조선 정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액수는 추후 輪船招商局 總辦 唐廷樞 등과 협의하도록 함

위와 같은 내용은 통상장정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서, 즉 이미 통상장정의 체결과정이 완전히 종료된 후의 교섭이었는데, 여기서 특히 통상장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의 주요 대표자 어윤중의 책임감 있는 끈질긴 교섭자세가 돋보인다. 그 후 비록 만주 지방 관원들에 의한 약간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청 정부 내에서 통상장정에 관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통상장정의 결정과 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⁶⁰⁾

IV. 전통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성격

－『中朝章程』의 내용 및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朝章程』은 그 체결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이미 전적으로 청 정부와 이홍장 측에 일방적으로 주도된 불평등 양상을 보여 왔는데 그

60) 權赫秀, 2000, 앞의 책, 124~125쪽.

내용 역시 불평등한 규정으로 일관되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中朝章程』이 공식적인 국제조약(treaty)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장정(regulation)’이라는 하위개념을 사용한 것은 청 정부 측에서 고의적으로 그 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지적해 왔다.⁶¹⁾ 그러나 청나라는 물론 당시 조선 정부 역시 처음부터 『中朝章程』을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를 규정하는 공식조약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측면에서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 그대로 통상장정으로 다루어 왔으며 특히 『中朝章程』의 체결작업을 주도해 온 청나라의 경우 1843년 10월 8일 영국과 체결한 『中英五口通商章程』⁶²⁾을 비롯해 외국과 통상문제를 다룬 합의문서가 거의 모두 통상장정이란 명칭을 사용하였고 조선 정부 역시 1888년 8월 20일 러시아와 『韓露陸路貿易通商章程』⁶³⁾을 체결하였던 여러 가지 사실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⁶⁴⁾

여하튼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의 공식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中朝章程』은 사실상 한중 두 나라의 수로와 육로 통상에 관한 합의문서로서 모두 짙막한 서문과 7개 조항의 본문과 장정의 추후 수정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을 담은 제8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장정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중국어로 작성되어 중국어본이 유일한 원본으로서 그 내용의 영문 번역 및 한글 번역은 모두 훗날 편집된 관련문헌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비공식적 번역본임을 함께 밝혀둔다.

이와 관련하여 『中朝章程』의 명칭에 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朝章程』의 명칭과 관련하여 『中國朝鮮商民水陸

61) 金旼奎, 2002, 앞의 글, 321~356쪽; 鄭容和, 2003,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문학과 지성사, 201쪽.

62) China, The Maritime Customs, 1917, 앞의 책, Vol. II, pp. 369~389.

63) 宋禎煥, 1982, 『짜리로 씨야의 조선침략사개요』,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60~63쪽; 金源模 編著, 1984,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國大學校出版部, 128쪽.

64) 실제로 『萬國公法』第2章 “論商議立約之權”에서도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경우 구체적인 형식에 상관없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모두 遵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兩國立約, 所應遵守之責, 不拘式款如何……均當謹守.” (美)惠頓(Henry Wheaton) 著, (美)丁韋良(William M. P. Martin) 譯, 何勤華 點校, 앞의 책, 159쪽.

貿易章程』 외에도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韓淸(淸韓)商民水陸貿易章程』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한 영어로는 흔히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朝章程』의 경우 처음부터 한중 두 나라 언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본이 유일본이며 그 중국어본의 원본 형태는 이홍장의 문집인 『李文忠公全集』, 청나라 외교부 문서인 『淸季中日韓關係史料』와 청나라 軍機處 문서인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한결같이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또는 그의 약칭인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었다. 뿐만 아니라 1887년 조선 정부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편찬한 『中朝約章合編』⁶⁵⁾에서는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되어 있고 일제시기에 편찬된 『高宗實錄』 고종 19년 10월 17일조에는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한중 두 나라 학계에서 각각 널리 사용되고 있는 『中外舊約章彙編』 제1책 404쪽에서 위 장정의 명칭을 『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수록한 것이나 『舊韓末條約彙纂』 하권 398쪽에서 『韓·淸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수록한 것은 모두 정확한 명칭이 아니었다. 요컨대 중국어본이 유일본인 『中朝章程』의 공식명칭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서 이른바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은 위와 같은 공식명칭에 대한 일종의 약칭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 외 朝中, 朝淸, 韓淸, 淸韓 등 여러 명칭은 후세의 학계에 의한 임의적인 호칭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中朝章程』의 영어 번역 자체가 영국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 해관 總稅務司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특히 속국을 의미하는 ‘Subjects’라는 뜻은 사실 본래의 공식명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사실 ‘Subjects’라는 단어를 삭제하여도 전혀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65) 조선정부의 대외 조약집 편찬과 간행에 관한 내용은 李泰鎭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8~16쪽 참조.

『中朝章程』의 짤막한 서문에 해당하는 첫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⁶⁶⁾ 첫째, 이번 통상장정의 체결과 관련 없이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둘째,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에게 해상의 통상문호를 개방한 이상 마땅히 서로 ‘海禁’을 풀어 두 나라 商民들이 서로 무역하면서 그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경 지역의 호시무역 관련규정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 변통해야 한다. 셋째, 조선과 체결한 水陸貿易章程은 중국에서 ‘屬邦’ 조선을 優待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與國’의 ‘一體均霑’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청 정부는 한중 두 나라가 모두 구미열강 및 일본과 근대적 조약 관계를 맺고 있는 시대적 변화상황을 감안하여 ‘해금’의 해제와 ‘호시’무역제도의 ‘變通’과 수로와 육로를 통한 근대적 통상관계를 허용하면서도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고 특히 일방적인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에 의한 다른 나라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一體均霑’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 것이다. 그중 전통적 조공관계의 변화 거부에 관한 첫 부분 내용은 사실상 통상문제를 다룬 위 장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바로 통상장정의 협의과정에서 조선 측의 조공관계 이탈 가능성을 감지 및 경계한 청 정부 측에서 새삼스럽게 삽입한 것으로서 앞서 10월 3일 천진해관도아문 실무회담에서 주복과 마건충이 이미 어윤중에게 통보해 둔 내용이었다. 물론 조선 정부의 경우 나름대로 ‘해금’의 해제 특히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았던 호시무역제도의 사실상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통적 조공관계의 변화를 기대하던 노력은 결국 무산되었다.

66) 權赫秀, 2008, 앞의 책, 3~8쪽. 『中朝章程』의 경우 한중 학계의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서로 文句상의 차이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 글의 『中朝章程』 관련 내용은 모두 자세한 비교검토와 교감작업을 거친 필자의 위 책에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앞의 책, 394~398쪽에 『中朝章程』의 한글 번역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 글의 『中朝章程』 관련 내용은 모두 필자가 새롭게 번역한 것임을 함께 밝혀둔다.

이처럼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전통적 조공관계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경제 무역 차원에서 근대적 통상관계의 수립과 전개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조공관계의 실질적 강화를 꾀하려는 이른바 정경분리적 대조선정책의 基調가 그 후 청일전쟁 직전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의 대부분 전개과정이 모두 『中朝章程』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中朝章程』은 19세기 말 한중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규정한 중요한 국제법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이처럼 한중 두 나라 관계에서 전통과 근대의 공존이라는 과도기적 국면은 당시 청 정부의 이른바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의 대외관계 현실과 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 유길준에 의해 설파된 한말 외교의 ‘兩截體制’ 현상의 직접적인 구현이었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과도기적 특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⁶⁸⁾

위 서문에서 주로 조공관계의 유지와 그에 따른 한중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제3국의 ‘一體均霑’을 거부하는 정치외교적 내용이 규정되었던 반면 통상장정의 본문에 해당하는 그 다음의 7개 조항에는 모두 경제무역과 관련된 통상관련규정 및 그에 따른 사법관할권과 상선관리, 어로행위 그리고 해상방어 관련 내용이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통상관련규정. 제1, 제4, 제5, 제6조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제1조항은 상대국 개항장으로 상무위원 상호파견관련규정, 제4조항은 상대국 개항장에서의 무역 및 주택임대와 건조 그리고 ‘內地採辦’ 관련규정, 제5조항은 호시제도의 폐지와 국경 지역 자유교역 허용 그리고 장차 국경 지역 답사 및 육로 통상장정 체결약속 관련규정, 제6조항은 교역금지품목 및 홍삼 세척 관련규정이었다. 여기서 제1조항에서 청나라 상무위원의 경우 북양대신의 명의로 파견하되 조선 정부 상무위원의 경우 국왕의 명의로 파견하는 규정 등은 전형적인 불평등 내용으로서 특히 모든 사항의 협의에 있어서 북양통상대

67) 權赫秀, 2000, 앞의 책, 122~124쪽.

68) 鄭容和, 2003, 앞의 책; 岡本隆司, 2004, 앞의 책; 權赫秀, 2007, 앞의 책 참조.

신 이흥장의 카운트 파트너를 조선 국왕으로 지정해 둔 것은 바로 조선 국왕을 이른바 속국의 ‘外臣’으로 간주하는 조공관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반면에 제5조항에서 호시제도의 폐지 및 제6조항에서 조선 산 홍삼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또한 중국 商民의 홍삼 반출 금지 등 내용은 나름대로 조선 측의 이익과 요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법관할권 관련규정. 바로 제2조항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청나라 상무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자국상민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부여한 반면 조선 정부 상무위원회에게는 위와 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역시 전형적인 불평 등 내용이었다. 특히 이 부분은 1871년에 일본과 체결한 『中日修好條規』 제8조항에서 영사재판권을 상호 인정한 내용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셋째, 통상선박 및 어로행위 관련규정. 바로 제3조항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두 나라 상선의 개항장 출입과 교역 허용 그리고 조난선박의 구조의무 관련 규정 외에 또한 두 나라 근해 지역에서의 漁撈행위를 허용하였다.

넷째, 해상교통 및 조선해상방어 관련규정. 바로 제7조항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해금해제에 따른 해상교통의 허용과 더불어 조선 정부의 재정보조 조건으로 청나라 輪船招商局 선박에 의한 월 1회 왕복 국제항선 개설 관련 내용 외에 특히 청나라 군함의 조선 근해 순시와 수호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8조항에는 장차 통상장정의 수정과 관련하여 먼저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이 서로 협의한 뒤 청나라 황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는 기술적 내용이었다. 또한 앞서 공식적인 조인절차와 두 나라 대표에 의한 서명, 날인이 애당초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장정의 사용언어와 인준 및 교환에 관한 규정은 처음부터, 즉 주북과 마건충에 작성한 장정의 초안에서부터 없었다.

요컨대 『中朝章程』은 그 체결과정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19세기 말 당시 한중관계의 실상, 즉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조약관계로 전환하는

69) 『中日修好條規』의 체결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한 연구는 王璽, 1981, 『李鴻章與中日訂約(一八七—)』,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專刊(42),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참조.

과도기 단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제법적 문헌으로서 그 후 근대 한중 관계사의 전개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전통적 조공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차원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개하기로 한 규정에 의해 19세기 말 한중관계는 정치경제의 괴리, 즉 정경분리라는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지적한 근대 중국 대외관계의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 현상 및 한말 대외관계의 ‘양절체제’적 현상이 19세기 말 한중 두 나라 관계의 외적인 특성이라면 정치와 경제관계의 괴리, 즉 정경분리 현상은 당시 한중관계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외적 특성은 본질적으로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청 정부의 경우 1882년 『朝美條約』의 체결을 주선하면서 외교적 차원에서 조선의 대외관계 분야에 대한 적극 개입과 간섭을 시작하였고 곧 이어 임오군란 탄압을 계기로 군사적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조선에 대한 실력간섭과 통제를 시도하였다면 『中朝章程』의 체결을 통해 조선에 대한 분야에 적극적인 개입과 침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괴리로 표현되는 과도기적 상호관계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청 정부의 위와 같은 대조선 정책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전통적 조공관계의 강화, 종속관계의 재편, 신속방화정책 및 제국주의 열강에 타동된 제국주의 침탈의 성격 심지어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⁷⁰⁾ 등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는데,⁷¹⁾ 본질적으로 여전히 청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상관없이 전통적 조공관계체제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70) Kirk W. Larsen,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17.

71) 자세한 내용은 구선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중일학계의 한중관계사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190~194쪽 참조.

실제로 『中朝章程』은 한중 두 나라 사이에서 최초로 근대적 조약의 원칙과 형식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여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통상무역장정으로서 그 체결자체가 바로 한중관계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朝章程』에서 海禁 및 互市무역제도와 驛道왕래 등의 폐지 및 육로와 수로를 통한 근대적 통상관계의 허용, 상무위원의 상호과견, 정기항로의 개설 등 내용은 『中朝章程』의 내용 중에는 전통적 조공관계를 크게 변화시킨 부분으로서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5조항에서 장차 두 나라 정부대표에 의한 공동답사를 거쳐 호시제도 폐지 이후 국경 지역에서의 육로 통상장정의 공식체결을 약속한 규정에 따라 이듬해인 1883년 4월과 7월에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과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地方章程』이 속속 체결되었는데,⁷²⁾ 그러한 의미에서 『中朝章程』은 그 후 체결된 두 개의 지방 통상장정에 대한 일종의 母條約 또는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나라 상민의 조선 시장 진출, 청나라 어민들의 조선 해역 어로권 확보 및 조선 진출, 청나라 상민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관할권 등 규정을 통해 근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경제적 침투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종족집단으로서 화교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⁷³⁾ 청나라 군함에 의한 조선 해역 방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청일전쟁 직전까지 청나라가 한국의 해상방위권을 사실상 대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⁷⁴⁾

72) 한중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 학계의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위 두 장정은 문구 상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校勘 결과는 權赫秀, 2008, 앞의 책, 8~20쪽 참조.

73) 한국화교 역사에 관한 연구는 秦裕光, 1983,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臺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楊昭全·陳玉梅, 1991,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崔承現, 2003, 『韓國華僑史研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 양필승·이정희, 2007,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李玉蓮, 2008, 『인천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仁川文化財團 등 참조.

74) 金正起, 1985, 「淸의 朝鮮에 대한 軍事政策과 宗主權(1879-1894)」, 『邊太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金正起, 1979, 「兵船章程의 施行(1888.2)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4; 權赫秀, 2000, 앞의 책, 123~124쪽 참조.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882년 10월 체결된 『中朝章程』의 체결배경과 체결과정 그리고 그 내용과 영향을 두루 살펴보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밝혀두었다.

첫째, 『中朝章程』의 체결배경과 관련하여 전통적 조공무역체제의 변화 및 근대적 통상관계의 수립을 위한 노력은 당시 한중 두 나라 측에서 모두 있어 왔는데 바로 당시 한중관계가 이미 근대적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대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근대적 통상장정의 체결제외는 일찍 1880년 9월 黃遵憲의 『朝鮮策略』에서 먼저 제시되었지만 당시 조선 왕조 고종 정부에서는 개화기 부국강병정책의 일환으로서 청 정부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경제통상관계의 차원을 넘어 외교대표의 상호파견 및 北京 상주 등 근대적 외교관계의 수립 요구까지 제출하였다.

그 후 갑작스럽게 일어난 임오군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특히 청 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적극적인 간섭정책으로 개변되기 시작하면서 고종 정부의 위와 같은 노력이 많이 위축되었던 반면 임오군란 이후 재개된 통상장정 관련 교섭은 거의 청 정부 측의 이홍장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위와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도 임오군란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 특히 청 정부 대조선정책의 적극적 변화와 직결된 것으로서 그 후 통상장정관련 교섭의 불평등 양상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둘째,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적극적 간섭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한 청 정부는 통상장정 관련 교섭에 있어서도 줄곧 일방적인 자세로 주도해 가면서 이홍장과 그의 막료들에 의한 장정 초안의 마련과 사실상 단 1회의 실무교섭을 통해 청 정부의 정책의도와 이익을 철저하게 반영시켰던 반면 조선 정부 대표의 경우 겨우 부분적인 수정 요구만 개진하는 것으로 그치면서 전형적인

불평등 양상을 보여주었다. 『中朝章程』의 체결은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정치외교적으로 전통적 조공관계체제를 고집하면서 경제통상의 이익을 적극 추구하는 이른바 정경괴리적 관계양상이 전개되는데 바로 당시 청 정부의 ‘하나의 외교에 두 가지 체제’라는 대외방침과 조선 왕조의 이른바 ‘양절체제’적 대외관계의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中朝章程』의 체결을 계기로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정치와 경제의 괴리로 표현되는 과도기적 관계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관계 국면은 그 후 청일전쟁 직전까지 12년 남짓 유지되면서 당시 한중 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통상장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 대표로서 고종이 특별파견한 問議官 명의의 어윤중 외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직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謝恩兼陳奏使 趙寧夏와 副使 金宏集 일행도 포함된 사실을 밝히면서 통상장정의 불평등한 결과를 어윤중의 외교적 실책으로 탓하는 일부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위 통상장정은 두 나라 대표에 의한 서명, 날인 등 공식적인 조인절차가 애당초 없었으므로 훗날 한중 두 나라 여러 문헌에 표기된 두 나라 대표의 서명은 사실상 훗날 장정문헌의 편집과정에서 임의로 추가된 사실을 새롭게 밝혀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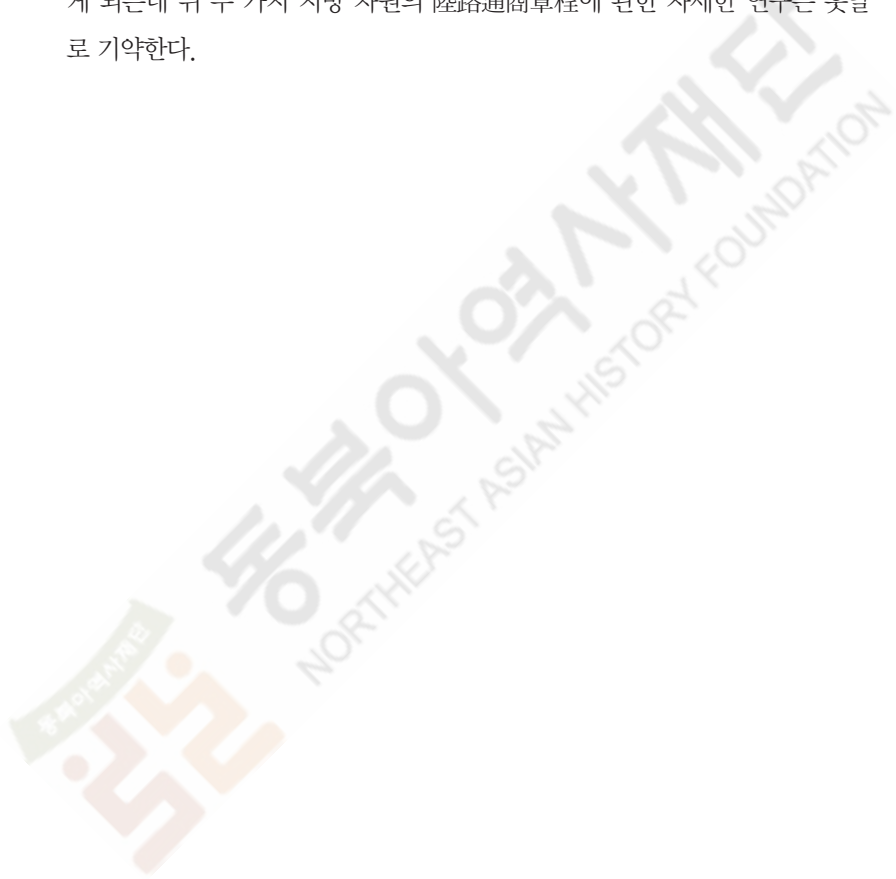
셋째, 위 장정의 서문과 총 8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나아가서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中朝章程』을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중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규정하는 기본조약으로 보면서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조약관계로 전환하는 19세기 말 한중 관계의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국제법적 문헌이자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통적 조공관계의 고수원칙을 강조한 장정의 서문과 근대적 통상관계의 전개에 관한 총 8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조약’이 아닌 ‘장정’이란 명칭의 사용을 청 정부의 고의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일부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위 장정의 공식명칭은 『中

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는 사실과 위 장정의 영어 번역본의 유래 등 관련사실도 함께 밝혀두었다.

요컨대 『中朝章程』의 체결자체가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中朝章程』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中朝章程』은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체결된 국제조약이 아니라 사실상 청 정부를 대표한 이홍장과 조선 국왕의 대표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협정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조선 국왕 고종의 카운트 파트너를 청나라 光緒皇帝가 아닌 北洋通商大臣 이홍장으로 정한 사실 자체가 전통적 조공관계의 원칙에 의해 조선 국왕을 이른바 ‘外臣’으로 간주하는 청 정부 대조선 인식과 정책 의도를 잘 보여주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 지적한 ‘章程’의 명칭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성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 정부와 이홍장에 의해 주도되어 온 체결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의 면면에 이르기까지 『中朝章程』은 전형적인 불평등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그중 조선 정부의 요구를 나름대로 반영해 준 부분은 물론 조선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적어도 청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공관계의 유지를 위한, 즉 이른바 ‘屬邦優待’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中朝章程』이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역사적 산물이면서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시대적 제한점을 갖고 있는 사실 자체가 19세기 말 한중관계의 과도기적 역사특성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된다. 실제로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中朝章程』은 조공관계체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변의 조공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또한 유일한 근대적 국제법 문헌으로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질서, 즉 조공관계체제가 이미 중심과 주변을 포함한 내부적으로부터 새로운 변화, 즉 근대적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中朝章程』은 그 불평등한 성격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넘는 한중관계의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조약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

하여 체결한 국제법 문헌으로서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가 드디어 근대적 전환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한편 『中朝章程』은 그 이듬해인 1883년에 속속 체결된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과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地方章程』의 母條約 또는 기본조약 성격도 갖게 되는데 위 두 가지 지방 차원의 陸路通商章程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훗날로 기약한다.



참고문헌

〈사료〉

- 故宮博物院 編, 1933,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 『高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 權赫秀, 2008,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金允植, 1958, 『陰晴史』, 국사편찬위원회.
- 馬建忠, 1982, 『東行三錄』, 上海書店影印本.
- 魚允中, 1958, 『從政年表』, 국사편찬위원회.
-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書』, 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 王鐵崖 編, 1957, 『中外舊約章彙編』 第一冊, 北京: 三聯書店.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中朝約章合編』,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
-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1891, *Treaties, Regulations, etc., Between Korea and other Powers, 1876~1889*, Shanghai: The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 China, The Maritime Customs, 1917,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Vol. II, Shanghai: The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Second edition.

〈단행본〉

- 具仙姬, 1999, 『韓國近代對淸政策史研究』, 도서출판 혜안.
- 權赫秀, 2000, 『19세기말한중관계사연구—이홍장의 조선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 權赫秀, 2007,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혜안.
- 權赫秀, 2008,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그리피스 저, 申福龍 譯註, 1976, 『隱者의 나라 韓國』, 探求堂.
- 金源模 編著, 1984,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國大學校出版部.

- 金鍾圓,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해안.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樊百川, 2003, 『淸季의 洋務新政』 1~2卷,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단국대학교 출판부.
- 宋炳基 著, 楊秀芝 譯, 2006, 『一八八二年朝美條約의 訂立與淸代中國』, 臺北: 樂學書局.
- 宋禎煥, 1982, 『짜리로씨야의 조선침략사개요』,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 楊昭全·陳玉梅, 1991,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 梁必承, 李正熙,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 延甲洙, 2001, 『대원군집권기부국강병정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王璽, 1981, 『李鴻章與中日訂約(一八七-一)』,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專刊 42.
- 李陽子, 2002, 『朝鮮에서의 袁世凱』, 新知書苑.
- 李玉蓮, 2008, 『인천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仁川文化財團.
- 李哲承, 2000,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 李泰鎮,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 李泰鎮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林明德, 1984, 『袁世凱與朝鮮』,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張存武, 1978, 『淸韓宗藩貿易: 1637~1894』,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專刊 39.
- 鄭容和, 2003,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문학과 지성사.
- 崔承現, 2003, 『韓國華僑史研究』,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 秦裕光, 1983,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臺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夏東元, 1992, 『洋務運動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美)惠頓(Henry Wheaton) 著, (美)丁韋良(William M. P. Martin) 譯, 何勤華 點校, 2003, 『萬國公法』,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近代淸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

- 岡本隆司, 2007, 『馬建忠の中國近代化』,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藤間生大, 1986, 『壬午軍亂と近代東アジア世界の成立』, 東京: 春秋社.
- 坂野正高, 1985, 『中國近代化と馬建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Wright, Mary Clabaugh, 1962,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The T'ung-Chih resto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rsen, Kirk W.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Harvard University Press.
- 〈논문〉
- 高偉濃, 1992, 「十九世紀80年代中朝外交和貿易體制的演變」, 『朝鮮學論文集』 1.
- 權赫秀, 1995, 「馬建忠與朝鮮」, 鄭判龍, 李鍾殷 主編, 『朝鮮—韓國文化與中國文化』.
- 權赫秀, 2004, 「馬建忠留法史實辨誤二則」, 『江蘇社會科學』 第1期.
- 權赫秀, 2004,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 第一輯.
- 權赫秀, 2007, 「江華條約與清政府關係問題新論—兼與王如繪先生商榷」, 『史學集刊』 第4期.
- 權赫秀, 2007, 「關於黃遵憲〈朝鮮策略〉版本及其原文校勘」, 『韓國研究論叢』 第十七輯.
- 權赫秀, 2007,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비밀외교채널—이홍장—이유원 의 왕복서신을 중심으로」,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 權赫秀, 2009, 「晚清對外關係中的‘一個外交兩種體制’現象芻議」, 『中國邊疆史地研究』 第4期.
- 金旼奎, 2002, 「近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變容과 淸日修好條規(1871년)－‘條規體制’의 生成」, 『大東文化研究』 第41輯.
- 金旼奎, 2006, 「조규? 조약?」, 『역사비평』 여름호.
- 金正起, 1979, 「兵船章程의 强行(1888.2)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4.
- 金正起, 1985, 「淸의 朝鮮에 대한 軍事政策과 宗主權(1879-1894)」, 『邊太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金鍾圓, 1960,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歷史學報』 12.
- 金鍾圓, 1975,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 그 영향」,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 方香, 2008,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배경에 대한 고찰」, 延邊大學民族研究院

- 編, 朴昌昱教授八十壽辰紀念論文集『中國朝鮮族歷史諸問題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費馳, 2006, 「清代中朝邊境貿易的演變探析(1634-1894年)」, 『東北師範大學學報』第3期.
- 宋慧娟, 2006, 「簡析〈中朝水陸貿易章程〉對中朝關係的影響」, 『吉林教育學院學報』第9期.
- 延邊大學民族研究院 編, 朴昌昱教授八十壽辰紀念論文集『中國朝鮮族歷史諸問題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68~302쪽.
- 王蕾, 2001, 「圍繞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有關問題的再檢討」, 『韓國學叢書』第9輯.
- 李秀蓮, 1997, 「光緒初年中朝商貿關係的嬗變」, 『安徽史學』第4期.
- 李泰鎮, 1999, 「근대한국은 과연 은둔국이었던가?」, 『韓國史論』 41 · 42.
- 全海宗, 1960, 「清代韓中朝貢關係考」, 『震檀學報』 卷29 · 30.
- 糟谷憲一, 1992, 「壬午軍亂直後の閔氏政權と〈善後六條〉」, 『東アジア-歴史と文化』創刊號.
- 朱相吉, 2008, 「朝鮮後期朝・清邊市貿易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 陳尙勝主 編, 『山東半島與中韓交流』, 香港出版社, 473~490쪽.
- 秋月望, 1984, 「朝中貿易交渉の経緯——一八八二年派使駐京問題を中心に」, 『九州大學東洋史論集』第13號.
- 秋月望, 1985, 「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報』第115輯.
- 韓冰, 2007, 「‘强加’與‘優待’—淺論〈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 Quan Hexiu, 2008, “The Two Systems of Diplomacy of Late Qing China: External Relationship, Modernization and Transitional Phas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5-1.

[ABSTRACT]

Modern trade relations under the Tributary system:
A Study on the marine and land trade regu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1882

Quan, Hexiu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1882” is a major sign of the modern transition between Sino-Korea relations. At that time, China and Korea had started the process of early modern times and the two countries had a willing and had made efforts to achieve the modern transition of the tributary trade and even the Joseon dynasty suggest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send ministers for each other in order to establish modern diplomatic relations. After the “Army In-o Chaos” of Korea in July 1882, Qing dynasty changed the policy to ward Korea and turned positively.

Li Hung-chang and his staff controlled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Regulations which was full of inequality, and the preface of the Regulations which stressed that tributary relationship couldn't be changed was different from the eight provisions of the body of the Regulations which declared to establish modern trade relationship, this fact indicates that there is a phenomenon which is called “One Diplomatic Two Systems” in late Qing dynasty's foreign relationship, and this phenomenon is a character of the modern transition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n region. This paper includes new conclusions in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commissaries of the

negotiation of Korea, the signing of the procedures of the Regulations, the name of the Regulations, and so on.

keywords

marine and land trade regu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ribute trade, modern transition, division of politics and economy



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의 '질서'와 '정의'

- 근대 일본 지식인의 동아시아 국제사회관 -

장인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I. 머리말

흔히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19세기 후반에 체제교체와 질서변동을 거치면서 주권·국제법·세력균형을 원리로 하는 유럽발 주권국가체제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 국제사회의 경우와 달리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토대로 근대국가를 형성한 일본이 지역패권을 장악하면서 팽창적 제국체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에서 이들 질서원리는 제국일본의 권력 팽창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었을 뿐,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질서규범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주권 평등을 상징하는 질서원리(규범=명분)를 권력(실제)과 결합시키면서 주권 불평등의 역내 국제관계를 만들어 냈다.

※ 투고일: 2009년 12월 7일, 심사일: 2010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13-B00001).

특정 주도국에 의한 지역 국제관계의 형성에는 외교정책의 인식론적 토대를 이루는 국제사회관이 관여한다. 따라서 국제사회관에서 규범과 권력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모습을 띠고 발현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제사회관은 세계정치를 운용하는 규범적 국제질서 원리와 국제사회의 권력 현실과 이상에 대한 인식이며, 원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사유라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국제사회를 만국투쟁 상태로 보고 권력을 중시하는 홉스적 국제사회관이 강했다. 홉스적 국제사회관은 일정 부분 도쿠가와 정치주체들의 현실주의 정치감각을 전승하면서 경쟁의 새로운 주권국가체제에서 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 일본에서 홉스적 국제사회관은 규범적 원리까지도 권력추구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정치적 사유를 산출하는 일이 많았다.

근대 일본의 홉스적 국제사회관이 일본의 국제질서관과 대외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은 몇몇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있다.¹⁾ 그런데 홉스적 국제사회관이 근대 일본 외교정책의 인식론적 근거를 이루는 유력한 국제관념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근대 일본의 홉스적 국제사회관은 홉스적 현실주의만이 아니라 칸트적 자유주의, 그로티우스적 규범주의도 섞여 있는 일이 있었다. 국권을 보전하고자 서구열강에 대응했을 때, 혹은 국권을 확장하고자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세계정치의 질서 수정에 나섰을 때, 권력지향적 현실주의뿐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규범을 상징하는 권력비판적 자유주의가 표명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 지식인들의 국제사회관이 특정 맥락에서 어떠한 전개 양상과 특질을 보였는지를 조명한다. 특히 동아시아와 세계의 ‘질서’와 ‘정의’를 보는 지식인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성찰한다. ‘질서’와 ‘정의’는 국제사회

1) 이를테면, Kenneth Pyle, 2007,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PublicAffairs; Shogo Suzuki, 2005, "Japan's Socialization in Janus-faced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 1.

의 원리와 현실을 바라보는 국제정치관의 핵심적 요소다.²⁾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질서'와 '정의'를 내걸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했다. '질서'와 '정의'에 관한 일본 지식인들의 생각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명분과 실제, 보편과 특수, 세계와 지역과 국가에 관한 모습, 달리 말하면 근대 일본의 정책구상과 국제사회상이 들어 있다. 근대 일본 지식인들의 국제질서관과 지역구상에 내재된 '질서'와 '정의'의 의미를 읽어 낸다면, 유럽적 주권국가 관념과 동아시아(일본)적 제국 관념이 어떻게 착종하고 있었는지, 일본제국이 지역세계와 제국공동체를 구축하고 세계정치에 대항해 가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어떤 논리와 심리를 보였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국제영역에서의 '질서'와 '정의'에 관한 의제와 쟁점을 검토하고 동아시아적 함의를 논한다. 이어서 중화체제와 주권국가체제에서 표출된 '질서'와 '정의'에 관해 분석한다. 일본 지식인들이 주권국가체제와 제국체제에서 영위했던 '질서' '정의'의 개념, 관념을 통해 근대일본 지식인들의 국제정치관을 드러낼 것이다. 근대 일본 지식인이 표방한 '질서'와 '정의'의 속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질서'와 '정의'가 국제관계에서 갖는 의미와 동아시아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영국학과 국제사회론자인 헤들리 불은 국제사회에서 '질서'와 '정의'의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유럽국제사회의 '질서'를 논하는 데 머물렀다. Hedley Bull,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불의 제자 빈센트는 신생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변경하기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비로소 '정의'의 문제를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다. R. J. Vincent, 1986,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근대동아시아의 국제사회를 논할 때, '질서'와 '정의'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필자가 아는 한 본격적으로 논구된 바가 없다. 다만 질서-정의의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방법론적 성찰로 장인성, 2009a,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찾아서」,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10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서울: 논형; 장인성, 2009b, 「영국학과 국제사회론과 근대동아시아의 국제사회화에 관한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가 있다.

II. 국제사회에서의 ‘질서’와 ‘정의’

1_ 윤리 · 권력 · 규범과 ‘질서’

사회가 질서를 전제하듯이 국제사회도 질서, 즉 국제질서(국제적 안정)를 상정한다. 질서는 국가들이 생존하고 공존하기 위한 조건이다. 통상 근대 국제사회는 권력투쟁의 무질서이자 질서를 모색하는 권력(힘) 추구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국가들 사회로 이해된다. 권력적 기능성을 중시하는 홉스적 국제사회관은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자구(self-help)와 세력균형을 국가의 행동원리로 여긴다. 근대 국제사회에서는 권력적 기능성이 자연법적 도덕성을 압도하며, 질서는 세력관계의 조절을 뜻한다. 중세에는 초월적 존재(신)=자연법적 도덕성이 지상세계를 규율했고, 인간세계의 질서는 신의 의지에 구속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홉스적 국제사회관은 초월적 존재(신)와 종교적 가치에 의거해 질서를 상정하는 중세 자연법적 도덕주의에 대항하는 근대정치관의 표현이었다.

근대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지만 무질서는 아니다. 기능성(세력균형)과 더불어 자연법적 도덕성(자연법), 세속적 합리성(국제법)이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³⁾ 근대 국제사회에서 질서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억지하고 주권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국제규범)와 자국에 유리한 국제사회를 유지하려는 강대국의 권력 의지가 서로 작용하면서 전개되었다. 국제질서는 국가들의 기능적 권력관계뿐 아니라 세속적 합리성에서 나오는 실정법적 법규범(국제법)에도 의존하였다. 영국학과 국제사회론자 헤들리 볼(Hedley Bull)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무정부(anarchy)이지만 무질서(anomie)는 아니며 거기에는 공통의 양해, 규범과 규칙, 제도에 의해 규율되는 질서

3) James Mayall, 1990,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15.

(order)가 작동한다. 권력정치가 작용하는 한편, 권력정치를 조정하는 세력균형, 강대국들의 양해, 외교와 같은 제도들도 질서를 구성한다.⁴⁾ 여기서 국제사회의 질서는 권력적 기능성과 제도적 합리성의 함수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는 자연법적 도덕성도 권력적 기능성과 세속적 합리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 국제사회의 세계적 팽창과정에서 기독교의 자연법적 규범이 국제사회관에 영향을 주고 '신의 뜻'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동원된 데서 보듯이, 일정 부분 국제질서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였다.

세 요소의 함수관계에 의존하는 국제질서는 유럽 국제사회를 무대로 성립하였다. 유럽 국제사회와 국제질서는 중세의 종교적 세계가 분열하면서 세속 국가들이 출현하고 국민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들 간의 상호경쟁 과정에서 생성된 역내 구성물이었다. 유럽 국제사회에서는 역내 세력균형이 원리 겸 정책으로 작용면서 힘의 사용을 억지하는 제도화=규범화가 진행되었다. 세력경쟁의 합리적 제도화로서 제도적 합리성이 갖추어졌다. 불의 역사적 합리주의는 유럽 국제사회가 세력균형과 규범과 유럽적 가치로 구성되고 여기서 질서가 생겨난 유럽의 경험과 합치된다. 그런데 영국학과 국제사회론에서 말하는 제도적 합리성은 유럽 국제사회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합리적 해석을 보여주지만, 강대국(영국) 중심의 현상유지를 질서로 여기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사회관을 내장한다. 세력균형과 강대국의 양해에 기초한 질서는 강대국의 이익에 맞는 현상유지를 뜻하는 것이었다.

4) Andrew Hurrell, 2002, "Foreword",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3rd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vii~ix. 불의 질서관념은 권력과 세력균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만국투쟁의 자연상태를 상정하는 홉스적 전통의 현실주의 국제사회관(realism)과도 친화성을 가지며, 공통의 가치와 양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칸트적 이미지의 급진주의 국제사회관(revolutionism)과도 친밀하지만, 무엇보다 국제규범(국제법)이 규율하는 질서를 상정하는 그로티우스적 이미지의 합리주의 국제사회관(rationalism)과 가장 친화적이다.

2. 불균형 · 불평등과 ‘정의’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질서의 연원들은 동시에 정의의 명분을 구성한다. 이상적 질서가 구현되어 있지 않을 때, 혹은 기존질서가 위협받을 때, 정의는 이상적 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제시된다. 정의는 절대자(신)의 의지나 인류의 보편적 원리에서 도출해 내는, 질서를 규율하는 상수적 원리로 간주된다. 신의 의지나 초월적 보편 원리에 입각한 자연법적 도덕성, ‘힘이 곧 정의’라는 세속적 권력 의지에서 비롯되는 권력적 기능성, 그리고 국제법, 세력균형과 같은 법규범으로써 세속적 권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합리성은 질서의 연원인 동시에 정의의 근거를 이룬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이러한 정의의 근거들이 국가들 간의 세력(권력) 불균형과 이에 따른 주권 불평등이라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상정된다는 사실이다. 자연법적 보편원리와 세속적 법규범이 정의로서 동원되는 방식은 세력 불균형과 주권 불평등의 현실적 조건에 달려 있었다.

흔히 ‘국제정의’는 자연법적 도덕성을 근거로 표방되곤 한다. 현실세계의 불의(injustice)가 제도적 비합리성과 세력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비합리성과 불균형을 교정할 권력을 갖지 못할 경우, 자연법적 도덕성이 정의감을 일깨우는 유력한 근거로서 상정된다. 현실이 비도덕적이거나 그렇게 간주될 때, 자연법적 도덕성은 ‘정의’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자연법적 정당성에 근거한 정의관념은 세속적 합리성과 권력적 기능성에 입각한 정의 관념보다 원리적이며 도의적이다. 하지만 실제 정치세계에서는 자연법적 도덕성과 정의는 ‘힘’과 연관해서 규정된다. 강대국(패권국가)은 자국에 유리한 질서의 형성·유지에 필요한 ‘힘’의 우위와 사용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자연법적 도덕성을 ‘정의’로서 동원하거나 ‘힘’ 자체를 ‘정의’와 동일시하는 일이 많다. 반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대항하고자 자연법적 도덕성을 ‘정의’로 내세우곤 한다.

국제법이나 세력균형과 같은 합리적 제도는 강대국의 권력(힘)을 견제하고 약소국의 주권을 보전해 주는, 즉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권력 초월적인 공정한 원리, 즉 공정한 정의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제

관계에서 이러한 국제제도는 권력이 우세한 강대국이 자국에 유리한 질서의 현상 유지를 꾀하고자 할 때 혹은 힘을 확대하고자 할 때, '정의'로서 동원된다. 반면 권력(군사력, 경제력)이 취약한 약소국의 경우 국제 법규범은 세력 불균형에 따른 주권 불평등, 혹은 주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 정당성='정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세력 불균형과 주권 불평등의 상황에서 세력균형과 주권평등(만국평등)은 정의의 법규범이 된다. 국제법(만국공법)의 원리를 세력 불균형과 주권 불평등에 대항하는 공적 원리로 이해하고, 공정한 국제법의 적용을 '정의'의 실천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컨대 합리적 법규범의 차원에서 자연법적 도덕성을 표방하는 '정의'는 권력적 불능에 항의하는 정치행위인 측면이 강하다.

근대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질서'를 유지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윤리적·권력적·제도적 명분으로 기능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질서'를 규율하는 권력관계가 '정의'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 냈다. 초월적인 보편적 원리가 권력과 제도를 규율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과 제도가 보편적 원리를 동원하면서 '정의'가 표명된 것이다. '질서'와 '정의'는 도의적 원리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 의도를 담지한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 권력적 현실과 원리적 상상력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질서의 규범을 제공하는 주권평등의 원칙과 질서의 현실을 보여주는 권력 불균형의 실제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다. 이러한 괴리와 간극에서 도덕성·기능성·합리성의 원리를 '정의'로 상정하고 현실의 비도덕성·비합리성·불능성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행위가 출현한다. 세력 불균형과 주권 침해의 국제현실은 세력균형과 주권평등의 이상적 원리에 대비됨으로써 불의로 인식되며, 이 불의에 대한 분개심이 정의감=사명감을 일깨운다. 정의감은 이상적 질서와 현실질서 사이의 간극, 주권평등의 원칙과 세력불균형의 실제 사이의 거리를 메우고 이상적 질서를 모색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의는 현실의 행위나 변혁의 비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착위)되는, 질서 변경을 꾀하는 의지와 감성의 주관적 판단=정의감이 된다.

그런데 이상적 질서와 현실 질서 사이의 괴리나 간극은 국제사회의 구조적

산물일 수도 있다. 패권국과 종속국 간의 정치적 불평등,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권력(군사력, 경제력)의 외형적 불균형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소산일 수 있다. 질서는 구조의 표현일 수 있다. 여기서 간극을 줄이려는 ‘정의(정의감, 사명감)’는 국제사회의 구조를 문제시하는 의식 혹은 불균형적·비대칭적 구조를 균형적·대칭적 구조로 변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국제불의를 산출하는 국제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현상변경의 의지를 내장한 배분적 정의가 국제정의로서 상정된다.

배분적 정의에 이르게 되면, 법규범이 규율하는 국제사회를 상정한 헤들리 불의 그로티우스적 국제사회관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불의 그로티우스적 질서관에서 정의는 질서의 기본목표(생존, 신의, 소유권)를 전제로 해서 실현 되는 것이며, 질서를 위협하는 정의는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정의는 질서를 토대로 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⁵⁾ 하지만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국제사회는 ‘질서유지’와 ‘질서변경’의 대결 구도를 상정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안정된 단일의 질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복수의 질서이거나 최소한 질서의 안정성과 단일성을 상정하기 어렵게 된다. 질서의 복수성 혹은 불안정성은 ‘질서유지’와 ‘질서변경’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질서유지자(패권국)는 국제적 위상의 추락을 막고자 ‘현상유지’를, 질서변경자(수정주의 국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현상변경’을, 각각 ‘국제정의’로서 표방한다. 여기서 질서유지를 위한 현상유지 국가의 ‘정의’와 질서변경을 위한 도전국가(수정주의 국가)의 ‘정의’가 충돌한다. ‘정의의 충돌’은 ‘질서(관)의 충돌’을 뜻한다.

이러한 질서-정의관은 유럽 국제사회를 상정하는 영국학과 국제사회론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인다. 이제 질서-정의관(인식론)은 국가들의 국

5) 불은 현실 국제사회의 ‘질서’와 이를 바꾸려는 ‘정의’의 열망 사이에서 일정한 긴장을 인지했지만, 세계시민적, 보편적 ‘정의’에 포함된 공통선을 배려하지는 못했다. Hedley Bull, 1977, 앞의 책, pp. 82~86. 불이 ‘정의’를 우려했던 때는 탈식민지화와 신생국 독립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제사회가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평등에 대한 요구, 인권문제 등이 대두하기 시작한, 다시 말하면 유럽 국제사회가 이질적인 비서구 국제사회를 받아들여 글로벌 국제사회를 형성해야만 하는 맥락에서였다.

제적 위상(존재론)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질서와 정의에 함축된 원리성(규범성)과 전략성(기능성)도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적 위상(존재)의 변경 혹은 변경에의 의지가 '질서'와 '정의'의 존재 양태를 바꾸게 된다. 달리 말하면, 국제체제의 변용으로 국제질서가 변경될 개연성이 높거나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국제질서의 변경을 시도하고자 할 때, '(국제)정의'는 표명된다.

3_ 동아시아 체제이행에서의 '질서'와 '정의'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도 '질서'와 '정의'는 국제체제와 상관된다. '질서'의 명분으로 기능했던 '정의'는 국제체제가 변동하면서 변용하였다. 중화체제에서는 '事大字小'의 위계질서가 상정되었고 질서를 정당화하는 정의의 근거는 '천도'였다. 주권·국제법·세력균형의 원리로 질서가 구성되는 주권국가체제에서는 자연법적 '평등'이 정의로서 표방되었다. 협동·제국국제법·직분의 원리가 '팔괘일우'의 질서를 이룬 일본제국 체제에서는 '천황'이 정의의 근거였다. 국제체제는 질서와 정의를 규정하였고, 국제체제의 변동은 질서와 정의의 길항, 변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변동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은 일본에 의해 야기되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글로벌리즘, 지역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동력의 상관적 작용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근대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서구발 글로벌리즘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이에 대응하는 내셔널리즘과 지역주의가 발흥하면서 형성되고 변용해 갔다. 조선과 중국이 근대 국제사회의 원리(주권, 국제법, 세력균형)에 저항하다가 군사적 폭력을 만나면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반면, 일본은 개항과 더불어 이들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나아가 이 원리의 역내 적용을 시도했다. 일본은 천황제국이 형성과 대외 팽창정책을 통해 국제적 위상의 상승을 꾀했고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이행을 추동하였다. 좀 더 말하면, 일본은 주권과 국제법을 동원하면서 동북아의 질서 변동을 부추겼고, 청일·러일전쟁을 통해 지역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조선 및 타이완 식민

지화, 만주국 건설,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통해 제국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의’가 표방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제사회와 조우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갔으며, 질서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정의’가 제시되었고 ‘정의’의 충돌이 벌어졌다. ‘질서’ 변동기에는 흔히 기존 질서를 보수하려는 ‘정의’와 질서를 혁신하려는 ‘정의’가 충돌하곤 한다. 정치주체들은 국가의 생존이나 팽창을 정당화하고자 ‘정의’를 동원하곤 했다. 새로운 국제체제에 적응 못한 조선과 중국의 ‘정의’가 기존질서에 입각한 도덕적 명분에 의존했다면, 일본의 ‘정의’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권력에 기초한 것이었다. 일본제국은 일련의 팽창정책을 통해 ‘정의’를 내걸고 ‘질서’ 변경을 꾀했다. 근대문명에 기초한 ‘義戰’, 일본문명에 근거를 둔 ‘聖戰’이라는 ‘정의의 전쟁’이 표방되었고, 일본 제국질서 구축이 시도되었다.

근대 동아시아 국제공간에서 질서-정의 문제군을 배태한 동력은 물리적인 권력 불균형과 심리적인 질서관이었다. 유럽열강-동아시아 간에는 외부적 세력 불균형이,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내부적 세력불균형이 성립하였고, ‘질서’와 ‘정의’는 이들 두 구도를 전제로 영위되었다. 물리적인 세력불균형의 실체는 심리적인 세력균형의 이상을 배태하였다. 여기서 현실적 실재로서의 세력불균형을 중시하는 권력정치적 국제사회관과 규범적 당위로서의 세력균형을 상상하는 이상주의적 국제사회관이 공존·갈항하게 된다. 물리적인 권력불균형을 극복하고 권력균형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소망하는 심리=질서관(가치로서의 질서)은 ‘정의’를 추동하는 파토스(동력)였다. 질서가 사실일 뿐더러 가치인 한, 질서관은 현실질서만이 아니라 가치관에 구속받기 마련이다. 근대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질서’와 ‘정의’는, 유럽 국제사회 원리에 대한 저항과 수용, 일본 국가의 역내 팽창(팽창적 생존)과 이에 대한 역내국가(조선, 중국)의 저항(방어적 생존)이 벌어지는, 국가생존을 둘러싸고 원리(이념)와 실제(권력)에서 기존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갈항·대체·혼용하는, 정치투쟁 과정에서 표출되었다. 정치지도자나 지식인들은 ‘질서’ 변동기에 자신들의 국제사회관에 부응하는 국가를 형성하고, 자국의 생존과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상을 정당화하고자 ‘정의’를 동원하였다.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사실과 가치, 실제와 상상 사이의 거리를 메우려는 정의의 감각과 의지는 ‘국민적 사명감’이나 ‘大義’로 표현되는 일이 많았다. ‘정의’는 약자의 위상에서는 방어와 배제의 심정을 간직하며,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강자의 위상에서는 팽창과 포섭의 심정을 내포한다. ‘국민적 사명감’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아시아 질서를 변형시키려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감각에서 나온, 정의감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정의의 심정(파토스)에는 국제체제에서의 일본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는 합리적 계산뿐 아니라 관습적 가치와 윤리(에토스)도 의미를 갖는다. 타자를 사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적개심을 갖고 배제하는 심리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적개심을 분출시킬 때 명분(정의)을 표방하는 방식은 에토스와 연루된 특수한 현상이다. 국제체제와 연루된 근대적 제도들이 질서와 정의의 틀을 제공한다면, 흡수적 질서관념과 전투적 에토스는 일본적 정의관념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 윤리 준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의’는 상황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의전’의 도덕적 명분이나 ‘대동아’로의 팽창을 위한 ‘왕도-패도’의 정의는 확고한 모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Ⅲ. 동아시아 ‘질서’와 일본제국의 ‘정의’

1_ ‘戰國’ · 평등과 정의

동아시아의 개국, 개항은 주권국가체제의 수용뿐 아니라 두 층위에서 세력불균형의 출현을 가져왔다. 구미열강-아시아 간 외부적 세력불균형과 아시아 역내의 내부적 세력불균형이 그것이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내부적 세력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한편, 이를 토대로 외부적 세력불균형을 세력균형으로 변환시키려

는 권력의지를 보였다. 반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내부적 세력균형을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적 세력균형을 모색하고자 했다. 전자는 대외팽창의 정책으로 구현되어 갔고, 후자는 내부적 세력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식의 차원에서 내부적 세력균형을 규범적 차원에서 상상하는 데 머물렀다.

일본의 개국과 근대국가 형성은 주권·국제법·세력균형의 주권국가체제 운용원리를 받아들이고 서양의 위협으로부터 자주독립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정치가와 지식인들 사이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배제함으로써 자주독립을 보전하려는 수세적 입장과 대외팽창을 통해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공세적 입장이 공존했지만, 대체로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항기·메이지 초기 일본의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등에서 보이듯이, 국제사회를 무정부와 만국투쟁의 세계로 보는 흡스적 국제사회관이 우세했다. 근대국가체제의 만국투쟁 이미지와 일본 전국무사들의 생존투쟁 이미지는 중첩되어 있었다. 흡스적 질서관에서 ‘대의大義’(정의)는 투쟁하여 살아남는 것, 즉 독립과 생존에 있었다.

그런데 흡스적 국제질서관은 보편주의적 만국평등관과 공존하고 있었다. 만국투쟁관과 만국평등관은 질서관이 상반되지만 국가의 개체성과 평등성을 상정한다. 둘다 주권국가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일본도 서양국가들도 같은 천지 간에 있어서 같은 햇빛을 쬔고 같은 달을 보며, 바다를 같이하고 공기를 함께하며 情이 서로 같은 인민이므로, 여기서 남는 것은 저들에게 넘기고 저들에게 남는 것은 우리에게 취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서로 편리를 달하고 서로 그 幸을 바라며, 천리 인도에 따라 서로 사귀고, 理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흑인노예에게도 황송해 하고, 道를 위해서는 영국·미국의 군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의 치욕이 되면 온 일본국의 인민 한 사람도 남김 없이 목숨을 던져 나라의 威光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국의 자유독립이라 하겠다”⁶⁾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유명한 언설은 만국평

6) 『學問のすすめ』初編, 1872, 『福澤諭吉全集』第3卷, 東京: 岩波書店, 1959, 29~31쪽.

등관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만국평등관은 도리의 보편성에 의거한 '만국공법(국제법)'의 자연법적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⁷⁾ 실은 주권평등의 명분을 내세워 '나라의 위광'과 '일국의 자유독립'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소산이었다. 만국공법의 자연법적 이해는 국제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현실적인 선택, 즉 국가 생존을 위한 수단적 선택이었다.⁸⁾ '만국평등'의 규범적 국제사회관과 '萬國皆敵'의 만국투쟁적 국제사회관이 병존하고 만국공법이 보편적 규범과 정치적 수단의 양면에서 이해된 것은 보편적 규범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도리'는 절대적인 정의의 근거가 아니라 열세한 약소국이 우세한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명분이었다.

2_ 아시아-서양 구도와 사명감

만국투쟁적 질서관은 일본 대 세계(서양)를 상정하는 구도다. 하지만 일본이 홀로 세계(서양열강)에 대항할 수 없을 때 동양연대(아시아연대)를 통해 서양에 대항하려는 흥아론적 발상과, 문명개화를 통해 서양문명에 진입하려는 탈아론적 발상이 동시에 생겨난다. 흥아론과 탈아론의 병행은 아시아 대 서양(유럽) 구도의 성립을 뜻한다. 이 구도는 외부적 세력불균형이란 조건하에서 중국 중심의 내부적 세력불균형이 일본 중심의 내부적 세력불균형으로 대체되면서 출현했고 새로운 지역질서를 추동하였다. 일본은 외부적 세력불균형에 대해서는 자연법적 만국평등관을 내세워 역외 '대국' 서양열강의 군사력에 대항했고, 역내 '대국' 중국에 대항해서는 국제법에 기초한 실정법적 주권평등을 내세워

7) 丸山眞男, 1986, 『「文明論の概略」を読む』, 東京: 岩波書店.

8) 자유민권론자도 마찬가지였다. “만국공법은 원래 死字徒法으로서 만국을 제어할 힘이 없고, 국적을 판별하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병력의 강약에 의한다. 만국공법 따위는 겨우 강대국의 입을 빌어 약소국을 恐嚇하는 데 편리한 利法일 따름”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酒井哲哉, 2007, 『近代日本の國際秩序論』, 東京: 岩波書店, 26쪽.

중화체제 해체를 시도했다. 문명개화(부국강병)와 천황제국가 형성은 두 세력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질서생성의 동력은 일본국가의 근대문명 수용과 권력지향이었다. ‘대일본제국’은 근대문명의 국내수용(문명개화)과 국제법의 역내적용(조약체제 형성)을 통해 대국으로 성장해 갔다. 문명개화 정책과 조약체제 형성을 통해 일본 국내와 동아시아 지역수준에서 근대문명의 표준이 뿌리내렸고, 일본을 ‘문명’, 역내 타국을 ‘야만’으로 규정하는 문명 대 야만의 동아시아 국제사회관이 성립하였다. ‘문명화’를 ‘정의’의 실천으로 간주하는 국제정의관이 부상하였다.

‘정의’라는 객관적 규범을 상정하고, 정의감이라는 주관적 감정을 통해 ‘정의’를 인지하려면, 현실의 ‘불의’에 대한 ‘각성’ 혹은 ‘불의’에 무감한 자신에 대한 ‘각성’이 요구된다. 근대 일본에서는 먼저 외부적 세력불균형과 내부적 세력불균형의 구도를 깨닫는 ‘각성’이 촉구되었고, 두 개의 세력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사명감이 표출되었다. 각성은 일차적으로 외부적 세력불균형에 대한 분개심에 기초한다. 개항기·메이지 초기에는 외부적, 군사적 세력불균형에 따른 직접적 위협이 자국의 존재방식에 대한 자각, 즉 ‘국민적 의식’⁹⁾을 일깨웠다. 타율적 개국과 막부정권의 선부른 대응에서 야기된 攘夷의 분개심과 倒幕의 정의감은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의식과 애국심, 사명감의 에토스를 이루었다. 서양열강에 대항하는 무사적 분투심, 부국강병과 독립, 발전을 통해 외부적 세력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생존의지는 국민국가 형성의 강렬한 사명감을 낳았다. 보편적 공공성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하는 사명감이었다. 「5개조의 서문」(1868)에는 보편적 공공성과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자기 변혁을 꾀하려는 각성이 드러나 있다. 훗날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은 「5개조 서문」에서 “아시아의 은자의 섬에서 세계의 넓은 무대에 서게 된” 일본인들이 진보를 위해 서구문명이 제공하는 것들에 동화하는 동시에 동양의 고전적 이념을 소생시켜야 한다는 ‘혁신의 이념’과, “국민의 의무는 보편적인 휴머니티의 넓은 견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보편의식을 읽어

9) 徳富蘇峰, 1985, 『吉田松陰』, 東京: 岩波書店.

낸 바 있다.¹⁰⁾ 메이지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민권과 자유에 대한 강렬한 자각을 보였다.

일본의 생존발전을 위한 각성이 확립되면, 다음에는 '아시아의 각성'을 요구한다. 이 말은 일본 혼자서는 외부적 세력불균형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동원되곤 했다. 여기서는 '문명-야만' 틀로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아시아의 각성'을 주도하려는 사명감이 분출한다. 흥아론자나 탈아론자나, 자유주의자나 국권주의자나, 마찬가지로였다. 자유민권론자 스기타 가쿠잔(杉田鶯山)은 아시아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아시아의 독립을 회복시키는 것이 일본의 임무라 주장한다. 아시아의 수천 년 “비굴겁내[怯懦]의 미몽”을 일시에 씻어 내려면 “하늘이 부여한 활발독립의 정신을 霍揮”해서 아시아 전토에 “혁명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전제정치를 파괴하고 아시아에 “不羈自由의 제도를 확립하며, 나아가 자웅을 구미국가들과 전 지구 상에서 다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의 진리, 우내의 공도를 본받는다”는 명분=정의를 내걸었다. 자유민권론자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도 갑신정변의 실패에 분개하면서 ‘野蕃國’ 조선의 전제정치를 개혁하고자 渡韓을 시도하는데, 그는 도한을 ‘義軍’과 ‘正理’의 행위로 자부했다. 민권론자들은 ‘자유평등’과 ‘인간에’의 실현을 정의로 내걸었다.¹¹⁾ 외부적 세력불균형에 대항하는 동양연대의 구상도 ‘동양’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동반한 것이었다.

3_ '의전'과 '제국적 자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각각 '야만' 청국을 각성시킨다는 '문명' 일본의 사명감을, '백인종' 러시아에 대항하는 '황인종' 일본의 사명감을 표방한 '義戰'='정의의 전쟁'으로 치부되었다. 청일전쟁이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넘어 일본이 주도

10) 岡倉天心, 1983a, 『日本の覺醒』(1904), 『東洋の理想 他』, 東京: 平凡社, 259쪽.

11) 橋川文三・松本三之介 共編, 1971, 『近代日本政治思想史』 1, 東京: 有斐閣, 261~267쪽.

하는 내부적 세력불균형을 모색한 것이라면, 러일전쟁은 러시아와의 세력불균형을 교정함으로써 백인종-황인종 간의 글로벌 세력균형을 지향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일본제국의 확대는 내부적(역내) 세력균형을 세력불균형으로, 외부적(역외) 세력불균형을 세력균형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도했다. 이 과정에서 ‘문명화’와 ‘동양평화’가 ‘정의’로서 표방되었다. ‘동양평화’¹²⁾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명분이자 그 자체가 ‘정의’였다.

먼저 청일전쟁은 문명-야만 간 싸움으로 정당화되었다. “문명개화의 진보를 꾀하는 자와 그 진보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 “일종의 종교싸움”,¹³⁾ “서구적 신문명과 동아시아적 신문명의 충돌”,¹⁴⁾ “신문명을 대표하는 소국”이 “구문명을 대표하는 대국”에 대한 싸움¹⁵⁾ 등으로 그려졌다. 문명화를 위한 ‘의전’이라는 말이다. 전쟁수행 중에는 문명의 격차를 없앤다는 ‘대의’(정의)가 표방된다. 여기에는 ‘신문명’과 ‘진보’를 옹호하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와 ‘구문명’과 ‘퇴보’를 비난하는 타자 비판의 논리가 함께한다. ‘의전’의 심리에는 중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윤리적 사유와 일본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사유가 자리잡고 있다. 비전론자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도 한때는 “우리들의 목적은 지나를警醒하는 데 있고, 그 천직을 알게 만드는 데 있고, 그로 하여금 우리와 협력해서 동양의 개혁에 종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는 영구의 평화를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옹호했다. 방임주의는 “무정 무감각” “惡主義”이며, “이웃사람이 비상한 속도로 멸망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일 때 우리는 간섭의 권리를 갖고, 또한 실로 간섭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세계의 최대 퇴보국” 조선에 대한 간섭도 “문명의 광휘”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되

12) 이에 관해서는 石田雄, 1989, 『日本の政治と言葉』,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3) 福澤諭吉, 1961, 「日清の戦争は文野の戦争なり」, 『福澤諭吉全集』第14卷, 東京: 岩波書店, 491~492쪽.

14) 陸奥宗光, 1933, 『蹇蹇錄』, 東京: 岩波書店.

15) 内村鑑三, 1933a, 「世界歴史に徴して日支の關係を論ず」, 『内村鑑三全集』第2卷, 東京: 岩波書店, 221쪽.

었다. “철혈의 도”(무력행사)는 ‘문명국’ 일본이 “부실불신의 국민”을 대하는 유일한 길이며, “철혈”은 정의를 구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¹⁶⁾

청일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시선의 확장에 있었다. 후쿠자와는 청일전쟁을 지켜보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문명세계의 公衆”의 시선을 의식하였다.¹⁷⁾ “일본의 승리는 인류 전체의 이익으로서 세계진보의 필요하다”¹⁸⁾고 말하는 우치무라의 말에서는 ‘인류 전체’와 ‘세계진보’를 상정하는 의식이 읽혀진다.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일본의 지위의 대변동”에 유의하면서 서양인들의 시선이 “청국을 모든 것으로 보고, 일본을 아무것도 아니라 보는 것”에서 “일본을 모든 것으로 보고, 청국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 속의 일본의 위상’과 ‘세계의 시선’에 대한 자각이 느껴진다. “세계에 대해 일본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새벽”을 벗어나 “세계에 대해 일본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도래했다는 주장에서도 시선의 이동이 느껴진다. 여기에는 자국의 개체성에 대한 자각이 동반된다. “우리들은 아직 自個를 알지 못했다. 세계도 아직 吾人을 알지 못했다. 이제야 한번 자개의 힘을 시도했고, 처음으로 스스로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또한 세계에 알려졌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大眼界는 처음으로 금일에 열렸다”. 세계와 개체의 자각은 동시발생적이었고, 청일전쟁은 이를 제공한 중요한 계기였다. “征淸(청국 정벌)”은 일본인들이 “국민적 생활”에서 “세계적 생활”로, “국민적 자각”에서 “제국적 자각”으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확장시키는 “신기원”이었다. “국민적 정신을 토대로 세계적 경영”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¹⁹⁾

세계의식과 ‘제국적 자각’에 맞춘 책임의식도 표출되었다. ‘제국적 자각’은 “수축적 일본의 쇄국근성”을 넘어 “세계에 응비하는 자신력”을 갖는 “정신적

16) 内村鑑三, 1933b, 「日淸戦争の義」, 『内村鑑三全集』第2巻, 216~221쪽.

17) 福澤諭吉, 1961, 앞의 글, 491쪽.

18) 内村鑑三, 1933b, 앞의 글, 227쪽.

19) 徳富蘇峰, 1916a, 「征淸の眞意義」, 『蘇峰文選』, 東京: 民友社岩, 332~338쪽.

해탈”과 동일시된다.²⁰⁾ 청일전쟁은 “일본 국민이 세계에 대해 짊어진 책임의 일부를 다하는” “국민적 활동의 일 현상”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대의를 사해에 펼친다(横井小楠)”는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 여겨졌다.²¹⁾ 세계로 “웅비”한다는 “대의”는 일본의 대외행동이 ‘팽창’으로 비칠 것에 대한 변호였다. “팽창이란 타국을 침략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세계에 웅비하고 세계를 향해 대의를 펴는 데 있을 따름”²²⁾이란 말이다. 우치무라는 일본이 “이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천직을 다하기 위해”, “잠재력을 발양하기 위해”, “眞 가치를 지각하기 위해”, 조선의 독립보전과 5억 청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 “신문명을 동양 전체에 베풀기 위해” ‘의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외친다.²³⁾

한편, 러일전쟁은 아시아 대 서양의 대결구도를 강화시킨,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의전’으로 간주되었다. 이 ‘의전’은 탈아의식을 고양시킨 계기이기도 했다. 도쿠토미에게 러일전쟁은 “자국을 위해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暴를 치고 虐을 징벌하는 의지”였다. 즉, 만주와 조선의 생존을 일본제국의 생존과 결부시켜 자기생존을 확보하려는 권리투쟁인 동시에, “세계를 위한, 문명을 위한, 인도를 위한 의전”이었다.²⁴⁾ 젊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에게도 러시아 “응징”은 “문명에 대한 의무”이자 “일본국민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 러시아로 하여금 세계평화를 해치는 정책을 버리고 문명에 공헌하게끔 ‘반성’하게 만들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고도 했다.²⁵⁾ 도쿠토미는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당한 것에 “義憤”을 표하는 한편, 러시아를 “세계인도의 公敵”으로 규정하였다.²⁶⁾ 팽창은 침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건전

20) 徳富蘇峰, 1916a, 위의 글, 315~316쪽.

21) 徳富蘇峰, 1916b, 「日本國民の活題目」, 『蘇峰文選』, 411쪽.

22) 徳富蘇峰, 1916b, 위의 글, 412쪽.

23) 内村鑑三, 1933b, 앞의 글, 227~228쪽.

24) 徳富蘇峰, 1916c, 「宣戰の大詔を捧讀す」(1904), 『蘇峰文選』, 737~738쪽.

25) 吉野作造, 1995a, 「露國の敗北は世界平和の基也」(1904年 3月), 『吉野作造選集』第5卷, 東京: 岩波書店, 10쪽.

26) 徳富蘇峰, 1916d, 「義憤論」, 『蘇峰文選』, 740~742쪽.

한 존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였다. 또한 “아시아적으로서가 아니라 동양인사로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으로서 세계에 高歩하는 응지”를 드러내고, 일본인으로서 세계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다. “아시아적인 개괄문자”가 아니라 “일본적인 특유명사”로 사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²⁷⁾ 다만 “세계를 적으로 삼아 일본 개체의 의지를 강행하지 않고 세계를 동지로 삼아 自個 또한 그 일 요소가 되는” 방식, 즉 ‘세계 속의 일본’을 생각했다. “문명사회 공유의 景福을 취득하고 보편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안중에는 인종도 없고 종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고 풍속 습관도 없다. 있는 것은 단지 자국 대 세계다. 우리는 동아를 동지로 삼아서 구주로 향하는 자가 아니고, 황인종을 이끌고서 백인종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유럽인의 앞잡이가 되어 아시아 정벌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국을 제외하고는 무차별이고 평등이다. 굳이 차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同情은 제1등국의 문명적 열강에 있다.”²⁸⁾ 여기에는 ‘일본 대 세계’를 상정하면서 “일본적인 특유명사”로서 “제1등국의 문명적 열강”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읽혀진다. 자국 일본 이외의 세계를 ‘무차별’ ‘평등’으로 설정한 데서 자국의 에고이즘을 전제로 한 무정부적 질서관이 간파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히 애원하지도 않고 간청하지도 않고 우리 실력으로써 금일의 국제적 지위를 취득했지만, 자칫하면 이방인시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도쿠토미는 일본의 행동이 ‘문명의 표준[常規]’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데 백인종, 기독교 국민이 아니면 구성원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유럽 국제사회의 “협애”함을 비판하는 한편, 서양국가들에게 “우내 공통문명의 본의”에 대한 “각성[醒覺]”을 촉구하였다.²⁹⁾

도쿠토미 소호와 달리 ‘동양의 각성’을 통해 서양 대 아시아 구도에 대면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은 ‘아시아적 양식’의 재발견을

27) 徳富蘇峰, 1916e, 「わが國民の抱負」, 『蘇峰文選』, 761~762쪽.

28) 徳富蘇峰, 1916e, 위의 글, 761~763쪽.

29) 徳富蘇峰, 1916f, 「東亞の日本と宇内の日本」, 『蘇峰文選』, 776~777쪽.

통해 유럽문명에 대항하고자 했다. “오늘날 아시아의 과제는 아시아적 양식을 옹호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시아 자신이 먼저 이러한 양식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의식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과거의 그림자야말로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 생명은 부단한 자기에의 회귀 속에 있다. …… 일본을 개조하고 또한 일본으로 하여금 동양세계의 이렇게 많은 것을 타도한 폭풍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작지만 이러한 자기인식이었 다. 아시아를 다시 옛날의 확고부동과 강인함으로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자각의 재생이어야 한다.”³⁰⁾ ‘아시아적 양식’의 재발견=‘동양의 각성’은 아시아 회귀를 통해 ‘동양의 이상’을 찾아내는 자기확인이며, 여기에는 ‘일본의 각성’이 선행된다. ‘일본의 각성’이란 일본이 ‘아시아 문명의 박물관’ ‘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를 맡은 진정한 저장고’로서 아시아에서 과거 회귀의 근거가 유일한 국가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 자각은 ‘만세일계의 천황을 가진 유례없는 축복, 정복된 적이 없는 민족의 자긍심, 팽창 발전을 희생으로 해서 조상 전래의 관념과 본능을 지켜온 섬나라적 고립’이라는 자부심에 기초한다.³¹⁾ 오카쿠라는 이러한 각성을 통해 ‘유럽의 영광’에 꺾인 ‘아시아의 굴욕’을 복식시키려는 사명감을 보였다. 일본은 아시아의 통일과 아시아의 이상을 자기 속에 체현하고 아시아의 부흥을 주도하는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아시아의 연대성과 일본의 주도성을 축으로 한 사명관이다. 오카쿠라에게 일본과 아시아의 연대성은 예술과 종교와 철학에 나타난 공통의 정신으로 묶여진 혼과 혼의 소통이었다. 여기서 ‘문명’ 일본과 ‘야만’ 아시아라는 구도, 아시아에 대한 위화감이나 멸시관은 부정된다.³²⁾

30) 岡倉天心, 1983b, 「東洋の理想」, 『東洋の理想: 他』, 126~130쪽.

31) 岡倉天心, 1983b, 위의 글, 11~16쪽.

32) 松本三之介, 1961, 「國民的使命觀の歴史的變遷」, 唐木順三・竹內好 共編, 『近代日本思想史講座』第8卷, 東京: 筑摩書房, 94~97쪽.

Ⅳ. 세계 '질서'와 일본제국의 '정의'

1. '동양자치'

도쿠토미 소호는 일본-세계 구도에서 제국팽창을 위한 일본 국민의 '제국적 각성'을 요구했고, 오카쿠라 텐신은 아시아-유럽 구도 위에서 '일본의 각성'과 '동양의 각성'을 요구했다. 일본-세계 구도에서 아시아는 극복의 대상이었고, 아시아-유럽 구도에서 아시아는 회귀의 대상이었다. 상이한 지역-세계 인식 틀이었지만,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찾으려는 사명감이 강렬했다는 점은 같았다. 세계(유럽)에 대해 일본의 위상을 설정하고, 동아시아 지역수준에서 패권을 지향하는 맥락이었다. 러일전쟁 승리와 한국병합은 '제국적 팽창'에 새로운 발판이 되었고, 제국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강국의 일원으로서 세계 질서 형성에 간여하게 된다. 일본제국은 1920년대 워싱턴체제와 국제연맹에 참여하면서 마침내 유럽 국제사회에 진입하고자 한 숙원을 이루었지만,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서구열강에 무시당하는 좌절감을 맛봐야만 했다. 그리고 서구 협조정책보다 만주, 화북으로 진출하는 동아시아 팽창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세계 속의 일본'이 더 이상 이념상의 목표가 아니라 실제문제가 되었을 때, 아시아 대 유럽 구도는 재부상한다. 다이쇼시대의 도쿠토미 소호는 일본이 '세계 제일의 낙토' '세계 제일의 健康地'는 아니며 메이지유신 이래 국내 공급부족을 해결하고자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강국을 지향하는 '국민적 대활동'을 기대했다. 일본국민이 '망막한 제국적 자각'은 있고, 수증기 같은 나라 자라는 있고, 때로 화염 같은 애국심은 있지만, '제국의 사명'에 관한 관념도 없고, 제국적 사명을 실천할 임무에 대한 '각오'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강국'과 '망국'의 갈림길에서 세계강국으로서의 운명을 자각하고 강국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우내통일의 천직'을 상정하고 있었다.³³⁾

다만 소호는 우선 수행할 일본의 사명으로서 황백인종 간의 균형 회복과 동서양 융화를 들었다. 소호는 백인에 순응하여 백인의 보호색을 띠는 ‘白化’를 거부하고, 황색인종의 면목을 세워 백인과 대등의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호는 제국일본에 ‘동서융화의 중개자’ ‘동서양계의 중개자’라는 ‘천직’을 부여한다. 또 다른 사명은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에 의해 처리한다’는 ‘동양자치’= ‘아시아 몬로주의’였다. 그것은 ‘일본인에 의해 아시아를 처리하는 주의’로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주도권을 상징한 이념이었다. ‘동양자치’는 백인 배척을 뜻하지는 않는다. ‘동양인의 급선봉이 되어 백인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을 향해 동양을 이해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해형제의 실을 거두는 안내자’의 임무를 상징하였다. 백인 배척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당초부터 세계를 적으로 삼아 우리 입국의 기초를 정하는 것, 이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우리는 동양자치론의 오용이 백인배척론이 되고, 백인배척론이 一轉해서 세계정복론이 되고,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써 타의 무한한 힘과 싸워 파멸에 빠지는愚를 범하지 않을 것을 미리 생각해야만 한다”³⁴⁾는 언설에서 보듯이, 백인세력에 대한 일정한 공포에서 나왔다. ‘동양자치’= ‘아시아 몬로주의’는 외부적 세력균형의 방편으로 제시되었고, 아시아(황인종)에 대한 제국적 팽창과 서양열강(백인종)에 대한 공포의 절묘한 균형 위에서 성립했던 것이다.

팽창과 공포의 절묘한 균형은 내부적 세력불균형과 외부적 세력균형의 공존이며, 만국투쟁적 국제사회관과 혁명주의적 국제사회관의 절묘한 조합을 뜻한다. 소호는 “維新興國의 대목적은 열국과 대치하는 것에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일국의 독립을 확보함은 우리 유신의 대목적이었다. 하지만 금일의 문제는 제국의 독립이 아니라 제국의 확장이다. 여기에서 동양자치론은 나왔다”고 말하면서 제국의 독립이 달성된 다음에는 ‘약소한 동포(아시아인)’의 유린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동양의 선각자인 야마토 민족의 책임”이라 강변

33) 德富蘇峰, 1978, 「大正の青年と帝國の前途」, 神島二郎 編『德富蘇峰集』, 東京: 竹間書房, 227~229쪽.

34) 德富蘇峰, 1978, 위의 글, 230~234쪽.

한다.³⁵⁾ '제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열국대치'의 현실주의적 국제사회관을 벗어나 동서양 대결구도에서는 '제국의 독립'을 그리고 동양 내부의 포용구도에서는 '제국의 확장'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사회관과 혁명주의적 국제사회관의 조합이 임혀진다.

소호의 사명관은 '세계통일'에 앞서 동서양 균형(외부적 세력균형)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물질적 제국주의'와 '정신적 제국주의'의 결합으로 구체화된다. '물질적 제국주의'는 일본 국민의 무장화를 통해 제국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정신적 제국주의'는 '[일본]제국의 세계에서 이루어야 할 이상을 내걸고 국제적 정의를 붙잡아 세계의 공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 제국주의는 물질적 제국주의를 '지도'하고, 물질적 제국주의는 정신적 제국주의를 '원호'한다. 정신적 제국주의는 '이상'이고, 물질적 제국주의는 '이상을 실행하는 힘'이다. 소호는 일본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물질적 제국주의와 정신적 제국주의를 실천하여 '강국', '義國'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義를 행하는데 우리의 強으로써 하고, 우리의 강을 이끄는데 우리의 의로써 한다"는 또한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선을 행하고 이로써 동양인의 비굴을 돕고, 이로써 서양인의 발호를 제한다"는 사명감이 작용한다.³⁶⁾ '강'과 '의'가 결합된 정의관이다. 군국주의와 인도주의의 결합이 내포되어 있다. 소호는 힘을 숭배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만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일의 성패에 따라 '名義'를 만들어 내는 군국주의와, "조리가 곧 힘이다, 정의가 곧 힘이다. 理義가 있는 곳은 천하에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인도주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가 '패자의 웅'이면서도 '정의'를 말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도리가 들어 있지 않는 힘의 妄用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맹자가 이른바, 패자는 인을 빌린다고 말한 것은 빌지 않을 수 없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필요가 있는 곳에서 정의 자체가 人事로부터 없앨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있다"고 부언한

35) 徳富蘇峰, 1978, 앞의 글, 233쪽.

36) 徳富蘇峰, 1978, 앞의 글, 235쪽.

다.³⁷⁾ ‘정의(조리)’를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포착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드러난다. 소호는 권력팽창을 생각하면서도 백인들 간에 통용되는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공통의 대도리”를 내걸고 ‘정의’를 내세웠던 것이다. ‘동양자치’는 ‘정의’와 ‘인도’의 결합적 표상이었다.³⁸⁾

2. ‘상호부조’와 ‘국제민주주의’

우치무라 간조는 청일전쟁 때 일본의 침략성을 감지하자마자 평화주의=非戰론으로 전환하였고,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더 강한 주장을 폈다. 우치무라가 말하는 ‘평화주의’란 병역거부나 군사도발을 반대하기보다는 “전쟁의 비리와 손해를 외치고, 만국이 공동하여 이를 폐지하고 중재재판으로써 이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세계지식인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각 정부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우치무라는 공법학자 그로티우스가 평화주의를 주창한 이래, 특히 최근에 국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평화주의가 ‘迂遠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 보았다.³⁹⁾ 홉스적 국제사회관을 부정한 것이다. 우치무라는 “전쟁은 천연의 법칙이며 또한 진화의 理”라는 사실, 천연계(자연계)에 ‘우승열패의 理’가 작동하고 전쟁이 주는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천연계에는 ‘협동일치’도 있고 ‘愛憐희생’도 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물의 진화가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거나 우승열패를 전쟁에만 한정시키는 발상은 ‘극히 천박한 천연관’으로서, “천연계는 결코 強者必盛, 弱者必滅의 세계가 아니”라 한다. “천연계는 修羅의 터가 아니다. 사랑과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가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⁴⁰⁾

37) 徳富蘇峰, 1978, 앞의 글, 236쪽.

38) 徳富蘇峰, 1978, 앞의 글, 232쪽.

39) 内村鑑三, 1933c, 「平和主義の意義」(1905), 『内村鑑三全集』第14卷, 372쪽.

40) 内村鑑三, 1933d, 「非戰論の原理」(1908), 『内村鑑三全集』第14卷, 402~403쪽.
우치무라는 비유로서 사슴은 싸우면 사자에게 지지만 사자에게 없는 ‘균거의 性’과

우치무라는 '평화적 팽창'을 주장한다. '평화적 팽창'이란 '인류적 관념을 기초로 하는 교육의 보급', '박애심의 주입', '외국어와 세계역사의 연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쓸모 있는 인물의 양성'을 가리킨다. 우치무라는 세계를 일본화하고자 한다면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 세계의 대강국이 되려면 '인류적 관념'을 갖고 '세계인'이 되는 것, 일본을 '세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자기를 세계인으로 해야 세계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한다. 여기서 "인류적 관념을 품은 자에게는 시베리아도 러시아령이 아니다, 우리 것이다. 알래스카도 미국령이 아니다, 우리 것이다"는 언설이 성립한다. 이러한 생각을 지탱한 것은 "理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하나다. 道에 동서의 차는 없다"라는 보편주의 사유였다.⁴¹⁾

제1차 세계대전 종결에 즈음하여 출현한 다이쇼 자유주의 국제사회관은 우치무라의 국제사회관에 연속하며,⁴²⁾ 도쿠토미 소호와는 다른 질서-정의관이였다. 전전기 일본에는 국제질서를 주권국가의 무정부적 구성물로 보는 현실주의가 유통되었고 국민국가 비판도 강했다. 다이쇼 사회주의는 사회의 자율성과 상호부조성을 중시하였다. 예컨대 다치바나 시라키(橘樸)는 중국사회의 자율성, 상호부조성에서 주권국민국가를 초극할 가능성을 읽어냈다. 다이쇼시대의 '사회의 발견'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나 사회의 공동성을 상호부조적 본능에 기초한 버트란드 러셀의 관점에 영향받은 바 컸다. 신칸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인격주의도 자유주의 사고를 양성해 냈다.⁴³⁾

이러한 지적 분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국제민주주의론과 자

'화합일치, 상호共濟의 성'이 있어 번식에서는 오히려 사자를 이긴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41) 内村鑑三, 1933e, 「平和成る」(1905), 『内村鑑三全集』第14卷, 378~379쪽.

42) 요시노는 원죄적 인간관과 종말론적인 재림설의 관점을 가진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영향을 받았는데, 다이쇼시대의 우치무라는 가장 과격한 월슨주의 비판자였다. 요시노와 달리, 우치무라는 "민본주의의 보급으로 세계개조, 인류평화를 꾀한다는 것은 미망이 이보다 큰 것은 없다"(内村鑑三, 1933f, 「聯盟と暗黒」, 『内村鑑三全集』第14卷, 523쪽)고 보았다.

43) 酒井哲哉, 2007, 앞의 책, 162쪽.

유주의적 정치관이 유통된 것과 연관된다. 국제관계의 기초가 폭력에서 정의로 바뀌고, 월슨의 이상주의·신외교·국제연맹 구상은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냈다. 미국과 소련은 세계대전의 강화조건으로서 교전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강화방식을 버리고 비병합·무배상·민족자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민본주의자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보편주의적인 ‘정의’와 ‘인도(혹은 ‘공도’), 국제규범에 의해 운용되는 국제관계를 상정했고,⁴⁴⁾ 자유평등 원리가 국제관계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국제민주주의’의 출현을 전망하였다. 일찍이 러일전쟁 때 애국주의적 ‘의전’을 주창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국제민주주의’를 비병합·무배상·민족자결의 3대 원칙을 관통하는 국제평화 원리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적 인도주의에 기초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국내정치에서 민본주의가 필연적임을 변증하였고 국제민주주의에 걸맞는 대외정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⁴⁵⁾ 요시노는 세계의 공평한 운용을 믿었고 일본이 “사실의 공평명백한 양해 위에 도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세계적 공동생활 속에서 [일본]제국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조금도 곤란은 없다”고 보았다.⁴⁶⁾ 이러한 낙관주의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다이쇼시대의 인격주의와 관련된다. 요시노는 진정한 평화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이상주의적 방면에 서는 인생관에만 수반된다고 보았다. 인격의 성장 가능성이나 상호부조적 공동 사회성에 기초한 이상주의적인 인간관과 요시노의 평화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⁴⁷⁾

요시노가 국제평화주의의 이상주의적 성격과 평화론의 도구성을 간파했던 것은 아니다. 세계평화론이 학자의 추상적인 이상설이며 영구평화론이 안보를 위한 약소국의 명분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약소국들이 정의, 공도 또는

44) 吉野作造, 1995b, 「帝國主義より國際民主主義へ」(1919); 酒井哲哉, 1995, 「〈解説〉吉野作造の國際民主主義論」, 『吉野作造選集』第6卷, 東京: 岩波書店, 316쪽.

45) 酒井哲哉, 2007, 앞의 책, 서장. 요시노는 앤젤(Norman Angell)경의 평화론 등 당시 구미에 출현한 법규범주의적 평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46) 吉野作造, 1995c, 「對外的良心の發揮」, 『吉野作造選集』, 第9卷, 東京: 岩波書店, 291쪽.

47) 酒井哲哉, 2007, 앞의 책, 서장.

국제법을 독립보전을 위한 방패로 삼아 왔고, 강대국들이 원리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익상실을 가져올 평화론을 경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대전 후에 분출한 평화구상들 — 윌슨과 테프트의 '평화강제동맹' 구상, 그레이 경의 '국제연맹' 구상 등 — 이 '국제적 정의'를 확립하고 '영구 세계평화'를 구현하려는 강대국 정치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했다. “도의의 지배가 점차 강력의 지배를 대체할 것”이라 확신했다. “도의적 창조력의 큰 조류가 汪洋하게 잠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⁴⁹⁾ 국제규범을 명분적 수단이 아니라 당위적 실재로서 인식했던 것이다.

전후 국제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도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적 국제정치관과 국제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특히 국제조직의 출현은 정의와 공도, 국제법의 상황적 수단성을 극복하고 국제정의와 영구평화를 보장할 국제법의 법규범적 기능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요시노는 문명의 진보로 국내사회에 '하나의 통일력'이 생겨났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국제상의 제재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았다. 국제법은 국가들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으로서 진보할 것이며 열강이 승인만 한다면 권위 있는 규범으로서 국제 제재력을 갖추고 '국제정의'를 구현할 것으로 믿었다. 국제연맹은 '통일적 제재력'의 생성을 보여준 사례로, 미국의 참전은 국제 제재력의 행사로 여겨졌다. 국제연맹 창설을 계기로 약소국 주장에 불과했던 국제법 강제조직이 실현되고 '국제정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법이 명하는 바 대국도 소국도 없다. 국제법에서 본다면 諸國 평등이어야만 한다”는 국가평등관념이 작용하였다.⁵⁰⁾

국제적 제재력의 근거는 '정의'였다. 요시노는 “정의의 힘은 정의를 유린할 때마다 더욱 반발적으로 그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는 국민의

48) 吉野作造, 1995d, 「國際聯盟は可能なり」, 『吉野作造選集』第6卷, 東京: 岩波書店, 4~5쪽.

49) 吉野作造, 1995c, 앞의 글, 283쪽.

50) 吉野作造, 1995d, 앞의 글, 5~8쪽.

여론이 되어 도저히 이를 유린할 수 없는 엄연한 제재력이 된다. 제재력은 일종의 사회적 세력이 된다.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한 일종의 국제법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는 국제적 제재력은 사회 전체의 확신이 없으면 행해지지 않는다. 확신이 제재의 근본이다”⁵¹⁾고 역설한다. 국제사회의 ‘사회적 제재력’으로서 국제규범(국제법)의 진화를 낙관하는 신념이 엿보인다. 유의할 것은 ‘정의’가 유린을 당할 때 의식되며 ‘국민의 여론’이 되었을 때 ‘엄연한 제재력’을 가지며 ‘사회전체의 확신’이 있을 때 기능한다는 관점이다. ‘정의’ ‘사회적 제재력’ (국제법)이 절대이념의 소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확신’에 따른 사회적 형성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국제적 제재력’(국제규범)을 진보의 산물로 파악하고 국제사회를 국내사회의 類比로 보았을 때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확신’이 없다면 국제법의 제재력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요시노는 ‘열강의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여야만 했다.

요시노는 흡스적 국제사회관(realism)을 거부한다. 절대규범에 의해 상정된 목표를 향한 진보보다는 일정한 권력이 개재된 합의를 통한 사회적 구성을 선호했다. 국제규범과 국제양해(도의)와 ‘열강의 승인’에 기초한 질서 구상은 그로티우스적 국제사회관(rationalism)에 가깝다. ‘(국제)정의’는 도의적 정의로 상정되지만 질서를 규율하는 절대적 규정성을 갖긴 어렵다.⁵²⁾ 요시노의 국제사회관은 “일본은 이제 완전히 세계의 일국이 되었다”는 자의식에 기초한다. 세계대세에 수동적이던 일본 국민들이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세계경영에 적극 참여하려는 ‘세계적 의식’을 갖게 되고, 일본에 별 관심이 없던 세계(서양열강)도 일본의 발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⁵³⁾ 일본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각에서 ‘세계의 대세를 항상 발전시키’는, ‘세계의 진보에 대한 [일

51) 吉野作造, 1995d, 앞의 글, 8쪽.

52) ‘도의’도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는 구석이 있다. 요시노는 일본 국민이 ‘도의심’이 둔한 까닭을 “정치라는 것이 국민에게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선악의 판단이 아직 사회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데서 찾고 있다(吉野作造, 1995c, 앞의 글, 283쪽).

53) 吉野作造, 1995e, 「世界の大主潮と其順應策及び對應策」, 14쪽.

본의] 특별한 사명'이 상정된다. 요시노는 세계에 대해 개체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기에 앞서 세계의 대세를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순응'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일본의 '특수의 국체(천황제)'가 민본주의에도 유용하고 세계 대세에 부응하면서 세계문명에 공헌할 것이라 믿었지만, '세계의 일국'으로서 생존발달의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민본주의에 철저하고 '정의'를 '국제교통'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정의의 철저'를 지향하는 '민본주의의 철저'와, '국제적 정의의 확립'을 의도하는 '국제적 평등주의의 확립'은 짝을 이루었다. 양자는 '정의 공평을 나라의 안팎에 퍼는 것이며, 실로 인류공통의 대이상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특색'이나 '세계의 진보에 대해 특수의 사명'은 일본이 '정의를 내외에 퍼는 나라'가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⁵⁴⁾ 요시노는 '일본 대 세계' 구도보다는 '세계 속의 일본' 구도를 상정했던 것이다. 일본적 특수성은 세계적 보편성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었다.

V. 대동아공영권의 '질서'와 '정의'

1. '협동호조'와 국가주의 생활

'세계 속의 일본'을 상정하는 일원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관은 세계강국들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으로 '국제민주주의'의 가망이 상실될 때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유럽 대 아시아' 구도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써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이 고개를 들게 된다. 대아시아주의자 오카와 슈메이[大川 周明]는 '유럽 대 아시아' 구도와 '투쟁 대 협동호조'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보

54) 吉野作造, 1995e, 위의 글, 15~20쪽.

았다. 국제사회는 ‘세계의 독재자’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확신하고 세계제패의 각축을 아시아에서 속행하는 유럽⁵⁵⁾과, ‘유럽의 노예[臣隸]’인 아시아로 대비된다. 아시아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유럽-아시아 간 불균형, 즉 외부적 세력불균형을 극복해야만 한다. 오카와는 외부적 세력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의 역사적 우월성(문명성)을 끌어낸다. 유럽이 야만이었을 때 아시아가 문학, 철학, 도덕, 종교 등의 찬란한 문화와 정치제도, 과학기술을 영위했음을 환기시키면서 ‘역사에 나타난 특질’과 ‘세계문화에 공헌한 사실’을 보았을 때 아시아는 결코 유럽에 뒤지지 않다고 보았다.⁵⁶⁾

유럽의 폭력성과 투쟁성도 지적한다. 오카와에 따르면, 유럽 민족이 세계 주인공이 된 것은 ‘정의인도의 선수’여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예속자이기보다는 지옥에서 지배자임’을 바라는 ‘강건무비의 전투적 의지’ 때문이다. “유럽인은 다년의 전쟁으로 살인에 익숙하고 유혈에 익숙해졌다. 여기서 배양된 살벌의 기상은 폭력으로써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게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⁵⁷⁾ 오카와는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명분으로 내걸렸던 ‘정의’와 ‘자유’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의’와 ‘자유’를 구현한다는 국제연맹에도 비판적이었다. 국제연맹 규약의 영토보전 및 독립존중 조항(제10조)은 “예속국민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빼앗고, 약소국민으로부터 강대하고자 하는 권리를 빼앗고, 신흥국민으로부터 老齡국민의 후계자인 권리를 빼앗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다. 즉, 구미열강의 ‘국제적 정의’는 구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의 現狀을 보전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국제연맹은 불의와 예종을 옹호하는, ‘理法’을 막는 ‘非法’으로 폄하되었다.⁵⁸⁾ 오카와는 현상유지와 이익존속을 의도한 ‘국제적 정의’라는 ‘간판과 문구’가 ‘이미 예속민족의 혼에 진정한 자유와 정의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요구를 고취’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지하였다. 자본주의의 ‘낡은 유럽’은 ‘혁명’을 통해, ‘피압박[雌伏] 아시아’는 ‘부흥’을 통해 ‘새로운 세계사’가 구성될

55) 大川周明, 1922, 『復興亞細亞の諸問題』, 東京: 大鐙閣, 1922, 5쪽.

56) 大川周明, 1922, 위의 책, 2쪽.

57) 大川周明, 1922, 앞의 책, 18~19쪽.

58) 大川周明, 1922, 앞의 책, 21~23쪽.

것으로 보았다. ‘혁명 러시아’가 국가생활을 대표하지 못하는 민주 의회정치를 ‘일축’하고 “국민의 경제적 생활에 입각해서 유기적인 정치적 조직을 단행하고 바르게 선발된 소수자의 혼에 의해 신러시아를 통일지도하고자”⁵⁹⁾ 하면서, 또한 ‘부흥 러시아’가 자유와 정의의 관념을 갖게 되어 “현상유지에 기초한 국제 연맹의 정신을 부수고 유럽 세계제패에 도전하는 기세가 전체 유색인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새로운 세계사’가 출현했다는 견해다. “혁명유럽과 부흥아시아는 새로운 세계사를 經緯하는 근본요소”였고, 그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오카와에 의하면, 러일전쟁이 아시아민족들에게 ‘자각’과 ‘희망’을 주고 일본에 ‘세계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었다면, 세계대전은 아시아 민족에게 유럽에 대항하여 이중의 독립 — ‘정신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 — 을 요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인들에게는 ‘아시아 불안’을, 아시아인들에게는 ‘아시아 부흥’을 자극하였고 ‘새로운 세계사’의 출현을 가져왔다.⁶⁰⁾

오카와가 말하는 ‘새로운 세계사’는, 자본주의 유럽의 변화(혁명)와 피압박 아시아의 변화(부흥)라는 추진력이 ‘유럽 대 아시아’ 구도를 재구축함으로써, 즉 유럽 약화와 아시아 부흥에 의한 ‘외부적 세력균형’의 가능성을 열면서, 아울러 유럽의 ‘국제적 정의’를 논박하고 유럽의 ‘혁명’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유럽이 구성한 ‘세계’의 ‘외면적 제도’에 함축된 ‘非法’를 추궁함으로써 출현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자체의 ‘부흥’ 방식이다. 오카와는 아시아의 강함이 타자의 강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아시아가 적보다 뛰어난 ‘고귀한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⁶¹⁾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적보다 뛰어난 고귀한 사상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혁명 러시아를 논하면서 국가생활과 정치조직의 유기적 존재방식에 주목한 대목에서 오카와가 정의와 자유를 국가와 사회의 유기적 존재방식과 결부시켜 생각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 개연성은 자본주의적 사회조직에 대한 비판과 협동주의적 국가주의 생활에 대한

59) 大川周明, 1922, 앞의 책, 5쪽.

60) 大川周明, 1922, 앞의 책, 21~28쪽.

61) 大川周明, 1922, 앞의 책, 28쪽.

옹호로 나타난다. 오키와는 세계대전 종결 후 수백만 군인들이 “협동호조를 근본철칙으로 하는 전장생활”로부터 “최소의 노력으로써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主義로 삼는 利己의 회사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자본주의적 사회조직에 느꼈을 불만을 환기시키면서 “일개의 인간이 단지 토지, 광산 또는 기계를 소유하는” 자본주의 생활방식이 국민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⁶²⁾ “이기적 경쟁”의 자본주의 세계와 “협동호조”의 국가주의 생활의 대비에서 상정되는 자유와 정의는 “협동호조”의 국가주의 생활에 구속받기 마련이다.

1922년에 제시된 오키와의 주장들은 국제연맹이라는 “외면적 제도”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다이쇼 민본주의 논쟁이 한풀 꺾인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에 들면 일본은 만주사변 도발(1931)과 국제연맹 탈퇴(1933) 등 국제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서 행동하게 된다. 만주사변은 부전조약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국제연맹 탈퇴는 워싱턴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일본 지식인들은 관동군의 행동을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하고 부전조약 적용을 회피하면서 국제질서와의 조정을 꾀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기초한 안전보장 체제는 결함을 보였고, 보편주의적 국제정치관과 국제법공동체의 점진적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는 무너져 갔다.

2_ ‘영미본위의 평화’와 ‘동아신질서’

한편 ‘세계’와 ‘정의인도’를 세계정치의 자유주의 조류와 보편주의 국제정치관에 입각한 낙관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는 정치적 사유도 있었다. 국제불평등을 상정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질서-정의에 관한 언설들이 영미 중심의 세계정치에 대항하는 맥락과, 구성국가·민족들의 이질성과 차이성으로 세력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운 공간을 전제로 생산되었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의인도’ 관념에 대항하는 ‘신질서’와 ‘동양평화’에 관한 정치적 사유가 부상했던 것이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는 다이쇼기·쇼와기에 세계정치에서의

62) 大川周明, 1922, 앞의 책, 17~18쪽.

배분적 정의와 '공정한 신질서'를 주창한 귀족 정치가였다.

고노에 후미마로는 1918년 논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영미 본위의 평화'로 규정하고 현상(status quo)의 질서를 타파하고 '신질서'를 구축할 것을 제창하였다. '가진 나라(현상유지 국가)'와 '못 가진 나라(현상 타파 국가)'의 불균등한 국제사회를 상정하면서 '못 가진 나라' 일본의 국제생존권을 위한 국제정의로서 '신질서' 구축을 주장했다.⁶³⁾ '국제정의'='정의인도'는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부정하는 세계조류에 부응하여 '경제적 제국주의'를 배격하고 '황색인의 무차별 대우'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의 생존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였고, 현상타파를 위한 일본의 대륙정책을 정당화하고 국제연맹의 '불공정'에 대항하는 명분이었다. '정의인도'에 기초한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한 조건은 영토·자본의 불공평한 분배의 해소, 즉 '경제교통의 자유'와 '이민의 자유'를 포함한다.⁶⁴⁾ 세계정치 현상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모순을 추궁하는 사유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의관은 30년대에 들면 일본의 대륙정책과 맞물리면서 굴절하게 된다.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확장하려는 일본의 대륙정책이 만주 침략과 중일전쟁으로 나타나고, 중국 내셔널리즘이 출현하면서 '질서'와 '정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만주사변의 도발을 정당화하면서 동북아의 '질서' 변경을 통해 '일본 본위의 동양평화'를 추구하고 '아시아주의'를 '정의'로 내세워 포장하는 정치적 사유를 형성했다.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아시아주의가 못 가진 나라의 연대를 표방한 것이라면, 쇼와 초기의 아시아주의는 황인종-백인종 간 인종대립을 내걸어 중일 간 민족대립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서 동원된 것이다. 어느 경우건 일본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였지만, 국제정의의 주체와 가치가 '일본 본위'로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63) 「英米本位の平和主義を排す」(1918), 北岡伸一 編, 1995, 『戦後日本外交論集』, 東京: 中央公論社.

64) 庄司潤一郎, 1989a, 「新秩序の模索と國際正義・アジア主義—近衛文鷹を中心として」, 『國際政治』 91, 日本國際政治學會, 40~41쪽.

1937년 6월 제1차 고노에 내각이 성립하면서 “국제정치의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는 대외정책의 기조로 구체화된다. 고노에는 ‘국제정치의’는 영토와 자원의 재분할, 즉 공평한 분배가 행해지지 않으면 철저히 할 수 없지만, “경제적 국가주의”가 대두하는 현 국제정세에서는 그러한 분배는 “공상”에 불과하며, 국제정치의가 실현될 때까지 못 가진 나라인 일본은 자원획득의 자유, 판로개척의 자유, 노력이동의 자유 등 차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며, 대륙정책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⁶⁵⁾ 오키와 슈메이가 ‘세계(유럽) 대 일본’ 구도와 인종대립의 관점에서 ‘아시아 부흥’을 상정한 것과 달리, 고노에 후미마로는 ‘가진 나라 대 못 가진 나라’ 구도를 상정하면서 ‘국제정치의’의 실현은 경제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생존권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신질서’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고 ‘국제정치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⁶⁶⁾

1920년대 자유주의 질서-정의관을 대체한 1930년대, 1940년대 수정주의(혁명주의) 질서-정의관은 ‘동아연맹’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 등 지역공동체를 지향한 것이었다. 세계정치와 서구 제국주의에 대응하면서 제국을 구축하려는 일본정치가, 지식인들의 질서변혁 의식과 정의관념이 만들어 낸 신질서=지역공동체였다. 특히 ‘동아협동체’는 지역주의자들에 의해 민족 간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운명협동체’로서 구상되었다. “日滿支의 공고한 제휴를 추축으로 삼아 동아영원의 평화를 확립하고, 이로써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⁶⁷⁾

65) 庄司潤一郎, 1989b, 「日中戦争の勃發と近衛文麿「國際正義」論」, 『國際政治』 91, 日本國際政治學會, 39쪽.

66) ‘국제정치의’와 ‘신질서’의 상관성은 고노에의 시정연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모든 정책을 우리 존엄한 국체의 정수에 귀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수의 발로는 밖으로는 국제정치의에 기초하고 열국과 함께 진정한 세계평화를 확립하는 데 진력하고, 국위를 더욱 선양하는 것이다. 안으로는 대의명분을 밝히고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각자 그 바를 얻게 하여 국운의 견실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제71회 제국회의 近衛文麿 수상 시정방침 연설, 1937년 7월 27일).

67) 제73회 제국회의, 近衛文麿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 1938년 1월 22일.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의 동아협동체론은 영토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블록경제에 기초한 일본자본주의, 도의적 경제관계를 매개로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지역 구상이었다. 일본의 '대륙경영' 원리를 서양의 '영토적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와 차별화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군사적 강압을 통한 '화북분리 공작'에 대응하여 '문화적 기초'='도의'를 강조하면서 민생, 즉 복지의 지역화에 의한 운명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두된 일본제국의 '대륙경영'을 "민족협화를 내포한 지역적 개발"을 핵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지역주의는 아시아에서 서구 제국주의와 투쟁하면서 아시아 제민족과 제휴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원리였다. 이중과제는 일본이 '태평양 주변의 나라'이자 '아시아 주변의 나라'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생성되었고, 이중과제를 해결하려는 '사명'은 이러한 '지정학적 필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⁶⁸⁾ 동아협동체론은 자본주의·제국주의 세계질서를 타파하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현상변경 전략이었던 셈이다. 서양의 '패도' '투쟁' 이념에 대항하여 '왕도' '협화'의 윤리적 질서이념과 '개발' '경영'의 경제적 정의관념이 표방되었다.

3_ 대동아공영권과 질서-정의

1920년대 다이쇼 일본제국의 지식인들이 공식제국(내지-외지) 내에서 상호부조 관념에 의거하여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동북아 수준의 '사회의 발견'을 시도했다면,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는 공식제국과 동아시아 민족국가들(만주, 중국, 동남아) 간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원리로 재구성하려는,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 민족국가들을 비공식제국에 포섭하려는 동아시아 수준의 '사회의 재구성'이 의도되었다. 대동아공영권은 제국과 비제국을 포괄하는 광역권이

68) 임성모,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 『세계정치』 26-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111~114쪽. 로야마는 지정학자 맥킨더의 '대륙세력-해양세력'론에 입각하여 동아시아는 '두 개의 육지[유럽과 미국]와 바다[태평양]의 운동이 상호결합하는 지점'으로 파악하였다. 蠟山政道, 1941, 『東亞と世界』, 改造社.

었다.

일본의 ‘사명’=‘정의’는 ‘대륙경영’ ‘민족협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제국정부는 중국 내셔널리즘을 용인하는 협동체 구상에 비판적이었고, 중국 내셔널리즘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광역권 구상을 선호했다. ‘대동아공영권’은 질서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우선 ‘세계(유럽) 대 일본’ 구도에서 일본 중심의 광역권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영미 본위의 질서’를 타파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구도에서 질서는 주권국가체제의 운용원리인 주권·국제법·세력균형을 기반으로 한 국가평등을 질서원리로 한다. 또한 ‘일본제국 대 동아시아’ 구도에서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공영권 질서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 동아시아를 일본의 질서관념이 투영된 ‘대동아’ ‘신질서’로 재편하는 것이다. 주권국가체제의 틀과 일본적 혹은 유교적 질서원리를 결합시켜 제국영역(imperial sphere)으로서의 ‘동아’를 구축하는 것이며, 동아시아의 네이션(민족)을 인정하면서 ‘네이션의 超出’을 꾀하는 ‘신질서’ 형성이었다. 제국과 식민지로 구성되는 공식제국 내에서는 지배-피지배 질서가 작동하지만, 비공식제국의 민족들을 포괄하는 대동아 신질서는 ‘민족평등’과 ‘제국국제법’에 의거하는 질서, 즉 일본민족과 동아민족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조약으로 규율하는 질서로 상정되었다.

여기에는 강력한 질서변경(현상타파)의 의지가 작용했고 강력한 사명의식이 수반되었다. 혁명주의로서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전통적 제국관념과 근대적 국가관념의 절묘한 결합물이라 할 수 있다. 외부(세계)적 세력균형을 위한 경쟁적 ‘투쟁’과 내부(동아시아)적 세력불균형을 은닉한 비경쟁적 ‘공영’이 공존하는 것이며, 홉스(현실주의)적 이미지와 칸트(혁명주의)적 이미지의 혼재를 감지할 수 있다. 외부적 세력균형을 위한 투쟁과 내부적 세력불균형의 공영을 위해서는 절대화된 질서이념과 정의관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왕도’, ‘가족국가’, ‘직분’, ‘공영’ ‘팔괘일우’와 ‘아시아 민족의 해방’이라는 말은 각각 ‘대동아공영’의 질서와 정의를 표방하는 상투어로서 창출, 유포되었고, 疑似 절대이념으로서 기능하였다.

대동아공영권의 제국 구상은 ‘세계’와 ‘일본’을 보는 시선의 전환을 내포한다. 만주사변 이후, 특히 중일전쟁과 ‘대동아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대 일본’은

‘유럽 대 일본’으로 한정되었고 ‘유럽 대 일본’은 ‘일본 대 유럽’으로 바뀌었다. ‘세계’는 메이지·다이쇼시대에는 ‘유럽(문명) 본위’의 세계로서 추종해야 할 소 여였다면, 이제는 ‘일본’을 매개로 재구성해야 할 당위적 구축물로서 표상되었다. ‘세계 속의 일본’으로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한 세계’의 재구성이 모색되었다.

교토 학파 지식인들은 이러한 세계의 재구성에 관여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세계사의 철학’, ‘세계사적 세계’를 표방하면서 (서구적) 근대의 초국, ‘세계사’의 재구성, ‘세계’의 재구축을 모색했다.⁶⁹⁾ 교토 학파의 태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는 ‘세계사적 사명’을 말한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적 자각’에서는 타국을 종속시키는 국가의 강국화가 ‘역사적 사명’이었다면, 20세기 국가들은 각자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하나의 세계사적 세계, 즉 세계적 세계를 구성하는 ‘국가민족의 세계적 자각’을 가져야 한다.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해서 각자가 “자기에 卽하면서도 자기를 넘어 하나의 세계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18세기식 추상적 세계이념에 기초하여 “민족의 평등한 독립을 인정하는 민족자결주의”가 아니라 “각자 자기를 넘어 각각의 지역전통에 따라 먼저 하나의 특수적 세계를 구성”하고, “각 국가민족이 개성적인 역사적 생명을 살면서 각각의 세계사적 사명으로써 하나의 세계적 세계에 결합하는 것”이다. 즉 ‘세계’는 ‘개성적 통일’이다. 국가민족을 부정하는 추상적·비실재적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실재적 세계를 상정한다.

니시다의 ‘세계적 세계형성’은 ‘多와 一의 매개’로서의 동아공영권 형성을 지향한다. 공영권=‘세계 신질서의 원리’는 ‘만방으로 하여금 각자 자리를 얻게 한다’는 ‘八紘爲宇’ 이념이다. 동아공영권 구성은 유럽 제국주의를 벗어나 ‘동아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 자기를 넘어 하나의 특수적 세계를 구성하고, 그리하여 동아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당화된

69) 이에 관해서는 森哲郎 編, 2000, 『世界史の理論』, 京都: 燈影舎; 高山岩男, 2002, 『超近代の哲學』, 京都: 燈影舎; 나카무라 미츠오, 니시다니 게이 지 외, 2007, 『태평양 전쟁의 사상』, 서울: 이매진.

다. 일본민족은 ‘하나의 특수적 세계’를 구성하는 과제를 맡은 ‘중심’으로 설정된다. 니시다는 공영권의 중심민족=‘지도민족’은 국제연맹처럼 ‘추상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세계적 세계형성’의 원리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며, 그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일본인은 ‘세계적 세계형성’을 위한 유일한 ‘도덕적 사명과 책무’를 갖는다고 말한다. ‘세계적 세계형성주의’는 일본 특유의 주체적 원리로 간주된다. 그리고 ‘皇道’에서 ‘팔굉위우’의 세계형성 원리를 도출하면서 일본 황실을 ‘하나의 민족적 국가의 중심’만이 아니라 ‘세계적 도의’의 근거로 설정한다.⁷⁰⁾

일본 주도의 광역권(제국) 질서를 구축하려는 제국일본의 정의는 ‘아시아민족 해방’과 ‘협화공영의 신질서 구축’이었다. ‘동아연맹’, ‘동아협동체’, ‘대동아 공영권’ 등 지역공동체 구상은 유교이념을 가미한 일본적 구성원리에 기초한, 일본적 질서관념과 정의관념의 복합적 소산이었다. ‘아시아’는 이러한 질서-정의 관념이 투영된 표상이었고, ‘동양평화’는 일본제국의 질서형성뿐 아니라 서양열강에 대항하는 정의의 명분이었다. 질서와 정의는 중국민족주의의 저항에 따른 화북전선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거나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통해 서구열강에 대항하려는 전략의 소산이었다. ‘질서’와 ‘정의’는 일본제국의 팽창이라는 전략적 명제 속에 환원될 수밖에 없었다.

VI. 맺음말

국제질서와 국제정의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감각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위상의 등고를 지향하는 정치적 의지에서

70) 西田幾多郎, 1966, 「世界新秩序の原理」, 『西田幾多郎全集』第12卷, 東京: 岩波書店.

나왔다. 국제체제에서의 국가위상과 위상상승의 의지는 '질서'와 '정의'에 관한 생각을 규정하였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일본 지식인들에게 현실의 '질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타파해야 할 대상이었다. 새로운 위상을 얻으려는 질서 변경의 의지와 행위는 이를 정당화하는 '정의'를 낳았다.

근대일본 지식인들의 국제사회관에서 '질서' 수정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도덕성으로서의 '정의'는 일본-아시아 구도에서는 '문화화'가, 아시아-세계 구도에서는 '민족해방'이 각각 상정되었다. 하지만 윤리적 도덕성은 전략적 의도의 소산이었다. 질서와 정의의 유력한 근거는 오히려 상호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권력적 기능성과 규범적 합리성이었다. 일본-아시아 구도에서 주권평등적 근대국제법은 규범(합리성)의 근거이자 권력행사(기능성)의 수단이었고, 아시아-세계 구도에 들면 일본을 '지도국'으로 설정하면서 '대동아' 민족들과의 조약관계로 연결하는, 주권평등적 근대국제법과 위계적 직분질서를 교묘히 결합시켜 주권불평등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이른바 '대동아국제법'이 구상되었다. 권력적 기능성과 규범적 합리성은 결합되어 나타났고, 이와 관련된 팽창주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고자 윤리적 도덕성이 표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 像과 질서-정의관의 밑바탕에 있었던 정치적 사유는 일본과 서구 사이의 문명적, 경제적 격차였다. 메이지시대에 부국강병을 위한 '문명개화' 그리고 '문명화'를 내세운 '의전'의 개념은 서구와의 문명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아시아와의 문명적 격차를 추구함으로써 국권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담고 있었다. 메이지 이후에는 서양열강과 일본제국 사이의 힘의 격차는 공식적으로는 구미열강에 대한 협조정책을 낳았지만, 정치지도자와 지식인들은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간의 경제적·군사적 불평등 구조=질서를 상정되고, 불평등 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정의'를 주창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배분적 정의'일 수는 없었다. 유럽-일본 구도의 세력불균형을 재편하려는 권력정치적 현실주의의 소산이었고, 일본-아시아 구도에서는 불평등 질서의 경제적·군사적 광역권을 구축하는 것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관, 질서-정의관이 국제체제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는 것은 이

념적·철학적 토대가 취약함을 반증한다. 이념적·철학적 분위기를 드러낸 1920년대 자유주의적 질서-정의관까지도 ‘국제민주주의’가 표방되는 ‘전후체제(베르사이유 체제)’라는 국제체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바 크다. 기독교적 인류애와 평화와 자유에 기초한 윤리적 도덕성을 중시한 우치무라 간조,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난바라 시게루[南原繁]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군국주의 전시체제하에서도 자유주의 명맥을 지키면서 권력정치적 질서-정의관과 국제론적 국제사회관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지만, ‘제국적 민족’의 생존을 모색하는 제국체제의 질서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패전 후 성립한 ‘평화헌법’은 ‘평화’를 질서와 정의의 절대 준거로 상정하는 새로운 질서-정의관을 창출한 윤리적 도덕성을 제공한다. 평화헌법은 “일본국민은, 항구의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제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할 것을 결의하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할 것을 선언하였다. 평화헌법은 새로운 질서-정의관을 지탱하는 유력한 규범으로서 기능했다. 하지만 전후 보수정치가들의 현실주의 국제질서관과 진보세력의 평화주의는 상이한 의미에서 국제체제 의존적 사유의 존속을 시사한다. 추상적 세계를 상정한 질서-정의관과 구체적 세계에 즉한 질서-정의관의 상호 관련, 대립의 양상을 통해 현대일본의 국제사회관의 성질을 포착하는 것은 또다른 의제를 구성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岡倉天心, 1983a, 「日本の覺醒」, 『東洋の理想:他』, 平凡社.
- 岡倉天心, 1983b, 「東洋の理想」, 『東洋の理想:他』, 平凡社.
- 高山岩男, 2002, 『超近代の哲學』, 燈影舎.
- 近衛文麿, 1995, 「英米本位の平和主義を排す」, 北岡伸一編, 『戦後日本外交論集』, 中央公論社.
- 近衛文麿首相 施政方針演説, 第71回帝國會議(1937. 7. 27)・第73回帝國議會(1938. 1. 22).
- 吉野作造, 1995a, 「露國の敗北は世界平和の基也」, 『吉野作造選集』第5卷, 東京: 岩波書店.
- 吉野作造, 1995b, 「帝國主義より國際民主主義へ」, 『吉野作造選集』第6卷, 東京: 岩波書店.
- 吉野作造, 1995c, 「對外的良心の發揮」, 『吉野作造選集』第9卷, 東京: 岩波書店.
- 吉野作造, 1995d, 「國際聯盟は可能なり」, 『吉野作造選集』第6卷, 東京: 岩波書店.
- 吉野作造, 1995e, 「世界の大主潮と其順應策及び對應策」, 『吉野作造選集』第6卷, 東京: 岩波書店.
- 나카무라 미즈오·니시타니 게이 지 외, 이경훈 등 옮김, 2007, 『태평양전쟁의 사상』, 이매진.
- 內村鑑三, 1933a, 「世界歴史に徴して日支の關係を論ず」, 『內村鑑三全集』第2卷, 東京: 岩波書店.
- 內村鑑三, 1933b, 「日清戰爭の義」, 『內村鑑三全集』第2卷, 東京: 岩波書店.
- 內村鑑三, 1933c, 「平和主義の意義」, 『內村鑑三全集』第14卷, 東京: 岩波書店.
- 內村鑑三, 1933d, 「非戰論の原理」, 『內村鑑三全集』第14卷, 東京: 岩波書店.
- 內村鑑三, 1933e, 「平和成る」, 『內村鑑三全集』第14卷, 東京: 岩波書店.
- 內村鑑三, 1933f, 「聯盟と暗黒」, 『內村鑑三全集』第14卷, 東京: 岩波書店.
- 大川周明, 1922, 『復興亞細亞の諸問題』, 大鐙閣.
- 徳富蘇峰, 1916a, 「征清の眞意義」, 『蘇峰文選』, 民友社.
- 徳富蘇峰, 1916b, 「日本國民の活題目」, 『蘇峰文選』, 民友社.
- 徳富蘇峰, 1916c, 「宣戰の大詔を捧讀す」, 『蘇峰文選』, 民友社.

- 德富蘇峰, 1916d, 「義憤論」, 『蘇峰文選』, 民友社.
- 德富蘇峰, 1916e, 「わが國民の抱負」, 『蘇峰文選』, 民友社.
- 德富蘇峰, 1916f, 「東亞の日本と宇内の日本」, 『蘇峰文選』, 民友社.
- 德富蘇峰, 1978, 「大正の青年と帝國の前途」, 神島二郎 編, 『德富蘇峰集』, 筑摩書房.
- 德富蘇峰, 1985, 『吉田松陰』, 岩波書店.
- 蠟山政道, 1941, 『東亞と世界』, 改造社.
- 陸奥宗光, 1933, 『蹇蹇錄』, 岩波書店.
- 福澤諭吉, 1959, 『學問のすすめ』初編, 『福澤諭吉全集』第3卷, 岩波書店.
- 福澤諭吉, 1961, 「日清の戦争は文野の戦争なり」, 『福澤諭吉全集』第14卷, 岩波書店.
- 森哲郎 編, 2000, 『世界史の理論』, 燈影舎.
- 西田幾多郎, 1966, 「世界新秩序の原理」, 『西田幾多郎全集』第12卷, 岩波書店.
- 松本三之介, 1961, 「國民的使命觀の歴史的變遷」, 唐木順三・竹内好 共編, 『近代日本思想史講座』第8卷, 筑摩書房.

〈2차 자료〉

- 임성모, 2005,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 『세계정치』 26-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장인성, 2009a,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찾아서」,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10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논형.
- 장인성, 2009b, 「영국학과 국제사회론과 근대동아시아의 국제사회화에 관한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제27집 제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橋川文三, 松本三之介 共編, 1971, 『近代日本政治思想史』1, 有斐閣.
- 石田雄, 1989, 『日本の政治と言葉』, 東京大學出版會.
- 庄司潤一郎, 1989a, 「新秩序の模索と國際正義・アジア主義-近衛文麿を中心として」, 『國際政治』91, 日本國際政治學會.
- 庄司潤一郎, 1989b, 「日中戦争の勃發と近衛文麿「國際正義」論」, 『國際政治』91, 日本國際政治學會.
- 酒井哲哉, 1995, 「〈解説〉吉野作造の國際民主主義論」, 『吉野作造選集』第6卷, 岩波書店.
- 酒井哲哉, 2007, 『近代日本の國際秩序論』, 岩波書店.
- 丸山眞男, 1986, 『「文明論の概略」を読む』, 岩波書店.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Macmillan.
- Hurrell, Andrew, 2002, "Foreword,"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3rd ed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yall, James, 1990,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yle, Kenneth B., 2007,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PublicAffairs.
- Suzuki, Shogo, 2005, "Japan's Socialization in Janus-faced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 1.
- Vincent, R. J., 1986,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Order and Justice in Modern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Empirical Japanese Intellectuals' Idea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Jang, Inseong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how modern Japanese intellectuals managed the concepts/ideas of *order* and *justice* in the context of constructing Japan-center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modern East Asia. The international system change from China-centered empire to sovereign state system, and to Japan-centered empire in modern East Asia was driven by Japan's idea of *order* and its foreign policy. Japan actively pursued the formation of Japan-centered *order* and championed the cause of *justice* for justifying the newly forming order in the course of the system change. This means that the concepts of *order* and *justice* implied Japan's idea of foreign policy and its image of international society.

Grasping for the meaning of the two interrelated concepts will lead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society in modern East Asia. Reading the meaning of the two concepts from Japanese intellectuals' discourse o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clarify the nature of modern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that of *order* and *justice* modern Japan managed for its own national interest.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finds out agenda and issues of *order* and *justice*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realm and investigates

its implication for the East Asian context. The latter part of it implements discursive analysis of *order* and *justice* in each phase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changes: phases from the China-centered empire system to the sovereign state system, and from the sovereign state system to the Japan-centered empire system.

keywords

order, justice, the China-centered system, the sovereign state system, the Japanese Empire, international society, modern East Asia

러시아 로스토프주 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

김혜진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신생독립 공화국들의 출현과 소련 전역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의 대이주를 야기하였다. 1937년 강제유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대거 거주하고 있었던 고려인들은 1950년대 중후반 거주제한이 해제되면서 러시아로의 이주를 시작하였다. 그 후로도 꾸준히 진행되었던 고려인들의 러시아 재이주는 소련 해체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재이주하는 원인을 파악해 보자면, 여러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 원인은 크게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된 자민족중심주의적 분위기, 둘째, 러시아 내 언어적 장벽의 부재, 셋째,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노동과 교육의 기회, 넷째, 분산된 가족찾기, 다섯째, 고려인 권리신장에 대한 러시아 법령의 발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

아시아 공화국들의 독립 이후 각 국가에서는 각자의 민족어를 국어로 삼았으며, 민족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전까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국가의 민족어를 굳이 습득할 필요가 없었던 고려인들은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기회에서 차별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과 중앙아시아 사회 전체에 불어 닥친 민족주의 열풍으로 인해 고려인들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보다 더욱 친밀함을 느끼는 러시아를 새로운 이주지로 고려하게 되었다.

언어적인 문제는 노동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독립 이후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찾지 못하던 중앙아시아에 비해 러시아에서는 더 나은 임금과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고려인들이 자녀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안겨 주기 위해 이주를 감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붕괴로 새로운 국경들이 나뉘지고 한 국가에 거주하였던 가족과 친인척들이 한순간 각기 다른 국가에 놓여지면서 분산된 가족들을 찾고 같이 모여 살기 위해 이주를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러시아에서 고려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법령이 공포된 사실은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에 힘을 실어 주었다. 러시아 정부가 1991년 4월 ‘탄압받은 민족들에 대한 복권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1993년 4월 ‘고려인 복권법’에 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고려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억압받은 민족’이라는 누명을 벗고 오랫동안 감춰 오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민족성이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¹⁾ 그리고 러시아가 자국 내 수많은 민족이 자신들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1995년 ‘사회단체에 대한 법’과 1996년 ‘민족문화자치에 대한 법’을 승인하면서 소수민

1) 이 법에 따라 국가의 보상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류 구비 준비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다. 예를 들면 강제이주를 당한 사실 그리고 유형지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하나, 강제유형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데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족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이는 중앙아시아 내 민족주의에 위협을 느낀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를 촉진시켰다.

러시아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고려인들은 첫째, 강제이주 전 부모님 세대가 집단거주하였던 극동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연해주 지역, 둘째,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셋째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이동하기 쉬운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 외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의 이주 또한 이루어졌다. 이 지역들 중 로스토프 지역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많은 고려인들이 재이주하여 현재 새로운 고려인 밀집 지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중앙아시아와 별 다를 바 없는 극동 지역의 낙후된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연해주로의 고려인 재이주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면, 로스토프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으로 고려인들이 꾸준히 이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내 고려인 사회가 정부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고려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²⁾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³⁾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고려인 이주가 급증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갔으며, 이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특히 한국외국

2) 권희영 · Valery Han · 반병률, 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경수, 2002,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임영상, 2000, 「중앙아시아 3-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국제지역연구』 제4호, 187~222쪽 등.

3) 방일권, 2000,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 3-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호, 85~133쪽; 이채문, 2008,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초국가주의적 관점」, 『한국지역지리학회』 제14권 제2호, 141~158쪽; 전신욱, 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권 3호, 77~107쪽; 황영삼, 2000, 「모스크바 고려인 3-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호, 53~83쪽 등.

4) 김재기 · 이복철, 2006,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현상」,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 237~265쪽; 임영상 · 황영삼 외, 2005,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등.

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고려인 현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러시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러시아 남부 지역 내 고려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진 해당 지역 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지역이 볼고그라드 지역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 연구와 관련하여 볼고그라드를 제외한 러시아 남부 지역에 대한 연구는 몇 명의 학자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이다.⁵⁾

이 연구는 첫째, 로스토프 지역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이 어떻게 새로운 고려인 집거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 자료를 비롯하여 필자가 2007년 이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접한 정보, 그리고 이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⁶⁾ 등을 토대로 이 지역 내 고려인 사회가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되었는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로스토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회의 당면 문제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5) 김상철, 2001, 「러시아 북캅카즈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특성」, 『역사문화연구』 제15호, 55~100쪽; 김혜진, 2008,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모스크바 및 남부 러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3권 제4호, 279~298쪽; T. B. Волкова, 2004,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вопросу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No. 4, сс. 27-40; Ю.Н. Попова, 2004,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Дис. канд. ист. наук. Краснодар.

6) 이 조사는 2007년 상반기에 필자가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을 연구하고자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로스토프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15세에서 35세까지의 젊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는 총 301명의 고려인들이 응답하였으며, 로스토프주에서는 총 87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기타 지정 연령층에 해당하는 고려인들이 설문에 응하였다.

II. 연구 지역의 특성 및 고려인 사회의 형성

1. 연구 지역의 특성

로스토프 지역은 북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명한 러시아 소설인 ‘고요한 돈 강’의 작품 배경인 돈 강의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면적은 100,800km²로 러시아 영토의 0.6%에 해당한다.⁷⁾ 로스토프주의 인구는 450만 정도이며,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아르메니아인, 벨로루시인, 타타르인, 그리스인 등 100여 민족이 살고 있다.⁸⁾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로스토프주에는 많은 민족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주 정부는 매년 ‘민족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로스토프 지역은 남쪽으로는 남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북쪽으로는 러시아 중심부를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며, 고려인 외에도 장사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오가는 조선족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로스토프주의 중심지인 로스토프-나-도누(Rostov-on-Don)市⁹⁾의 인구는 150만 명 이상으로 러시아 남부의 최대 도시이기도 하다. 돈 강변에 자리잡은 이 도시는 아조프 해를 옆에 두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카프카스와 통하기 때문에 ‘카프카스의 관문’이라고도 불린다. 이 도시는 18세기에 세워져 철도가 개설된 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아조프해, 돈 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돈 강은 또한 ‘러시아의 젓줄’인 볼가 강과 연결되어 있는데다 3개의 철

7) 로스토프주 정부 공식 사이트 www.rostovobl.ru.

8) 2002년 실시된 숲 러시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인은 84.4%, 우크라이나인은 2.7%, 아르메니아인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내 고려인은 전체인구의 0.26%로, 수적으로 볼 때 열 번째로 많다.

9) ‘로스토프-나-도누(Rostov-on-Don)’라는 말은 ‘돈 강 유역의 로스토프’라는 의미로, 러시아 서중부 지역의 야로슬라프주에 위치한 또 다른 로스토프 지역과 구별된다.



〈그림 1〉 러시아 내 로스토프주 위치



〈그림 2〉 로스토프주 지도

도망을 가지고 있어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¹⁰⁾ 북카프카스의 행정 중심지인 만큼 이 도시에는 많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바다와 강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비옥한 토지와 온난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농업도시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은 로스토프 지역 특징과 관련지어, 이 지역으로 고려인들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요소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하였듯이, 로스토프 지역은 교통의 이점을 갖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역으로의 이주가 한결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려는 고려인들이 바로 대도시로 진출하기보다는 남부 지역으로 일차적으로 이주한 후 다시 대도시로 이주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일종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으로의 이주가 계속되는 이유이다. 둘째, 이 지역은 고려인들의 전통적인 경제활동인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농사에 종사해 왔던 고려인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이곳에서도 지속시킬 수 있다. 물론 중앙아시아에서의 직업과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의 직업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했던 고려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업환경이 탁월하다는 점 외에도 로스토프 지역은 농산물 판매에 용이한 교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도 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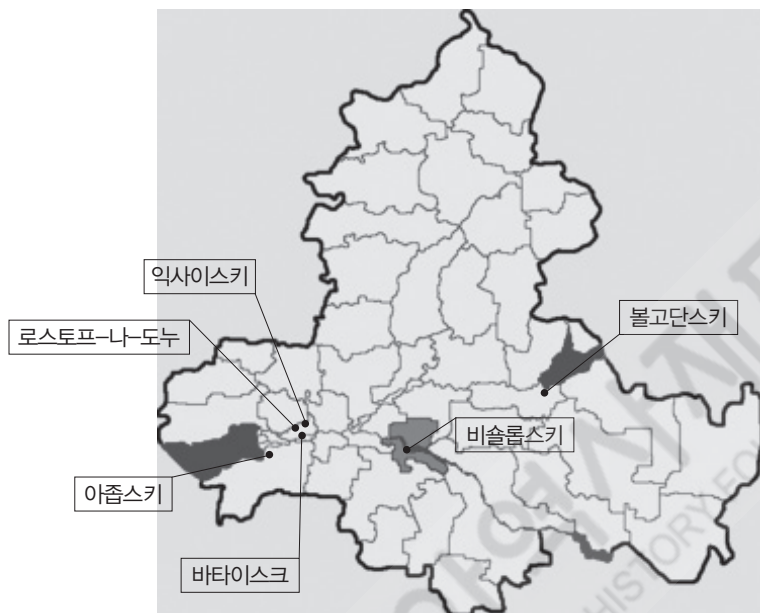
10) 로스토프주 정부 공식 사이트 www.rostovobl.ru.

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있어 높은 교육 열을 가진 고려인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넷째, 로스토프 지역의 수많은 민족들이 오랫동안 상생하며 지내 온 결과 러시아 일부 도시에서 관찰되고 있는 과격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범죄의 발생이나 제노포비아 현상이 비교적 덜한 편이며, 북카프카스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치안보적으로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기에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2_ 로스토프 지역 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

강제유형 후 고려인들의 거주 지역과 이동은 제한되었다. 스탈린 사망 후 1950년대 중반부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되찾게 되면서 이들의 러시아 이주는 시작되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해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학업을 위해 톰스크와 노보시비리스크와 같은 교육도시 그리고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로 떠났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고본질'을 목적으로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고본질'이란 할당량을 채우기 힘든 집단농장과 고려인 브리가다(작업반)가 체결한 일종의 단기 임차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고려인 특유의 농업방식이다. 임차계약에 따라 고려인 브리가다가 계약한 수확량은 농장에게 주고, 남은 수확량은 브리가다가 자유롭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위탁농업의 형태이다. '고본질'이 자본주의적 발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불법적 행위라는 비판도 있어 왔다. '고본질'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성행하였으며, 지금도 농사철에 러시아 남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등으로 건너가 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원래 거주지인 중앙아시아로 돌아가는 고려인들이 많다. 로스토프 지역은 볼고그라드와 우크라이나의 크림 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고본질 지역으로 고려인 계절농민들의 유입과 유출로 고려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고려인들이 계절노동을 목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 및 정착을 위해 이주한 경우도 상당하다. 실제로 고려인들이 이미 1950년



〈그림 3〉 로스토프주의 고려인 주요 거주지역

대 중후반부터 ‘고본질’을 목적으로 로스토프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남부 지역을 드나들었다. 이 지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서 해당 지역을 새로운 거주지로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고본질로 쌓여진 거주경험 및 인간관계는 이 지역에서의 빠른 적응과 현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89년 소련에서 실시된 마지막 인구조사의 결과, 로스토프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7,132명이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수는 점차 늘어 2002년 전 러시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1,669명이었으며, 미거주등록자와 민족을 밝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로스토프주에 위치한 한국교육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5,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현재 고려인들은 로스토프주에서도

11) 로스토프 한국교육원 김원균 원장, 2008. 7. 8,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 고려인 동포 지원방안」 참조.

주로 로스토프-나-도누시, 바타이스크(Bataisk)시, 아좁스키(Azovsky) 지역과 악사이스키(Aksaisky), 볼고단스키(Volgodansky), 비솔롭스키(Veselovsky) 지역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남부 지역 중 볼고그라드 지역은 로스토프 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고려인들의 집거 지역으로 꼽을 수 있으나, 두 지역은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에 있어 유사점만큼이나 상이한 측면도 한 가지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교통의 이점,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1950년대 중후반부터 고려인 계절농민들의 유입이 활발했던 점 그리고 현재 3만 명 안팎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고려인 사회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두 지역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스토프 지역으로의 고려인 이주가 자발적인 이주였다면 볼고그라드 지역으로의 고려인 이주는 한국의 NGO 단체와 개별적인 종교인의 개입이 있어 왔다는 것, 즉 ‘의도적인 이주’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로스토프 지역에는 예로부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고려인들의 이주는 지역주민들의 경계심이나 경쟁심을 불러 일으켰던 반면, 볼고그라드 지역은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지녔으나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려인 이주가 환영받았으며 볼고그라드주 정부 또한 고려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고려인 계절농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는 하나, 로스토프에서는 이미 50년대부터 작은 규모나마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었던 반면, 볼고그라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고려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볼고그라드에서는 1992년 타지키스탄 내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아랄 해 가뭄으로 타지키스탄과 카라칼파키야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많아 특정 지역 출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출신지에 따라 볼고그라드 내 정착 지역이 구분되는 사실 등도 로

1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삼일문화원의 이형근 목사가 볼고그라드 고려인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재기·이복철, 2006, 앞의 글.

스토프 지역의 고려인 사회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¹³⁾

로스토프 지역이 고려인 집거 지역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도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각종 한국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 혹은 한국 정부에서 수년간 관심을 가져 온 극동 지역에 비하면 한국 정부가 로스토프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1999년 로스토프주와 청주시 간의 자매결연 협정을 맺음으로써 양측 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뒤이어 2001년에는 로스토프주에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었다.

최근 이 지역을 향한 한국 측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주러 한국대사가 이끄는 한국대표단이 이 지역을 공식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 고려인들과의 만남이 성사되어 고려인들이 한국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2008년에는 이규현 주러 한국대사가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하였으며, 방문 후 ‘비닐하우스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비닐하우스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지 고려인 사회는 이 프로젝트로 한국에서의 지원은 물론 로스토프주 정부로부터 악사이스키 지역에 5만 m²의 땅을 배분받았다.¹⁴⁾ 이 사업의 연장으로 2009년 1월부터 2월 로스토프 고려인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농업기술 이전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지역 고려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¹⁵⁾

13) 볼고그라드로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은 니콜라예스키(Nikolaevsky) 지역의 솔로두쉬노(Solodushno) 마을에, 타지키스탄 출신들은 스펀드냐야 아흐투바(Spednyaya Akhtuba)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출신 지별로 집거 지역이 다른 것은 외부의 요소, 즉 NGO나 종교단체가 볼고그라드주의 중심지보다는 인구가 비교적 적고 농사에 적합한 곳을 새로운 고려인 이주민들의 정착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14)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экономики.

15) 『연합뉴스』, 2009년 1월 19일.

III. 로스토프 고려인 사회의 특징

1_ 한인 사회 내부의 특징

로스토프 지역 내 한인 사회는 크게 출신지와 이주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로스토프로 이주하기 전 거주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첫째 구소련 지역, 둘째 한국, 셋째 북한, 넷째 중국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그룹은 다시 지역별로 북카프카스 지역(카바르디노-발카리아, 잉구셰티야 그리고 북오세티야 등), 중앙아시아, 사할린, 기타 지역(노보시비리스크, 우크라이나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이주해 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주가 두드러진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남한 출신의 한인들은 유학 혹은 기업 진출, 종교 전도의 목적으로 온 사람들로 그 수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북한 출신 망명자나 북한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북한 출신 한인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표면상으로는 단순히 출신지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만, 그 내부에는 궁극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각자 살아온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같은 한인이더라도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다르며, 서로가 접촉하기 시작한 역사 또한 길지 않고, 언어의 장벽마저 존재하기 때문에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난다. 구소련 지역에서 온 고려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어색한 기류가 관찰된다. 대표적인 예로 사할린 한인들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간의 교제를 들 수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역사적 기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문화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한반도 북부 지역의 한인들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 건너간 것이 현

재 고려인의 기원이라면, 사할린 한인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 중남부 지역의 한인 노동자들을 당시 일본령이었던 남사할린으로 강제동원한 것에 있다. 광복 후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내부상황으로 한국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본인 아내를 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사할린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¹⁶⁾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구사하는 한국어 방언이 틀린데다, 사할린 한인들이 조금 더 오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 사이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려인 단체들의 주요 활동목적이 전통 한국 문화의 부활이나 한국어 교육 등이라면, 사할린 한인단체들은 한국으로의 귀환과 같은 다른 목적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은 서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주 및 현지 적응과정에서 쉽게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사할린 한인들과의 교제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는 고려인들도 있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고려인 사회를 구별할 수 있는데, 소련 붕괴 전에 이미 이주를 했던 구이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련 해체 후에 국적이 자동으로 소련에서 러시아로 옮겨졌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겪지 않았다. 이에 반해 소련 붕괴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국적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주가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려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16)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사할린은 소련 영토로 복귀되었다. 그곳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하였을 때, 일본인 가족을 둔 한인들 또한 일본으로 갈 수 있었다. 일본으로 돌아간 사할린 한인들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한인들의 귀환을 위해 '사할린 억류귀환자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 정부와의 재판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2_ 경제 활동

로스토프 지역의 고려인들은 대부분 농업 — 쌀농사와 채소 재배업 — 에 종사하고 있다. 2001년 로스토프 주지사가 전 러시아 고려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고려인(Korean-Russian)’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로스토프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7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농사 이외에도 정계, 학계, 경제 및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고려인들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로스토프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주 전 거주지에서의 직업과 이주 후 직업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 예전 직종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국적변경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직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이주민들은 대부분 특별한 서류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농업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예전부터 가족(친척 포함)으로 구성된 브리가다의 형태로 일해 왔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중 일부가 텃밭이 달린 주택에 거주하며 채소를 재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는 만큼 농업은 고려인들의 특수한 경제활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종종 다른 민족공동체, 혹은 인근의 타 지역 주민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채소가 더 일찍 자라는 인근의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농민들과의 경쟁이라든가, 혹은 같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타민족들과의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여 민족 간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한

17) Газета, 2001,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No. 16, июль.

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쟁이 고려인들의 민족단합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⁸⁾

농업 다음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야채 판매업이나 ‘카레이스키 살라트(Korean Salad)’ 판매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카레이스키 살라트’는 언뜻 김치나 나물무침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야채요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고려인들이 제조하여 직접 판매도 하고 있어 고려인들의 대표적인 상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그 외에 의류판매에 종사하는 고려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활동 또한 이주 시기별로 2개의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상기 언급했던 것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주지역에 동화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이주 지역에서의 인맥을 구축한 후에는 새로운 직업이나 종전에 가졌던 직업을 다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한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다시 이주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더 다양한 직업 분야와 많은 일자리를 접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인들이 농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활동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토프주의 고려인 직업군을 살펴보면 사업가·기술자·의사·법률가로부터 농부·목수·건설업 종사자 등 다양하며,²⁰⁾ 그중 고려인 목사가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²¹⁾

18) T. B. Волкова, 2004, 앞의 글, c. 32.

19) 사실 어느 도시에서나 ‘카레이스키 살라트’ 간판을 찾아볼 수 있지만, 로스토프-나-도누 내 시장의 경우 한 블록 전체가 ‘카레이스키 살라트’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20) 2007년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중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한 것임.

21) 소련이 해체된 후 많은 수의 한국 종교단체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러시아로 건너갔다. 종교단체들은 동포인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고려인들도 모국에서 온 종교단체에 대한 호기심,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들 종교단체들을 찾았다. 고려인들 사이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려인 목사들이 점차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고려인들만을 위한 교회도 설립되었다. 기독교단체 외에도 원불교 또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에 교당을 두고 있다.

3_ 한인 단체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처럼 로스토프 지역에서도 고려인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고려인 단체로는 ‘로스토프주 고려인 협회(약자로는 AKRO)’를 꼽을 수 있다. 이 단체는 1991년 6월 조직되었으며, 2006년에는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행사에 로스토프주 정부, 로스토프-나-도누시의 대표단과 주러 한국대사관 대표 그리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와 연예인들이 참석하였다는 것이다.²²⁾ 이것은 고려인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민족들과 조화롭게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로스토프주 고려인 협회’에서는 『뿌찌(Путь, 길)』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대부분이 신문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문은 러시아어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타 지역 고려인 사회에 대한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다.

로스토프 내 고려인 단체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청년단체인 ‘화랑’이다. ‘화랑’은 2001년 로스토프주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단합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로스토프주의 5개 지역, 즉 로스토프-나-도누, 바타이스크, 올긴스카야(Olginskaya), 쿨레쇼프카(Kuleshovka), 비솔롭스키 마을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모여 이 단체의 조직을 결성하였다.²³⁾ 러시아 각지에 여러 고려인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지만, 그중 청년단체는 많지 않은 편이다.²⁴⁾ 많은 고려인 원로들과 단체들이 민족문화의 보존과 민족정체성 유지를

22) Л. М. Сим, 2007, “Воз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7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и, радик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 пут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М., с. 109.

23) Газета, *Путь*, No. 5(70), май.

24) 로스토프 지역 외에도 청년단체를 조직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시베리아의 톰스크

위해서는 고려인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정상의 문제, 민족문화와 민족단체에 무관심한 고려인 청년층, 조직력 부족, 홍보 미흡 등의 문제로 청년단체를 갖춘 지역은 드문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로스토프 지역에 청년조직이 설립된 것은 이 지역 내 고려인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로스토프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려인 단체들이 결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바타이스크시에는 ‘바타이스크 고려인협회’가, 올긴스카야에는 ‘고려인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들은 앞서 언급한 ‘로스토프주 고려인 협회’에 비해 규모나 구성원의 수적인 면에서 작은 편이다.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한인단체들은 나름의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단체로서의 대외적인 활동에 주력하기보다는 친목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 민족문화

1) 언어

이 지역 고려인 사회에 민족문화를 전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으로는 한국교육원을 꼽을 수 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는 대사관이나 홍보원 같은 한국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로스토프주에 한국교육원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로스토프주가 새로운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로스토프주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 비하여 한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²⁵⁾

(단체명: 안녕), 노보시비리스크(아침) 그리고 극동 지역의 우스리스크(후대) 등이 있다. 임영상·황영삼 외, 2005, 앞의 책, 167·172·218쪽.

- 25) 2007년 방문 당시 한국 종교단체가 두어 개 있을 뿐이었고, 이 지역에 상주하는 한국 기업은 하나밖에 없었다. 한국 유학생도 5명 정도에 그쳐 이 지역 고려인들이 한국인을 접할 기회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원은 지역 고려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주요 경로임에 틀림없다.

2001년 9월 로스토프-나-도누시에 설립된 한국교육원은 로스토프 지역 외에도 인근 북카프카스 지역 내 25개의 한국어 교육시설들을 관리,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료로 한국어와 태권도 등을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는 물론,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자료가 구비되어 있어 현대문화 또한 접할 수 있다. 이 밖에 송편빚기, 한글 퀴즈대회, 한국음식 경연대회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개최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외에도 한국교육원은 고려인들, 특히 고려인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 청년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로스토프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열의는 상당히 높으며, 영어·중국어·스페인어와 같은 다양한 외국어 중 한국어를 우선으로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다.²⁶⁾ 실제로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응시자의 비율을 볼 때 2006년 28명, 2007년 75명, 2008년 93명으로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²⁷⁾ 한국교육원은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고려인 학생들의 높은 학습열을 복돋워 주고 있다.

이 지역에는 한국교육원 외에도 한글을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 2003년 로스토프 주립 경제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아시아과가 개설되면서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한국에서 건너온 종교단체들이 개별적으로

26)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한국어 학습 열의는 모스크바와 볼고그라드 고려인에 비해 로스토프 고려인들이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 응답자들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우선 순위로 습득하고자 했다면, 로스토프 응답자들은 한국어를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언어로 꼽았다.

27) 로스토프 한국교육원 김원균 원장, 2008. 7. 8. 앞의 글.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관습 및 예술 분야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고려인들의 80% 이상이 고려인으로만 구성된, 즉 부모가 모두 고려인인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88% 이상이 자신을 한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80%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자신의 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약 65%의 고려인 가정에서 꾸준히 고려인 음식²⁸⁾을 만들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려인 음식을 먹는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고려인들은 이미 소련 사회를 거쳐 러시아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요소들과 한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민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이나 관습 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인들은 이제까지 러시아 전통과 관습을 따라왔으며 러시아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전통과 더불어 한국 관습 또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습 중 가장 많이 따르는 것은 돌·환갑·장례식이었다. 이 중 장례식은 앞서 언급한 노인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의 장례의식을 알고 있는 원로들과 주변 한국인들의 조언을 받아 장례의식을 행하고 있다.²⁹⁾ 결혼식(결혼 후 행사까지 포함)과 제사 또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 밖에도 최근 고려인 사회에서는 한국 전통 관습과 의례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고려인 단체를 중심으로 음력 설에 해당하는 날에 설날행사를 열거나 단오행사

28)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문화의 영향 그리고 전통적으로 첨가되는 음식재료들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음식과는 재료나 조리법, 명칭 등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국음식이 아닌 고려인 음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김혜진, 2008, 앞의 글, 285쪽.

29) 임영상·황영삼 외, 2005, 앞의 책, 12쪽; 로스토프 한국교육원 김원균 원장과의 인터뷰(2007. 4. 23).

를 개최하고 있다.

로스토프주에는 이미 민속무용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예술단들이 있다. 이 중 바타이스크시에서는 아동들로 구성된 무용단인 ‘아리랑’ 그리고 올긴 스카야에서는 노인회 합창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³⁰⁾

앞서 언급하였듯이, 로스토프주에서 매년 ‘민족의 날’과 청소년 축제인 ‘돈강 유역 민족우애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고려인 조직들도 ‘한인의 날’을 조직하여 매년 참가하여 왔으며, 이제는 이 행사가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잡아 가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고려인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지역 고려인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고려인들도 고려인 단체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³¹⁾ 더불어 다른 민족들의 행사들도 동일하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타민족행사보다 뒤쳐질 수 없다는 일종의 경쟁심 또한 지역 고려인들을 단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IV.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1_ 새로운 이주지에서의 적응과 국적취득 문제

대규모 이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로스토프 지역으로의 이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주한 고려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이주민들이 예전의 직업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농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점은

30) Газета, 2007,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ай-июнь.

31)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고려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고려인들이 허다하다.

이들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국적변경이나 거주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러시아로 재이주한 고려인들의 러시아 국적취득 문제는 소련 붕괴 후부터 줄곧 발생했던 문제이다. 많은 서류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국적변경 절차가 현재 어느 정도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고려인들의 법적지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이다. 국적취득시 요했던,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의 거주등록 후 5년 이상 거주, 러시아어 능력, 거주방식 제한 등의 조건들이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고려인 외에도 러시아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자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데다 매년 쿼터제를 통해 선정되는 국적취득자들은 수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고려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 고려인들 사이에서 무국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러시아로 이주할 때 가지고 있던 소련 여권 또는 거주하고 있었던 국가의 여권을 러시아 여권으로 바꾸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 공화국에서의 거주 사실과 국적 등을 확인해 줄 서류의 부재이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더라도, 담당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분실된 경우도 빈번하여 국적취득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국적취득에 있어서도 출신지별로 그 과정이나 상황이 다르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이중국적 승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취득이 좀 더 수월하다. 반면, 그 외 독립국가연합 국가에서 온 고려인들은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무국적자의 경우 기본적인 의료, 교육,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정부보조도 받지 못한다. 토지와 농기구를 임대할 경우에도 결국 고리대금업자나 중간 도매상, 토지 임대권자, 농촌 조직범죄 집단에게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게 된다.³²⁾ 이 외에도 구직의 어려움, 불심검문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벌금지불 등의 문제들을 겪게 된다. 무국적 문제가 미해결될 경우, 다음 세대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기도 한다.

32) 김재기 · 이복철, 2006, 앞의 글, 259쪽.

현재 독립국가연합 내 고려인의 수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10%인 5만 명 정도가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 로스토프 지역에도 무국적 신분인 고려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바타이스크, 비솔롭스키, 플레쇼프카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³³⁾ 최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무부와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국적문제 해결에 힘입어 한국정부는 러시아 고려인들의 국적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스토프 지역 내 무국적 고려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2009년 8월 주러 한국대사관의 신성원 총영사는 고려인들의 국적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바 있으며, 특히 고려인 밀집거주 지역이면서, 무국적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방문하였다. 방문 동안 주 경제부의 국제협력부 대표를 비롯한 지방기관 대표들과 함께 고려인 국적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이 결과 ‘로스토프주 고려인협회’ 내 법률상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한국대사관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2_ 고려인 사회의 내부 통합

로스토프 고려인 사회는 소그룹들 간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갈등 없이 비교적 잘 융화를 이루고 있으며, 고려인 단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³⁵⁾ 그러나 여전히 남북한 출신 한인, 혹은 조

33) 이범관 국회의원, 2009. 7. 1, 「무국적 고려인 국적취득 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보고서-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34) www.donland.ru/news.asp?Id=12569(로스토프주 정부 사이트, 검색일: 2009. 10. 29).

35) 고려인 사회의 내부 분화와 갈등 그리고 이름만 달리하는 단체들 간의 경쟁, 단체장의 사리사욕 등이 지역을 불문하고 고려인 사회의 부정적인 특징으로 꼽혀 왔다. 단체 간 갈등이나 내부 구분 없이 가장 화합이 잘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은 톰스크와 노보시비리스크 지역의 고려인 사회이다.

선조들과의 교류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다양한 출신지의 한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고 이러한 기회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어떤 특정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으로 민족문화를 전수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교류의 확장이 항상 친밀감과 상호신뢰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온 한인들과 고려인들이 교류할 기회가 많지만, 서로 간의 교류가 늘어 갈수록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경우들이 실제로 관찰되고 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고용자로서 피고용인인 자신들을 마치 낮은 계급의 사람처럼 대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고려인들이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을 이익을 취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서로를 동등한 한인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_ 민족교육 및 민족정체성 유지

로스토프 지역은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교사의 수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어 교육기관을 빠른 시간 내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지원이나 교재문제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원의 경우, 한국 유학생이나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외 종교단체에서는 한국에서 온 전도사 등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한글 교육법을 이수한 교사들이 아니며, 현지인 강사의 경우 실제 현대 한국어와는 동떨어진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교육을 위한 지침서, 사전, 영상자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때, 현지인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스토프를 포함한 러시아 지역에서 쓰이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공수한 초급교재이거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사전(조-로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현지어로의 설명과 올바른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 외 민족문화를 구성하고 민족정체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음식, 관습이나 전통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로스토프 고려인들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의례를 진행해야 하는지, 자기의 본이 어디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한 전통의례를 행하고 싶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고려인들도 적지 않다. 음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술하였듯이, 고려인들이 만드는 음식은 이미 한국에서 만드는 음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국음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고려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자, 강좌 개설 등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려인 장년층에게 민족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민족 교육의 대상은 곧 고려인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문화나 한국어 학습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우선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러시아 남부 지역을 조사하며 만났던 몇 명의 고려인 청년들은 현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지적인 직업, 이른바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였다가, 이주 후에는 농업이나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직업을 아직 갖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사일을 돕는 다든가 혹은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는 동안 무방비 상태로 혼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또는 또래들과 같은 여가생활이나 경제적 여유를 못 누린다는 불만 등이 쌓이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비행 청소년들의 증가를 낳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인 가정이 경제적인 안정을 못 찾을 경우 비싼 학비의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이 좌절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이들은 동양적인 외모로 인해 러시아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일식집에 취직한다든가 혹은 집안의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V. 맺음말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각 단계별로 이유와 성격을 달리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련 붕괴 전 이주 단계에서는 고려인들이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 지인 혹은 친인척이 살고 있거나, 이미 그곳에서 일했던 경험(고본질)이 있던 지역을 선택하는 반면, 지금은 그 선택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 이주, 다시 말하자면, 중앙아시아에서 극동 또는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1차 이주를 하고, 러시아 중심지나 혹은 더 나은 삶이 약속된 다른 지역으로 2차 이주를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현재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기란 힘들 정도이다.

로스토프 지역은 상기 언급한 소련 붕괴 이전과 이후에 일어났던 고려인 이주 과정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로스토프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은 이 지역 내 지인들 혹은 과거의 생활경험 등으로 로스토프 지역을 새로운 이주지로 정하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를 위해 거쳐 가는 경유지로 간주하고 이곳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기도 한다. 지속되는 로스토프 지역으로의 이주로 이 지역 내 고려인 사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로스토프주는 고려인들의 새로운 밀집 거주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로스토프주의 고려인 사회 역시 여타 지역 내 고려인 사회처럼 다양한 지

역에서 온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유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일부 지방도시의 고려인 단체들이 친목 위주의 소모임 정도로만 존속되는 반면, 로스토프 내 고려인 단체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현지 고려인들도 고려인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회, 청년회와 같은 연령별 조직들도 운영되고 있어 고려인들의 민족단체 참여에 있어서도 세대 간 조화를 보이고 있다.

현지 고려인들은 한국어 및 전통관습 등 한국문화의 꽤 많은 부분을 상실하였고 현지 동화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어나 민족문화,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그다지 실용적이거나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한국어만 하더라도 사할린 한인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수는 노장년층에서도 소수에 제한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교육시킨다고는 하지만, 한국어를 통해 실제로 경제적 이익—취업이나 비즈니스—을 취하고 있는 수 또한 극히 한정적이다. 특히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는 ‘조상의 언어’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 실생활을 위해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고려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족문화의 부활보다는 현지 내 정착과 안정일 수 있다. 이들을 위한 현지 적응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현지 내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지 고려인들이 민족문화를 접하고 익히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 전역에서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각 민족들이 자민족의 전통문화 되찾기 운동에 집중하였다. 대부분의 고려인 단체들도 전통문화의 부활 및 보존을 주요 활동과제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스토프 고려인들 또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며, 현지 동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인이라는 뚜렷한 민족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로스토프주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고려인 단체의 활발한 활동, 한국교육

원의 기여 등으로 로스토프 고려인들은 한국어, 전통무용이나 노래 등을 익히고 각종 페스티벌이나 민족문화 경연대회에 참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나 단체의 지원이 미흡하거나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고려인들에게 모국의 전통, 풍습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의례의식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거나 의례의식을 실제로 재연해 보이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우리 문화와 풍습을 알리고,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혹은 환경에 맞게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도 로스토프주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단체활동이나 민족문화 수용과는 동떨어져 힘든 현실에 맞닥뜨린 청소년들도 있다. 고려인 사회 내부에서부터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흥미를 느낄 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때야 비로소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이나 민족문화 수용에 대한 동기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나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이 이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희영 · Valery Han · 반병률, 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상철, 2001, 「러시아 북카프카즈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특성」, 『역사문화연구』 제15호.
- 김재기 · 이복철, 2006,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현상」,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
- 김혜진, 2008,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모스크바 및 남부 러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3권 제4호.
- 방일권, 2000,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 3-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호.
- 이채문, 2008,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초국가주의적 관점」, 『한국지역지리학회』 제14권 제2호.
- 임영삼, 2000, 「중앙아시아 3-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국제지역연구』 제4호.
- 임영삼 · 황영삼 외, 2005,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전경수, 2002,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신욱, 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3호.
- 황영삼, 2000, 「모스크바 고려인 3-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13호.
- Волкова Т. В., 2004,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вопросу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No. 4.
- Попова Ю. Н., 2004,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Дис. канд. ист. наук, Краснодар.
- Сим Л. М., 2007, “Воз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7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и, радик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 пут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М.

〈보고서〉

김원균, 2008. 7. 8,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 고려인 동포 지원방안」.

이법관, 2009. 7. 1, 「무국적 고려인국적취득사업을 위한 현지조사보고서-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인터뷰〉

로스포트 한국교육원 김원균 원장 인터뷰(2007. 4. 23).

〈러시아 법조문〉

Закон РСФСР, 26 апреля 1991г.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Закон, 18 октября 1991 г. “О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Ф, от 1 апреля 1993 г.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кон, 1995 г. “Об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Закон, 1996 г. “О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러시아 인구조사 결과〉

Итоги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2 г.

〈인터넷 자료〉

로스토프주 정부 공식 사이트 www.rostovobl.ru.

〈신문〉

『연합뉴스』, 2009년 1월 19일.

Газета, май 2006, *Путь* No. 5(70)

Газета, июль 2001,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No. 16.

Газета, май-июнь 2007,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Russian community in Rostov of Russia

Kim, Hyejin

The mass immigration of Korean–Russians to Russia began after the collapse of USSR. They generally moved to the Russian Far East regions or the Central regions such as Moscow and St. Petersburg. In the mean time, Rostov,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Russia, became a Korean–Russians' main residential area. Many Korean Russians steadily moved to Rostov because the southern region was relatively easy to transfer from Central Asia.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Russian community, and analyzing the present problems of Korean–Russians and their community. It has been written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materials, interviews and the survey.

It is possible to divide Korean–Russians' community in Rostov by the previous residence and the immigration time. The community consists of Koreans from various regions such as Sakhalin, Siberian cites, nations like Central Asian countries,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While the old immigrants have certain social status and economic stability, the newcomers suffer severe financial hardship and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Russian citizenship. Despite passive contact among these small groups, they maintain friendly relations and

participate in the festivals and contests hosted by regional governments for about 100 ethnic minorities in this region. In spite of the loss of Korean language and traditional customs and high level of assimilation to Russian culture, they have their own ethnic identity as Koreans and great interests in Korean cultur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still lots of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m, more concerns and support from Korean government are needed.

keywords

Korean–Russian, Rostov region, Korean community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요성과 실의
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
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가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 “연도”, “위의 글(책)”, “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 “연도”, “앞의 글(책)”, “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 .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요 시 인용 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8호(2010. 6)

초판 1쇄 인쇄 2010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6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